

2008 문화재관리과정

차례

1. 한국의 문화재보호 제도 박 동 석 1
2. 전통건축 문화재의 방재대책 백 민 호 47
3. 문화유산의 가치와 기업의 참여 강 임 산 67
4. 문화재 정책의 개선방향과 그 실천과제 .. 이 유 범 83
5.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와 정책 김 성 범 97
6. 유적 정비에 따른 보존관리의 체계와 기법 .. 김 철 주 113
7. 매장문화재 이해 및 발굴조사 실무 이 규 훈 157
8. 전통건축이론 장 석 하 187
9. 한국의 불교미술 최 성 은 221
10. 문화재관리론 정 기 영 237
11. 무형문화재 제도의 이해 이 재 필 263

한국의 문화재보호 제도

- 제1장 문화재보호제도의 기본개념 / 3
- 제2장 문화재위원회 / 6
- 제3장 국가지정문화재지정(인정) 및 해제 / 7
-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 / 15
- 제5장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33
- 제6장 동산문화재의 보호 / 34
- 제7장 매장문화재의 보호 / 37
- 제8장 등록문화재 / 40
- 제9장 세계유산 및 외국문화재보호 / 42
- 제10장 시·도지정문화재 / 44
- 제11장 문화재 행정벌 / 45

문화재청 임업사무관 박 동 석

제1장 문화재보호 제도의 기본개념

1. 문화재의 정의

1) 국내법적 정의

-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인 것
-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 역사성 :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변천과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고 문화재가 어떤 역사적인 의미와 기록을 담고 있는 가
- 예술성 : 기예와 학술의 특징적 가치로서 제작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여 형상화 시킬 정교한 가치가 얼마나 있는 가
- 학술성 : 학문과 기술적인 가치 즉, 과거문화를 복원할 수 있는 이론과 체계, 정보 등을 내포한 가치가 있는 가
- 경관성 : 보고 기리며 즐길 수 있는 관상성을 비롯 문화재가 생성되거나 입지된 고유한 자연적·인문적 경관의 가치가 있는 가

2) 국제법적인 정의

- 가) 무력분쟁 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조약(1954년)
- 나) 풍경과 지적의미와 특질의 보존에 관한 권고(1962년)
- 다)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년)
- 라)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1972년)

<자연유산>

- 무기적·생물학적 생성물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특정구역에서 과학상·보전상 나아가서 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2. 문화재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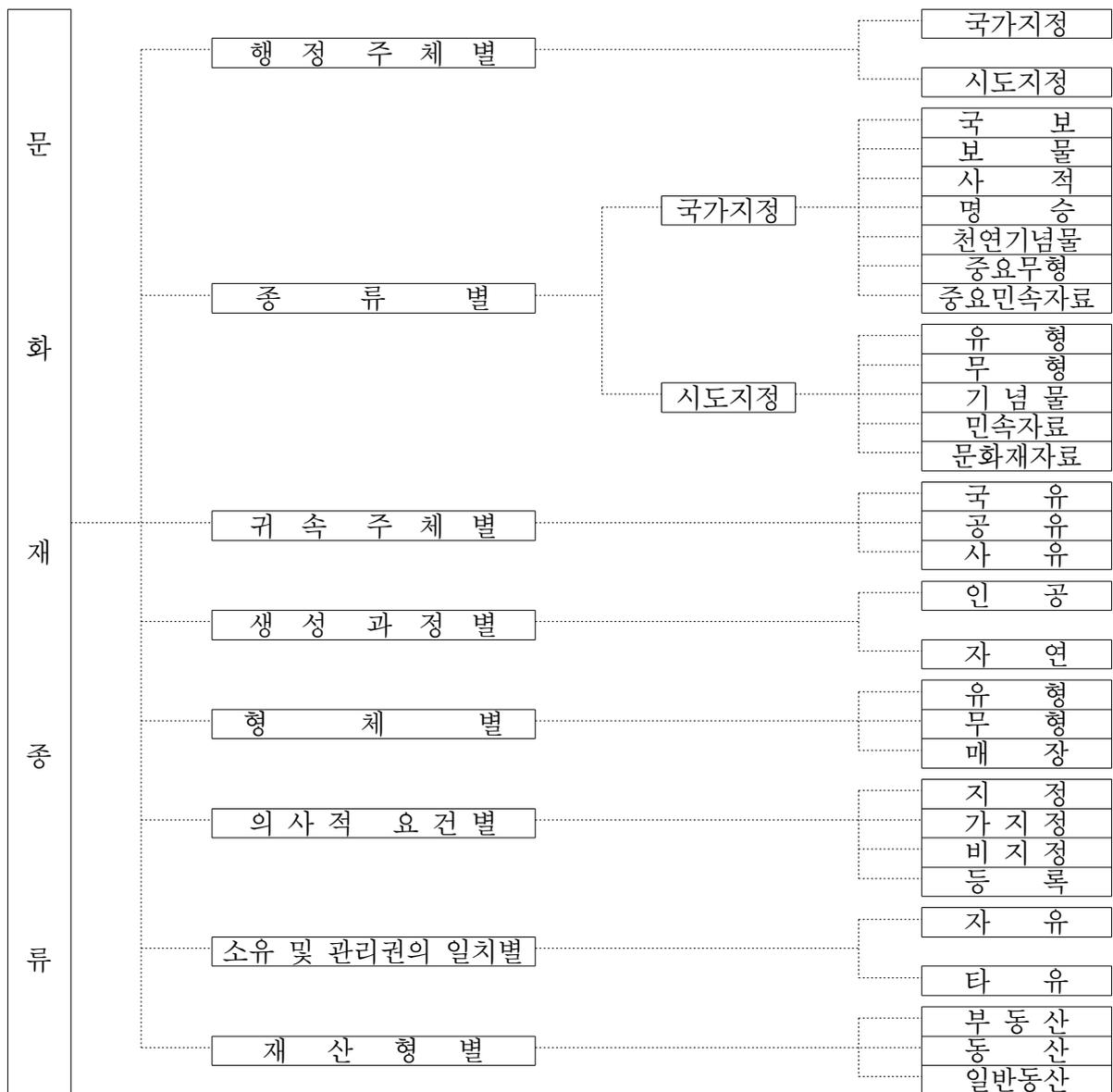
1) 행정법적 특성

- 문화재는 공물이며 그 중에서도 보존공물(保存公物)-공용제한(사유재산권에 공법적 제한)

2) 인문적 특성

- 문화재는 ‘민족의 얼’,
- 문화재는 ‘민족생활의 표상’,
- 문화재는 ‘민족의 역사적 증거물’,
- 문화재는 ‘민족예지의 총합체’,
- 문화재는 ‘집단기억’
- 문화재는 ‘전 인류의 공동체 유산’

3. 문화재의 종류



4. 문화재보호의 목적

- 문화재를 보존
- 민족문화 계승·활용
- 국민의 문화적 향상 도모
-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

5. 헌법에 나타난 문화재보호 정신

- 문화 복지국가의 지향, 문화주의와 문화정책 실현, 인류유산의 보호

○ 전 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 제 9조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9조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통령 취임선서)

6. 문화재보호 제도의 연혁

기 별	연 대	연수	대 표 법 령
보존규칙 시기	1910~1933	23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조선총독부령 제52호, 1916.7) - 향교재산관리 규정(학부령 제23호, 1910. 4) - 사찰령(제령 제7호, 1911. 6)
보존령 시기	1933~1962	30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조선총독부 제령 제 6호, 1933. 8)
일 제 기	1933~1945	12	”
미군정기	1945~1948	3	”
제1공화국	1948~1960	13	”
제2공화국	1960~1961	2	”
보호법 시기	1962~현재	46	○문화재보호법·같은법 시행령·같은법 시행규칙

제2장 문화재위원회

1. 목적·성격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합의제기관
2. 구성 : 문화재위원 120명과 문화재전문위원 200명이내로 구성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심의권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
 -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 문화재전문위원 :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및 의견제시권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이상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자
3. 심의사항
 - 국가지정문화재(보유자, 명예보유자, 보유단체, 보호물, 보호구역 포함)의 지정(인정)과 그 해제
 -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복구명령, 현상변경·국외반출의 허가,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 금지·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의 명령
 - 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 매장문화재의 발굴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사항
 - 그 밖의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4. 분과위원회(11개 분과) : 국보지정, 경관, 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무형문화재예능, 무형문화재공예,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과, 민속문화재
5. 주요 행정사항
 - 회의록 작성 및 공개-특정인의 재산에 영향 또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시 비공개

제3장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인정) 및 해제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인정)기준

문화재종별	분 야	지 정 기 준
국 보	보물의 전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 가치가 큰 것 ○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래가 적은 것 ○ 형태·품질·제작·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보 물	건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조 건축물류 당탑·궁전·성문·전랑·사우·서원·누정·향교·관아·객사·민가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 석조 건축물류 석굴·석탑·전탑·부도 및 석종·비갈·석등·석교·석계·석단·석빙고·침성대·당간지주·석표·석정 등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 ○ 분 묘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전적·서적· 고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적류 - 사본류: 한글서적·한자서적·저술고본·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 판본류: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 활자본류: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 서적류 사경·어필·명가필적·고필·묵적·현판·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 고문서류 :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회화·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 우리나라 문화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 우리나라 회화사상 또는 조각사상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공예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 ○ 우리나라 문화사상 또는 공예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공예사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고고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패총 또는 사지·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 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무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전사 상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 역사상 명장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큰 것
사 적	유사 이전의 유적	○ 패총·유물포함층·주거지(수혈주거지·부석주거지·동혈주거지등)·지석·입석·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	○ 사지·사우지·제단·사고지·전묘지·향교지·기타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 성곽·성지·책체·방루·진보·수영지·관문지·봉수대 및 유지·고전장·도읍지·궁전지·고도·고궁 기타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	○ 고도(옛길)·교지·뚝·요지·시장지·식물재배지·석표 기타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교육·사회사업에 관한 유적	○ 서원·사숙·자선시설·석각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분묘·비등	○ 분묘·비·구택·원지·정천·수석 기타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명 승	경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고원·평원·화산·하천·해안·하안·도서 등 ○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 정자·누(樓)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도시·전통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협곡·해협·곶·급류·심연·폭포·호소·사구, 하천의 발원지, 동천·대(臺), 바위, 동굴 등 ○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원림·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 길 등 - 역사·문학·구전 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상 또는 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천연기념물	동물·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특유의 동·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소·폭포의 소·온천·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성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 및 그 서식지·생장지 또는 도래지 ○ 문화·민속·관상·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동·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자생지

천연기념물	동물·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 ○ 문화적·과학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명목·거수·노수·기형목 ○ 대표적 원시림·대표적 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삼림상 ○ 저명한 동·식물의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 생활·민속·의식주·신앙·문화 등과 관련된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 ○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 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과 화석
	지질·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 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관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 구조나 암석 -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 각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와 그 분포지 -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 지질 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과 그 산지 - 지질 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과 그 산지 - 신속(新屬) 또는 신종(新種)으로 보고된 화석 중 보존 가치가 있는 화석의 모식 표본과 그 산지 -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화석 산지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화석과 그 산지 ○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 구조·퇴적 구조와 암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질 구조 : 습곡, 단층, 관입, 부정합, 주상절리 등 - 퇴적 구조 : 연흔, 건열, 사층리, 우흔 등 - 기타 특이한 구조의 암석 : 배개용암, 어란암(魚卵岩, oolite),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운동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 : 고위 평탄면, 해안 단구, 하안 단구, 폭포 등 -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 : 단성화산체, 화구, 칼데라(caldera), 기생화산, 화산동굴, 환상복합암체 등 -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한 지형 : 사구, 해변, 갯벌, 육계도, 사행천, 석호, 카르스트 지형, 석회 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 분지, 협곡, 해식애, 선상지, 삼각주, 사주 등 - 풍화 작용과 관련된 지형 :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등 - 기타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표·지질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음골, 풍혈 - 샘 : 온천, 냉천, 광천 - 특이한 해양 현상 등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문화적·역사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자연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상상·과학상·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

중요무형문화재	연극	○ 인형극·가면극
	음악	○ 제례악·연례악·대취타·가곡·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산조·농악·잡가·민요·무악·범패
	무용	○ 의식무·정재무·탈춤·민속무
	공예기술	○ 도자공예, 피모공예, 금속공예, 골각공예, 나전칠공예, 제지공예, 목공예, 건축공예, 지물공예, 직물공예, 염색공예, 옥석공예, 수·매듭공예, 복식공예, 악기공예, 초고공예, 죽공예, 무구공예
	기타	○ 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 등 ○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보유단체	○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함.
	명예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자
중요민속자료	한국 민족의 기본적 생활 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에 관한 것 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주거·기타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 생산·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어렵구·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 ○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수레·역사 등 ○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경방용구·형벌용구 등 ○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법회구·봉납구·우상구·사우 등 ○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
중요민속자료	민속자료를 수집 정리한 것으로서 그 목적·내용 등이 특히 중요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집단민속자료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 군이 있는 곳 ○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2. 문화재보호물 지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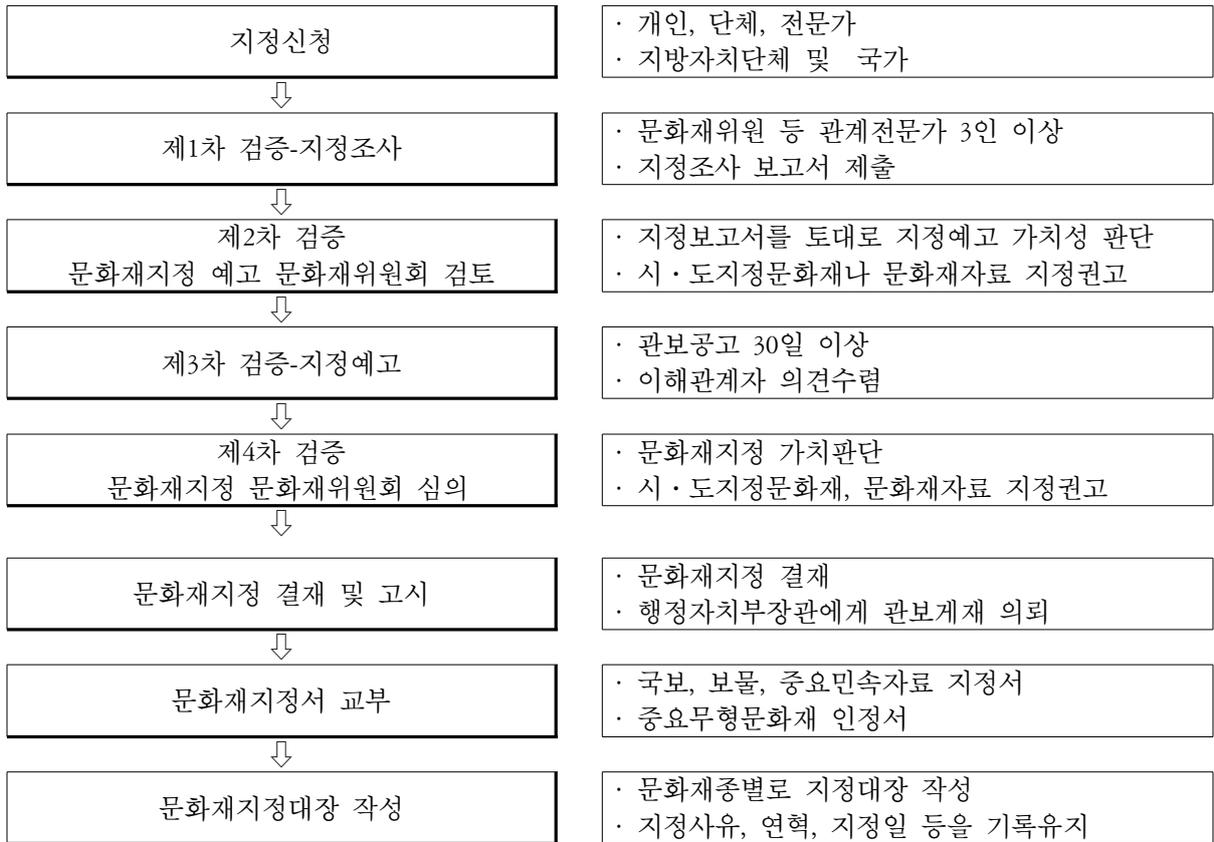
종 류	지 정 기 준
지상의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	○ 철책·석책·위장 기타 당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동종·석비·불상 등	○ 종각·비각·불각
기타 문화재	○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3.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기준

문화재종별	분 야	지 정 기 준
국 보 보 물 중 요 민속자료	목조 및 석조 건축물	○각 추녀 끝이나 또는 건물 최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달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20미터 내지 100미터 (사찰건조물의 경우에는 2천 미터) 이내의 구역
	석탑·전탑 등	○지대석에서 10미터 내지 25미터 이내의 구역
	석비·부도·석종·석불 등(건물 내에 안치된 것은 제외)	○대석의 최 돌출점에서 10미터 내지 20미터 이내의 구역
	첨성대	○하부 기단에서 50미터 내지 100미터 이내의 구역
	석빙고	○벽면 상부 지면에서 20미터 내지 100미터 이내의 구역
	석 굴	○하부 기단에서 100미터 내지 500미터 이내의 구역
	마애불	○불상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0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사방구역
	당간지주·석등·노주·석조 등	○각 물체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미터 내지 20미터 이내의 사방구역
	석 교	○교대 및 교각에서 10미터 내지 30미터 이내의 구역
기 타	○각각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사 적	성곽 등	○성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및 내향 각각 20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구역
	성·산성·성내전역을 지정하는 경우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20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구역
	제 방	○성곽에 준 한다
	왕릉·고분묘 등	○봉토 하단에서 10미터 내지 1천 미터 이내의 구역
	사지·사우지·전묘지·고궁 등	○담장 또는 경계선에서 5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구역
	목조건축물·석조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	○국보·보물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의한다.
	기타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명 승	경승지	○경승지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천연기념물	식물	○입목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구역
	동물·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자연현상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보호물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우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기타 최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외향 5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구역
	석책·철책·위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부 기석에서 2미터 내지 20미터 이내의 구역

4. 지정(인정) 및 해제 절차



※ 허위 지정 등 유도 죄 : 5년 이상 유기징역

5. 문화재 지정번호

- 문화재 종류별로 각각 지정된 날짜에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관리번호)

6. 문화재 지정의 시간에 대한 효력

- 당사자(소유자·점유자·관리자, 보유자·명예보유자) : 통지를 받은 날
- 그 밖의 자 : 관보에 고시한 날·최초 구매 가능 시(時) 설

7. 해제

1) 기준

구 분	사 유
국보 등 그 외 문화재	○ 가치상실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중요무형문화재	○ 보유자 개인이 모두 사망한 때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거나 사망한 때 ○ 보유자가 해제 의사를 표시한 때 ○ 보유자가 전승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때 ○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공연·심사·전시 등과 관련하여 도덕적·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시범처리 된 경우 ○ 문화재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 문화재가 해제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절차·효력발생시기 : 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와 효력발생 시기와 같음

8. 문화재 보호물·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1) 의의 :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규제 제한
- 2) 기준 : 당해 문화재의 보존가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정도, 주변여건 등
- 3) 시기 : 지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9. 가지정문화재(긴급지정문화재)

- 1) 대상 :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 2) 사유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이 없을 경우
- 3) 유효기간 : 6개월

10. 문화재 세제 혜택

- 1) 국세 감면 현황(15종 중 8종) :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관세, 주세
 - 법인세 :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은 손금 불 산입

- 상속세 :
 - 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 토지 면세
 - 문화재자료·등록문화재, 박물관자료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세 징수 유예(2대 상속은 면세)
- 소득세 : 국가지정문화재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 면세
 -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주택 면세(1세대 1주택 특례)
- 부가가치세 :
 - 수입 골동품(제작 후 100년 초과) 면세(국내 거래 시 부과)
 - 문화재 소유 종교단체의 경내지, 경내지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의 재화와 용역공급은 면세
- 관세 : 수입 골동품(제작 후 100년 초과) 면세
- 주세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 주류 공개에 사용되는 경우 면세
-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 지정문화재 물품은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비 면세품

2) 지방세 감면현황(16종 중 4종) : 재산세, 도시계획세

- 보통세
 - 면허세 : 문화재수리업·문화재매매업·매장문화재 발굴·문화재 국외반출 부과
 - 재산세(조례에 규정) :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는 100% 면세, 등록문화재는 50% 감면
 - 종합토지세 :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면세
- 목적세
 - 도시계획세(조례에서 규정) : 지정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자료 포함) 면세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

1. 문화재 관리행위 개념

가. 의미

- 문화재를 원형대로 그 가치를 유지 보존하는 목적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여러 요소를 적절히 결합하여 그 운영을 지도·조정하는 기능 또는 그 작용(계획-조직-통제 ; 관리의 순환활동)

나. 종류

- 보존행위 : 물건이나 권리의 가치를 현상대로 유지하여 감소를 방지하는 행위
- 이용행위 :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고 이익을 얻는 행위
- 개량행위 : 재산의 성질이 변경하지 않고 재산의 가치(사용가치, 교환가치)를 늘리는 행위

2. 기본원칙 : 원형유지 원칙(현상불변경의 원칙)

3. 관리자의 기본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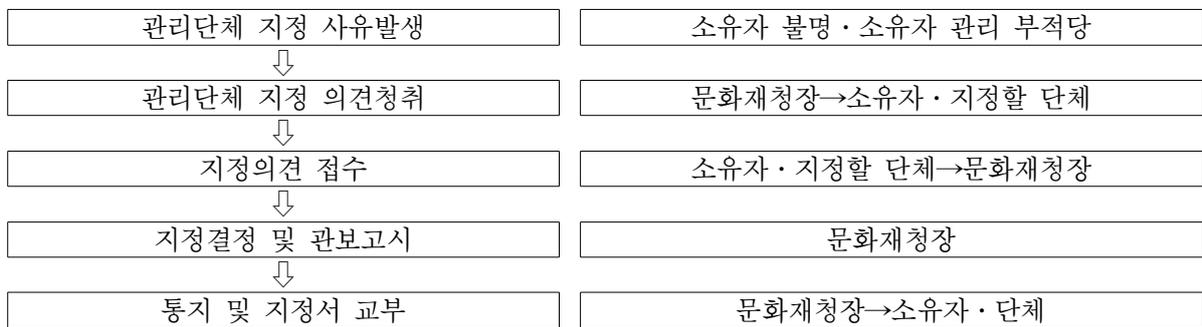
- 문화재 하나 하나에 간직되어 있는 정신세계와 기술에 대한 인식과 그 것을 인식할 만한 지식을 배양
- 각 문화재의 역사적 사실과 그 중요성 및 특기사항을 숙지
- 문화재는 고장의 역사를 알리는 유산이므로 그 지방에서 향토재산으로 관리
- 문화재관리상에 필요사항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중지에 따라 조치
- 자신의 시기에 이루어진 문화재관리상황에 대하여 잘 기록하고 유지하여 후임자에게 승계
- 문화재보호법을 숙지하여 그 절차를 성실히 이행

4. 문화재 보존관리 주체

가. 유형

- ① 문화재소유자 : 선관주의 의무(기본원칙)
- ② 문화재관리자 : 지정관리인·법정관리인·선임관리인 선임
- ③ 문화재관리단체 : 지방자치단체·법인

나. 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절차



다. 관리단체 관리행위

<행정지침>

1)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행정지침 제15호 ; 제정 2003. 2.24)

- 법정행위 - 문화재보호법 제 규정 준수(기록관리, 허가사항, 신고사항, 행정명령, 경비부담, 공개원칙 및 제한사항 등)
- 비 법정 행위-일반관리
 - 당해 문화재와 주변 환경이 온전하게 보존·조화되며 청결히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문화재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보수·정비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
 - 반기 1회 이상 문화재 경상관리 사항을 조사·점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에 기록유지 및 관리에 활용(반영)하고 문화재청 또는 시도 공무원 점검자에게 제공
 - (1) 당해 문화재의 보존상태
 - (2) 문화재 보호시설물(보호책, 안내판, 경고판 등) 관리상태
 - (3) 문화재 주변환경(불량 적재물, 인근지역 시설설치 등) 상태
 - (4) 인화성·폭발성물질의 접근 등 여부와 소화시설(소화전, 소화기 등), 전기시설, 배수로, 석축 등 재난예방시설의 관리상태,

(5) 불법 문화재현상변경 행위

(6) 기타 문화재 관리와 관련된 사항

* 문화재 불법현상변경 행위는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신고

- 문화재의 촬영허가와 관련하여 촬영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관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촬영허가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시·도지사는 문화재 촬영허가여부 판단 시 이를 검토 처리

- 당해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 2)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지침(행정지침 제2호 ; 제정 1998.12.23)
- 3)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행정지침 제3호 ; 제정 2000. 9.27)
- 4)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행정지침 제4호 ; 2000.12.29)
- 5)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관리 지침(행정지침 제7호 ; 제정 2001. 7. 2)
- 7)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천연보호구역 관리 지침(행정지침 제8호 ; 2001. 9.17)
- 8) 사찰유물 전시관 건립 및 운영·관리 지침(행정지침 제13호 ; 제정 2003. 2.15)
- 9)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행정지침 제14호 ; 제정 2003. 2.24)
- 10)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등에 관한 지침(행정지침 제17호 ; 제정 2003.11.12)
- 11)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관리 지침(행정지침 제18호 ; 제정 2004. 2. 4)
- 12)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행정지침 제25호 ; 제정 2006. 9.27)
- 13) 화석지 보존·관리 지침(행정지침 제30호, 2007.12.24)

<예규>

- 1) 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 절차 규정(예규 제6호 ; 제정 1999. 6. 1)
- 2) 문화재기술위원회 운영규정(예규 제34호 ; 제정 2004.11.25)
- 3) 전통건조물 부재 보관소 관리소 관리 운영규정(예규 제37호 ; 제정 2005. 1.14)
- 4)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존시설 및 활용도 검토 등에 관한 규정(예규 제39호 ; 제정 2005. 9.12)
- 5) 문화재위원회 등 각종 신분증에 관한 규정(예규 제51호 ; 제정 2006. 7. 4)
- 6) 산불진화 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예규 제53호 ; 제정 2006.10.24)
- 7)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예규 제57호 ; 개정 2007. 5.22)

<훈령>

- 1) 조경관리 규정(훈령 제4호 ; 제정 1999. 6. 1)
- 2) 외부로부터 의뢰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규정(훈령 제42호 ; 개정 2003.12.30)

- 3)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훈령 제106호 ; 2007. 4.13)
- 4) 유물취급 규정(훈령 제108호 ; 개정 2007. 5.22)
- 5)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115호 ; 개정 2007. 7.24)

<고시>

- 1)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7-29호, 개정 2007. 5. 4)
- 2)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고시 제2007-123호 ; 2007.12.21)

<기타>

- 1) 발굴조사 업무 처리 지침(매장문화재 업무편람 ; 시행 2007. 5. 7)
- 2) 석조문화재 보존처리 공사 지침(건조물과-2060 ; 시행 2006. 6.22)

5. 문화재 행정체계

문화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법-문화재에 관한 사항 관장 ○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법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인정) 및 해제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리단체의 지휘감독
시·도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청장이 권한 위임한 사무 ○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해제), 보존관리 ○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제외)
시장·군수·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문화재 관리단체로서 위임받은 사무 ○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지방 민속자료 발굴조사 ○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제외)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량한 재산의 관리자로서 책임과 주의 의무(선관의무)
국민·기업·시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문화재 1지킴이 참여

6. 문화재 재정 및 부담

- 국가·지방자치단체 :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에 필요한 경비 보조
(상호주의)
- 관리주체 :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 부담원칙(부담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지원요청)

1) 일반회계 : 보조금(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보조금 대상사업-목적 외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①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에 필요한 경비
- ②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 ㉠ 국가지정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제한에 필요한 경비
 - ㉡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장애물의 제거에 필요한 경비
 - ㉢ 국가지정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고 원형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위한 경비
- ③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④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나) 국고보조율

구 분	국비(%)	지방비(%)
1)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70	30
2) 시도지정문화재 수리	50	50
3) 해저유물 발굴 감시초소·감시선 운영	100	-
4)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금	100	-

2) 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가) 국고지원율 : 국가지정 70%, 시도지정·비지정 50%, 전시관 30%

나) 용도 : 지역개발사업-문화재개발

다) 내용 : 유교문화관광자원화, 남해안관광벨트, 백제역사재현단지, 지역문화유산 개발, 무형문화재전수지원

3) 분권교부세(지방교부세법)-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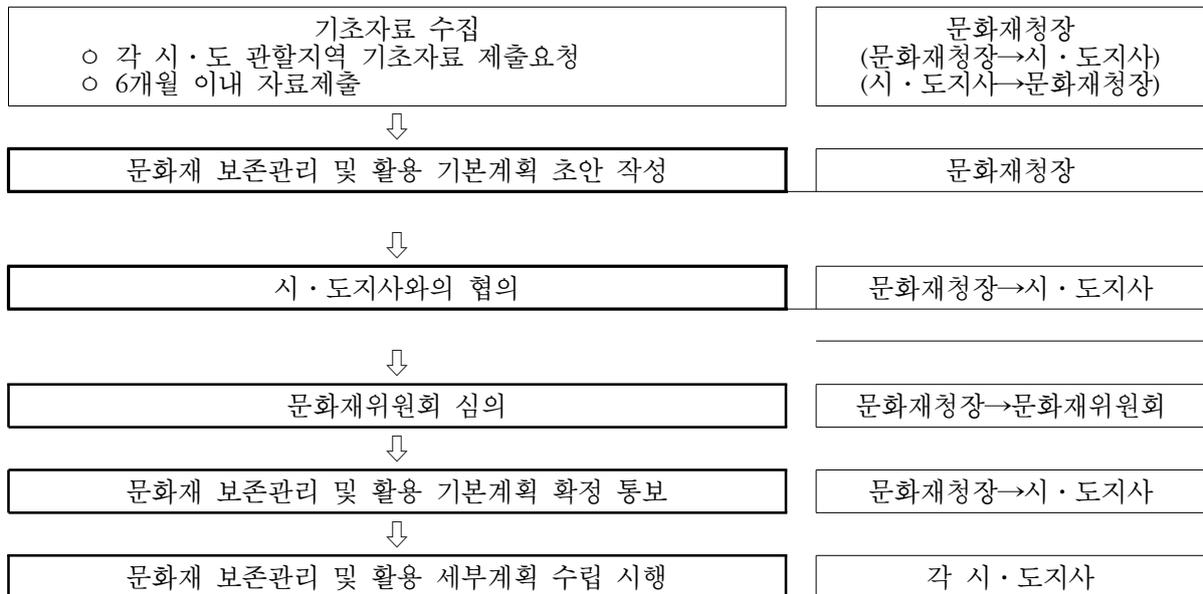
7. 문화재 행정계획

1)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계획의 내용

- ① 문화재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 ② 문화재 주변 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㉓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본이념과 바람직한 문화재 미래상의 정립(지표·목표)에 관한 사항
- ㉔ 문화재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㉕ 문화재 환경보전 및 쾌적성 증진에 관한 사항
- ㉖ 수해, 풍해 등 재해방제와 화재예방, 안전에 관한 사항
- ㉗ 문화재의 경관 및 미관 관리에 관한 사항
- ㉘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을 위한 기반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㉙ 문화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의 수립 절차



8. 기록의 작성·보존 -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대행가능

- 1) 기록 작성 자 : 문화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관리단체장
- 2) 기록대장 : 국가지정문화재대장, 중요무형문화재대장

9. 행위제한

가. 허가사항

1) 종류

행 위 내 용	벌 칙 (무 허가)
<p><법 제34조(허가사항)에 관한 사항></p> <p>1. 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가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p> <p>2. 국가(시도)지정문화재를 탁본(拓本) 또는 촬영(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p> <p>3. 국가(시도)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죽은 천연기념물, 가지정문화재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p>	<p>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자기소유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p> <p>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p> <p>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자기소유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천연기념물 박제표본제작, 취득·양도·양수·운반·알선자 2년 이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 벌금)(몰수)</p>
<p><법 제35조, 제94조(수출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p> <p>4. 국가(시도)지정문화재 국외 반출허가 및 국외 반출허가기간 연장허가</p> <p>5. 일반 동산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p>	<p>5년 이상 징역(미 반입자 포함) (양도·양수·중개자 3년 이상 징역)(몰수)</p> <p>3년 이상 징역(몰수)</p>
<p><법 제43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p> <p>6. 국가(시도)지정문화재 공개제한 및 출입 허가</p> <p><법 제77조(매매 등의 영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p> <p>7. 문화재 매매업 허가</p>	<p>2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p> <p>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p>
<p><법 제55조(발굴의 제한)에 관한 사항></p> <p>8.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p>	<p>지정구역 : 5년 이상 징역 비지정구역 : 10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p>
<p><법 제5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p> <p>9. 건폐율·용적률 특례적용을 받거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p>	<p>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p>

2) 현상변경 허가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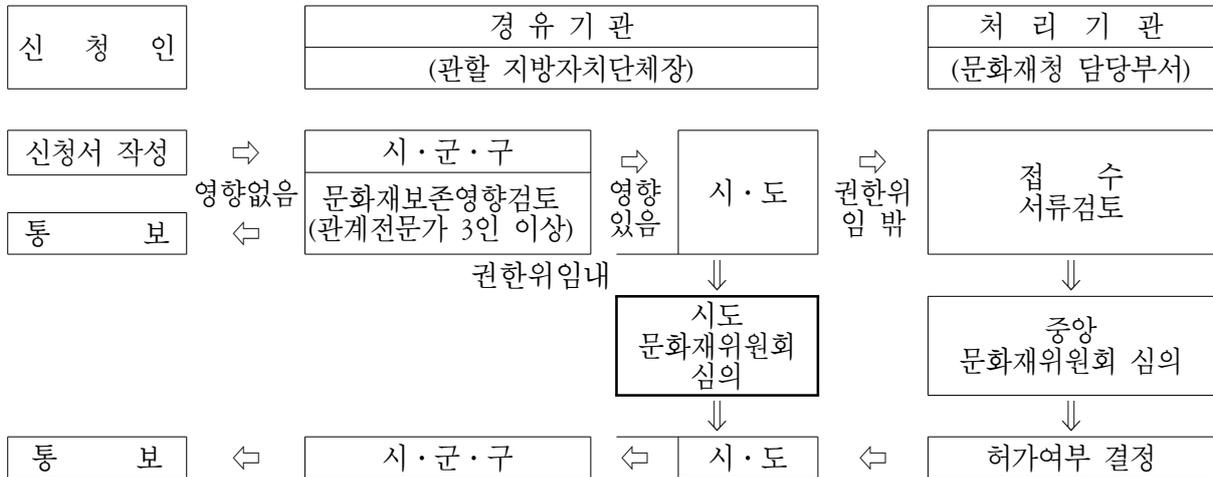
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 ①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
- ②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하는 행위
- ③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의 안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 ㉠ 건축물·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 ㉦ 동물의 사육·번식 등의 행위
 - ㉧ 토석·골재·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의 채취·반입·반출·제거 행위
 - ㉨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및 각종 물건의 야적 행위
- 나)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①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
 -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
 - ㉠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 ㉡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화학물질·먼지·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 ㉣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③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④ 문화재지표조사 및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영향검토결과 국가지정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건설공사 행위
 - ⑤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종묘시민광장 집회 및 시위, 음주가무, 고성방가 행위 등

3) 우려가 있는 행위 고시 : 문화재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4)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처리절차



나. 신고사항

구 분	신 고 사 항	신고 기한	처리 기간	신 고 기 관	벌 칩	
					허위신고 (징역, 벌금)	신고태만 (과태료)
법 제38조 (신고사항) 에 관한 사 항	가)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15일	2일	문화재청장	2년 이하, 2천	2백만원 이하
	나) 소유자에 변경이 있을 때	"	"	(시·군·구·	만원 이하	"
	다)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 때	"	"	시·도 경유)	"	"
	라)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에 변경이 있을 때	"	"	"	"	"
	마)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	"	"	"	"	4백만원 이하
	바)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	"	"	"	5백만원 이하
	사) 천연기념물·명승지역에서 동물·식물·광물 포획·채취·반출허가 또는 국외 반출 허가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한 때	"	즉시	시장·군수·구청장	"	2백만원 이하
아) 현상변경 등 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장변경 기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	2일 이내	문화재청장 (시·군·구· 시·도 경유)	"	3백만원 이하	
자) 동·식물의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때	3개월	"	"	"	5백만원 이하	
법 제22조 (수리) 등에 관한사항	가) 문화재 수리기술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나) 문화재 수리기능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다) 문화재 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15일 " "	즉시 " "	시도지사 " "	" " "	2백만원 이하

구 분	신 고 사 항	신고 기한	처리 기간	신 고 기 관	벌 칩	
					허위신고 (징역, 벌금)	신고태만 (과태료)
등록문화재 법 제49조 (신고사유) 및 제50조 (현상변경) 에 관한 사 항	가)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	2일	문화재청장 (시·군·구· 시·도 경유)	"	2백만원 이하
	나) 등록문화재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관리자의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	"	"	"	"	"
	다) 등록문화재의 전부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	"	"	"	"	5백만원 이하
	라)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외관 1/4이상 변경, 이전·철거)	30일 전	5일	"	"	"
법 제54조 (발견신고)에 관한 사항	가) 매장문화재발견 신고	7일 이내	즉시	문화재청장 (자치단체, 경찰관서의 장)	"	"
법 제81조 (문화재 매 매업의 신 고)에 관한 사항	가) 문화재 매매업 폐업 신고	- -	3일 즉시	시장·군수· 구청장	"	"

나. 행정명령(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보유자)

1) 행정명령 내용

-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제한
-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장애물의 제거
- ③ 국가지정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고 원형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 ④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지정문화재(가지정 포함)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 국가부담 이행-소유자·관리자에게 통지

- 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② 소유자·관리자로 하여금 행정명령 내용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4) 벌칙 :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명령 위반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0. 행정강제

- 1) 문화재 현상, 관리, 수리, 환경보전 상황 조사
 - 정기조사(의무) : 5년 주기, 관계공무원 및 위탁조사
 - 직권조사(임의) : 필요시, 관계 공무원
- 2) 문화재보호구역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
- 3) 벌칙 : 협조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11. 화재예방

- 1)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 지정문화재 화재예방 시책수립
- 2) 소유자 및 관리단체 등 :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 설비 설치(국가, 자치단체 비용 지원)

<기본방침>

- 유인경비, 경보시설, 소화시설 보강
- 화재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를 위한 자체 방화관리 체제 확립
- 동산문화재는 내화구조물(보관고, 금고, 전시관 등)에 보관

<안전관리>

- 화재 취약요인 제거 : 방화선 구축정비,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물품보관소 설치
- 순찰 및 경비 강화 : 순찰로 개설, 순찰조 편성
- 관람객 계도 : 안내방송, 홍보물 배포
- 유관기관 협력 : 소방관서, 산림청 등
- 소방 기반시설 정비 : 소방문, 소방도로 확충
- 문화재 대피 우선순위 목록 작성

12. 국토개발과 문화재보호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개발사업으로부터 문화재 훼손 예방
 - ② 문화유적분포지도 작성⇒열람요청

2)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훼손-멸실-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경관보호

- ①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자 조치
- ②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시행자 부담

3)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의무

가) 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분할지, 연결지 포함)

- ① 사업면적 3만㎡ 이상 : 육지, 해안선 10km미만지역에서 건설공사
- ② 사업면적 15만㎡ 이상 : 하천골재, 해안선 5km 미만에서 해상골재 채취
- ③ 사업면적 25만㎡ 이상 : 해안선 5km 이상에서 해상골재 채취, 해안선 10km 이상 건설공사
- ④ 사업면적이 3만㎡ 미만인 건설공사 중 다음의 공사
 - ㉠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 ㉡ 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 ㉢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
 - ㉣ 경주·부여·공주·김해 등 고도(古都)지역
 - ㉤ 입지 상 매장문화재의 포장가능성이 높은 지역
 - ㉥ 문화재관련 전문가 또는 행정기관 문화재 담당직원 현지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 ㉦ 사업시행 중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면적이 증가하여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경우

나) 지표조사 제외

-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지역
- 절토·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유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
- 공유수면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루어진 지역
- 복토된 지역으로서 복토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문화유적 분포 지도상에 표기된 지역에서 사업면적 2천㎡ 이하인 건설공사
- 지표의 원형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임목, 죽의 식재, 벌채

4) 행정기관의 건설공사 인·허가 시 사전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가) 영향검토 지역 범위

시도별	국 가 지 정	시도지정
서울특별시	전지역 100m	50m
부산광역시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그 외 지역 500m	좌동
대구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광주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경 기 도	전지역 500m	300m
강 원 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좌동
전라북도	"	"
전라남도	도시계획구역 : 200m, 도시계획구역 외 : 500m	"
경상북도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그 외 지역 500m	"
경상남도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단, 숙박·위락·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5층 이상 건축물 건축연면적 1천㎡이상은 500m), 그 외 지역 500m	200m(좌동) 300m(좌동)
제 주 도	전지역 500m	300m

나)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내용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우려가 있는 행위 여부

다) 검토결과 행정기관 조치

- 영향이 있는 경우 : 현상변경허가 절차이행
- 영향이 없는 경우 : 관계법에 따라 건설공사 허가

라)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관계전문가

<문화재 분야> - ①②는 반드시 1인 이상, ④는 1인 이하

- ①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② 시·도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
- ③ 대학에서 그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 ④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소음·진동·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열 방출 분야 등>

- ① 대학에서 도시계획·환경 등 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 교원
- ② 관련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 ③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이상의 연구자

13. 국외반출 및 비상시 문화재 보호

1) 국외반출금지원칙-허가제

- 허가권자 : 문화재청장
- 반출허가 대상 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 국보·보물·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
 - 시·도지정문화재 : 국보·보물성 유형문화재, 천연기념물성 기념물
국보·보물·천연기념물성 문화재자료
 - 비지정문화재 : 일반동산문화재
 - 가지정문화재 : 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
- 반출허가 목적 : 국제적 문화교류(2년 이내 반입 조건)
- 반출허가 절차 : 문화재위원회 심의-국무회의 심의

2) 비상시의 문화재 보호

- 비상조치 명령권자 : 문화재청장
- 비상조치시기 : 전시·사변·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비상조치 대상문화재 : 국유문화재, 국유 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

14. 문화재 공개

- 1) 공개원칙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화재는 공개
- 2) 문화재 공개 제한 : 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

- 공개제한권자 : 문화재청장
- 공개제한 범위 : 당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
- 공개제한 사유 :
 - 종교의식이나 문화재의 보존·관리상 그 공개가 부적당한 경우
 -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문화재청장이 공개의 제한 또는 중지를 명한 경우
- 문화재 공개제한 절차 : 관리단체 의견청취→문화재위원회 검토→고시→통지→안내판 설치

3) 문화재 공개 제한 지역의 출입허가

- 가) 문화재의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문화재청장이 당해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

- 관람료 징수권자 : 문화재 소유자, 보유자, 관리단체
- 관람료 징수시기 : 문화재 공개 시
- 관람료 결정권자 : 문화재 소유자, 보유자, 관리단체

15.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 목적
 - i) 문화재 보호·관리·수리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인력의 의욕을 고취
 - ii) 문화재청에 필요한 연구논문의 확보
- 양성대상 :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
- 특 전 : 장학금 지급

16. 문화재 수리

- 1) 정의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문화재 수리는 단순히 문화재를 고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정통성 보존이라는 정신적 차원으로 승화하는 복합적 의미

2) 수리의 기본원칙

- 가)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은 원형보존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화재사전에는 창조라는 단어는 없으므로 기존의 것을 ‘있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원래 모습 그대로’ 최대한 재현하는 것만이 그 문화재를 최대한 표현하는 것이다.
- 나) 수리의 올바른 접근은 기술성과 함께 정신적 가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공사의 공학적·수학적·기술적 분석보다는 그 문화재가 담고 있는 그 시대의 정신과 사회상의

연구사 선행되어야 한다.

- 다) 수리대상 문화재에 대한 관련 고증자료를 수집·탐구하고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문화재를 후세에 전달할 것을 목적으로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성격을 고려, 원래의 양식과 형태 뿐 아니라 재료를 변형하거나 훼손시키지 아니하며 전통적인 기법을 사용한다.
- 라) 재료의 대체는 역사적 사실 및 흔적들의 보존을 고려하여 문화재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붕괴·소멸·멸실되어 새로운 재료의 사용이 불가치하거나 보강이 없이는 위험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 마) 미술적·역사적·과학적으로 시간이 흐른 발자취를 가급적 지워버리는 일이 없이 문화재가 간직한 채, 전체적인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바) 수리대상물은 손질하기 전의 상태와 사용한 재료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겨 후대에 다시 수리할 경우 참고가 되게 한다.
- 사) 역사적 증거물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파손·변형·왜곡은 물론 하나라도 제거하여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아) 보수대상의 부재(部材)는 전면 교체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고 부득이 손질을 하는 경우는 최소한으로 하되 그 손질을 필요불가결함이 정당화되어야 한다.
- 자) 문화재수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문화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효율성을 배제함은 물론 수리업체의 사업대상과 기술자나 기능공의 일거리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적 민족유산을 보존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3) 문화재 수리 자격 -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

4) 경미한 수리의 범위

- ① 창호지를 바르는 행위
- ② 누수 등으로 인하여 흙이 떨어진 천장에 부분적으로 흙을 바르는 행위
- ③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 ④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 ⑤ 표석·안내판·경고판 등을 보수하는 행위

- ⑥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 ⑦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
- ⑧ 철책의 부분적인 부식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 ⑨ 진입도로·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 ⑩ 비뚤어진 담장의 기와를 부분적으로 바로잡는 행위
- ⑪ 성곽·건물지 등 유적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 ⑫ 전기 공작물 및 소방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 ⑬ 도난 경보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 ⑭ 기타 문화재청장이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문화재수리업·기술자·기능공

수리업자	수리기술자	수리기능공
보수단청업자	보수기술자(2) 단청기술자(1)을 포함한 보수단청분야 기술자 4인 이상	목공, 석공, 화공, 번외와공, 드잡이공, 미장공 각 1명이 포함한 10명 이상
실측·설계업자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실측설계사보
조경업자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조각업자	조각기술자 1명 이상	조각공 1명 이상
표구업자	표구기술자 1명 이상	표구공 1명 이상
칠공업자	칠공기술자 1명 이상	칠공 1명 이상
도금업자	도금기술자 1명 이상	도금공 1명 이상
모사업자	모사기술자 1명 이상	
보존과학업자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훈증공 보존처리공 각 1명 이상
식물보호업자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실측·감리업자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해당분야기술자 1명 이상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박제 및 표본 제작업자	박제·표본기술자 1명 이상	박제·표본제작공 1명 이상

6) 동물치료 :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한 경우 현상변경허가 없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적응 훈련 등

<동물치료소 지정요건>

- ①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 ②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관련 기관
- ③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7) 기타 행정사항

- 수리기술자·기능자·수리업자 등록 및 취소요건
- 수리업무 수행자 준수사항 및 업무처리기준
- 문화재수리 용역·시공의 평가(우수업자 선정) : 용역사업-3천만원 이상, 수리공사 : 10억 이상
- 수리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 수리공사의 종류별로 10년 이내
- 문화재기술위원회 설치·운영(문화재청, 시·도) : 용역·시공 평가(7명)
- 수리자격 시험 및 자격증 관리 위탁 : 2008년도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7. 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 육성

- 1) 일반법인(사단 또는 재단) :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선양 단체
- 2) 특수법인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8. 국유문화재의 특례

- 1) 문화재청이 국유문화재 총괄청 및 관리
- 2) 회계간의 무상 관리환
- 3)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제5장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1. 중요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체계 : 도제식



2. 중요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특전

1) 전승지원금 지급(문화재보호법)

보유자 및 조교 전승지원금, 전수장학금, 특별장려금, 특별지원금,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 장례 보조금, 전승 장비 및 교재비, 기타 지원금(공개행사 비용 등)

2) 학점인정(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구	분	인정학점	비 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140학점	
전수교육 보조자		60학점	범위 내에서 교육인적장원부장관이 정함
전수교육 이수증 교부받은 자		30학점	
전수교육 받은 자	3년 이상 받은 자	21학점	
	2년 이상 3년 미만	14학점	
	1년 이상 2년 미만	7학점	
	6월 이상 4학점이	4학점	

3) 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은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4)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추천소집(병역법)

5)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전수교육 조교는 초·중등고교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에 해당 (초·중등교육법)

6) 중요(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는 일반학원 강사자격(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및 가족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의료급여법)

제6장 동산문화재의 보호

1. 동산문화재의 종류

지정 동산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동산성 국보·보물·중요민속자료
	시도지정문화재	동산성 유형문화재·민속자료·문화재자료
비지정 동산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	

2. 일반 동산문화재

1) 일반 동산문화재

- 가) 전적·서적 또는 판각류로서 역사상·학술상 또는 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
- 나) 회화·조각 또는 공예품으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
- 다) 무구류로서 역사상 희귀한 것
- 라) 고고자료로서 학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
- 마) 민속자료로서 한국민속의 생활문화의 기본적 특색을 지녀 학술자료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
- 바) 자연사 자료로서 역사·학술·과학·교육·심미·관상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
- 사) 녹음·사진·영상으로 된 기록물로서 역사·예술 또는 학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
- 아) 기타 외국에서 제작 또는 발굴된 작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직접 영향을 주었거나 학술상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

2) 일반 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

- 가) 국외수출 및 반출금지
- 나) 동산문화재 보호와 국제협력 :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 다) 비상시의 문화재의 보호
- 라) 일반 동산문화재 오인 우려 동산을 국외반출·수출시 미리 비문화재의 확인

- 시·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경우
 - 그 대상물과 함께 ‘비문화재확인원’ 2부 제출
 - 시·도지사는 접수한 확인대상 물품이 일반 동산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된 때에는 ‘비문화재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함.
-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대상물과 ‘비문화재확인원’ 2부를 공항 및 항만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감정관실」에 제출
 - 「문화재감정관실」은 ‘비문화재 확인 표지’를 당해 물품에 붙여야 함.

3. 문화재감정위원

가. 자격

- ①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 ②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광역지방자치단체 동산문화재 관계분야 5급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 ③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그 해당 문화재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④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또는 대학의 동산문화재 관계분야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 ⑥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⑦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자

나. 임무

- ① 지정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
- ② 국외 반출하는 동산문화재의 감정
- ③ 문화재의 감정 및 검색방법 등 개선 연구
- ④ 문화재 감정 신청자에 대한 안내 및 대 국민홍보
- ⑤ 국내 반입 문화재의 감정 등 관계기관의 협조 및 지원

4. 문화재감정관실 : 문화재 해외 밀반출 방지(국제 공항 및 항만)

5. 문화재 매매업(허가제-문화재청장) : 50년 이상 동산성 유형·민속

1) 자격요건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박물관·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 나) 전문대학이상의 대학(대학원)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 또는 문화재 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자
- 다) 문화재 매매업 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결격사유

- 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나)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영업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준수사항

- 가) 문화재보존상황·매매·교환 현황 기록(실물사진 촬영)
 - 1월31일 시장·군수·구청장 제출→시·도지사 제출→2월28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 나)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 1월31일 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 5년간 보유(파기 및 양도 불능)

4) 영업통제-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무허가 수출 등의 죄, 손상은익 등의 죄, 도굴 등의 죄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매매업 영업허가 및 폐업신고(3개월 이내) : 해당 기초자치단체장

제7장 매장문화재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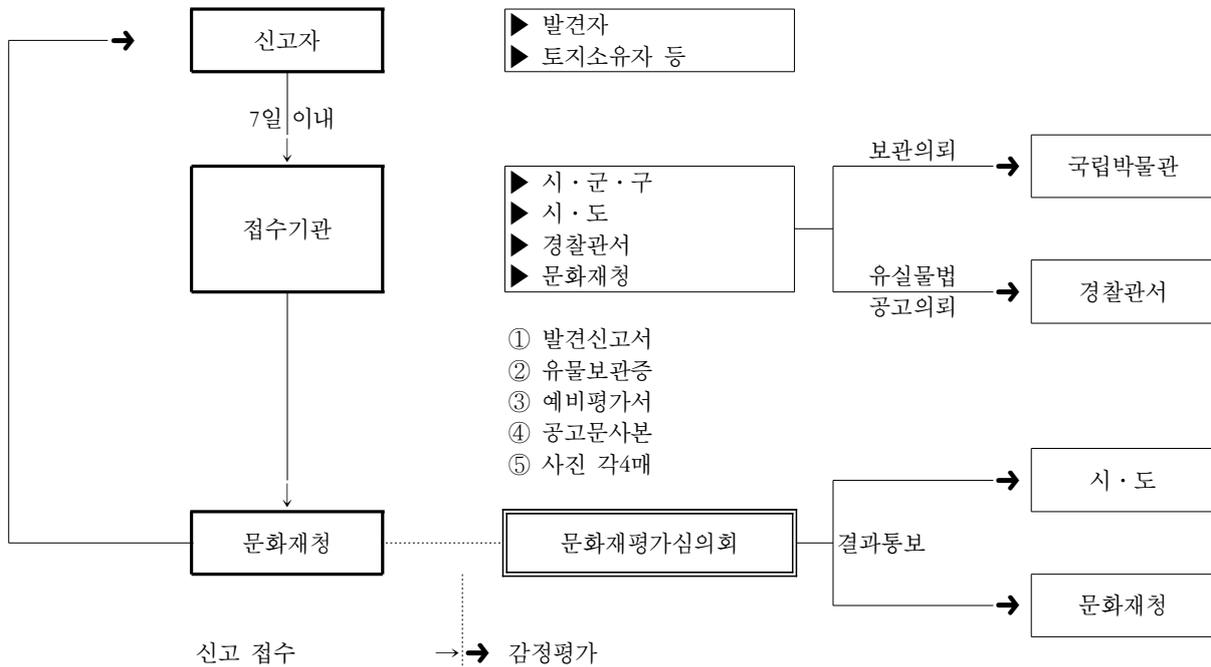
1. 정의

고분(古墳)·패총(貝塚)·고생물자료(古生物資料; 화석 등)·천연동굴(天然洞窟) 기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

2. 개발 사업으로부터 보호

- 1) 사전 문화재청장과의 협의의무 : 사업면적이 15만㎡ 이상인 개발사업
- 2) 문화재청장 보호조치 명령권
- 3) 지방자치단체장의 비협의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건설공사 인허가 제한권

3.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문화재보호법, 유실물법 동시 적용)



- * 소유자 판명 : 소유자에게 반환
- * 소유자 미 판명 : 국가귀속, 보상금 지급(발견자·소유자 균등)
- * 문화재 가치 없음 : 신고자에게 반환

4. 국가귀속 및 보상

- 대상 : 경찰관서장 공고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 판명되지 않은 것으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
-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범위
 -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 처리절차



- 포상금 지급방법
 - 발견자·습득자, 소유자가 동일인 경우 : 100% 지급
 - 발견자·습득자, 소유자가 비 동일인 경우 : 각각 1/2씩 지급
 - 발견자·습득자,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 반분된 보상금을 각인에게 균등 지급
- ※ 신고기일(발견일로부터 7일 이내) 경과 후 신고 시 보상금 지급하지 않음

등급	평가액	포상금
1 등급	1억원 이상	2천만원
2 등급	7천만원 이상	1천5백만원
3 등급	4천만원 이상	1천만원
4 등급	1천5백만원 이상	5백만원
5 등급	5백만원 이상	2백만원

5. 발굴허가 절차



6. 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의 발굴 : “국유재산에 매장된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적용

- 매장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지정구역)인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리

7. 발굴비용

- 1) 사업 시행자 부담 ⇒ 원인자 부담원칙(파괴되는 공공자산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함께 개발이익에 대한 환원)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가)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 건축연면적이 264㎡ 이하인 건축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
 - 나) 농·어업인의 사업목적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2,644㎡ 이하, 건축연면적 1,322㎡ 이하인 시설물
 - 다) 개인사업자의 사업목적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264㎡ 이하인 건축물
 - 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한 때에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및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

제8장 등록문화재

1. 등록문화재와 지정문화재와의 비교

구 분	등 록 문 화 재	지 정 문 화 재(건조물 중심)
제도의 목적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을 대상으로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것을 폭넓게 등록, 완화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유자의 자주적인 보호에 기대하는 제도	문화재를 중점적으로 엄선해서 극히 가치가 높은 것을 강한 규제와 함께 강력한 보호에 의해 영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제도
보호의 대상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중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역사적, 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것
등록(지정) 기준	미 지정 문화재중 원칙적으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을 경과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 ① 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③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예외)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등록문화재로써 등록요건을 갖추고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 가능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행정주체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장/시·도지사
심 의 회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회/시·도문화재위원회
등록(지정)시 소유자 동의	제도상은 필요 없음 운용상 의견수렴 참고	제도상은 필요 없음 운용상 의견수렴 참고
현 상 변 경	신고, 필요한 지도, 조언, 권고 (건폐율·용적률 또는 국비지원 받아 수리한 문화재는 허가)	허가 필요한 지시, 행위중지, 허가취소
보존에 영향을 미칠 행위	규정 없음	허가(경미한 것은 제외) 필요한 지시, 행위중지, 허가취소
국비보조	국비지원(5:5)	국비지원(7:3)
세제혜택	지방세(재산세) 50% 감면 국세(1세대 1주택 특례, 상속세 징수유예, 양도소득세 감면)	지방세(종합토지세 비과세) 국세(1세대 1주택 특례, 상속세 비과세, 법인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2. 등록문화재의 등록 절차 : 지정문화재 지정절차 준용

3. 등록문화재관리 주체 및 역할

소유자	선관의무, 관리자 선임
관리단체 (지자체)	보존관리사항 기록유지, 신고사항, 보존관리경비 부담, 특례적용 등록문화재 건축허가 내용 통보 등
문화재청장	기술 및 현상변경지도, 감독, 보조금지원, 세제혜택 등

4. 신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의무자 :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자치단체 제외) ○ 신고 받는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 사유 및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 15일 이내 2)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 15일 이내 3)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 15일 이내 4)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 : 15일 이내 5)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1/4이상 외관변경, 이전·철거)를 할 때 : 30일 이내 ○ 신고사항 처리 : 수리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5. 허가사항

대상 문화재	대상 행위
①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	㉠ 당해 문화재가 건축물 시설물인 경우 철거하거나 이전 또는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
②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은 등록문화재	㉡ 당해 문화재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아닌 경우 등록당시 등록문화재대장에 명시된 주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행위

6.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이내에서 완화 적용
- 당해 문화재의 구조·특성·경관 등을 고려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7. 등록문화재의 세제혜택

관련 세법		내 용
국 세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징수유예
지방세	지방세법(시·군·구세 감면조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및 재산세 50% 감면

제9장 세계유산 및 외국문화재보호

1. 세계유산의 종류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세계복합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

2. 세계유산 등록 절차

잠정목록 유네스코 제출	◎ 세계유산 등록신청을 위한 사전예비단계. ◎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등을 거쳐 잠정목록선정
↓	
등록신청 대상 문화재 선정	◎ 문화재위원회 심의로 선정 ◎ 등록신청 서류 유네스코 제출 : 매년 2월 1일까지 ◎ 접수처 :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 제출서류 : 신청서(영문) 및 부속자료(사진, 슬라이드, VTR)
↓	
1차 평가 (제출익년 2월)	자연유산인 경우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과 문화유산인 경우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ICOMOS)에서 전문가를 해당국가에 파견, 현지조사 후 평가서 작성
↓	
2차 검토 (매년 4월)	세계유산위원회 집행이사회(BUREAU)회의에서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목록대상 검토 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 (세계유산목록에 등재 권고, 등재하지 말 것을 권고, 추가자료 제출요구를 위해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환부, 심층연구가 필요하여 검토 연기)
↓	
최종심의·결정 (제출 매년 6월중)	세계유산위원회 정기총회에서 등록여부 최종심의·결정, 공표

3. 세계유산의 관리 - 국지정문화재에 준한 관리,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4. 외국 문화재의 보호

- 1) 국제조약과 문화재보호법 준수
- 2) 불법반출 외국문화재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
- 3) 반환의무 이행

<기 가입 협약>

1.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ROM) 규약
2.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3.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4.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

<가입 추진 중인 협약>

1. 전시 문화재보호 협약
2. 도난 또는 불법 반출 문화재에 대한 유니드르와 협약
3. 수중 문화재보호 협약

제10장 시·도지정문화재

1. 시·도지정문화재 지정·보존·관리 근거

- 문화재보호법, 시·도 문화재보호조례 및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2. 시·도지정문화재의 분류

구분	문화재				문화재자료
유형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국가지정	국보·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3. 국가지정문화재와의 구별표기

국가지정 : 국보(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제00호 □□□□

시도지정 : 서울특별시 지정 유형(기념물,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제00호 □□□□

4. 문화재청장의 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

- 1) 국가지정문화재외에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
- 2)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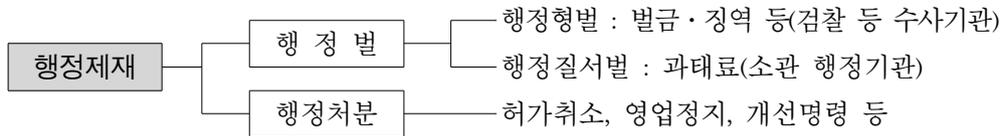
5.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보존관리

- 1) 권한과 책임은 각 시·도지사에게 있고, 대체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보존관리 내용을 준용
- 2) 시도지정문화재의 수리는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문화재수리기술자, 수리기능공, 수리업체가 하여야 함
- 3) 시도지정동산문화재의 반출은 관할 행정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
- 4)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지정 또는 해제, 소재지·보관장소 변경, 멸실·도난·훼손되었을 때 예는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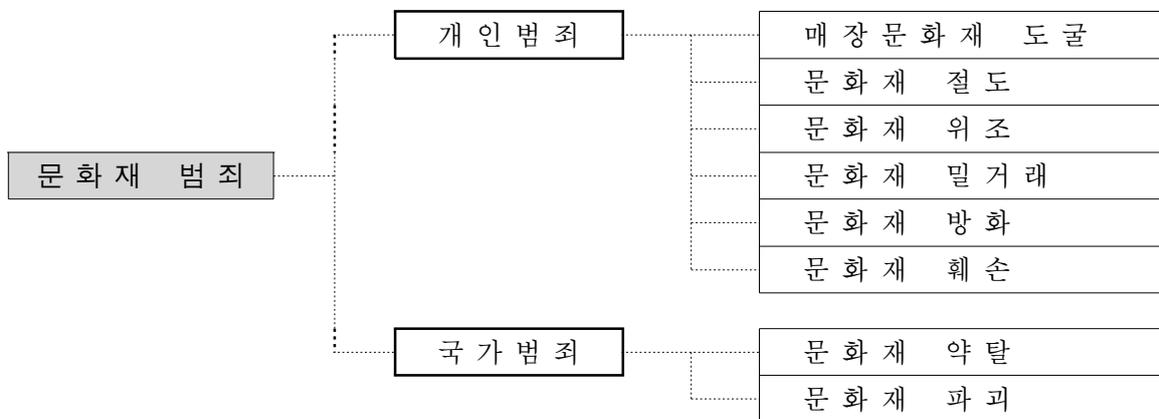
6. 시·도문화재위원회 : 16개 시·도에 각각 설치운영

제11장 문화재 행정벌

1. 행정제재의 종류



2. 문화재 범죄의 유형



3. 문화재 범죄의 특성

- 1) 범죄의 국제성, 전문화, 경력성
- 2) 비지정문화재의 집중성
- 3) 문화재범죄의 특정계층화
- 4) 도난문화재 회수율 저조 및 유형의 변화

4. 문화재 범죄의 원인

- 1) 문화재에 대한 소장욕구 증가
- 2) 문화재에 대한 인식 변화
- 3) 문화재 감정 및 유통의 문제
- 4) 열악한 문화재 관리조직
- 5) 사회적 불만 표출

5. 문화재 범죄 행위의 종류

1)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 범죄 행위

- ① 무허가 문화재수출 행위
- ② 반출한 문화재를 기간 내 반입하지 않는 행위
- ③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을 알고 양도·양수·중개한 행위
- ④ 허위로 문화재를 지정하게 한 행위
- ⑤ 문화재를 손상·절취·은닉한 행위
- ⑥ 무허가로 현상변경하여 천연기념물을 박제·표본한 행위
- ⑦ 무허가로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행위
- ⑧ 문화재를 취득·양도·양수·운반·알선한 행위
- ⑨ 문화재 발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 ⑩ 매장문화재 포장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
- ⑪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리, 중지명령에 위반한 행위
- ⑫ 문화재관리자를 사상케 한 행위
- ⑬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에 방화·일수·파괴한 행위
- ⑭ 무허가 구역 외 반출 등의 행위
- ⑮ 행정명령 위반 등의 행위
- ⑯ 관리행위 방해 등의 행위
- ⑰ 무등록 자에게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게 한 행위 등

2) 형법상의 위반 행위

- ① 문화재 감정전문가를 빙자한 사기매매 행위
- ② 차용금을 저가문화재와 상환하는 사기 행위
- ③ 일부 감정원들 간의 공모 또는 감정위원에게 협박과 강압으로 허위 감정 유도하는 행위
- ④ 문화재 위조와 문화재위조품 유통행위 등

■ 전통건축 문화재의 방재대책

1. 서 론 / 49
2. 우리나라 목조문화재 현황과 문제점 / 50
3. 2005년 양양산불에 의한 낙산사의 피해 사례 / 54
4. 승례문 방화참사 사례 / 60
5. 우리나라 방재시스템 개선사항 / 63

강원대학교수 백 민 호

1. 서 론

우리나라는 오래된 역사와 전통 중에서 수많은 역사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역사적 건조물에 관해서는, 고유의 자연환경, 예술·문화자원 등이 어울려 독자적 건축양식을 형성하고 있다.

1995년에는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이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었고, 1997년에는 창덕궁과 수원화성이, 2000년에는 경주역사 유적지구,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 등의 7건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는 등 우리나라의 역사적 건조물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공통의 재산인 문화재를 보존하고 자손대대로 문화재를 남기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오늘날 몇 백 년, 몇 천 년 된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문화재의 보존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문화재들은 현재에 남아 있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막대한 수에 이른다.

문화재의 훼손은 그 원인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화재에 의한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나 문화재를 많이 갖고 있는 사찰의 경우 최근 5년간 화재발생 건수가 320여건이 넘는 가운데, 화재원인으로 전기화재가 38%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방화가 6.2%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화재는 주로 합선과 누전에 의해 발생한다. 현재 많은 사찰에서는 연등을 전기불로 대체하고, 음향시설 및 보안장비 등을 갖추에 따라 전기의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찰건축물들이 오래된 목조건축물이어서 전기배선이 현대건축물과 같이 내부에 매입되어 있지 않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방화는 고도의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률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정적인 선진국 일수록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불만표출의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방화의 특색이기도 하다.

2008년 2월 10일에 발생한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화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이 또한 사회 불만 표출로 인한 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목조건축물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의 보존에도 큰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목조문화재의 현황 및 문제점, 문화재의 피해사례, 방재대책을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2. 우리나라 목조문화재 현황과 문제점

○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소유자·관리자 현황

[표 1]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소유자·관리자 현황

(단위 : 건)

구분	소유 주체별				관리 주체별			
	계	국보	보물	중요민속 자료	계	국보	보물	중요민속 자료
계	290	22	121	147	290	22	121	147
국 가	38	9	29	-	20	5	15	-
지자체	13	-	1	12	30	4	15	11
기 타	239	13	91	135	240	13	91	136

○ 문화재 방재 예산

[표 2] 문화재 방재 예산

(‘08년도)

구분	정부예산	문화재청예산	문화재방재관련예산
금 액	약 220조	4,287억원 (정부예산의 0.19%)	91억원 (문화재청예산의 2.1%)

○ 문화재 방재인력

- 중요목조문화재 123개소 중 75개소 (61%)만 경비인력 배치, 48개소는 경비인력 없이 관리되고 있는 실정
-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21개소의 야간 근무인력은 평균 2.2명으로 전체 관리구역 경비에는 미흡

[표 3] 문화재 방재 인력현황

구 분	대 상	관리 인력 배치현황			관리인력 미배치
		주야 상시 운영	주간만 운영	야간만 운영	
중요목조문화재	123개소	53개소 - 주간 117명 - 야간 74명	12개소 (22명)	10개소 (18명)	48개소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21개소	21개소 - 주간 744명 - 야간 44명	-	-	-
합계	144개소	74개소 - 주간 861명 - 야간 118명	12개소 (22명)	10개소 (18명)	48개소

○ 문화재 방재 장비

[표 4] 방재 장비 현황

구 분		중요목조문화재 (123개소)		궁,능,유적관리소 (21개소)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경보시설	열감지·경보	45	78	-	21
	CCTV	46	77	7	14
소화시설	소화기	적정배치	-	적정배치	-
	소화전	116	7	14	7
	자동초동진화장치 (스프링클러)	-	123	-	21

○ 대상물별 시설현황 사례

[표 5] 소방시설 현황 (2006년 12월)

과업대상	소화기	소화전	상수도	외각살수	고가수조	저수조	저수지	소화펌프		소방차	화재경보설비		
								전동기	엔진		수신기	발신기	감지기
[성곽건축]													
서울송례문	8	×	1	×	×	×	×	×	×	×	×	×	×
서울흥인지문	10	×	5	×	×	×	×	×	×	×	×	×	×
풍남문	2	×	2	×	×	×	×	×	×	×	×	×	×
팔달문	4	×	1	×	×	×	×	×	×	×	×	×	×
화서문	1	×	1	×	×	×	×	×	×	×	×	×	×
[고가]													
무침당	12	×	×	×	×	×	×	×	×	×	×	×	×
송렬당	4	×	×	×	×	×	×	×	×	×	×	×	×
안동양진당	6	×	13	×	×	×	×	×	×	×	×	×	×
향단	10	×	1	×	×	×	×	×	×	×	×	×	×
[누각건축]													
강릉해운정	×	×	1	×	×	×	×	×	×	×	×	×	×
관가정	8	×	×	×	×	×	×	×	×	×	×	×	×
관덕정	6	×	1	×	×	×	×	×	×	×	×	×	×
광한루	4	×	1	×	×	×	×	×	×	×	×	×	×
[사찰건축]													
능가사대웅전	10	×	×	×	×	×	×	×	×	×	×	×	×
대비사대웅전	7	×	×	×	×	×	●	×	×	×	×	×	×
대적사극락사	12	×	×	×	×	×	×	×	×	×	×	×	×
율곡사대웅전	6	×	×	×	×	×	×	×	×	×	×	×	×

(문화재청 :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구축 연구보고서 자료 참조)

[표 6] 예방 및 유지관리 외 현황(2006년 12월)

과업대상	유지관리			전기관리	위험물관리	보험가입	방범	소방차진입		경사도	방화선	박물관	CC TV
	시설	도면	성인					경내	출입구				
[성곽건축]													
서울송례문	×	×	×	●	×	×	●	●	×	×	×	×	●
서울흥인지문	×	×	×	●	×	×	×	×	●	×	×	×	×
풍남문	×	×	×	×	×	일부	×	×	●	×	×	×	×
팔달문	×	×	×	×	×	일부	×	×	●	×	×	×	×
화서문	×	×	×	×	×	일부	×	×	●	×	×	×	×
[고가]													
무침당	×	×	×	×	×	×	●	×	●	40	×	×	×
송렬당	×	×	×	×	×	×	×	×	●		×	×	×
안동양진당	×	×	×	×	×	×	×	×	●	×	1	●	●
향단	×	×	×	×	×	×	×	×	●	40	×	×	×
[누각건축]													
강릉해운정	×	×	1	×	×	×	×	×	●	40	×	×	×
관가정	×	×	×	×	×	×	×	×	●	5	×	×	×
관덕정	×	×	1	×	×	×	●	●	×	×	×	×	×
광한루	×	×	1	×	×	●	●	●	×	×	×	×	×
[사찰건축]													
능가사대웅전	●	×	●	●	×	×	×	●	×	×	×	×	×
대비사대웅전	×	×	×	×	●	×	×	●	×	10	×	×	×
대적사극락사	×	×	×	×	×	×	×	×	●	×	×	×	×
율곡사대웅전	×	×	×	×	×	×	×	●	×	50	×	×	×

(문화재청 :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구축 연구보고서 자료 참조)

○ 관련법령사항의 미비

-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하 ‘소방법’)에서 문화재가 특정소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미약

[표 7] 소방법상 문화재 방재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화기는 지정문화재에 설치<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법령상 소화기구만 의무설치 시설● 비상경보설비는 연면적 400㎡ 이상시 설치● 옥외소화전은 연면적 1,000㎡ 이상시 적용●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는 연면적 1,000㎡ 이상시 적용

- 문화재 소화·경보설비 등 설치기준 미정립
 -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하였으나, 권고 규정에 불과, 대통령령 미규정
- ※ 소방법과 충돌문제 발생
- 소방법에 규정하거나 문화재 보호법에서 소방법 배제 규정필요

[표 8] 문화재보호법상 소방시설 등에 관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보호법 제 88조(화재예방 등) 제2항 <p>: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방재업무 전담조직의 취약성

- 문화재 방재의 실질적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인적 기반 취약
 - ※ 문화재 전담부서가 설치된 지자체는 6곳에 불과
 - 광역자치단체 : 2곳(서울특별시, 제주도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4곳(경주시, 김해시, 안동시, 여주군)
- 문화재 재해·재난·사범단속 등 안전관리 전담기구 및 인력 부족
 - 문화재청 안전관리 및 사범단속 인력 : 9명
 - 지자체 안전관리인력 등 경상경비 지원 : 35억원

○ 효과적인 화재진압대책 미구축

- 목조문화재 특성·구조 등을 파악할 실측도면 등 자료를 소방당국과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인 화재진압에 애로
- 소방차 진입로 및 산간문화재 주변 방화림의 미설치 등 문화재 주변 환경 및 지형 등에 따른 화재진화 여건의 미확보
- 침입차단, 화재감지 등 예방 및 초동진화시설이 미흡하고 기 설치된 곳도 관리가 부실

3. 2005년 양양산불에 의한 낙산사의 피해 사례

○ 우리나라의 산불발생 현황

우리나라는 산림구조, 지형, 기후 특성상 산불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한다. 즉, 산림이 울창하고, 가연성 낙엽 등이 많이 쌓여 있으며 경사가 급하고 기복이 많은 산지로 연소진행 속도가 빨라 산불 발생 시 급속히 확산되며 봄철 건조기에 계절풍이 겹쳐 동시다발로 확산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6년도 화재통계연보(소방방재청)에 의하면 산불은 전국에서 2,794건이 발생하여 6명의 사망자와 2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13,401,616(천㎡)의 면적이 소실되었다. 원인별로는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41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가장 많은 건수를 나타내었고, 다음이 등산객 실화로 181건을 차지하였고, 성묘객에 의한 실화도 124건을 차지하였다.

2006년도에 산불로 공무원 89,246명, 군인·주민 등이 78,365명이 동원되었으며 헬기 998대, 소방차가 7,460대가 동원되었다.

다음 [표 9]는 2004년~2007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발생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9] 우리나라 2004년~2007년 산불발생 현황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평균	계
산불건수 (건)	729	785	599	271	544	516	574	3,444
피해면적 (ha)	25,953	963	4,467	133	1,588	2,067	5,862	35,171
임목피해액 (백만원)	65,242	2,717	8,953	277	4,609	7,526	14,877	89,324



[그림 10] 낙산사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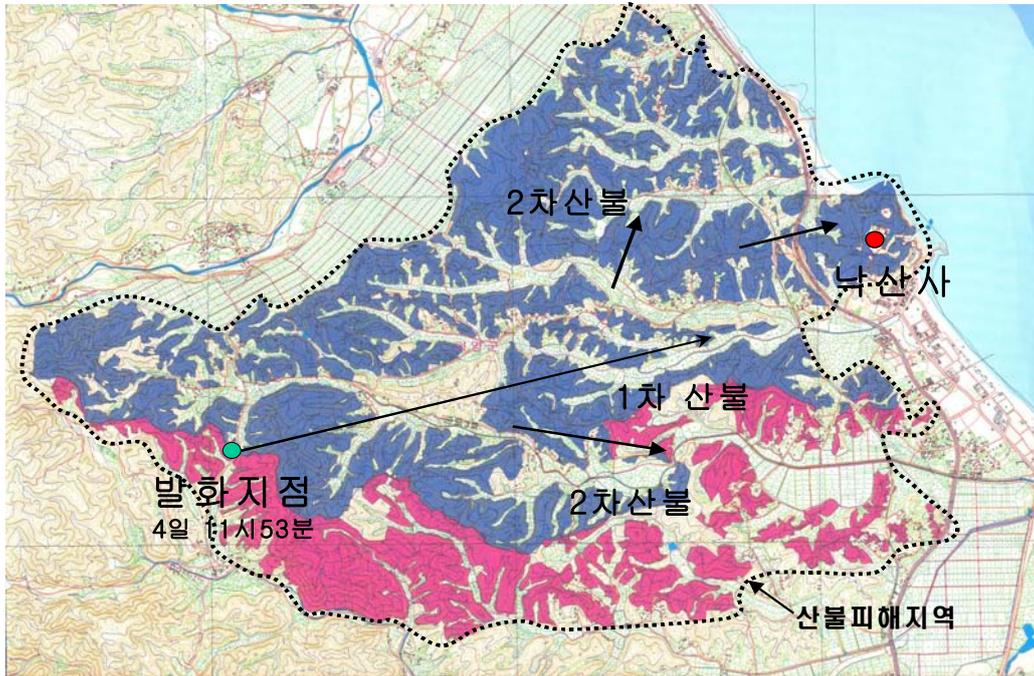
[그림 11] 낙산사 화재 후

○ 양양산불에 의한 낙산사의 피해

2005년 4월4일 23시 53분에 실화 또는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석벽산 도로변인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 야산으로 추측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후 강풍을 타고 서쪽으로 빠르게 연소되면서 대형 산불로 발전하여 산림 973ha, 주택 163동(전소 135, 반소 28), 문화재인 낙산사 경내 22건 (석탑 2, 동종 1, 전각 17, 시설물 2)을 태우는 등 총 184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표 10] 양양산불의 개요

발화일	연소시간	발화원인	순간최대풍속 (m/s)	피해면적 (ha)
2005년 4월4일~4월6일	54시간 7분	실화 또는 방화추정	22.5	973



[그림 12] 양양산불 피해지역 및 산불진행 방향

[표 11] 양양산불로 인한 낙산사의 주요피해현황

구 분	피 해 내 용
소실이전의 문화재 지정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정 보물 : 동종 (제479호), 칠층석탑 (제499호), 건칠관음보살좌상 (제1362호) ● 유형문화재 : 홍예문 (제33호), 담장 (제34호), 낙산사 (제35호), 의상대 (48호), 사리탑 (제75호) ● 문화재 자료 : 흥련암 (제36호)
피해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 해 : 문화재 6점 및 원통보전 등 경내전각 16개동(1,337.26㎡) 소실 ⇒ 총 38개동 7,333.23㎡ 중 16개동 1,337.26㎡ 소실(강원도 문화관광과 파악) ⇒ 소실된 문화재 : 동종 (보물 제479호), 칠층석탑 (제499호), 홍예문 (도유형문화재 제33호), 담장 (제34호), 사리탑 (제75호), 낙산사일원 (도 유형문화재 제 35호)

○ 낙산사 화재피해로 본 방재대책과 영향에 관한 조사

낙산사의 화재피해 이후 전통사찰의 방재대책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 [표 12]와 같이 2회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낙산사가 소실된 후 3주정도가 지나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

상은 낙산사 화재피해를 입었거나 진화를 담당했던 소방 및 일반 공무원, 사찰관계자를 포함한 85명을 대상으로 낙산사 화재피해에 따른 전통사찰의 방재대책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방문조사의 형태로 실시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낙산사 화재피해 발생 7개월 후인 11월 4일에 실시하였으며, [그림 4]의 항공사진에 표시된 낙산사의 주변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낙산사 화재로 부터 어떤 영향이 나타났으며, 전통사찰의 방재대책을 위한 참여의사와 향후 예방복구시기 등을 질문하여 지역의 의식동향을 살폈다. 조사에 응답해준 인원은 76명이며 이중 상업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57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림 13] 화재피해지역 및 설문조사지역의 항공사진

[표 12] 낙산사 화재피해에 따른 설문조사의 속성

항 목		조 사 시 기		
		1차 조사	2차 조사	
조사 시기		2005년 4월 29일	2005년 11월 4일	
조사 대상자 연령	30세 미만	37	12	
	30~40세	20	13	
	40~50세	14	30	
	50~60세	10	14	
	60세 이상	2	7	
성별	남	56	34	
	여	27	42	
조사 대상자 직업	회사원	14	9	
	공무원	일반	12	0
		소방	18	0
	상업	6	57	
	농업	3	2	
	주부	5	4	
	전문업	4	1	
	학생	18	0	
	기타	3	3	
조사내용	- 낙산사 화재피해를 경험한 후의 전통사찰의 방재대책의 중요도 평가 - 낙산사 피해이후 주변지역의 영향에 대한 조사 - 전통사찰의 소방대책에 대한 지역주민의참여도 조사			

[표 13]은 1차 조사의 결과로 낙산사의 피해현장을 경험하였거나 주변지역에서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 경험을 통해본 전통사찰의 화재대책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진화장비의 현대화, 방재교육의 강화, 산불방화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국민홍보강화, 주요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시스템 강화, 지역주민과 사찰의 방재훈련 강화 등이 높게 평가 되었다.

[표 14]은 낙산사 화재피해발생 7개월 후에 낙산사의 화재피해가 낙산사의 주변지역주민 및 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향후 낙산사의 화재를 교훈으로 어떠한 대응과 참여가 가능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다.

먼저 낙산사의 화재피해 이후 방문객(관광객)의 변화에 76명의 설문대상자중 대해 ‘매우 줄었다’가 44명, ‘줄었다’가 32명으로 현격한 변화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낙산사의 화재피해 이후 지역경제(장사) 등의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매우 위축

되거나 위축되었다가 전부의 응답내용에 포함되었다.

양양산불을 경험한 후 방재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자율소방대의 조직과 소화 장비의 확충이 높았고, 자율 소방대를 운영할 경우 참여의사가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76명중 47명이나 되었다.

향후 낙산사 화재피해의 근본적인 피해 복구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는가에서 5년 정도는 36명, 10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도 26명으로 나타났다.

전통사찰은 한번 화재로 인해 소실되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것에서 그 대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으로 방재교육 및 훈련 강화, 진화장비의 현대화 등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전통사찰의 피해는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방문객의 수를 현저하게 줄게 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표 13] 낙산사 화재피해로 본 전통사찰의 화재대책에 대한 중요도 평가(1차 조사)

조사 개요	조사항목	평가 결과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조금 중요	중요하지 않음
향후 전통사찰의 방재대책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	사찰관계자, 이용객의 방재교육 강화	49	25	5	2	2
	진화장비의 현대화	51	25	4	3	0
	산불방화자에 대한 처벌강화	45	26	6	6	0
	대국민 홍보강화	44	25	10	4	0
	주요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시스템의 강화	43	33	4	2	1
	지역주민과 사찰의 방재훈련강화	43	28	9	3	0
	내화구조 또는 불연화 대책 마련	35	31	14	2	1
	산불기간 등산로 폐쇄 및 취사 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강화	39	28	12	4	0
	공익요원 및 지역주민증원으로 감시강화	35	32	12	3	1
	산불취약지구에 대한 감시카메라설치 강화	27	33	16	5	2
	문화재방재의 날 제정	22	35	18	5	3
산불영향이 없는 곳으로 이전	11	11	31	16	14	

[표 14] 낙산사 화재피해에 따른 주변지역주민의 영향에 대한 평가 (2차 조사)

조사개요	평가내용	평가결과
낙산사의 화재피해 후 방문객(관광객)의 변화에 대한 평가	매우 줄었다.	44
	줄었다.	32
	변화 없다.	0
	늘었다.	0
	매우 늘었다.	0
낙산사의 화재피해 후 지역경제(장사 등)의 변화에 대한 평가	매우 위축됐다.	43
	위축 됐다.	30
	변화 없다.	3
	활성화 됐다.	0
	매우 활성화 됐다.	0
양양산불(낙산사화재)를 경험한 후 마을단위(자체적으로) 방재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한 평가	자율소방대운영	22
	주민에 대한 소방교육	12
	산불감시단 운영	18
	소화 장비의 확충	24
	기타	5
자율소방대(사찰+지역주민)의 조직운영 및 참여의사에 대한 평가	있다.	47
	없다.	29
향후 낙산사의 근본적인 피해복구의 시기에 대한 평가	1년~5년	36
	5년~10년	26
	10년~15년	7
	15년~20년	6
	20년 이상	2

4. 송례문 방화참사 사례

조선시대 서울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의 정문으로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남쪽에 위치해 있어 남대문이라고도 불린 송례문은 견고한 수법으로 태조 4년(1395년)에 짓기 시작하여 태조 7년(1398년)에 완성된 조선전기의 대표적 건축물화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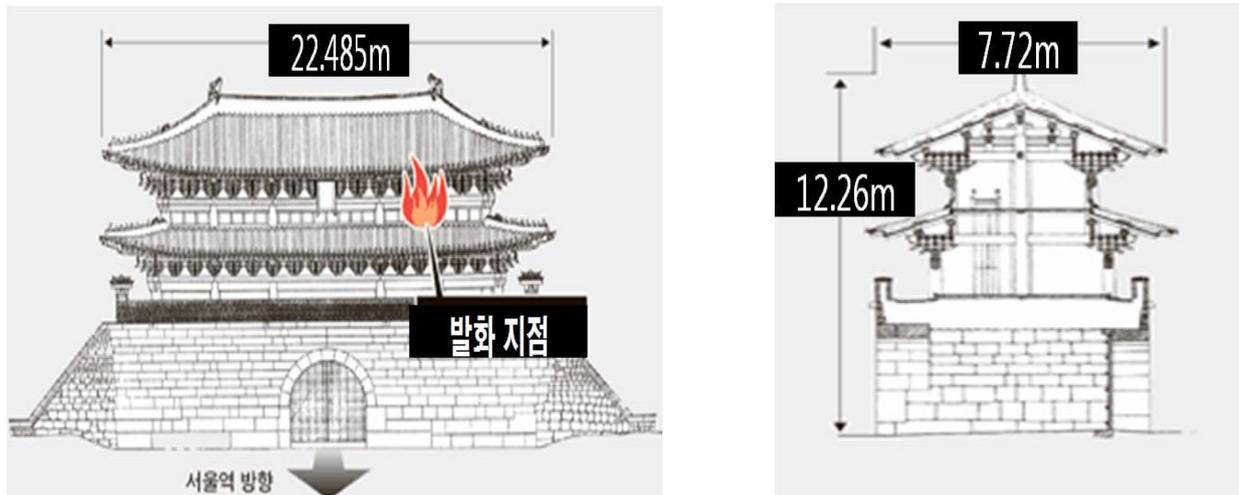
○ 화재 개황

2008년 2월 10일 20시 40분가량 서울 송례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법과 정부, 사회에 불만을 품은 한 노인이 일으킨 방화에 의해 승례문은 5시간이상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2층 누각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표 15] 승례문 화재 개황

화재발생장소	화재일자	화재원인	화재내용
서울 승례문	2008년 2월 10일	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시40분 발화시작 • 화재진압 5시간 이상 소요 • 2층 누각 전소



[그림 14] 승례문 화재 당시 발화지점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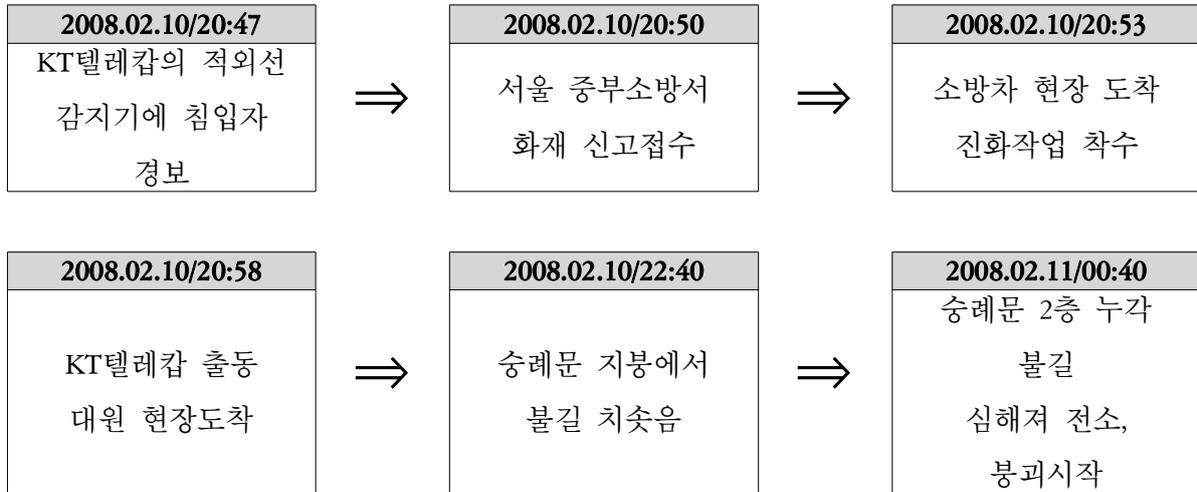
○ 방화현황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해가면서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의 갈등은 심화될 수 있는데,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방화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표 16] 2002~2006년 방화 현황

구 분	'02	'03	'04	'05	'06	증감율
건 수	2,778	3,219	3,291	3,326	3,413	5.45%
사 망(명)	105	361	144	135	139	45.10%
부 상(명)	313	550	352	317	313	7.13%
재산피해 (백만원)	8,184	15,151	10,859	11,009	11,629	15.95%

○ 송례문 화재 경과



[그림 15] 송례문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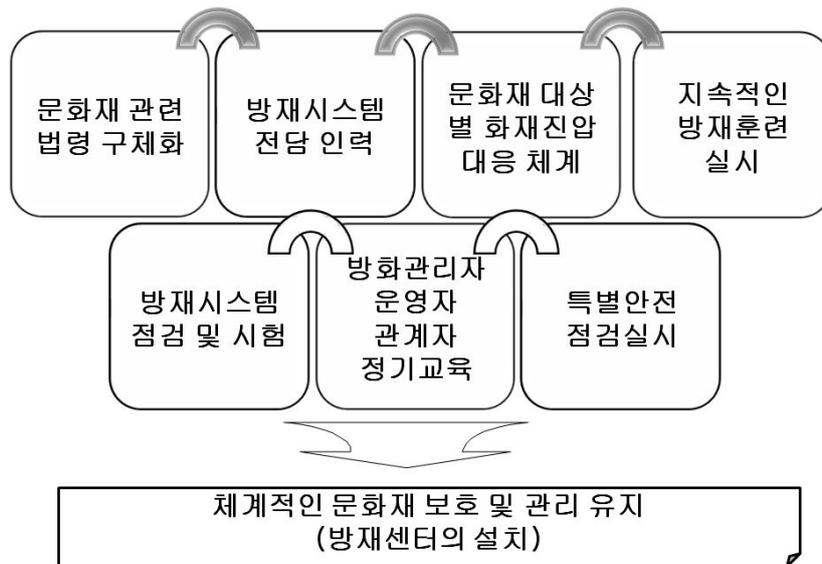


[그림 16] 지붕붕괴 및 화재 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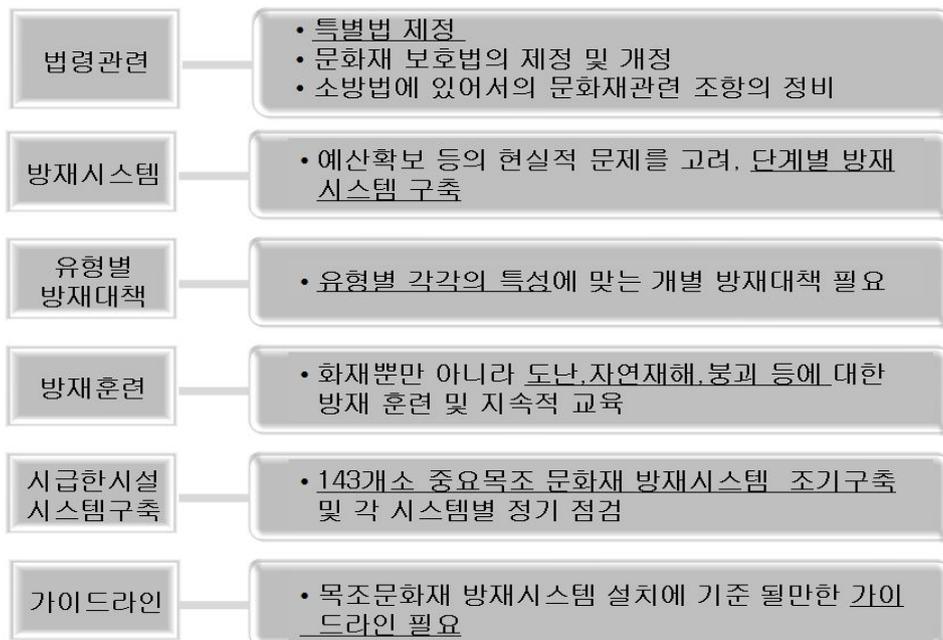
6. 우리나라 방재시스템 개선사항

문화재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는 특성과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다. 문화재는 화재로 한번 소실된 후, 다시 복구가 되어도 그 문화적 가치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손실 역시 돈으로 계산 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재 방재시스템은 문화재의 대상·유형별,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형식의 방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17] 방재시스템 개선사항



[그림 18] 방재시스템 개선사항

○ 방재시설 인프라 확충

문화재의 소방시설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전 등) 화재진화의 기본적인 설비를 완비하고 그 외, 수막설비, 방수총, 스프링클러 등 수·자동 진화설비를 문화재 특성에 맞추어 설치하는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경보설비(열감지센서, 적외선센서, CCTV, 연기감지기, 불꽃감지기 등)를 설치해 소방관서에 자동 통보되는 연결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문화재 방재 관련 법령 정비 및 조직 강화

문화재 방재에 관련한 현 제도를 소방, 전기, 가스 등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정비를 위한 문화재보호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대상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형별 문화재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문화재 관리인 및 책임자에 대하여 실명제를 도입하여 중요 목조문화재를 특별 관리하는 기준안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경비 인력을 보강하여 주야간에 적절히 배치해야한다.

○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

현행 단일 방재매뉴얼을 문화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재난시, 각 대상별에 대한 구체적인 맞춤형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지난 재난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현실성 있는 실무적 방재 매뉴얼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 활성화

재난 사례들을 활용한 방재 교육안을 마련하여 일반시민들의 주기적인 교육기능을 강화시킨다. 교육을 통하여 일반적인 지식을 주입시킴으로 인하여 문화재 방재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문화재 보존의식을 고취시킨다.

또한, 의용소방대, 주민자치 위원회, 자율방범대 등 단체들을 활성화 시켜 문화재 방재 시민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문화재 방재 연구 강화

문화재 방재에 대한 해외 연구 사례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문화재 방재연구를 강화하고, 문화재 관련 전문인이 참가한 기본 가이드라인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문화재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문화재 화재와 관련한 각 기관들의 합동점검을 통해 사전예방조치를 취하며, 소방시설의 개선점을 도출하여 개선안에 대한 대책안을 만든다.

또한, 각 기관들이 문화재의 정밀실측도면 등 문화재관련 정보를 일선소방서 및 소방당국에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대응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들과 소방당국과의 정기적인 합동 훈련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백민호, 이해평 전통사찰문화재의 방재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Vol.20.No.2.2006. pp64~71
2. 문화재청,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연구 보고서(2006. 12)
3. 소방방재청, 양양산불 중앙합동조사보고(2005).

■ 문화유산의 가치와 기업의 참여

-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기업참여 사례 -

1.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의 추진 배경 / 69
2. 기업참여의 의미와 시사점 / 69
3. 기업 사회공헌활동 모델 개발과 적용 / 71
4. 대표적 활동사례 및 시사점 / 75
5. 향후 과제와 계획 / 81

1.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추진 배경

정부의 각 분야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이 그렇지만, 특히 문화재 분야의 경우 정부 당국의 의지만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란 매우 힘들다. 더구나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국민이 외면하거나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사실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는 정책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정책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문화재, 혹은 문화재정책의 입장에서 국민은 곧 문화재의 주인이며, 문화재정책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라는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이 민관협력을 통해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처음 추진하기로 결의한 것은 지난 2004년 11월의 일이다.(본격적인 활동시작은 2005년 3월이다.)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시민사회의 역량이 성숙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재를 함께 가꾸고 보호하자"는 의식의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상황판단이 이 운동의 외적인 추진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또 한편 문화재의 범주와 개념이 확장되고, 이에 따라 관리해야 할 문화재의 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행정의 한계(조직, 인력, 예산의 부족)'로 인해 민관협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이 이 운동의 내적인 추진배경이었다. 때문에 불런티어십과 파트너십에 기반 한 민간참여를 통해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 역량 전반을 함께 강화시켜보자는 취지에서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개요

- 참여주체 : 개인, 가족, 학교, 민간단체, 기업체 등
- 활동대상 : 지정·비지정 문화재
- 활동내용 : 정화활동, 모니터링활동, 교육 및 홍보활동, 전문기술 및 용역지원 등

○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참여현황

(2004.4~2008.4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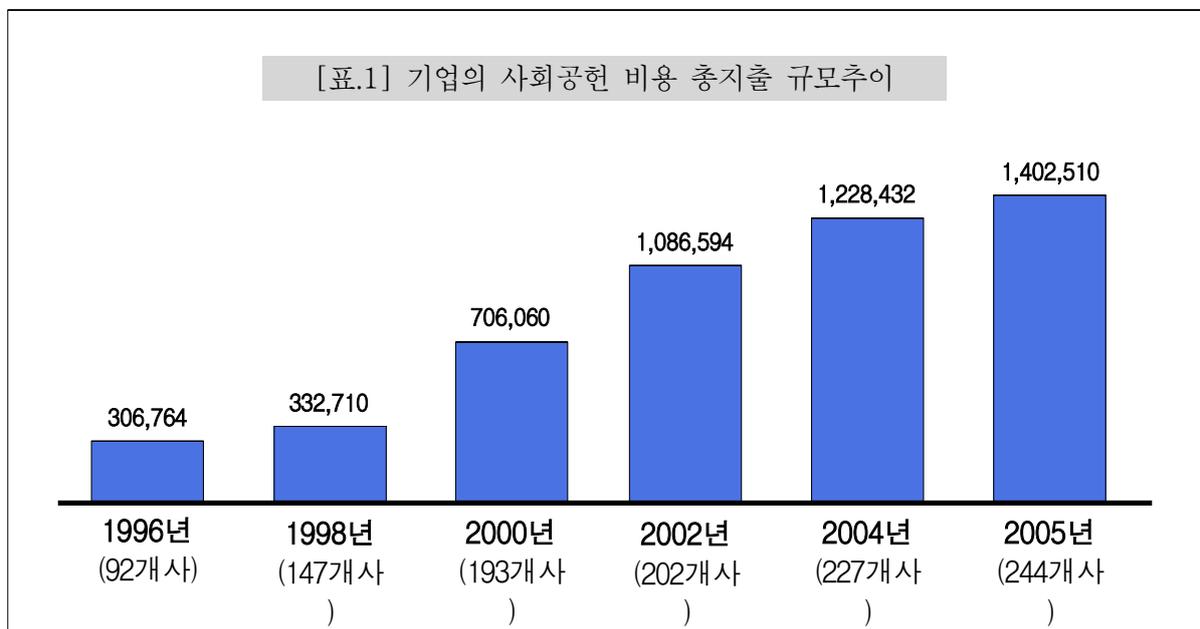
참여주체	개 인	가 족	단 체	기업 및 법인 등 협약 건수
참여건수 (참여인원)	1,640 건 (1,271명)	407 건 (1,086명)	944 건 (49,997명)	25 건

2. 기업참여의 의미와 시사점

하지만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온지 3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운동은 당초 우리의 생각과 기대 이상으로 많은 시사점과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운동 초창기 '문화재 행정의 당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파트너십 형성'이란 현실적 필요

성 차원을 뛰어 넘어, 이제는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문화도 함께 만들고 물려주자’는 가치 창조의 차원으로 운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운동의 궁극적인 지향점과 핵심가치를 확고히 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운동의 참여 주체로 기업체를 주목하고, 동참시켰다는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날로 강조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도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문화재 분야에 창조적으로 접목시켜 특색 있는 모델 사례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재 혹은 문화재청의 입장에서 기업(기업 사회공헌활동)은 생산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탁월한 장점과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첫째,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인력, 조직, 예산’을 고루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전문기술까지 함께 갖춘 역량 있는 파트너라는 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이 2006년도 사회공헌 비용으로 총 지출한 액수는 1조 8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 가운데 문화시설,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체육행사 등을 포함한 ‘전통문화 계승 연구지원과 유적, 유물의 발굴 보존 지원’ 분야 총 지출액의 7.4%를 차지하는 388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뚜렷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2005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전경련

둘째,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전문화와 조직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즉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략적인 경영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이슈와 국가적 의제에 동참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사회공헌활동을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곧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점차 차별화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의 사회공헌활동 경향은 기업의 이미지와 부합되며, 보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분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곧 사회공헌활동의 효과와 가치의 차별화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 혹은 기업 사회공헌의 입장에서 문화재는 매우 매력 있는 투자 대상이자 사회공헌활동 대상이다. 이는 문화재가 지닌 가치와 속성 때문이다. 문화재와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상호 연관성과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는 가장 대표적인 공익영역에 해당한다. 단순히 민족적, 국가적 차원이 아닌 인류적 차원의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화재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익적 이미지도 함께 증대되는 것이다. 둘째, 문화재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미래세대는 곧 잠재고객을 의미하는 바, 문화재 분야의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은 지속적인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셋째, 문화재는 명소, 명품으로서 장점 뿐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콘텐츠도 풍부하다. 이러한 부분을 전략적인 사회공헌활동과 접목시킨다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될 것이다.

3. 기업 사회공헌활동 모델 개발과 적용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많은 운동주체 가운데 참여기업들의 공통된 특성은 ①**주로 지역 사회를 거점으로**, ②**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③**조직화된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등으로 인해 현재 참여기업들은 전체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핵심 운동주체 가운데 하나이며,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와 같은 기업의 특성에 착안하여 기업 사회공헌활동 전담 T/F팀(중간관리자급 이상)을 조직하여 문화재 유형별 분석을 통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접근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기업 참여의 유형별 모델타입을 ①**전문기술 지원형 모델**, ②**정체성 연계형 모델**, ③**지역 사회공헌형 모델**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특성화된 유형별 접근과 체계적 관리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조직, 예산, 인력, 전문기술’ 등이 자체적으로 뒷받침되는 기업체를 동 운동에 특성화시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참여효과는 물론 사회적 파급력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참여 직원들의 만족도와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의 효과를 얻고 문화재청은 실질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이는 양자가 모두 만족하는 ‘Win&Win’방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유형별 모델타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별 구분	사회공헌활동 내용
전문기술 지원형 모델	기업이 보유한 전문기술·노하우·인력 등을 활용한 문화재 활동 유형
정체성 연계형 모델	업종 또는 기업의 출발점과 관련해 ‘정체성’과 연관된 문화재 활동 유형
지역 사회공헌형 모델	기업이 소재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전개하는 문화재 봉사활동 유형

[표.2] 유형별 사회공헌활동 모델

① ‘전문기술 지원형 모델’ 주요 적용사례 (2005.5~2008.4 현재)

참여 기업체	보유기술	적용기술(사회공헌 활동내용)
한화리조트	골프장 잔디관리 기술 등	왕릉 잔디관리활동
삼성화재	화재 안전진단 기술 등	경복궁 화재 안전진단 및 자문활동
한국가스공사	가스 안전진단 기술 등	고택 LPG가스시설 안전점검
포스코	금속 보존처리 기술 등	‘장단역 증기기관차’ 영구보존처리
대한주택공사	구조물 안전진단 기술 등	고택, 옛 다리 등 구조물 안전진단 등
탱크웨어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	지정 문화재(5,500점) 위치정보 서비스
올림푸스한국(ODNK)	Real Pics 신기술 등	유물 원색 사진촬영 획기적 성과와 자료화
한글과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 기술	문화재 교육용 디지털 프로그램 지원
KT텔레캅	보안 및 방법서비스 등	문화재 도난방지 시스템 지원 및 순찰활동
삼성생명	탐지견 육성 및 보급	목조문화재 흰개미탐지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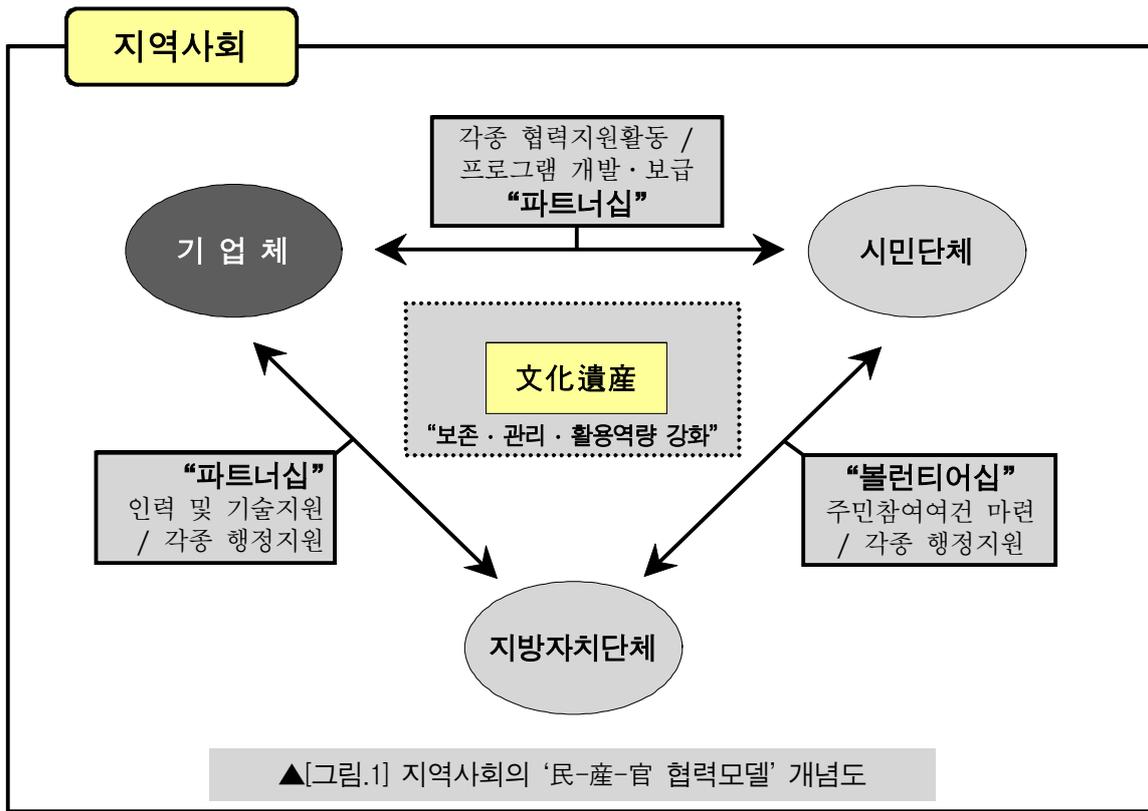
② ‘정체성 연계형 모델’ 주요 적용사례 (2005.5~2008.4 현재)

참여 기업체	업종·정체성	적용사례(사회공헌 활동내용)
아모레퍼시픽	설록차, 화장품 등	차(茶) 문화유적지 보호활동
KT	통신사업 등	덕수궁(최초 전화개통지) 보호활동
조선포텔	숙박업, 요식업 등	벽제관지(조선시대 국영호텔) 보호활동
한글과컴퓨터	한글워드 등 소프트웨어	세종대왕릉 보호활동 및 문화재교육용 프로그램 지원
KT텔레캅	보안경비회사	문화재 도난방지 및 취약 문화재 순찰활동

③ ‘지역 사회공헌형 모델’ 주요 적용사례 (2005.5~2008.4 현재)

참여 기업체	소속지역·특성	적용사례(사회공헌 활동내용)
한화리조트	전국 사업장(리조트 등) 보유	전국 13개 사업장별 문화재 보호활동
신한은행	전국적인 지점망 보유	전국 1천여 지점별 문화재 보호활동
현대건설	서울 종로구 창덕궁과 인접	창덕궁 보호 및 각종 지원활동
한국가스공사	전국 광역 지사 보유	11개 지사별 관할 문화재 보호활동
KT	전국 광역 지역본부 보유	11개 지역 본부별 관할 문화재 보호활동
하이닉스반도체	서울·이천·청주지역	서울 창경궁 보호 및 지원활동(지사 확대예정)
호텔신라	서울시 중구 서울성곽 인접	서울 성곽(남산구간) 보호 및 활용
KTF	서울 송파구 잠실	아차산성·고구려 유적 보호 및 지원활동
경북관광개발공사	경북 경주시	경주지역 및 헌덕왕릉 보호활동
삼성전자	경기도 수원시	수원 화성(華城) 보호 및 외국어 안내활동
SH공사	서울시	서울 성곽(낙산구간) 정비 및 보호활동

【참고】 위의 ‘표.1’, ‘표.2’, ‘표.3’에 나타난 주요 적용사례는 각각의 사례별로 독립된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사례별 복합사례도 있음. 편의상 적용사례별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식화 한 것임.



대상항목	기존의 운동모습	1문화재 1지킴이
문 화 재	“오래된 것들의 총체”	“현재적 가치와 의미”
형 식	관(官) 주도형	볼런티어십·파트너십
내 용	· 당위적인 활동영역 · 단순반복적인 활동	· 창의적 활동영역 · 복합형 체험활동
전달방법	“의미 YES, 재미 NO”	“의미 YES, 재미 YES”
프로그램	“없음”	“있음”

상황변화 · 고객여구

▲[그림.2] 대상의 인식과 접근방법

4. 대표적 활동사례 및 시사점

(1) 한화리조트('05.5.3 협약체결)



한화리조트(대표이사 홍원기)는 기업체로서는 처음으로 2005년 5월 3일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협약식 체결하고 문화재 분야의 본격적인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한화리조트는 전국 13개 사업장을 두고 콘도미니엄과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해당기업은 주 5일제의 본격적인 시행 등에 따른 급변하는 '여가·레저문화'의 트렌드를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리조트업의 대상은 '가족' 단위 여행객이며, 가족단위 여행객의 여가선용 및 레저욕구의 충족을 위한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 등의 증대와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각 사업장을 통해 발 빠르게 반영한 결과인 것이다.

종전에 콘도미니엄을 단순 '숙박' 개념에서 '체험'의 공간으로 전략을 세우고 활용하는 것임. 이와 관련해 남사당놀이보존회와 '전통문화 메세나' 차원에서 연간 후원 약정을 맺고('06.4.25) 콘도미니엄 고객대상 전통문화공연 및 체험활동을 전개하여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인적·물적 동원능력과 전문기술을 문화재 분야 공헌활동으로 특화시켜 적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특화사업이 '왕릉지킴이' 사업인 것이다. 골프장 관리 기술의 핵심기술인 잔디관리 기술을 왕릉 잔디관리 기술의 과학화를 위해,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용·건릉(사적 제206호)'을 활동지역으로 정해 매월 2차례 이상 잔디관리 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는 또한 문화재보호법상 민간영역의 전문성이 '경미한 수리행위' 조항에 근거해 결합된 잔디관리 모델이며, '생육기반 조성'을 통한 과학적 잔디관리 개념이 문화재 분야에 도입된 첫 사례이다. 이러한 '왕릉지킴이' 활동은 궁·능 조경관리 담당직원들과의 '잔디관리 워크샵'을 개최('06.3.6~3.7)하여 민간의 전문기술과 성과물을 상호 공유한 바 있다.

한화리조트의 경우 '업종의 특성에 기반한 여가·레저문화의 변화 추이, 고객의 체험욕구

증대, 그리고 전문기술을 통한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가운데 사회적 투자로 이어지는 기업의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의 전범을 잘 보여준다’는 시사점이 있다.

(2) 신한은행(05.7.5 협약체결)



▲ 본점 직원들의 ‘승례문’ 지킴이 활동 모습

▲ 전통문화 메세나 활동을 통한 문화재 명소 활용

신한은행(은행장 신상훈)은 현재 전국 1천여 지점을 개설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5일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협약식 체결하고 문화재 분야의 본격적인 기업 사회공헌활동으로 동참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처럼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점망을 활용하여 조직의 특성을 살린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또 한편 전국단위의 각 지역사회에 소재한 금융기관으로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해나가는 전형적인 지역 사회공헌활동 유형에 속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보 제1호 승례문과 인접한 신한은행 본점의 활동이다. 국보 제1호가 갖는 대표성과 상징성을 신한은행의 기업이미지와 연결하여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이미지 제고 효과에만 그치지 않고, 승례문 광장조성(’06.3.3)과 더불어 문화재 관리주체인 중구청과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 관리 및 활용예산의 실질적인 절감효과도 있겠지만, ‘민간기업도 문화재 분야에 동참할 수 있다’는 민간참여 활성화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명소화’ 된 지역의 문화재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함은 물론, 기업 입장에서 간접적인 ‘스페이스 마케팅’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은행의 전국 조직망을 활용한 정책고객 확보와 홍보활성화 효과도 크다. 실제로 신한은행의 전국 각 지점에는 문화재청의 월간 소식지가 비치됨으로써 신한은행의 고객을 문화재청의 정책 고객화 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향후 신한은행의 모든 지점을 문화재청의 대국민 정책고객 확보 거점화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더불어 은행만이 갖는 특성을 살린 금융상품 개발(‘문화재사랑 통장’ 등)을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활용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의 활동이 보여주는 시사점은 ‘지역사회의 문화재 보호활동 등을 통해 책임 있는 금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방식의 기업 사회공헌활동은 해당 지역의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한국가스공사(05.8.31 협약체결)



▲ 전통가옥 LPG가스 시설 안전점검 및 무상교체 모습

▲ 민속마을 정화활동 및 폐소화기 수거·교체활동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는 전국 8곳에 공급지사를 두고 있으며, 2005년 8월 31일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협약식 체결하고 문화재 분야의 본격적인 기업 사회공헌활동으로 동참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특성을 살려, 전국의 중요 민속마을을 비롯한 문화재자료 등 사람이 거주하면서 LPG 시설을 사용하는 문화재들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관리 활동을 지킴이 활동으로 삼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문화재는 LPG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LPG 시설은 주기적인 안전점검의 법적 이행의무가 따르는 도시가스 사용시설과는 달리 주기적인 안전점검의 법적 이행의무가 없어 항상 가스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가스공사는 권역별 LPG 시설사용 문화재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들 문화재에 대해 우선 민속마을을 중심으로 가스안전점검, 노후시설교체, 기타 안전교육(소화기 사용법, 응급대처 요령 등) 및 가정용 소화기 무상비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전문기술자들이 직접 나서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전기안전점검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문화재지킴이 활동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화재의 수는 수도권 일원의 고택 등 51개 문화재와 안동 하회마을을 포함한 이른바 지정 민속마을의 5곳에 총 441세대이다. 특히 민속마을은 마을 전체를 하나의 활동 범위로 보고, 마을 내에 위치한 지정·비지

정 가옥을 모두 포함해 활동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문화재지킴이 활동이 보여주는 시사점은 ‘기업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LPG가스시설 관리체계의 맹점으로 인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상적인 안전관리활동을 통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문화재는 물론, 소중한 인명도 함께 지킬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4) 포스코(’05.9.14 협약체결)



포스코(회장 이구택)는 포항과 광양, 서울에 사업 거점을 두고, 2005년 9월 14일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협약식 체결하고 문화재 분야의 본격적인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포스코의 지킴이 활동 핵심내용은 포스코가 보유한 세계적인 철 보존처리 기술과 조사·분석기술로써 문화재를 가꾸고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철붙, 철당간, 철·동종 등 국가지정 금속문화재 68점에 대한 조사·분석·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문화재청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우리 조상들이 다뤄왔던 금속문화재의 재질과 성분의 시대적 흐름과 변천사를 보다 실증적인 차원에서 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분야는 사실 학계를 비롯해 문화재 분야의 오랜 숙원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과 기술, 그리고 예산편성의 어려움 등이 겹쳐 지금까지 난항을 겪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의는 더욱 크다. 이와 함께 조사·분석된 금속문화재에 대해 그 부식의 진행정도 등을 전문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포스코는 금속문화재의 보존처리작업도 나설 예정인데, 우선 이에 대한 상징적인 작업으로써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DMZ 내에 위치한 '경의선증기기관차화통'(등록문화재 제78호)에 영구보존처리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지 전문적인 민간영역에서 보존처

리작업을 주도적으로 맡아봄으로써 국가예산의 절감효과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전문적인 민간의 기술력을 문화재 보존분야에 투입함으로써 문화재 보존처리기술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킴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화된 민간기술들이 문화재분야의 기술축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장단역 증기기관차 영구보존처리작업의 추진과정 속에서 의미와 시사점은 ①건국 이래 비무장지대 內 문화재에 대한 최초의 보존활동사례이며, ②민간의 선진기술을 지방자치단체(과주시)와 협력하여 문화재에 적용한 대표적 사례인 동시에 ③TV, 신문, 각종 잡지 등에 소개된 ‘포스코 광고(광고기간 : ’05.10~’06.1)’를 통해 문화재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대국민 의식을 널리 일깨워 많은 기업의 동참을 유도했다.

5. 향후 과제와 계획

(1)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의 확보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이 요구된다. 아울러 기업의 전문성도 함께 발휘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 유형별 특성 분석을 통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는 전략도 제시되어야 한다. 기업의 참여를 수적으로 늘려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실 있게 관리하고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우수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참여 기업과 주기적으로 활동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평가하는 자리도 꼭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전담 지원조직의 마련

기업 사회공헌활동은 해마다 양적·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문화재 분야의 사회공헌활동 또한 기업의 새로운 사회공헌활동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담 지원조직의 마련은 필수적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테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조직을 설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성과관리는 물론 상호 네트워크가 가능한 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한 것이다.

(3) 지역공동체와 상호협력 모델 구축·전파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의 기본단위이자, 최일선의 현장인 ‘지역사회’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현장이기도 하다. 그간의 참여성과를 토대로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시민단체(民)와 기업체(産)와 지자체(官)가 상호 ‘볼런티어십’과 ‘파트너십’에 기반 한 상생 협력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사업이다. 특히 전문가 집단으로서 시민단체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시민단체와 기업체 간의 협업을 통한 상호협력은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내실화하고 전문화함으로써 성과품질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다.

(4)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존의 단순 반복형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폐해는 참여주체의 만족도 저하, 참여율 저조, 나아가 해당 사회공헌활동의 중단으로까지 이어지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최근의 경향은 단지 기업체 임직원만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이 아닌 임직원 가족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의 경우 풍부한 유·무형의 콘텐츠를 갖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특성화된 창의적인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5)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신설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공헌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법적, 제도적 장치도 새롭게 보완되고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경향이 점차 국가적 의제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자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세제혜택, 우선구매, 조사 감면 등 일부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부처 차원의 부분적인 지원이나 적용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안과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 문화재 정책의 개선방향과 그 실천과제

1. 머 리 말 / 85
2. 문화재 정책환경 진단 / 85
3. 문화재 정책의 현황과 과제 / 88
4. 문화재 정책의 개선(발전) 방향 / 92
5. 맺 음 말 / 94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장 이 유 범

1. 머리말

문화재는 한 나라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구체적 표상이며, 한나라, 한민족의 정체성(Identity)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준다. 문화재에 깃든 이러한 가치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0일 방화에 의해 국보 제1호 승례문이 옛 자태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하며 문화재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승례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행 문화재 행정의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진단과 근본적 리모델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문화재 보존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

문화재는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뎌오면서 그 보존상태가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닌 까닭에, 항상 훼손 또는 멸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또 도시화·산업화의 급물살을 타고 정당한 가치평가나 보호조치 없이 많은 전통 문화자원들이 우리의 눈과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임과 함께, 사회적 병리현상의 하나로 ‘반달리즘’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초하여 우리는 어떤 기조 속에서 문화재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재검토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실천적으로 물어가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즉, 문화재 보존환경의 악화,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보존과 개발의 갈등 심화, 사유재산권 보장 요구 증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세계화·국제화의 진전 등 문화재 행정여건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면서 정책수행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역사문화경관, 근대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문화재의 개념과 그 외연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고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정책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고유의 전통문화와 역사적 DNA의 결정체인 문화재를 어떻게 하면 잘 보존·관리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문화재 보존관리시스템의 개선과 관련한 생산적인 논의들이 활발히 개진되기를 기대한다. 여기서는 현행 문화재 행정이 당면한 현안과제들을 짚어보는 한편,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정책방향 및 그 실천방안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2. 문화재 정책환경 진단

1961년 문화재관리국이 설치된 이래 문화재 행정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을 해왔으나, 선제적·예방적 정책수립 보다는 현안 또는 사후관리 위주의 집행적 성격의 업무에 치중한 측면

이 없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960년대부터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는 문화재의 훼손, 멸실, 변형 등 적잖은 부작용을 가져 왔으나, 국가적 역량이 경제개발에 우선 집중된 결과 문화재는 그 가치에 상응하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국가의 총체적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과 문화 정체성 확보,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문화복지 이념 등과 맞물려 문화재를 바라보는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국민의 창조성과 정신적 자원에 의해 국가경쟁력이 좌우되는 지식기반사회를 견인하는 핵심동력으로서 그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나아가 지난 세기말부터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세계의 단일경제 체제, 이른바 글로벌 시스템(Global System) 속에서 한 나라의 문화재는 그 나라의 국가 이미지 내지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고양시켜 주는 중요한 몫을 해내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재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환경요인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시스템이 어떤 방향성 속에서 검토되고 재설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가. 대외적 여건

첫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보존은 1976년 유네스코가 제안한 ‘역사적 지역의 보호와 현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에서 처음 명문화되었으며 이는 역사적·건축적 지역과 그 환경을 지정(identification), 보호(protection), 보존(conservation), 복원(restoration), 보수(renovation), 유지(maintenance), 활성화(revitalization)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보존은 세계 각국의 21세기 문화재 행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곧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인 ‘원형보존’ 개념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화재의 물질적 상태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우르는 공간과 문화재가 갖고 있는 의미를 형성시켜 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함께 보존해야 한다는 것으로 재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기존의 문화재 개념과 범주가 크게 변화 또는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근·현대문화유산 등 기존의 문화재 개념과 범주가 크게 변화 또는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현대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온 근대화 과정에서 파생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증거물로 서구에서는 이미 20세기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역사적인 의미의 해석 작업이 시작되어, 산업 및 공업시설과 생산물, 모더니즘 예술, 대중문화 등 전통사회에 기반하여 문화재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문화재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산업혁명의 산물인 초기 형태의 공장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는 문화재에 대한 개념의 확대를 의미한다. 즉 문화재를 근대 이전의 전통문화유산으로 생각하던 기존 관념을 넘어 근·현대사회를 문화재 보존 관점에서 새롭게 고찰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셋째, 국가간 문화경쟁의 가속화되고 있다.

문화유산이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 인류공동의 자산이라는데 국제적 인식과 접근이 일반화되고 있는 반면, 세계 각국은 자국의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여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관광자원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문화유산을 매개로 하는 문화적 정체성·다양성 확보 등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나. 대내적 여건

첫째, 문화재 보존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산불, 방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문화재 피해 상존, 각종 개발사업의 급증, 환경오염 등에 따른 목조문화재, 매장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자연유산, 근대문화유산, 석조문화재 등의 보존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개발과정에서의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사유재산권 제한 문제가 맞물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인적·물적 기반 확충, 문화재 기초 조사연구 강화,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고도화, 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 조기 구축 등 문화재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재 활용 등을 통한 현대적 가치 재창조가 증시되고 있다.

사회 제반활동에 문화적 가치가 관통하면서 문화유산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법론도 변화 또는 진화하고 있다. 즉,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본원칙인 ‘원형보존’은 문화재가 가진 진정성(authenticity)의 핵심이지만, 그 자체만을 전부로 할 때 문화재는 고착화된 화석과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산업화 등 현대적 가치 재창조가 강조되고 있다.

셋째 문화재 접근성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욕구가 커지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문화 확산 등에 따른 복지실현의 수단으로서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Heritage Tour, 교육·체험·참여 중시 등)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회적 트렌드의 변화는 문화재의 접근성 제고, 안내판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개선·확충,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고품격의 정책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넷째,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민관협력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시민사회는 NGO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생산, 민주주의적 가치의 재생산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없어서는 안 될 주된 구성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문화재 분야도 ‘1문화재 1지킴이운동’ ‘문화유산 국민신탁운동’ 등 자발적인 시민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제 시민단체 등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생산적인 협력모델을 만들어 가는 일이 중요 정책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다섯째, 정보화, 첨단산업 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문화재 활용 콘텐츠 및 자연과학적 접근이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화의 확산과 보편화, IT산업의 성장 등 정보화의 급진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가히 혁명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문화재행정 분야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즉 각종 문화재 정보자원의 체계화·효율화 및 활용체계 확립, 문화재 관리주체 간 소통구조 정착, 고품격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지속적인 기반확충이 필요하다.

또 문화재 영향요소에 대한 분석·진단 및 위험요인의 사전차단, 손상문화재의 수복 등 첨단산업기술의 응용과 접목을 통한 문화재 부문의 자연과학적 연구와 기술개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하고 촉진하기 위한 협력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현안대응 위주의 문화재 보존에서 예방적·과학적 보존으로, ‘점(點)’ 단위 보존에서 ‘면(面)’·‘선(線)’ 단위의 입체적 보존으로, ‘원형보존’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활용을 통한 가치 재창조로, 전통유산 중심의 지정·관리에서 미래 유산자원의 생산·발굴 등 문화재 정책의 일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3. 문화재 정책의 현황과 과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치, 경제 등 모든 사회적 활동의 저변에 문화적 가치를 두지 않으면 개인이나 국가는 그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시대로 그 원천적 핵심요소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문화재 부문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인식 전환과 함께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시급

하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문화재 관리체계와 조직 및 자원, 문화재의 생명과 직결된 방재시스템, 관계법령 및 제도, 문화재 활용 및 민관협력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문화재 행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등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향을 나름대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가.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및 조직 측면

문화재는 지정권자에 따라 크게 중앙정부(문화재청장)가 지정하는 국보, 보물, 사적, 중요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정부(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와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변경의 허가, 문화재 보수·정비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지원,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과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문화재 보수·정비 자문 및 기술지도 등 문화재 행정의 총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경상관리 및 보수·정비사업의 시행 등 집행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 소장자는 문화재 보관·공개 및 안전관리의 책임을, 일반국민은 도난·도굴의 신고, 정책제언 등 ‘문화재지킴이’와 ‘조언자’의 위치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문화재 지정 및 관리체계

지정권자	유형별		무형문화재	기 념 물			민속자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 념 물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	국 보	보 물	중 요 무형문화재	사 적, 사적및명승	명 승	천 연 기념물	중 요 민속자료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사)	시·도 유형문화재		시·도 무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						

<문화재청>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 현상변경·발굴허가 / 조사·연구 / 전문인력 양성 / 예산 지원 / 제도개선 등

<지 자 체> :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상관리, 보수·정비 및 활용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관리는 1차적으로 문화재보호법령, 행정법규(지침)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의 위임을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그러나 문화재 행정의 총괄기관인 문화재청은 타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정부 내 위상이나 조직역량이 아직 미비하여 선제적·전략적 관점에서의 각종 정책개발과 위기상황 시 대처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하부조직(지방청)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관리위임 등에 따른 책임 소재 불명확 등 여러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조직 또한 지역에 산재한 수많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인 상황이다. 현재 문화재 전담부서가 설치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경주시, 김해시, 안동시, 공주시, 여주군 등 모두 7곳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과, 문화관광과, 문화공보과 등에서 여러 업무 중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학예직, 기술직 등 전문직 공무원은 전체 관리인력의 30%에도 못 미치는 등 전문성 부족에 따른 문화재 훼손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를 들어, 충청남도 금산군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4건을 비롯한 총 23건에 이르는 지정문화재를 문화공보관광과 소속 1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재 정책모델 개발, 현장조사 및 점검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없는 구조이며, 이는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그 사정이 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 <붙임 2>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리인력 현황 참조

나.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자원 측면

문화재는 그 성격상 시장경제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대표적 분야로 온전한 가치보전과 전승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정부 내 투자 우선순위가 지극히 낮고 절대액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008년도 문화재청 세출예산 규모는 4,270억원으로 정부예산의 0.19%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문화재 보수정비(총액 계상)에 필요한 예산은 아직도 시·도 신청액(8,750억원) 대비 20%인 약 1,800억원에 불과한 상태로, 예산수요를 지출 측면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재정 갭(fiscal gap)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재정사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방자치단체 관리위임에 따른 안전보호 활동 등 일상관리를 위한 관련 예산지원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송례문 방화사건도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문화재의 신속한 보수·정비, 문화재 보존에 따른 사유재산권의 적기 보상, 비지정 문화재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안정적 자원 확보와 예산운용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문화재 보호기금」 신설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다. 문화재 방재시스템 측면

양양 낙산사('05.4.5), 화성 서장대('06.5.1), 서울 송례문('08.2.10) 등 일련의 사례에서 보듯 산불, 방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문화재 피해가 상존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방재시스

템은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당해 문화재 자체에 발생하는 내부 화재 진압에 국한된 기존 방재개념과 시스템의 일대 혁신을 요구하는 것으로, 앞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선진 소방설비 도입, 화재 조기진화 체계 확립, 재난대응 매뉴얼의 현실화·구체화 등 이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를 통해 문화재 유형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과학적·효율적인 방재시스템이 하루 빨리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라. 문화재 관계법령 및 제도 측면

문화재 개념과 범주의 확대 등 행정환경이 날로 다양화·복잡화되어 가고 있으나, 단일법 체제인 현행 문화재보호법제는 이러한 현실상황을 제대로 담아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그간 20여회에 걸친 전부 또는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행정의 대민접근성, 조직체계와의 정합성, 단위행정과의 연계성, 법체계와 입법 기술적 합리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문화재의 유형과 기능별 영역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편(분법 등)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문화재보호제도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문화재 분류·지정체계」 역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시의 기존 틀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분류기준의 불명확성, 특정 유형(국보, 보물)에 편중된 지정체계 등 여러 문제점 노정에 따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조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사회적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디자인하고 혁신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마. 문화재 활용과 시민참여 측면

지금까지의 문화재에 대한 관점은 객관적 사실(史實) 또는 그 자체의 평면적 가치에 주목함으로써 문화재의 생명력과 가치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물론,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이를 훼손됨이 없이 관리하는 것이 문화재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만 문화재를 통하여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민족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함께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문화사적 의미, 시대정신, 생활상 등 총체적 가치를 깨우고 집어내어 이를 활용 콘텐츠로 집약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다.

한편, 정부의 노력만으로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성장 등에 발맞춰 「民(국민·NGO)-産(기업)-官(중앙·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등 실질적 협력모델 창출을 통해 행정력 위주의 패쇄적 문화재 보존관리 틀을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역할에 바탕을 둔 선진 개방형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4. 문화재 정책의 개선(발전) 방향

문화재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그 책임에 자유스럽지 못한 한 사람으로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때늦은 반성과 정책적 개선방향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무척 죄송스럽지만, 국민들께 충격과 허탈감을 안긴 이번 승례문의 희생을 교훈삼아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개선하여 문화재 정책이 한층 진일보할 수 있는 중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앞에서 우리의 문화재 정책이 처한 현실적 상황과 문제점을 간략히 진단해 보았다. 여기에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고 그 해법 또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현행 문화재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첫째,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의 재구조화가 시급하다.

문화재의 장소성, 현장성 및 활용도 등의 측면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책임을 맡는 것이 일면 타당성을 지니나, 인적·물적 기반의 취약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행정역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승례문의 사례에서와 같이 책임소재의 분산, 관리체계의 이원화 등에 따른 문제점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부족에 따른 안정적 정책품질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문화재청 하부조직(지방청) 설치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청 신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우선 현 지방문화재연구소를 확대·개편, 관할 지역의 행정수요를 흡수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전 시·도별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청이 설치될 경우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등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관련 업무를 위임하면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문화재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이 대폭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문화재청 하부조직이 신설이 어렵다면 중앙-지방정부간 기능 및 역할 재정립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행정역량을 끌어 올릴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즉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위임에 따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의 문화재 전담부서 신설 등을 위한 인력확충과 일상관리 예산 지원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안

- <문화재청> : 문화재 보존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시행 / 예산 및 기술 지원 등
- <지 자 체> : 문화재 보수정비 및 일반관리

둘째, 문화재 부문의 안정적 재원확충 및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문화재 부문의 안정적 재원 확충 및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문화재 종합 방재시스템 구축(776억원),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고도지역 보존정비(약 4조원), 발굴 결과 유적보존 결정지역 사유재산 최소화(약 2,080억원), 풍납토성 등 문화재 주변 주민 불편 해소(약 10조원) 등에 따른 천문학적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문화재 부문의 예산규모는 이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 4,200억원('08년 기준) 수준의 예산을 1조원 규모로 확대하여 문화재 보호기반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문화재보호기금, 고도보존 특별회계, 문화재세·부담금 등 신설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또 지방으로 이양('04.7월)된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분권교부세)을 중앙정부로 환원, 시·도지정문화재의 예산 편성권을 국가지정문화재와 동일하게 문화재청이 행사함으로써 전국 문화재에 대한 관리기능을 일원화하고 문화재 보수·정비의 적시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추이

- <지정건수> : ('04년) 5,925건 → ('07년) 6,641건
 - <보수예산> : ('04년) 410억원 → ('07년) 380억원 / '05년 이후 동결
-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분권교부세)은 오히려 감소 추세로 적기 문화재 보수·정비 곤란

셋째, 법적·제도적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재보호 법제를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국회 계류 중)하고 있으나, 앞으로 문화재 분류체계 마련과 연계하여 「문화재기본법」,

「유형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등록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리, 입법하여 문화재의 유형과 성격에 맞도록 제도적 기준을 체계화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재의 생명과 직결된 종합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법령을 대폭 정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재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위임에 따른 위임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범위의 구체화와 사회적 파급성이 큰 각종 규제와 제도에 대한 정비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민적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

전국에 산재한 많은 문화재를 지키고 가꾸는 일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국민신탁운동」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문화재 보호기반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문화재를 ‘재화적’ 개념 또는 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크고 작은 문화재 파괴 행위가 여전히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 병리현상에 의한 방화 등 문화재 테러는 우리가 진정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문화재의 애호자’이자 ‘문화재의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과 독창성이 세계 속에서 날개를 펴고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이다.

5. 맺 음 말

지금까지 우리 문화재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간략히 제시하여 보았다.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번 숭례문 희생 등을 계기로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각 기관이 기본으로 돌아가 깊은 자기 성찰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문화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현장’에는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으로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것을 천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69조는 대통령 취임 시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선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전통문화의 핵심인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그 활용은 국가의 중요 정책 중의 하나임을 의욕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이를 후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데 국정철학의 최우선으로 삼아 그 주어진 책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와 정책

1. 근대문화유산의 발생과 보존운동의 태동(胎動) / 99
2. 등록문화재 제도의 개요 / 100
3. 등록문화재 제도의 내용 / 104
4.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정책 / 109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장 김성범

1. 근대문화유산의 발생과 보존운동의 태동(胎動)

우리 역사상 ‘근대’의 개시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어 그 시기를 명료하게 확정하기가 간단치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1876년 강화도조약을 근대의 기점으로 보고 있다. 18세기 후반부터 실학의 발전, 상공업의 발달, 신분제의 붕괴, 도시의 성장 등 근대지향적인 사회분화의 현상이 나타나고 봉건사회가 해체되기 시작함으로써 근대화가 예견되었으나, 19세기 후반 일본과 서구 열강의 침입에 의해 문호가 개방되면서 서양문화가 이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한국사회는 본격적으로 변모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는 주거 생활은 물론, 일반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의 징후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체결된 강화도조약을 시발로 곧이어 유럽 열강과 수호통상조약을 맺고 부산항의 개항에 이어 원산항·인천항 등의 문호도 개방되었다. 개항 도시에서는 외국인의 조계지와 거류지를 중심으로 측량도면에 의한 구획(區劃)과 필지 분할이 이루어지고, 양풍(洋風)의 외국공관·은행·학교·교회당·의원 등과 주거겸용의 복합주택 등 서양건축이 소개되었다. 그 무렵에는 주로 외국공관·은행 등의 양식건물, 교회당·학교·병원·선교사 사택 등 기독교계통의 양식건물, 나아가 양식건축의 도입을 계기로 우리 손에 의해 서양식·중국식을 절충하여 건축한 ‘번사창(飜沙廠)’·‘전환국(典圜局)’ 등의 관청과 경운궁(현 덕수궁)내 정관헌·석조전 등의 양관 및 근대적 한옥 2층 상가 등이 건축되었다.

일본과 서구열강들의 경제적 이권침탈과 진출로 서울과 개항장 등 주요 도시에는 적지 않은 서양식 건축물이 들어서고, 1900년을 전후하여 전화·전기·수도시설과 서울에 최초로 전차가 개통되는 등 근대적인 공공시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체결 이후 서울·대구·전주 등 대도시는 성곽이 철거되고 수많은 건축물과 철도·도로·교량 등이 건설되어 이전과 다른 모습의 새로운 도시가 조성되기에 이른다. 일제강점기 전반기에는 식민통치를 위하여 많은 공공건축물이 전국적으로 건축되었으며, 그 당시 일본의 건축 사조(思潮)인 서양의 양식주의(르네상스풍)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 후 1920년 조선회사령이 철폐되면서는 일본의 상업자본이 물밀 듯이 유입되었고 그에 따른 건축사조의 변화에 의해 근대적 양식의 건축물들이 속속 건축되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 및 한국전쟁 등의 혼란기와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변화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현대적인 건축기반을 갖추어 갔다. 그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경험은 근대사회를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시대로 여기는 부정적인 인식과 이어진 한국전쟁 등으로 인하여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소멸되었다. 그러나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은, 일제에 의한 타율적인 요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근대화과정이 다양한 문화의 유입과정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들 문화를 받

아들이고 변형을 시키면서 우리의 것으로 소화된 상태로 발전된 것이었으며, 그 안에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다는 긍정적이고 새로운 인식과 함께 그 자체가 우리 근대기 삶의 모습이라는 전환적 사고에 의해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이 인지되기 시작하였다.

2. 등록문화재 제도의 개요

2.1 문화재 보호 법령과 제도 개관

일제강점기 시대,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적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으로는 1933년에 제정·운용되고 있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 있었으나, 제대로 된 입법은 1962년 제정·공포된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다. 이 법에 의해서 문화재를 국보·보물 등으로 구분하여 본격적으로 지정·보호하게 되었다. 그 후 1982년 12월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전면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재를 그 가치와 관리 주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등으로 세분하였다.

근대문화유산의 보존·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위 법령의 틀 내에서 관리되어 오다가 2001년 3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등록문화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대건축물을 위시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역사성·예술성 등의 가치와 희소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엄격히 보호하는 지정문화재제도에 비해 대상선정과 보존·보호의 방법이 폭 넓고 유연하며, 소유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근대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는 크게 지정문화재제도와 이를 보완하는 등록문화재제도로 나눌 수 있다.

<표 1> 문화재 지정 및 등록의 구분

구 분		법적근거	지정(등록)권자	문화재 종별
지정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장	국보·보물·사적 등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시·도지사	유형문화재·기념물· 민속자료 등
등록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장	등록문화재

2.2 등록문화재제도의 도입배경 및 특징

정부에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명동성당 등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을 엄선하여 문화재로 지정·보존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화신백화점·국도극장 등과 같이 역사·문화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큰 근대건축물이 보존인식의 부족과 개발 압력에 의해 사회적으로 올바른 평가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멸실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실제로, 지난 1999년 9월 우리 영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국도극장’이 소유자의 재건축계획에 따라 소리 소문도 없이 철거되었다. 화신백화점, 제주대학교 본관 등과 같이 역사적·건축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문화재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의 보존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 없이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다. 우리나라의 근대건축물은 서양의 자주적 시민민주주의가 정착되는 시대와는 달리, 외세의 침략·강점에 따른 민족적인 수난을 받은 부정적인 시대라는 인식에 의해 정당한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근대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근대시기가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시기로서, 그 당시에 생성된 역사적 산물은 당대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결과물이라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근대건축물에 대한 재조명을 통하여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후대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찾는 일이라는 인식이 차츰 확대되어 학계, 언론 및 관련단체에서는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근대건축물의 보호에 높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근대건축물의 보호를 위하여 1999년 12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방안에 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전국에 산재된 근대문화유산 중 역사적 기념물과 건축물에 대한 기초조사, 분야별 정리와 평가를 통한 보존방안 마련 및 등록문화재제도의 도입 등이 포함된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 대책’을 2000년 1월에 수립하고, 동년 2월에 이를 위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근대문화유산 보호시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어 2000년 5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세미나를 가져 근대문화유산의 보호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면화하고, 2001년 3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엄격한 보호를 우선하는 지정문화재제도를 보완하는 보다 유연한 보호제도인 ‘등록문화재제도’를 도입하였다.

2003년 12월에는 명동성당에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그 동안의 근대문화유산 보존성과를 살펴보는 가운데, 등록문화재의 활용방안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5년 1월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문화재 등록대상을 건조물, 시설물 뿐만 아니라 역사유적, 생활문화자산, 동산문화재 등으로 확대하고, 소유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하여 등록문화재가 있는 대지안의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또는 건

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은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도입하였다.

등록문화재제도의 특징으로는 문화재 지정기준에는 미흡하나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축물·토목구조물 등의 근대문화유산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인 보호 의지를 바탕으로 두고, 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신고에 의해 유연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지정문화재제도가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동결보존(凍結保存)을 목적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지극히 큰 것을 엄선하여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현상변경하는 경우 허가¹⁾를 받도록 하는 등 정부의 엄격한 보호와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이 제도는 외관을 보존하고, 내부를 현실에 맞게 개·보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없는 ‘등록’의 개념을 도입하였다는 의미가 있으며, 문화유산의 범위를 시대적으로 근대시기까지 확장하였다. 그 후 2005년, 문화재보호법을 재개정하여 등록의 대상을 건축물·시설물 위주에서 동산문화재까지 포함하는 등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1)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의 경우 당해 문화재 주변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그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현상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문화재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표 2> 등록제도와 지정제도와와의 비교

구 분	지정문화재제도	등록문화재제도
목 적	문화재를 중점적으로 엄선해서 극히 가치가 높은 것을 강한 규제와 함께 강력한 보호에 의해 영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제도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을 대상으로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것을 폭넓게 등록, 완화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유자의 자주적인 보호에 기대하는 제도
보호대상	역사적, 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것	건조물 또는 시설물 중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
지정(등록) 기준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건조물, 시설물 중 원칙적으로 건설 후 50년을 경과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 -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한 시대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등
지정(등록) 주체	문화재청장/시·도지사	문화재청장
심의회	문화재위원회/시·도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회
지정(등록)시 소유자 동의	제도상 필요 없음 운용상 의견수렴 참고	제도상 필요 없음 운용상 의견수렴 참고
현상변경	허가 필요한 지시, 행위중지, 허가취소	신고 필요한 지도, 조언, 권고
보존에 영향을 미칠 행위	허가(경미한 것은 제외) 필요한 지시, 행위중지, 허가취소	규정 없음
수리등에 대한 국고보조	규정 있음	규정 있음
세제지원	-지방세(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비과세 -상속세 등 비과세	- 지방세(종합토지세, 재산세) 50%범위 내 감면 - 상속세 징수유예, 1가구1주택 특례

2.3 근대문화유산의 목록화 사업과 문화재 등록 현황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에 따라,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정책의 일환으로 이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8월부터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조사된 근대문화유산의 목록을 보면, 주택·학교 등의 건축물, 교량 등 토목시설물, 인물유적지, 시장 등 그 종류가 다종다양하다.

정부에서는 목록화 사업에 의해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신청 또는 소유자의 개별 등록신청 및 직권조사 등의 방법으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대국민 홍보의 부족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충분치 못한 교육의 기회, 또한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 등등의 이유로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등록 거부 제도의 도입 초기는 물론, 지금도 문화재 등록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자체 등의 노력으로, 2002년 2월 ‘한국전력 사옥’이 제1호로 등록된 이래 2008년 4월 현재 모두 372건이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이렇듯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 등록 실적은, 문화재가 희소성과 예술적 가치가 큰 전통문화유산 중심으로부터 실제 삶의 흔적과 일상의 기억이 중시되는 근대건축물과 산업시설물 외에 고전영화 등 동산 형태의 근대문화유산으로까지 문화재의 대상과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점차 저변의 인식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 3> 지정 및 등록문화재 중 근대문화유산

계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소계	국보·보물	사적	소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534	33	-	33	147	42	71	34	354

※ 등록문화재 372건 중 마을 옛담장 18건 제외

3. 등록문화재 제도의 내용

3.1 등록문화재의 등록대상

등록문화재의 등록대상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²⁾ 등록문화재는 그 자체로서도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라는 점과 지정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먼 훗날에는 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는 예비후보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의하여 이미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등록문화재가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등록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다.³⁾

또한 등록문화재제도의 도입배경 및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등록대상은 근대건축물 등의 근대문화유산이 주로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통건축물 등의 건조물도 근대기의 특

2)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1항

3) 문화재보호법 제52조 제2항

성이 반영된 경우에는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아가 근래에는 근대문화유산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건조물 등 부동산문화재 외에 동산문화재도 그 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3.2 문화재 등록기준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을 경과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가능하다.

-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것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3.3 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등록말소 절차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당해 문화재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등록신청과 문화재청장의 직권 신청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부의, 등록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된다.

그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당해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아닌 소유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가. 등록취지

나. 문화재의 종별·명칭·연혁(역사적 사진·유래 등)·수량 및 소재지

다.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점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성명 및 주소

라. 문화재의 현재의 용도 및 수리·구조변경내역 등 현상에 관한 설명

마. 문화재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

바. 문화재의 사진·도면·위치도 및 관련 기록물

사. 확인 가능한 경우 당해 문화재를 만든 자의 인적사항

아.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등록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당해 문화재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면,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조사 및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보에 30일 이상 문화재 등록예고를 한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등록예고기간에 제출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등록여부를 심의한 후, 문화재청장은 관보에 문화재 등록고시를 하고, 소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한다. 그리고, 등록은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소유자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있다.⁴⁾

또한 등록문화재가 보존 및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문화재 등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⁵⁾

3.4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⁶⁾ 또한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관리단체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지도라 함은 등록문화재의 보수·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⁷⁾ 기술지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 요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재의 수리는 소유자가 시행하고 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이를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데, 그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수 있다.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이를 수

4)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준용규정 동법 제10조 내지 제12조

5) 문화재보호법 제52조

6)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1항, 동법 제3조의 규정에서도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7)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제도 안내(유인물)」, p.12, 2001.

리하게 하고 있으나⁸⁾, 등록문화재의 경우 그 자격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정문화재는 건축법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⁹⁾하고 있으나,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없다.

3.5 현상변경 등의 신고(허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¹⁰⁾

또한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당해 문화재의 외관의 4분의1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 당해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¹¹⁾.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현상변경신고에 대하여 지도·조언·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¹²⁾,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받거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인 경우에는 신고 대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3.6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¹³⁾,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

8) 문화재보호법 제17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9) 건축법 제3조제1항제1호

10) 문화재보호법 제50조

11)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및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당해 현상변경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12) 문화재보호법 제50조제3항

13)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¹⁴⁾.

3.7 문화재 관리·수리 등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국가에서는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와 당해 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 및 기록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관리·보호 또는 수리 등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¹⁵⁾ 등록문화재의 수리는 소유자가 하고 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소유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이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경비는 전액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으며, 전액부담인 경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이루어진다.

3.8 기타 관련제도의 내용

등록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1주택 특례¹⁶⁾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세 징수유예¹⁷⁾를,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과 「시·군·구세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 50% 범위 안에서 감면¹⁸⁾해 주고 있다.

1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1조

15)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2항

16) 소득세법시행령상 등록문화재인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가구가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가구1주택의 경우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등록문화재를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피상속자가 양도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과세와 같은 효과가 있다.

18)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시·군·구세감면조례를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1.7월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시·군·구별 세감면조례에 이를 반영·시행하고 있다.

<표 4> 문화재 관련 세제감면 현황 (2007.12.31. 현재)

구 분	내용(관련규정)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비 고	
국 세	상속세및 증여세법	비과세 되는 상속재산 (법12조, 영8조)	국가 및 시·도지정 문화재와 동 보호구 역안의 토지	-	
		상속세 징수유예	-	등록문화재	양도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 효과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법12조)	지정문화재 및 그 보 호구역내 토지	등록문화재(주택)	1가구2주택자로 서 등록문화재 외의 주택 양도 시 1주택 간주
	법인 세법	취득·관리비 등의 손금산입 (법27조, 영49조)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기간에 한함)	-	
	부가가치 세법	임대용역의 부가 가치세 면제 (법12조, 영37조)	지정문화재를 소유하 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건물, 공작물 의 임대용역	-	
지 방 세	시군구세 감면조례	○지방세 감면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 여 100% 면제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를 50% 감면하되, 도시계 획세 제외	

4.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정책

4.1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우리나라의 근대시기에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혁을 경험하는 가운데, 서구 열강과의 교류로 급격하게 서구문물이 유입되고, 그것과 동반하여 사회의 구조도 복잡하게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건축문화는 서양식 건축의 도입과 수용과정에서 전통건축양식의 변화 등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다.

근대건축물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노후화나 경제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해 재건축을 하려는 개발요구도 많다. 또한 전통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립시기가 짧고 다양한 양식의 근대건축물은 향후 한국 근대사의 문화유산으로서 잠재적인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국민들로부터 흡족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근대건축물은 근대역사의 문화유산으로서 우리의 전통시대와 현대를 이어주는 연

결고리이자, 현재와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 현대시대의 도시공간에 있어 역사성·다양성 및 장소성 등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당시의 건축물 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담당하였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소재 지역의 연륜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생활 속에서 역사적 경관과 시대의 흔적을 나타내는 근대건축물은 일상의 기억 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친밀하게 인식되는 존재로써, 도시공간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사의 한 층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건축물은 도시의 정체성(Identity)을 유지하고, 역사·문화경관으로서 우리의 생활환경속에서 시·공간적으로 인식되어 그 공간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근대문화유산이므로 보존해야 할 마땅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다수의 근대문화유산은 정보기술(IT)의 발달, 생활양식의 변화 및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멸실·훼손위기에 처해 있으며, 문화재로서의 인식도 국민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매김하지 못하여 기초적인 보존여건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근대문화유산이 아무런 보호방책 없이 소멸되어 버린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과 시설물 그리고 각종의 근대시기의 동산문화재는 보존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 시대의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구조물로서 그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근대건축물의 활용은 과거의 가치를 현시점에서 재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적 관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역사문화유산의 보존의 근저에 있는 것은 정신적 유산의 전승이 오 가치 계승이지만, 그 활용을 통한 재생은 지역의 활성화와 자원절약 등 경제적인 측면과 생활의 풍요로움을 가져오게 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도 큰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문화재로서의 보존과 활용은 지정문화재와 같이 건축물의 내·외부 전체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는 그대로 활용하여 후세에 계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대책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대건축물을 문화재로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현 시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서 소유자의 자발적인 협조하에 문화재의 본질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보존양태가 가능한 등록문화재가 그 대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4.2 근대문화유산 보존정책의 방향

가. 등록문화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첫째, 재산권 행사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일방적으로 철거되거나, 문화재 등록을 거부할 경우 소유자가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에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보존을 위하여 소유자 설득, 매입 또는 기록보존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철거를 유예할

수 있게 하거나, 소유자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감면, 건축기준 특례 등 현행 인센티브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발 등으로 멸실 위기에 처해 있는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적시성을 제고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현상변경시 파사드 등 문화재 외관의 핵심시설 보존 대책 역시 미흡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지정문화재 제도에서처럼 규제의 도입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겠으나, 규제와 처벌 조항의 삽입은 등록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여, 꼭 적절한 대안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배경(자율적인 보존정책 등) 등을 감안하여, 차선책으로 지정문화재와 같이 국가(문화재청)가 가지고 있는 등록권한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이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현상변경 신고(허가)기준인 ‘외관 1/4이상의 변경’에서 외관 중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중요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역사·문화적 경관 보존 필요성이 요구되는 근대건축물 군(群)의 문화유산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관리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개개의 건축물로서는 그 가치가 떨어지나, 건축물들이 군집되어 있는 목포·군산·영산포·구룡포·강경의 근대 가로(街路) 등 역사·문화적 근대건축물 군에 대한 경관적 특성 등을 감안한 도시계획적 관리기법 등 획기적인 보존·관리 방안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나. 향후 근대문화유산 보존 정책방향

근대문화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유형별·분야별 조사·등록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조물이나 시설물의 경우 등대유적, 한국전쟁유적, 생활문화유산 등 유형별 대상을 발굴하고, 근대동산문화재의 경우 태극기, 자동차, 철도, 전기통신, 회화, 공예 및 의료기 분야에 대해 조사하고 그 기준을 확립하여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것이다. 근대 역사·문화인물 유적과 관련하여 인물의 비중이나 유적 보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및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등록문화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이에 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 동안 문화재 등록을 하면서 문화재 명칭부여에 관한 적절한 기준이 없어 문화재위원회 검토나 심의시 문화재 명칭 부여에 많은 혼란이 있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절한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 등록문화재 명칭부여 기준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등록문화재 보존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역의 문화재 보존·활용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고, 근대문화유산의 소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 주민들과의 연계

방안을 강화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의 발굴, 지역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내세울 수 있는 관광자원화를 도모함으로써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이 해당 지역주민의 문화적 향수 기회 증대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적 정비에 따른 보존관리의 체계와 기법

1. 머리말 / 115
2. 보존 관리의 목적 / 115
3. 보존관리의 기본 원칙 / 117
4. 보존관리의 대상과 기법 / 117
5. 주변지역 보존 / 144
6. 유지 관리 / 147
7. 맺음말 / 15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전문연구원 김 철 주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유적정비 사업은 1907년에 이루어진 숭례문 수리 공사를 시작으로 1960년대 정화사업, 1980년대 이후 대규모 발굴조사 후 이루어진 정비사업 등, 오랜 기간 동안 “정비”라는 이름으로 유적의 보호·보존조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많은 정비사업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적 정비에 대한 철학이 정립되지 못하고 그 기법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사적의 지정에 있어서도 그 보존관리는 대부분 지정지를 성토하고 잔디를 식재하는 것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 소득수준 증대와 주 5일제 등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킬만한 다양한 여건들로 인해 사적은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활용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두되기 시작한 보존과 활용의 문제는, 지금까지 상반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향후 활용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 유적 보존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시급한 문제로 유적 정비에 있어서 보존관리 또는 보존, 관리에 관한 체계와 기법의 확립은 앞으로의 활용에 대해 전제가 되어야할 조건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적의 지정 이후 정비된 유적지의 보존관리 기법에 관한 체계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기법을, 또한 이와 병행하여 행해지는 유지관리 기법을 해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정비된 유적지의 보존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보존 관리의 목적

유적은 우연한 발견에 의하거나, 각종 건설 사업에 있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 유적이 가진 가치에 따라 절차를 거쳐 지정하여 보존하게 되고, 그 중요도에 따라 국가 지정과 시·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다.

지정 이후 사적으로 지정된 유적은 그 가치를 현상대로 보존하거나, 활용을 위한 유적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지정 이후 현상의 보존이나 유적 정비는 모두, 해당 사적이 가진 본질적 가치를 보존한다는 절대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적 정비는 이 전제 조건에 공개·활용의 개념을 더한 것이다.

이러한 보존 관리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전제가 된다.

사적의 가치 파악

- 사적의 보존관리계획 수립 또는 유적 정비를 위해서는, 해당 사적이 가진 가치와 그 구성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굴 조사 및 문헌 사료 등의 조사에 의해 새롭게 판명된 사실을 포함하여, 구성요소의 분포 및 성질 등에 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사적의 입지 및 성립, 역사적 변천의 파악을 위해서, 자연적 환경 및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유적 본래의 공간배치 및 각 공간이 담당했던 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유적의 보존상황 파악

- 사적의 보존관리계획 수립 또는 유적 정비를 위해서는, 사적의 본질적 가치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의 보존상황 및 보존환경 파악에 노력하고 보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유구의 훼손이 진행되는 경우 그 진행상황 및 진행의 원인, 과정 등을 파악하여 대응조치 사항을 보존관리계획 또는 유적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발굴조사 등의 결과에서 추가 지정이 판단되는 경우, 추가지정지에 대한 보존관리의 방안을 포함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보존관리계획 또는 유적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유적 내에 식생 파악과 유지·육성·보호에 관한 방침 및 기법에 관해서도 검토한다.

보존 기법의 향상

- 현상 보존이나 유적 정비에 있어서, 성토, 절토, 유구노출전시 등 사적이 가진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 이러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법의 근간에는 보존 과학적인 처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보존 과학적인 처리가 유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관찰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보존 기법의 향상에 노력한다.

전통적 기술의 보존 계승과 신기술의 개발 도입

- 사적 내에는 지하 유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역사적 건조물 및 구조물이 존재하며, 이러한 건조물 및 구조물 등을 수리하고 전시하는 경우, 전통적 공법과 기구를 우선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기법과 기구의 사용은 역사적 건조물 및 구조물의 보존 계승뿐만 아니라 무형의 문화 자산을 보존하고 계승한다는 데에도 의미가 크다. 한편으로, 역사적 건조물 및 구조물의 구조보강 또는 방재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고 유지 보존되도록 노력한다.

경관의 보존과 재생

- 사적의 가치는 주변의 경관과 일체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적이 가진 자연적·인문적인 요소를 보존하면서, 이러한 것이 어우러져 형성되는 경관의 상태를 보존하는 방법과, 이러한 경관의 상태를 해치는 요인을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검토하여 유지 보전에 노력한다. 이 경우 도시 계획, 자연보호 등에 관련된 제도를 적용시키는 것에 의해 지정지의 주변 지역의 환경에 관한 보전조치 및 양호한 경관형성을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한다.

보존관리계획

- 사적의 적절한 보존을 위해 그 사적이 가진 가치(사적의 경우는 역사상 또는 학술상의 가치 등)에 관한 충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유적의 성격과 현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 연구의 결과를 근간으로 보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유적의 구성요소 중, 지상에 노출된 것과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보존 수법을 검토하고 보존관리계획 또는 유적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면, 석불, 석탑 등의 구조물은 풍화 및 열화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존처리의 수법을 제안하고, 보존환경에 관한 유효한 개선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지하에 매장된 유구의 보존은 적절한 두께로 성토함으로써 피복의 보존효과를 전제로 현상 보존 하거나 다양한 유적 정비 기법에 의해 보존하고 활용한다.

3. 보존관리의 기본 원칙

헌법 제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69조는 대통령 취임 시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선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전통문화의 핵심인 문화재의 보존 관리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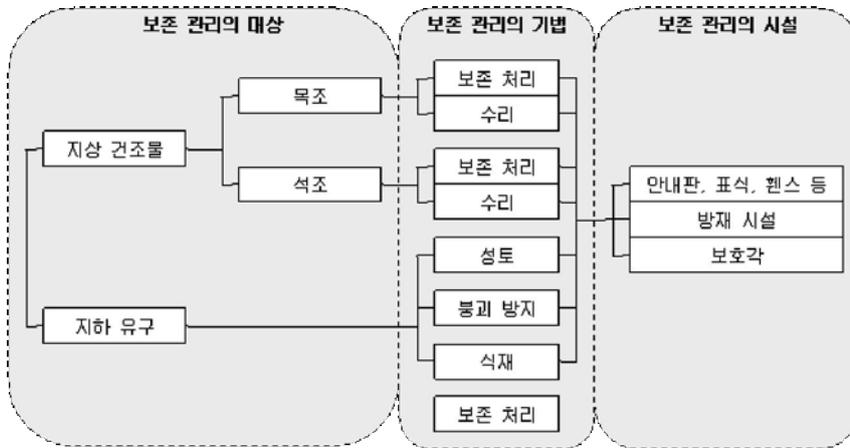
또한 문화재 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에서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는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되며, 문화재는 본래의 자리와 공간에 있어야 하고, 문화재는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문화재는 주변 자연환경, 역사 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문화재 보존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4. 보존관리의 대상과 기법

각 사적에 보다 더 적절한 보존관리의 방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유적의 종별 및 성질, 규모 및 입지 환경 등에 따라서 그 사적의 가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보존 관리 방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유적을 둘러싼 자연적·역사적·사회적인 다양한 조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적에 미치는 영향 및 공개·활용의 다양한 문제에 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존 관리를 위해 정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보존 관리 대상과 보존 관리 기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보존 관리 대상과 기법·시설



보존 관리 기법

가. 성토

1) 개요

유구 보존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흙으로 피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구면 성토로 유구의 보존이 가능하다.

성토를 하는 경우 법면의 안정화를 위해 관축공법 또는 말뚝, 울타리를 병용하여 성토를 안정시키면서 표면에 잔디 및 이끼 등의 지피식물로 녹화를 한다. 흙에 의한 성토에 의해 노출된 유구가 자연환경 및 기후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사람 및 차량 등에 의한 악영향을 경감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2) 기본원칙

발굴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유구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성토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유구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성토는 노출된 유구 면에 직접 행하는 유구 양생층과 그 위에 보존상 필요한 두께까지 하는 성토층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유구면에 토목섬유를 사용하여 유구면을 보호하는 시공을 하기도 한다.

유구 양생층은 유구가 존재하는 층과 성토층 사이에 유구면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토층으로 모래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단 바다모래는 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모래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외 유적 정비의 차원에서 성토와 절토를 병행하여 옛 지형을 복원하기도 한다.

3) 기법

성토 방법

- 유구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성토에는 노출된 유구 면에 직접 시행하는 유구 양생층과 그 위에 보존상 필요한 두께까지 하는 성토층, 두개의 층이 필요하다. 유구 양생층은 유구의 형태와 성질에 따라 모래를 두껍게 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지장이 없는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유구면의 모래 양생층 시공은 인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위에서 누르거나 다지지 않는다.

성토 두께

- 유구 보존을 위해 유구 양생층 위에 시공하는 성토층은 주위의 토질과 유사하도록 사질토 또는 점질토를 사용, 적절한 두께가 되게 하여 충분히 다짐한다. 유구 양생층의 상면부터 성토층은 인력에 의한 성토가 기본이며 일정 높이 이상에서 다짐을 실시한다. 유구 보존을 위한 성토의 두께는, 그 상면에 있어서 시행하는 정비의 수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50~100cm 높이로 성토를 한다. 일본의 경우 80cm 높이의 성토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 높이가 식물의 뿌리에 의한 유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깊이라는 판단 하에 일반적인 수치가 되어 있다.

식재

- 성토 후에는 유구 보존의 차원과 유구표시 등의 기법이 병행되어 성토층 표면을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지피식물(잔디)을 식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성토층 위에 유물 복제 또는 유구 복제를 하고 잔디 이외에 삼화토 등 다양한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

배수구 정비

- 유적지 내의 지표면에 우수로 인해 물이 고이거나 흘러넘치게 되면 지하 유구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지하 유구 보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적절한 배수로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 처리

- 기존의 지형 또는 발굴조사에 의해 지하 수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하수의 수위에 유념하여 발굴조사 후 성토에 있어서 적절한 두께의 모래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유적 정비의 성토에 있어서 지하유구의 보존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필요에 따라 유구 주변에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4) 유의점

유구 성토에 있어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한냉지에서 추위에 의해 유구가 변형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동결 심도보다 두꺼운 성토 두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나. 붕괴 방지

1) 개요

붕괴 방지의 조치는 토목적인 기법에 의한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일반 토사붕괴 방지 관점의 검토만으로는 유적 보존에 있어서 적절한 재료·공법이 채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토목 분야에 있어서도 경관을 배려한 붕괴방지 등에 관한 공법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상기의 조사 성과를 포함하여 전통적인 공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새로운 공법 도입을 검토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술을 선택한다.

2) 기본 원칙

경사지 등의 붕괴방지를 위해 토목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대책을 취할 경우 토사방지 옹벽, 법면 프레임 등의 설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법은 유적의 경관 보존 및 지하 유구 보존의 관점에서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적 지정지에 있어서도 유적이 가진 가치의 보존에 영향이 적은 곳과, 이러한 공법 이외에 붕괴방지 처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검토의 전제가 된다. 또한 그물망 형태의 섬유나 부직포 등을 편으로 고정, 법면 피복 후에 종자뿌리기를 하여 표면 녹화를 하는 방법을 포함, 급격한 법면을 녹화·안정시키는 다양한 공법이 개발되어 있다.

3) 기법

유적이 입지하는 구릉이 여러 불안정한 바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또는 법면이 급경사로 산사태 등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불안정한 지형에 의해 유적 훼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바위 및 비탈면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토목공학적인 관점에서 보완과 보존환경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가) 법면 녹화에 의한 붕괴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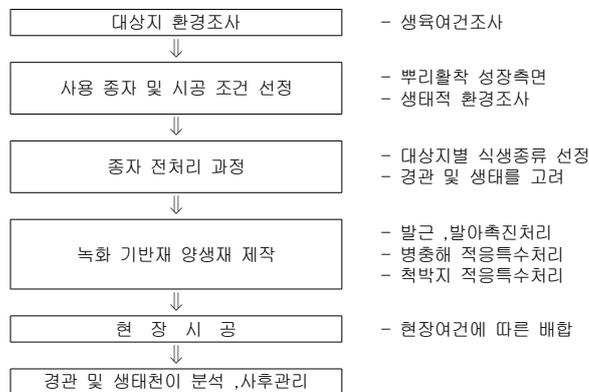
급경사지는 수목 등의 뿌리에 의해 안정된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너무 큰 수목은 강풍 등에 의해 급경사지의 붕괴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해당 유적의 식생 및 식재의 조사성과를 포함하여 식수·잔디 외에도 종자 뿌리기 등에 의한 녹화를 하고 간벌, 가지치기 등의 유지관리에 의해 붕괴방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식림을 하는 경우 지하 유구에 관해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 공법은

법면 녹화



나중에 서술하는 유적의 표현에 있어서 식생 복원과도 관련되므로 병용하여 검토한다.

법면 녹화 공정



나) 시설에 의한 붕괴 방지

경사면의 안정화 방법에는 위와 같이 경사면 자체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방법과 옹벽 등에 의해 경사면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법이 있다. 토사방지 옹벽·경사지 프레임 등의 설치와 개비온(돌망태)·흙포대를 겹쳐 쌓거나, 플레이트 있는 앵커를 박거나, 표면에 모르타르 뿌리기를 시공하여 유적의 보존에 대한 영향을 적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공법에 의한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급경사지 등의 비탈면 부분을 성형할 필요가 생기지만 해당 유적에 있어서 해당 경사지 등을 구성하는 지형 등의 중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절토 또는 굴삭의 토량이 최소한에 머물도록 신중히 검토한다.

앵커볼트와 개비온

앵커볼트



개비온(돌망태)



다) 그 외의 기술

최근 새로운 공법으로서 연속섬유복합 보강토 공법, 보강 지오텍스타일, 계단형 녹화보강 성토공법 등 절토·굴삭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자연적인 환경·경관을 배려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실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적에 있어서 지하유구와 경관을 적절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 또한 전통적 공법에 의한 석축 쌓기는 역사적인 의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해당 개소에 석축이 원래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객에게 해당 유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4) 유의점

뿌리의 영향 제거

- 유적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석축의 틈 사이에서 번식하는 잡초, 수목은 석축의 헐거움 및 배부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사이에 정기적인 제초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헐거움 및 배부름이 생기고 있는 석축의 부분과 일체가 되어 뿌리가 뒹켜 있는 경우, 혹은 뿌리가 석재에 균열을 생기게 하는 경우 적절한 범위의 해체수리가 필요하다. 또한 석축과 근접한 위치에서 수목의 식재를 피하도록 유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뿌리 진입의 방지

- 식물의 뿌리에 의한 악영향이 현저한 경우 해당 식물을 제거하고, 주변으로부터의 뿌리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토목섬유 등을 매설하는 것이 유효하다.

지표면의 보호

- 유적의 경사면은 항상 토사유출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우수·배수 구배의 지형조성을 통해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지표면을 지피식물로 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자 및 공법의 선택은 유적이 입지하는 토지의 토질·일조·수분 등의 환경조건을 충분히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면 재래종을 사용하도록 한다.

5) 유지 관리

유적지 내의 경사면에 존재하는 수목은 여러 자연재해에 의해 쓰러지거나 부러지면서 지반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유적의 보존이 위협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도괴의 위험성이 있는 고목 또는 노목의 가치를 정리하고 적절히 지주를 설치하는 등 도괴방지의 조치를 강구하고 필요에 따라 벌채를 검토한다.

또한 수목은 장기적인 시점에서 임상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부엽토층을 제거하고 지반면을 건조시켜 초목이 자라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다. 유구 보존 기법

1) 개요

유구가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있는 경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방법에 유구 보존이 있으며, 이 행위는 유구 그 자체에 대한 조치이다. 이러한 유구 보존은 유구의 열화 및 풍화, 파손이 진행되는 속도를 억제하거나 그 진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구 자체에 실시하는 보존 처리와, 유구가 훼손 또는 파괴된 경우에 그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유구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보존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는 보존 환경의 개선의 두 가지가 있다.

2) 기본원칙

보존 처리 및 보존환경의 개선 등, 유구 보존 처리를 필요로 하는 유적의 구성요소에는 유구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동굴 유적 및 암각 유적, 공룡 발자국, 석실묘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또한 후자로는 지하에서 발견되는 토양, 석재, 목재로 구성된 유적 등으로, 특히 정비 후에 유적을 노출시켜 전시하거나 또는 복토를 통해 지하유구를 보존하고, 성토한 윗면에 별도의 재료를 이용하여 유적이 표현될 수 있어 유구 표시 등의 방법과 병행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3) 수법

가) 보존 방법 결정에 필요한 조사

유구 보존 방침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각종 조사를 실시하고 열화 및 풍화, 파손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유구를 구성하는 재료의 성질을 포함하여 열화 및 풍화, 파손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원인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공법에 관해 결정한다. 원인 규명과 이에 기초한 적절한 보존기술에 관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하여 효과적인 유구 보존이 되도록 한다. 불충분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판단에 기초한 처리는 오히려 유구의 훼손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 비파괴 기술의 사용

실제로 유구의 보존공사 공법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정보 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비파괴 조사방법에 기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비파괴에 의한 조사방법의 대표 사례는 전기 또는 자기 등을 이용하는 지하 유구 탐사법이다. 또한 최소한의 천공에 의해 토질 및 지하수에 관한 조사를 하는 보링 등도 비파괴 기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비파괴 탐사 방법

지하투시레이다 (Ground Penetrating Radar)	GPR 장비는 지표상에서 안테나로부터 출발한 전자기파가 지하를 투과했다가 반사되어 오는 파장을 수신한다. 수신된 신호에는 전자기파가 땅속을 여행한 왕복 시간(주사)과 진폭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물체가 있는 곳의 깊이를 알 수 있으며 진폭의 변화로 매장 물체의 존재여부를 알 수 있다.
전기비저항탐사 (Resistivity)	전압을 물체에 걸어주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흘러보내는 전류의 양이 다르다.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정도를 전기저항이라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저항(R)은 전류가 흐르는 물체의 길이(L)에 비례하고 그 단면적(A)에 반비례한다. 같은 종류의 흙으로만 이루어진 토양에서는 전극배열이 변하거나 전류값이 변해도 전기 비저항값이 일정하겠지만 매장문화재가 존재할 경우에는 전기 비저항값이 달라진다.
자력탐사 (Magnetometry)	흙속에는 약 4~6%의 철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그 함량이 변하고 자력의 세기가 변하게 된다. 불의 사용으로 인하여 타고 남은 나무의 재속에는 자성을 띠는 성분이 남게 되는데 이것이 토양에 계속 축적되어 인간이 활동했던 자리에는 자력의 세기가 다소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또한 구덩이는 흙을 팠다가 나중에 다시 매워지면서 철성분이 많이 포함된 표토가 매워지게 되어 자력의 세기가 다소 높아진다. 이와는 반대로 동굴, 우물 무덤 등은 빈 공간이거나 철성분이 적은 돌로 이루어져 있어 자력의 세기가 주변보다 낮다.

다) 가역성

유구 보존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은 가역적인 성질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역적인 성질이란 해당 기술의 사용에 따라 유구의 재질이 변화하지 않고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한 성질을 말한다. 유구를 구성하는 부재가 풍화 및 열화에 의해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원재료의 성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강화처리 등의 보존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발굴조사에 의해 출토된 유구의 목부재에 대해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함유 수분 등을 다른 물질로 치환하는 것, 풍화 및 열화된 암석 또는 토양 입자간의 공극을 다른 물질에 의해 충전하고 강화를 도모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라) 공법 시험조사

유구에 대한 기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해당 기술의 사용이 유구의 보존상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유구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유구에 대해 직접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유구의 핵심 부분을 피하고 유구 전체의 규모에 대한 시험개소의 비율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할 면적을 최소한으로 한정한다.

또한 최소한의 샘플링을 하고 해당 시료에 대한 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본격적인 보존처리

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아직 실적이 없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나 기술의 사용에 관한 실적이 아주 적은 경우, 사전에 반드시 공법 시험 조사를 해야 한다.

마) 보고서와 보존 처리 후의 관찰

열화 및 풍화, 파손의 원인규명을 위해 실시한 조사의 내용과 그 성과에 기초하여 사용한 보존처리 및 실시의 경과 등은 보고서로 정리하고 출간한다. 특히 최신 기술을 이용한 경우에는 상세한 정보를 보고서에 게재하고 시공 후에도 경과 관찰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기술자 및 기능자의 역할

공사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를 포함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에 관계하는 기술자, 실제 보존처리에 관계하는 기능자는 유적을 구성하는 유구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의 기본원칙에 관해 충분히 이해하고 보존처리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기능자에 대해 보존의 목적과 유의점, 보존공법의 성질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공사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는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와 연대하면서 유구 보존기술에 관한 경험과 지식에 관해 충분한 의사소통을 도모한다.

사) 보존 처리

보존 처리란 유적의 열화 및 풍화, 파손의 원인·경과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그 진행을 방지하며 또는 그 속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유구·유물에 직접 시공하는 처리기술을 말한다. 토양, 석재, 목재 등 유적의 소재에 의한 차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열화 및 풍화, 파손의 원인·정도 등에 따라 보존과학적인 수법에 의한 재질의 강화처리방법을 포함하여 공학적 기법에 의해 구조보강 등을 하는 기법 등이 있어 선택해야 할 보존처리의 기술은 다르다. 전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수지의 도포 또는 주입에 의한 강화처리 기법을 포함하여 파손된 부재를 접착제에 의해 접합하는 수법 등이 있다. 그 외에 암각불 등의 암반표면에서 추출되는 광물 및 지의류 등의 제거에 관한 수법이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에는 앵커볼트 등을 이용하여 파손된 부재를 접합하는 수법 외에 조립 구조재를 외측에서 보강하기 위해 행하는 지지보강공사 등이 있다.

아) 보존 환경의 개선

보존 환경 개선이란 유구에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구 주변의 다양한 환경을 개선하고 보존상 필요한 조건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유구의 보존을 위해 실시하는 성토를 포함, 적절한 배수시설의 설치가 있다.

그 외에 주변의 구릉 지형과 일체가 되어 존재하는 석실 분묘 등의 경우에도 주변에서 유입되는 우수 등으로 인한 악영향을 방지하고, 석실 내부 습도 등의 보존환경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 분구의 주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수분뿐만 아니라 유구에 미치는 식생 환경의 영향, 주변을 통과하는 도로 및 철도의 통과 차량 등이 미치는 소음 또는 진동 등의 악영향, 관람객의 통행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적절히 제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4) 유의점

유구에 관한 보존 기술은 완전히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험을 동반한다. 특히 보존과학적인 수법에 기초한 보존처리는 열화 및 풍화의 억제를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한 수법이더라도 예상과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개별 유적의 성질 및 보존에 관한 상황 등에 따라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공법·재료 등을 신중히 선택하고, 실제로 시공하기 전에 반드시 시험적인 조사를 거쳐 유효성과 영향에 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 과정에 있어서는 면밀한 공정에 기초하여 조사와 처리를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보존처리 후에 있어서도 충분한 경과 관찰 및 적절한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 종료 후에는 그 공사 내용의 기록을 보존하고 수리 방침 및 방법, 공정 등을 보고서에 정리하여 출간한다.

라. 수리

1) 개요

수리는 각각의 유구가 가진 가치 그 자체에 관여하는 행위이므로 그 기술에 관해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수리의 대상이 되는 유구는 역사적 건조물 및 구조물 등 지상에 표출된 여러 유구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유구로 두 가지가 있고, 개별 유구의 형태 및 성질에 따라 열화 및 풍화, 파손의 정도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해야 할 기술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수리는 열화 및 풍화, 파손된 유구의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하여 본래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여 복구를 하는 보존을 위한 수리와 결실 또는 보수에 따라 가치가 변질된 유구 부분에

대하여 복구를 하는 복원 수리로 구분된다. 수리는 유구의 의장·재료·공법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구 전체의 구조 확보 및 마감을 위해 정비하는 것도 포함된다.

2) 기본 원칙

수리를 필요로 하는 유적의 구성요소

- 수리를 필요로 하는 유적의 구성 요소는 지상에 표출되어 있는 것과 지하에 매장된 유적의 일부가 현 지형과 일체가 되어 지상에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있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 현존하는 목조 및 석조의 역사적 건조물 및 구조물이 있다.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 현 지형에 유구가 잔존하는 고분의 분구 및 구(溝), 성곽 등의 토성 및 제방 등과 유적을 구성하는 독특한 지형에서 수리를 필요로 하는 여러 요소가 있다.

수리에 있어서 진정성

- 수리의 기본원칙으로서 문화유산이 가진 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의장, 재료, 기술, 위치·환경의 4가지의 지표에 기초, 해당 문화유산이 얼마나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즉, 얼마나 초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가 요구된다. 유적의 수리에 있어서 의장, 재료, 기술, 위치·환경의 관점에 기초한 진정성 유지가 세계문화 유산 등록 가능성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관점이 된다.

기록 작성과 공개

- 수리의 방침, 실시한 방법, 경과 등은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수리 전의 현황도면과 열화 및 풍화, 파손의 훼손도 작성, 현상 및 사료의 양면에서 변형에 관해 밝힌다. 수리 후에는 수리 전에 작성한 도면을 기본으로 수리한 지점의 보충 수정을 하여 수리 후의 도면을 작성한다. 또한 기록은 보고서로서 공개한다.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역할

- 수리사업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자는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와도 항상 충분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사업을 지속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발굴조사의 성과를 포함하여 해당 유적의 가치에 관한 전문적 견지에서 관계자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에 노력한다.
수리에 종사하는 설계·공사 감리자는 대상이 되는 유적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리의 기술 책임자로서 자각을 가지고 설계 및 공사를 총괄해야 한다. 또한 해당 유적의 배후에 있는 역사 및 문화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전통적 기술과 현대적 기술의 양면에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도위원회

- 수리는 아주 전문성이 높은 분야이다. 재질 강화 등의 관점에서는 보존과학 분야가 중요하고 구조 보강의 관점에서는 공학적인 분야가 중요하다. 따라서 수리의 실시에 있어서는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견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3) 수법

보존수리

- 보존수리는 훼손되거나 열화 및 풍화, 파손된 유구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해 본래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여 예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보존수리에는 해체를 동반하는 것과 부분적인 보수, 두 종류가 있다. 해체를 동반하는 경우, 구성되는 재료를 모두 해체하는 전면 해체수리와, 구조체 또는 골격 등을 남기면서 일부 해체만을 하는 부분 해체수리가 있다. 역사적 건조물 등의 열화 및 풍화, 파손된 부재의 일부만을 절제하고, 같은 질의 같은 규격의 신재를 이용하여 접목을 하는 수리의 기술을 포함하여, 부재의 부후 및 열화가 진행되어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역사적 건조물 또는 혈거움, 배부름이 생겨 불안정한 돌담 등의 구조물을 해체하고, 열화 및 풍화, 파손된 재료를 교체하면서 되 쌓는 또는 다시 쌓는 해체수리의 기술이 있다.

복원수리

- 보존 수리의 과정에 있어서, 결실 또는 개수된 유구의 부분에 대해 당시의 의장·구조·기술이 판명된 경우에, 당시와 같은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여 복원을 행하는 것이다. 역사적 건조물을 해체하고, 결실 또는 개수된 부분에 관해서 당시의 형태 및 의장으로 되돌리는 기술을 포함하여, 붕괴가 진행되는 석축 또는 고분의 석실 등의 구조물을 해체하고, 당시의 형태로 되돌리는 수리의 기술이 있다. 그 수법은 보존 수리와 기본적으로 같다.

4) 유의점

수리공사의 상세한 부분은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 등에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일반 토목·건축공사의 경우보다 수리사업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수리공사를 총괄하는 설계·공사 감리자, 실제의 수리공사에 종사하는 목수 및 석공 등의 전문 기능자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수리공사는 시공 중 및 해체 후에 수리방침을 변경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새롭게 판명된 조사결과 등에 기초하여 신속히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한, 공사 과정은 세밀한 공정에 기초하여 조사와 시공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시공 후에도 충분한 경과 관찰 및 적절한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종료 후 공사내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수리 방침 및 방법, 공정 등은 보고서에 정리하여 출간한다.

마. 식재에 의한 보존 기법

1) 개요

고분의 분구, 토축성 등 지형에 유적으로서의 가치가 일체화되어 있는 유적은 그 보존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식재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경사면의 산림을 간벌하고 수목을 제거, 적절한 녹음을 유지하고 약간의 성토와 절토에 의해 지형을 복원하거나, 산재되어 있는 석재를 정리하고,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피식물로 지표면을 피복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이처럼 필요최소한의 조경을 실시하여 유적을 덮고 있는 표토의 지표면을 안정시킴으로서 그 보존을 도모하고, 동시에 유적의 규모·형태를 알 수 있도록 표현하여 유적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기본 원칙

식재에 의한 보존은 지하에 매장된 유적이 외기로부터 받는 악영향을 피하고 그 보존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반 정비는 유구의 상면에 적절한 두께의 피복층이 확보되도록 지반을 조성하고 이 조성된 피복층에 의한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유적 정비의 보존 방법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드잡이로 주변의 석재 등을 옮겨서 정리하고 잔디 식재로 지표면을 피복하는 방법이었으나 석재로의 영향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삼합토를 사용하여 마감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3) 수법

지하유구의 보존과 조경

-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유구는 적절한 두께의 피복토를 확보하여 보존하고 식물을 식재하는 것에 의해 조성면 위에 유구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사찰지 등의 유적은 발굴 조사에 의해 발견된 각 건물의 기단 위치와 평면적 규모를 잔디 등의 지피식물 또는 초목류를 사용하여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 같은 유구의 표현을 위해 행하는 식물의 식재는 유적의 조경 기능을 겸하여 갖추고 있다.

조사 사항

- 보존에 있어서는 우선 현상에 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조사는 보편적으로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조사 사항에 관해서는 성토 보존이 필요한 범위, 조경 보존의 필요 범위, 조경이 필요한 경사면, 식생 밀도 등 식물의 상황 등의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뿌리 제거

- 기존 식물의 뿌리가 유적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벌채 및 뿌리 제거에 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유적뿐만 아니라 지상에 표출되어 있는 석축 등 유적의 보존상, 벌채·뿌리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벌채·뿌리 제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발굴조사, 기록 작성, 유물 채집 등이 필요하다.

벌 채

- 벌채는 가능하더라도 뿌리 제거가 지하에 매장된 유적의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지하유구의 보존을 위해 벌채 후 뿌리를 고사시키는 방법이 있다. 나중에 뿌리가 섞여 구멍이 생기는 경우에는 함몰된 부분에 적절히 흙을 보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급경사면의 벌채

- 급경사면 벌채는 유적의 보존적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뿌리를 제거함으로써 경사면의 붕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급경사면의 벌채, 뿌리 제거는 비탈면을 먼저 안정화한 후 벌채, 뿌리 제거의 영향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환경 개선

- 산림이 옥어진 경우에는 방지대책과 개선책으로 적절한 간벌과 보충 식재가 필요하다. 또한 유적의 표현과 관련하여 향후 목표로 하는 산림의 수종구성 및 밀도에 관해서는 해당 산림과 인접한 유적에 대한 역할은 물론이며 주변지역을 포함한 현 식생과 예전의 식생과의 비교, 현상에 있어서 생태계의 유지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4) 유의점

현 상태의 지형에 나타나 있는 유적의 형태상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어떠한 기술적 처리가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분의 석실 및 성곽의 석축 등에 있어서는 석조 구조물에 대한 수목 뿌리의 영향을 제거하고 우수 등이 침투하기 어려운 지반 정비가 되도록 한다.

5) 유지관리

식재에 의한 보존은 주변 수목의 성장에 맞추어 적절한 간벌이 필요하다. 또한 성목에 관해서는 주변의 제초가 필요하다. 또한 식재 후 임상이 안정될 때까지 관리 작업을 통해 경과 관찰을 하며 그 경과를 기록해가는 것도 중요하다.

수목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유목(幼木)을 육성하면서 경우에 의해 보충 식재도 병행하여 갱신과 관리를 계속적으로 실시해 가는 것이 필요하며, 수년 동안 간벌을 계속하고 2~3년간 경과 관찰을 실시, 다시 간벌하면서 관리한다.

보존 관리 시설

가. 보호각

1) 개요

보호각은 주로 자연에 의한 훼손에서 유적의 구성 요소를 보호하거나 지상의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보존시설이다. 좁은 의미로 보호각은 유적의 구성 요소에 지붕을 씌우거나 벽을 둘러쌓아 주로 자연적 요소에 의한 열화 및 풍화를 억제한다. 넓은 의미로는 유적의 구성 요소를 둘러싼 보존환경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시설 전반을 가르키며, 발굴된 지하 유구의 노출 전시를 위한 반개폐식 시설 및 고분의 석실 및 동굴의 벽화에 있어서 보존환경을 제어하기 위한 밀폐식의 시설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석비·석탑·석불 및 암각불 등 석조물의 직사광선 및 풍우 등에 의한 풍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통 건축형 보호각이 각지에서 설치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유적의 구성요소를 보호하기 위해 철골조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2) 기본 원칙

보호각은 유적의 구성요소, 주변의 환경을 물리적 시설에 의해 내·외부로 나누어 훼손 등의 요인이 내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제 또는 친화함과 함께, 대상이 되는 구성요소의 내부 환경을 안정적이며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호각으로서 요구되는 주요한 기능으로서는 직사광선·풍우 등 기상현상에 의한 악영향의 배제 또는 완화, 온습도 및 일조 등의 유구를 둘러싼 환경의 조절 또는 제어 등을 들 수 있다.

보호각의 설치는 유적의 구성 요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의한 훼손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때로 균류 및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풍화를 억제하고 배제하기 위해 배수·통풍 등의 기능에 관해서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충분한 보존 기능을 하기 위해서 보존과학적 처리의 병용에 관해서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보존환경의 정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기법

가) 보호각의 밀폐도에 의한 분류

밀폐도에 따라 구조를 분류하면 보호각은 대략 「개방형」 「반 개방형」 「폐쇄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보호각의 상세분류와 장단점

(김홍식, 2006, 『문화재보호각개선펙안국제학술심포지움, 문화재보호각설계기준제안』, 국립문화재연구소, pp101)

형 태	사 용 처	사 례	비 고
통기형 한옥	주로 규모가 작은 석조문화재에 많이 사용.	서산마애삼존불, 경주 배리삼존불, 영주 신암리 마애불, 서울 청운동 석불, 연천암각화 등	관람여건 열악 인위적 훼손에 대책필요
전시형 한옥	보물 등의 주요 문화재	정림사지 불상보호각, 종각, 청경기념비전, 석굴암	신자들의 향불, 공양, 촛불, 인간에 의한 온습도의 증가, 공기의 비순환, 상하부의 온도차에 의한 결로, 조명에 의한 복사열 발생
통기형 자유 형태		골굴암	풍수에 대한 방어만 가능. 복사열, 자외선에 무방비,
반밀폐형 자유 형태		원각사지 10층석탑 보호각	관람환경 악화. 환기 불충분 내 외부 온습도 차이 발생
전시형 자유 형태	도요지 주거지 패총 공룡화석	김해 회현리 패총	밀폐형이면서도 관람가능. 개방형이면서 외부관람 공조시설, 온·습도 조절

또한 보호각은 전시시설로서 기능을 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람, 보존, 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고 보호각 내의 동선이나 안내시설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낙산사 화재로 인한 동종의 소실을 계기로 보호각에 대한 방재시스템의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 보호각의 구조

보호각의 구조는 외기의 온·습도 변화에서 오는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단열과 누수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특히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햇볕에 의한 복사열의 방비를 고려해야 하며, 빛의 차단에 의한 관람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지면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기를 고려해야 하며, 결로의 배수를 고려해야 한다.

다) 설비

보호각은 습도 조절성, 단열성,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자외선 차단과 그늘막의 설치, 통기의 확보를 기본으로 한다. 더불어 보존과학적 측면-응용 지질학적 조사, 보존환경 측정, 보존 수복계획에 따른 건축 디자인이 되어야 하며 방재기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보호각은 동·하절기 기온 편차에 따른 조직의 이완과 습기 유입에 의한 생물학적 피해, 장시간 복사열의 노출에 따른 수지의 열화현상, 천광 투과에 따른 실내 온실현상, 자외선 노출에 따른 재료의 탈·변색, 시설에 대한 인위적 훼손에 대한 보호시설이어야 한다.

보호각은 단열성과 보온성을 확보하는 외적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않는 위치환경에 보호하는 것이 원칙으로 현대적 건축 기술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보존원리를 생각하여 보다 나은 보존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전통적인 기술이 문화재 보존에 훨씬 우수할 수가 있다. 또한 형태에 따라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포함한 각종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4) 유의점

보호각은 유구의 양호한 보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고, 유구 보존 처리와 병행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법에 의한 유구 보존의 효과는 공사 후 유지관리를 적절히 하는 것에 의해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각각의 기법에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의 기법을 병용하여 적용하는 것에 의해 서로의 결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호각의 계획·설계는 이같은 역할·기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보유 환경의 유지를 위해 보호각에 따른 공조 설비 등의 설비에 의해 온·습도 등의 적절한 조정·제어를 실현하기 위한 시설운용의 수순·체제 및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적절한 대처 방법 등에 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5) 유지 관리

유구의 보존을 위한 보호각은 적절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만 충분한 기능을 발휘한다. 이를 위한 보호각 설치의 설치 후의 관리체제 및 관리방법을 검토하고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각에 따라 유적의 구성 요소의 환경 제어 및 조절하는 기술은 완전히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적의 입지·지질과 보존처리기술의 차이에 의해 항상 시험을 동반하고 있다. 유구의 보존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적용한 공법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존·관리의 대상인 유구의 상태에 관해서는 충분히 경과 관찰을 하고 알맞은 유구의 재처리 및 보호각 설비의 개선을 검토·실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 방재시설과 방제

1) 개요

우리나라 문화재는 그 대부분이 나무, 흙, 돌로 구성되어 있고 유적지의 경우 지하에 매장

되어 있는 유구와 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건조물 및 구조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손상이 되거나 화재 등의 재해를 받기 쉬운 구조물이다. 이러한 유적지에 있어서 방재는 유적의 종별에 관계없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이 되는 요소의 입지·구조·재료 등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르다. 이러한 유적에 대해 방재에 관한 기법은 유적에 미치는 다양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가 생긴 경우에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재해의 성질 및 유적의 현상을 충분히 파악하여 방재 대책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재해는 복합적인 상승효과에 의해 피해를 더욱 크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유적에 있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재해의 성격·위치·규모 등을 파악하고, 다양한 재해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재계획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처리 및 체계를 구축한다.

2) 기본 원칙

방재에 필요한 각종의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포함하여 방재설치의 조치를 해야 할 개소를 설정하고 각종 대책에 관해 검토를 한다. 방재시설의 설치에 자동화재경보기, 방화수조 및 살수시설 등 방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하나의 계통으로 계획하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별시설의 규모, 배치 등을 검토한다. 방화수조의 지하 매설 위치와 급경사지 등에 대한 붕괴방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지하유구의 보존의 관점에서 발굴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병충해 방제를 위한 약품 살포, 도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유적지 내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한다.

3) 기법

방재시설이란 유적에 화재 등 재해에 의한 훼손, 손실을 예방하고 재해가 생긴 경우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에는 예방시설이 있고, 또 하나는 재해발생을 신속히 알려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시설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방재는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역사적 건조물이나 구조물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보존과학적인 처리를 기본으로 한다.

가) 방재와 방제의 대상

유적을 구성하는 요소 중 방재의 대상은 여러 종류로 다양하며,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것도 넓게 포함한다. 단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재해의 종류는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재질·구조·입지 등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방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요소 중, 역사적 건조물의 훼손요인은 크게 ①물리적 요인, ②화학적 요인, ③균·벌레에 의한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 등에 의해 역사적 건조물 등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파괴될 우려가 있다. 또한, 지형적인 측면에서 유적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지형이 큰 비·지진 등의 영향을 받아 무너지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다.

나) 방재를 위한 조직 정비

재해 대비와 재해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체계를 갖추어 둘 필요가 있다. 방재는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재해가 생겼을 경우 주변의 소방서나 경찰서, 병원, 문화재 관련 자원봉사단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연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도 전문적인 곳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재해가 생겼을 때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미리 재난대책 매뉴얼을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다) 방재의 요인

유구 및 건조물 또는 구조물의 훼손 요인은 크게 물리적 요인, 화학적 요인, 균·벌레에 의한 훼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해 요인은 화재, 풍수해, 폭우 및 병충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재해의 성질, 유적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이하와 같다.

물리적 요인에 의한 훼손

- 화재

유적에 있어서 역사적 건조물 및 수목 등을 포함하여 목재 등의 가연성 재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많고, 이것은 항상 자연적·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생기는 화재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관람객·방문객들의 빈번한 출입과 각종 종교행사 등으로 인하여 화재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보호각, 야외 노출, 박물관 등)이 다양하여 소화시설 설치 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가연성의 구성요소를 가진 유적은 피해의 결과, 보존해야 할 구성요소의 손상, 소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같은 구성요소에 대해 종합적인 화재방지의 관점에서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방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풍수해 및 재해

태풍·호우·장마·강풍·지진 등의 자연 재해는 유적 구성 요소의 유출·손상 외에 토사의 유입, 급경사지 및 석축의 붕괴, 낙석, 나무 도괴, 지형변형 등에 의해 유구의 파괴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같은 자연 재해를 받기 쉬운 구성요소에 대해 구조 보강과 급경사지 붕괴방지의 처리 필요가 있다.

- 공기오염에 의한 분진물질과 목재의 화학작용에 의한 훼손이 가장 크며 기타 방충, 방화 등의 약제와 단청안료 및 이질재료간의 화학작용에 의한 훼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공기에 노출된 철물은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여 산화하는 부식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부식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대기부식, 화학약품·침식성 물질과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화학부식 외에 전기화학적 반응에 따라 생기는 전해부식 등이 있다. 일반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부식은 전면부식의 형태이지만 성질이 다른 재료의 접촉에 따른 부식은 국부 부식이 진행되어 개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석조 문화재도 옥외에 전시되는 경우가 많아 대기오염, 산성비 등의 영향으로 표면이 부식되고 오염이 된다. 그 중 석조 표면에 생기는 흑색 오염물층은 공기 오염물질, 유기물, 철과 망간 등의 유색 광물의 이동과 침착 현상에서 생길 수 있다. 또한 물에 의한 용해나 가수분해 작용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 흙으로 구성된 유구의 경우 발굴조사 되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은 기념물로 지정한 후 복토하여다시 원상으로 보존하거나, 현 위치에서 영구적인 보존대책을 세운 후에 노출 전시하여 보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보존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복토하여 보존하지 않는 이상, 유적의 환경이 습윤 상태에서 건조 상태로 이행, 또는 습윤 건조가 반복되는 등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현장에서 보존된 유적이 원형으로 안전하게 보존될 수 없다. 이는 유기질을 포함한 유물과 유적의 경우 건조한 상태에서 훼손되거나 수축 변형되어 원래의 형태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의 접촉, 물에 대한 작용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며 습윤 상태를 유지하는 등의 보존과학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균·벌레에 의한 훼손

- 목재나 직물, 플라스틱 등의 유기질 재료는 곰팡이와 기타 균류의 침식작용에 따라 재료의 분해를 초래한다. 부식은 이러한 현상을 가르킨다. 이외에 곤충류에 따른 식해(食解)가 각종 재료에 생기지만 목재의 흰개미나 목재를 먹는 곤충류를 시작으로 섬유류를 먹는 비토루 등의 영향이 현저하다. 또 곤충류 외에 쥐 등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균류에 의한 생물학적 원인은 유지질재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석재나 콘크리트 등의 여러 재료에도 일어나는 현상이다. 균에 의한 훼손의 대표적인 것은 곰팡이류에 의한 부식이다. 해충에 의한 훼손은 흰개미에 의한 훼손이 가장 크며 목재 심재부분의 공동화를 가져와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균과 벌레에 의한 훼손은 균과 벌레의 식생환경이 만들어질 때 생기는 것으로 주로 습기가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석재표면이 석재 내부와 분리되어 층상으로 구분되는 박리현상이 있으며 그 외 석조에는 지의류나 선태류의 영향에 의해 석재표면의 용해나 부식을 시키는 요인이 있다.

라) 조사 사항

방재 조치를 적절히 강구하기 위해서 해당 유적에 생길 수 있는 재해를 다양한 요소와 그 주변 구역에 관한 상황 조사를 포함하여 장소, 내용, 규모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요 조사

-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제요소를 파악하고 상정되는 피해의 내용·규모 등에 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한 조사를 한다.

기초 조사

- 기초조사에 있어서는 개요 조사에 있어서 확인된 제요소의 방재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를 검토하기 위해 상세한 상황 조사를 한다. 이미 방재 처리한 것에 관해서는 해당 유적의 방재에 관한 현상과 과제를 포함한 방재 조치에 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설치된 방재시설의 배치·규모 등이 해당 유적의 방재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역할·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관해 평가를 하고, 다른 유적에 있어서 비슷한 방재시설의 방재조치 효과에 관해서도 조사연구를 한다.
또한 방재시설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데 있어서 지하유구 보존 차원에서 사전에 발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때때로 방재시설에 있어서 방화수조 설치와 법면 붕괴방지처리에 있어서는 유구 등의 보존상황 등에 관해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공법 시험 조사

- 방재 기술 중 구조 보강 및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는 유적의 구성 요소를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 시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구조 보강은 유적의 구성 요소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법 시험 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역사적 건조물 등의 수리를 할 때 내풍·내진에 관한 조사를 한 후에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강 등의 수법에 관해 검토하고, 필요한 보강재 등에 관해 강도실험을 한다.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는 유적의 구성요소인 수목·목재 등의 일부에 방제 효과와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험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 방재 시설

역사적 건조물의 방재 조치로서는 조기 발견, 초기 소화, 연소 방지 등을 위해 여러 가지 기구나 설비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설비가 화재 발생 시 언제라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설이나 설비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설명되어야 하고 소방관계 기관 등의 지도를 받아서 정기적인 점검이나 훈련을 행하는 것이 좋다. 방법에 대해서도 역시 정기적인 순찰이나 점검이 중요하며, 특히 공개되고 있는 역사적 건조물의 경우 가능하면 방화나 방범상 눈에 잘 띄게 하고, 일정 시간마다 또는 관람시간 종료 후 순찰이나 점검이 필요하다.

화재방지에 관해서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화재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시설 설치가 있으며 근접하는 건물에도 설치를 검토한다. 누전에 의해 화재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전화재경보기에 관해서도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또한, 화재 발생을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알리기 위한 비상통보설비를 설치한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 피뢰시설

높이가 20m이상인 건축물이나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생석회 및 제6류 위험물은 제외)을 취급, 저장 또는 제조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 포함), 옥내 저장소 및 옥외 탱크 저장소가 법적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적인 설치대상은 아니지만 낙뢰의 가능성이 많은 건축물, 공작물이나 광고탑, 고가수조 등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적절한 피뢰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적이 있어서 피뢰시설은 방화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건조물에 설치하는 것이 있고, 유적의 경관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용마루위에 도체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또한 충분한 피뢰효과가 예상될 경우에는 주변 건물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것이 곤란인 경우에는, 유적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배려하면서 독립 피뢰침 설비의 설치에 관해 검토한다.

- 방화대

유적의 구성요소인 역사적 건조물 등 방재가 필요한 요소의 주변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울타리 등의 공작물 또는 식재를 하여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가 역사적 건조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화대를 설치한다. 또한 방화대는 나중에 서술하는 방풍대로서의 역할·기능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화재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시설

- 화재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시설로서 화재의 발생을 조기에 알리기 위한 자동 화재경보기 등의 경보 장치, 소화기 외에 초기 소화를 하기 위한 소화 설비의 설치 등이 있다. 이러한 장치·설비는 일련의 체계로서 기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의 소방서에서 소방대가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초기 소화를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검토를 포함하여, 계통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상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 소방서와 협의하여 지도를 받고, 화재 발생 시에 적절한 행동을 하기 위한 소화훈련을 실시하며, 설치한 시설의 보수점검 및 보수 관리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유적의 보존에 유의하고, 유적의 경관을 배려한다.

방화설비 등의 종류 및 설비

설 비		내용과 유의점
경보 장치	자동화재 경보기	화재에 의하여 생기는 열 또는 연기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를 발견하고 벨, 사이렌 등의 음향장치에 의해,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나 거주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역사적 건조물 등의 설치는 설치위치와 색상의 연구로 눈에 잘 띄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누전 경보기	저압 옥내배선 또는 전기기기 등의 전로에서 대지로 일정치 이상의 누전전류가 흐를 경우,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리고 누전에 의한 화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건조물에 있어서 전력회사공급의 외선인입개소마다 설정한다.
	자동화재통보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와 연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알리는 설비이다.
	비상경보설비	화재의 발생을 깨달은 관계자 등이 음향장치에 의해, 해당 소방대상물에 있는 자에 대하여 비상을 알리는 것이다.
소화설비	옥내소화전	건축물내의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도록 고정되어 있으며 소방대상물 자체요원에 의하여 초기소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설비이며, 일반적으로 수원, 고가수조 또는 소화용 펌프 및 전동기 기동장치 배관, 개폐 밸브, 호스, 노즐, 소화전함, 비상전원 등으로 구성된다.
	옥외소화전	건축물의 1층 및 2층 부분의 화재 소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중기화재 및 인접건물로의 연소방지 단계에 사용된다. 그 외 옥내 소화전의 대체(건축물의 1층 및 2층 부분에 한함)로서 설치된다.
	물분무 등 소화설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물분무 소화설비: 미세하고 균일한 물방울을 살포하여 연소면을 덮음으로서 스프링클러 설비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특수한 대상물을 효과적으로 소화하는 것 외에 냉각효율이 좋기 때문에 대상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②포 소화설비: 물만으로는 소화가 어려운 가연성 인화성 액체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 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미세한 포의 집합체가 연소물의 표면을 덮어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효과와 포에 포함되어 있는 분산된 물의 냉각효과에 의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③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보통 공기중에 21% 함유되어 있는 산소농도를 일정농도까지 내려 연소를 계속할 수 없게 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소화하는 설비로서 불연성 가스 중에서 비교적 값이 싸고, 기화 팽창률이 큰 액화 이산화탄소를 이용한다. ④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가연물과 산소의 화학반응을 억제하고 냉각과 희석작용으로 소화하는 설비이다. 할로겐 화합물소화설비에는 할론1011, 할론2402, 할론1201, 할론1301 등이 있다. ⑤분말 소화설비: 불연성가스(주로 질소가스)의 압력에 의해 소화분말을 배관내에 보내고, 고정된 헤드 또는 노즐로부터 소방대상물 또는 방호구역에 분말 소화 약제를 방출하는 설비이다.
피난설비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피난교, 피난 사다리, 피난용 트랩, 피난 로프, 미끄럼대	방화대상물의 이용자가 피난시설(계단 등)을 사용할수없는 경우에 피난기구의 이용과 피난시설로 쉽게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 등을 설치하여 비상시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는 피난을 피하는 시설이다.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도로에 설치된 공설 소화전 및 지하수조와 지상수조의 저수조로서 대규모 건축물 또는 대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대상물의 연소 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공설 소방대가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소방용의 수리를 말한다.
소화활동설비	연결 송수관설비, 연결 살수설비	유해한 연기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게 피난시키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제연설비,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가 즉시 화재현장에 도착, 송수관에 연결하여 화재발생 장소에 물을 방수하여 소화하는 연결송수관설비, 소화활동이 곤란한 소방대상물에 송수구 및 배관에 소방펌프 자동차로부터 물을 송수함으로써 살수 헤드로부터 방사하여 소화하는 연결 살수설비 등이 있다. 그밖에 일반 건축물의 지하 시설에 대한 비상 콘센트 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연소방지설비등이 있다.

바) 소화설비

소화설비에는 소화에 직접 관계되는 장치·설비 등과,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 있다. 전자에는 소화전 설비·트렌처·스프링쿨러·방수총 등이 있고 후자에는 방화수조·펌프실·배관 등이 있다. 또한 소방대에 의한 소화활동과 관련하여 소방차의 진입을 위한 도로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유적의 보존 및 유적의 경관 유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소화 설비

- 직접 관련된 설비로서 소화기에 관해 필요한 개수·배치 등을 검토한다. 소화기 및 소화전은, 해당 건조물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화재 발생 시에 소화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건조물 등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병용하여 해당 건조물 주변에 방수총을 설치한다. 수막소화설비(트렌처)는 소화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건조물 등의 지붕 속에 많은 배관을 부설하여, 지붕 위에 물의 분출구수를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해당 건조물의 구조·의장 등의 보존과 관련하여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근접하는 다른 건물과의 간격이 좁아 소화전·방수총 등에 의한 소화가 곤란한 경우 수막에 의한 연소방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설치를 검토한다.

자동살수설비(스프링쿨러)는 실내에 있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살수전의 금속편이 녹아서 자동적으로 살수하고 실내에 있어서 연소를 방지하는 장치로, 소화전·방수총 등에 의한 소화효과가 그다지 기대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를 검토한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건조물 내부의 유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설치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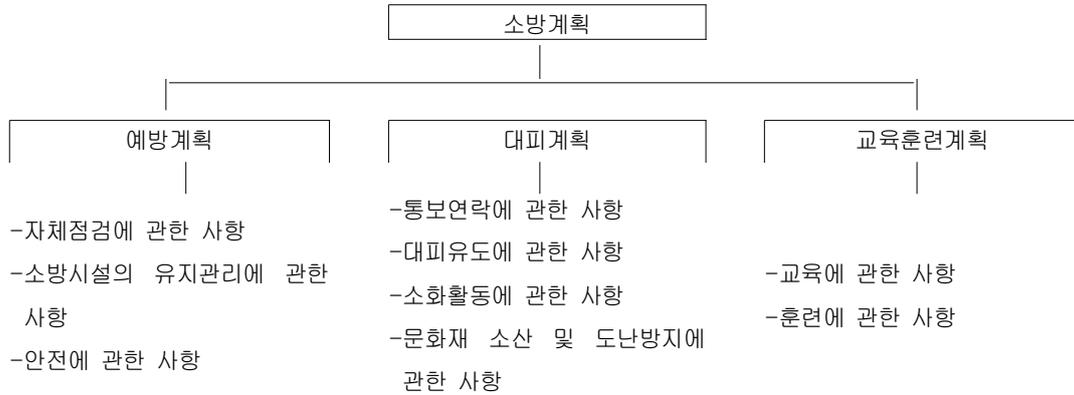
그 외의 시설

- 소화에 필요한 그 외의 시설로서는 방화수조, 펌프실 등의 저수·송수에 관련된 시설이 있다. 방화수조의 저수량은 소방서가 출동하기 전까지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양을 계산하여 산정하며, 유적의 보존에 영향이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한다. 펌프실 및 가압 송수설비 등의 설치는 경관을 배려하고 소방용 펌프동력 설비의 성능에 관해서 소화전·소방요원을 고려한다. 또한 야간 소화 활동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명장치의 설치를 검토하고, 자동화재경보설비의 화재감지와 연동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사) 소방계획의 수립

소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유적지내 건축물의 배치와 주변의 환경 등을 감안, 자체 실정에 적합하도록 운영한다.

소방계획의 사례



4) 유의점

방재·방제에 관한 조치는 이미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 유적의 지형적 특징에 의해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방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경우와 유구보호, 수리, 보존 시설의 설치 후에 대책을 수립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도 보존과 활용의 관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실시한다.

또한 방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가능성이 있는 개소를 한정하여 정기적으로 상태를 관찰한다. 병충해에 의한 피해는 초기 단계에는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범위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개소·상황 등에 관해 조기에 발견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병충해 방제의 기본이다. 대책 검토를 포함하여 아주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에서 반드시 전문가 및 전문 업자 등과 협의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 표석·안내판 및 경고판 등

1) 개요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43조 (권한의 위임)에서는 표석·안내판 및 경고판의 설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지역이나 문화재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내용과 서술방식 또한 자유롭게 구성된다. 이러한 표석·안내판 및 경고판 등의 보존 시설은 인위적인 파괴를 방지함으로써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와 현상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사적의 관리에도 유효하다.

안내판에는 종합 안내판과 보충 설명을 하는 개별 안내판으로 설명을 하며, 주의판, 경고판, 인지판 등은 주의, 경고, 위협, 예방을 하여 보존을 도모하는 등, 유구, 또는 역사적 건조

물 및 구조물과 일체가 되어 해설 또는 보존의 기능을 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유적 정비계획 시 안내판, 주의판, 경고판, 인지판의 배치를 검토하고 일관된 방침에 기초하여 재료·규모·의장 등을 검토한다.

2) 기본 원칙

관람객이 목표로 하는 지점을 적절히 유도하는 목적으로 유적의 안내, 방향 등을 나타내는 방향표지판, 유적의 주요한 출입구 중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종합 안내판을, 구역 내 갈림길, 광장에는 부분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람객이 자신의 위치, 주변의 상황, 목표 지점, 시설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험지역에 대한 주의판과 경고판에 의해 유구와 시설에 대한 보존을 도모한다.

안내판, 주의판과 경고판은 상호간에 충분한 관련성을 가지고 의장적으로 통일성이 있도록 하며, 그 외 방향 표시판·유도 블럭 등을 병용하는 것도 유효하며 그 외 주의, 금지, 위험, 예방 등의 사항을 기입한 인지판도 알맞은 위치에 설치한다.

3) 기법

(가) 안내판 및 경고판 등의 구성 내용

안내판 및 경고판은 유적의 내용을 현지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안내판의 설치에 유적의 보존과 활용의 관점에서 유적의 도입부 또는 중요한 장소, 금지 구역, 보존 구역 등의 적절한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적의 성격과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금속·콘크리트·목재 외에 석재 등의 적절한 재료에 의해 설치한다.

안내판에 포함되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은 ①유적의 명칭지정, ②번호, ③소재지, ④전체 도면 또는 그림, ⑤설명 사항(유적의 연혁, 발굴조사 과정, 유물 설명, 유적의 위상 등), ⑥그 외, 참고 사항 등이며, 금지, 주의, 경고판에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금지, 주의, 경고를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채택한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안내판 업무 매뉴얼”을 통해 안내판 문안 작성의 기준을 설정하여 실제 안내판을 이용하는 방문자가 쉽게 안내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 표석·안내판 및 경고판 등의 방향설정

(가) 표석·안내판 및 경고판 등의 규격

문화재보호법 제68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에는 표석, 안내판 및 경고판의 설치에 관한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안내판의 재료, 기재사항, 형태, 기재방

법, 설치장소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은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단 문화재청에서는 안내판의 크기와 형태, 색상과 관련하여 문화재의 관람에 방해되지 않으며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나) 표석·안내판 및 경고판의 종류

표 석

- 표석은 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현지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표석의 설치에 있어서는, 유적의 보존과 활용의 관점에서 지정지의 도입부 또는 특히 중요한 장소의 적절한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석의 본체는 유적의 성질과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금속·콘크리트·목재·그 외의 적절한 재료에 의해 설치한다.

경고판

- 유적으로 지정지 내의 특정장소에 관계하는 것으로, 특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장소를 나타내는 표석 또는 그 보존상 주의해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경고판 또는 주의판을 설치한다. 경고판 또는 주의판은 유적의 보존을 위해 해당 장소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나타내는 것이며, 목제 또는 금속제 등의 간이 또는 소규모의 표시에 의해, 유적의 가치를 나타내는 구성요소의 보존을 위한 금지사항 등을 알리는 기능을 가진다.

안내판

- 유적을 공개·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방문자에 대하여 부지 내에 소재하는 유적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 및 편의 시설 등, 시설의 소재를 나타내는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방문자의 유적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유구 등의 명칭을 나타내는 안내판(설명판)을 설치한다. 안내판에는 종합 안내판과 개별 유구의 설명을 하는 개별 안내판이 있다.

출입구

- 유구의 보존을 위해 담장과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관리의 관점에서 적절한 위치에 관리를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단, 개폐 시설이 있는 유구는, 문이 관리를 위한 출입구의 기능을 겸한다.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생각지 못한 재해·사고 등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담장 등을 설치한 구역 내에 관리자의 허가 또는 동반을 허락받지 않고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출입구는 열쇠를 채울 수 있도록 해 둘 필요가 있다.

담 장

- 담장은 주로 인위에 의한 훼손에서 유적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를 지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인간의 침입을 본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금지를 명시하기 위한 2가지의 관점이 있으며 두 가지는 일체적인 관계이다. 또한, 담장의 의장 검토에 있어서는, 유적에 어울리는 분위기가 되도록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안내매체간의 연계

안내 매체간의 연계는 문화재 안내의 수준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안내 매체간 중복된 서술 내용이 없어야 하며 관람정보와 동선안내가 일관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안내원은 문화재의 역사와 설화, 안내책자는 문화재의 세부특징과 양식, 리플렛에는 전체지도와 관람동선, 관람제도안내, 안내판은 문화재의 간단한 특징과 연혁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주의, 금지, 예방을 위한 주의판·경고판을 적절히 설치하여 유적 보존을 도모하고 사고를 예방한다.

라) 유의 사항

당해 문화재에 가까이 위치하여 충실한 안내·경고·주의·예방기능을 하기 위해 문화재 안내판·경고판·표식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안내판·경고판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어야 한다. 관람자의 동선과 시각을 고려하며 문화재를 돋보이게 하는 곳에 조용히 있어야 한다.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재질과 색을 사용하여 과도하지 않은 형태를 지녀야 한다.
- ②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안내판은 문화재의 성격에 맞게 간단한 연혁이나 특징,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세부적이고 깊이 있는 사항은 책자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 ③ 명칭과 용어가 정비되어야 한다. 문화재 안내판과 도로표지, 지방자치단체 표지, 박물관 안내 등에 쓰이는 문화재 용어와 외국어 표현을 정비한다.
- ④ 안내 매체별 역할을 분담한다. 문화재를 안내하는 수단은 안내판의 외에도 전문 저술, 안내책자, 리플렛, 음성안내, 해설사의 안내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중복되지 않고 상호 연계되도록 한다.

마) 유지관리

표석·안내판 및 경고판의 유지 관리에 있어서 일상적인 순찰시 낙서나 장난에 의한 훼손의 여부를 점검하고, 시간의 경과에 의해 내용의 전달이 어려워지거나, 학술적인 발견이나 연구에 의해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즉시 안내판의 내용에 적용되도록 노력한다.

5. 주변지역 보존

1) 개요

사적의 보존을 위해서는 사적의 지정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필요한 범위를 보존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주변 환경의 보전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시행령 제5조, 제52조,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유적 등의 주변 환경의 보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유적의 지정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의 일체적인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유

적의 보호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사고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유적의 가치는 개별의 유적에 따라 다양하며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역의 범위에 대해 지정 등의 법적조치에 기초하여 명확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는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제도에 규정이 없다. 이 같은 이유에 의해 이제까지 이 조항이 현실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

또한, 고도보존법은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 2 조(정의) 2.에서는 “역사적 문화 환경”이라 함은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 및 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건조물·유적 등과 주위의 자연환경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3.에서는 “고도보존사업”이라 함은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하 “보존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 문화재와 주변 환경을 일체적으로 보호해야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기본 원칙

유적과 주변 환경의 일체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유적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적이 입지하는 환경과 일체가 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유적을 둘러싼 자연환경의 변화, 유적의 주변 지역에 있어서 대기오염, 소음, 경관 저하라고 하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유적의 가치와 보존, 계승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적과 인접하는 토지 등을 매입하여 지정지와 일체적인 정비를 하고, 관람객을 위한 전시관 및 주차장 등의 여러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유적 보존과 활용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

유적 보존계획 또는 정비계획의 수립에는 위와 같은 관점을 포함하여 적절한 범위의 주변 지역을 계획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유적의 주변 지역에 있어서 보존의 시책을 강구해야 할 구역을 정하기 위해서는 유적 주변의 자연 및 사회적 환경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유적에 대한 각종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정하여 계획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존 방침 및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존해야 할 범위의 설정을 포함해 보존의 방침 및 방침의 책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도시계획 및 녹지관리의 종합기본 계획, 조례 등과 충분히 조정하여 유기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3) 보존 기법

주변지역 보전을 위한 기법은 법률에 기초한 행위규제, 유적의 지정지 확대를 도모, 토지 매입 등 아주 다양하다. 특히 주변 지역에 있어서 행위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기존의 법률을 잘 활용하고, 규제가 부족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경관조례 등을 재조정하여 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관 보존조례 등의 규제에 기초한 보존의 시책

- 보존해야 할 범위에 관하여 경관조례 등에 기초한 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 있어서 건축물 등의 높이 및 외관 등에 관한 행위규제를 행하는 방법이다.
조례에 기초한 행위규제의 방법에는 허가제에 기초한 것과, 신고제 등의 완화된 규제에 기초한 것의 2종류가 있다. 유적을 둘러싼 현황 및 필요로 하는 보존대책의 정도와 행위규제에 대한 지원제도, 지역주민과의 합의 형성에 관한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유적지 인접부분의 정비에 의한 보존

- 인접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소음을 차단하고, 광고물 등을 포함하는 경관의 방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적 지정지의 주변부에 식재 지역 등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기술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지정지의 경계부분에서 작은 면적의 범위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보존책으로는 가장 간편하고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법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지정지의 확대

-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이지만 유적을 추가 지정하여 그 토지를 매입, 유적의 경관 보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경우 유적지 주변에 건립되는 시설물과 조화에 주의하며 공원화에 의해 추가 지정된 주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4) 유의점

유적과 그 보존에 필요한 주변의 구역을 일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구역지정의 필요성 및 구역지정에 의해 생기는 각종 효과, 유적과 그 주변 환경의 바람직한 방향 등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공동의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조례를 새롭게 정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조례에 의해 새로운 구역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 소유자등과의 합의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

요하며 각종 합의 형성에 의한 지정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도 일체화된 정비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유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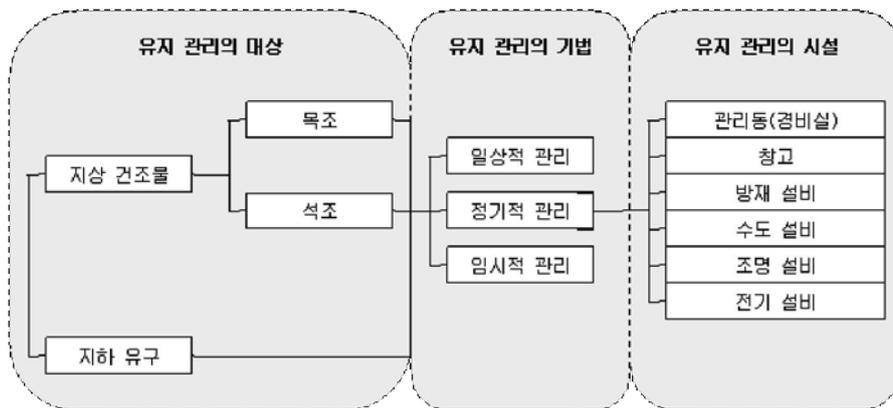
1) 개요

유적지의 유지관리는 주로 유적의 구성요소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 및 조치를 말한다.

특히 지정 후의 유적은 적절한 유지관리에 의해 사적이 가진 가치가 보존될 수 있다. 또한 지정에 있어서 사전에 유지 관리의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지정 후에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적이 있어서 유지관리란 지정된 공간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존·활용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또한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보존·수리의 조치와 시설 등에 사용된 재료 등의 열화 및 풍화가 가속되고, 보수 및 재정비에 있어서 시간과 경비가 커질 뿐만 아니라, 유적의 보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적지에 있어서 유지관리는 아주 중요하다.

유지관리의 대상 및 기법·시설



2) 기본 원칙

가) 유지관리의 대상

유적지의 유지관리는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방침을 세울 필요가 있다. 유적을 적절히 보

존하기 위해서 해당 유적에 관계되는 사항의 이해를 중심으로 유적의 중요 구성 요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통상 유적을 관리하는 관리단체는 유적의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법령상에 정해진 유적의 관리 및 각종 신고, 허가 신청과 유적의 안내·설명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유적 활용의 관점에서 안전성, 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한 유적의 보호시설을 정확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보존 관리 시설과 설비

시 설	내 용
관 리 동	유적을 관리하고 안내하는 경비나 상근 근무자 사무 공간 등의 시설
보관창고	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구 등을 수납하기 위한 시설
방재설비	화재, 수해, 도난 등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는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보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수도설비	유적(사적)지정지 내의 식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와 화장실, 음수 등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
조명설비	밤 사이의 방법대책 및 외부 조도의 확보, 공개를 위한 연출을 위해서 설치된 설비
전기설비	사적 내 시설 전반에 걸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

나) 지정 후의 유지관리 방법

정비 후의 유지 관리는 점검 및 유지 조치로 구성된다. 점검은 그 빈도와 전문성에 따른 항목을 정해 빠짐이 없도록 리스트를 작성, 이것에 기초하여 실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점검의 성과는 유지 조치 또는 재정비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 리스트의 작성은 각 점검항목에 대응한 판단의 기준과 대처 방침 등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리 부분, 보존과학적인 처리 부분, 보존공학적인 처리 부분 및 보존시설에 의해 보호되는 유구의 경과 관찰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성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유지 조치도 그 빈도와 전문성에 따른 항목을 정하여 빠짐이 없도록 관리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지 조치에는 청소 등의 미리 정해진 조치와 점검의 성과에 기초하여 임시적으로 실시되는 경미한 보수·수리의 조치가 있다. 또한 정비 후의 정기적인 유지적 조치를 전제로 한 보존 과학적인 처리 및 보존 공학적인 처리는 점검의 성과에 맞추어 처리를 실시한다.

3) 유지 관리 기법

유적의 유지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는 주로 점검 및 유지 작업으로 구성된다. 유적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의 대상의 정확한 이해와 점검 및 유지 작업을 적절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 유지관리 계획

유지관리의 업무수행은 각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에 필요한 점검 및 유지 조치의 작업에 적절한 시기·횟수 등을 검토한다. 활용을 위한 활동 등을 감안하고 구체적인 유지관리 목표 및 유지관리 수준을 결정하며 유지관리에 관한 일정 기간의 업무 흐름을 나타내는 작업계획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설정한 유지관리 목표 및 유지관리 수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체제·조직의 규모·능력에 따라 어느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업무의 배분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정기적인 유지관리의 업무와 계절 등에 관련된 활용에 관계되는 업무와 중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람객이 집중되는 시기(휴가철, 축제, 연말연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등)와 학교교육 등과 연계한 체험학습 기획을 실시하는 시기 등 업무양이 증대하는 시기 등을 적절히 파악하고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조직의 준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경 식재는 공사종료부터 일정의 양생, 육성 또는 성장의 제한 등을 적절히 실시하여 정비 계획에서 기대했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지 관리의 대상은 다양하며 유지관리 목표 및 유지관리 수준을 결정할 후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유지관리의 종류

일상적인 유지 관리

- 일상적인 유지관리업무는 유적의 주요한 부분의 보존과 활용에 지장이 없는가를 파악하고 경미한 작업에 의해 이것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전문 지식을 동반하지 않고 유적의 관리를 위해 통상 근무자 등에 의해 실시한다. 일상적인 점검은 개폐 상태 등의 간단한 순찰을 기본으로 유적 등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특히 휴일 전·후 및 이벤트 등의 개최 전·후 등에 있어서는 평상시보다 넓은 범위의 순찰을 실시하는 등, 경우에 따라 순찰의 범위와 점검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 실시는 해당 유적의 특징과 공개의 상황 등에 따라 확인을 위한 중점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순찰과 동시에 해당항목에 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일상적인 유지 조치는 간단한 청소·제초 등을 포함하여 경미한 작업을 실시하고, 보존과 활용의 관점에서 유적에 상응하는 상태를 유지한다. 또한 그 실시에 있어서 일상적인 유지 조치의 내용을 정리한다.

정기적인 유지 관리

- 정기적인 유지관리업무의 요점은 유적의 모든 지역에서 상황의 확인 및 보존을 위한 경미한 예방조치에 의해 유적의 보존과 활용에 지장이 없는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미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유지관리에서는 일상적으로 실시하는데 있어서 업무상의 부담이 큰 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실시한다. 충분한 유지관리의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주로 담당 직원이 중심이 되고 필요에 따라 전문업자 및 전문가의 협력 하에 실시한다. 또한 유지관리의 대상에 따라 점검 및 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시기 및 기간 등을 각각 검토하고,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인 점검에서 지정지의 모든 지역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가 행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실시하여 유적의 구성요소 보존 상태와 유적지 내에 있어서 유적의 보호를 위한 시설의 상황을 확인하거나 보존시설의 기능이 계획·설계대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객관적 지표에 기초하여 확인한다. 아울러 공개·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설·설비·기기 등에 관해 안전성·쾌적성이 확보되고 충분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관해 상세하게 확인한다.

정기적인 유지 조치에서는 일상적인 유지 조치에서 실시할 수 없는 규모의 청소, 제초 등과 보존처리 등의 효과의 유지와 병충해 방제를 위한 약제의 도포·살포 등을 실시하거나, 보존시설에 있어서 건물·설비·기기 등의 보수관리와 안전관리상의 경미한 조치를 취하거나 한다.

이러한 정기적인 유지관리는 담당 직원이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기술적 전문성이 높고 해당 담당 직원의 업무한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전문업자 또는 전문가의 협력 하에 실시한다.

임시적인 유지 관리

- 임시적인 유지관리업무는 유적의 지정지 또는 인접한 지역에서 자연재해 및 화재 등의 인위적인 재해 등이 생긴 경우와, 이벤트 개최를 포함하는 특별한 공개·활용을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필요하다. 그 요점은 유적 구성요소의 훼손 및 그 외의 시설 파손 등의 상황, 지정지 내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임시적인 순찰과 긴급하고 응급적인 조치, 필요에 따른 경미한 보수·개선의 조치에 의해 훼손 등의 확대·악화 등을 방지하고, 본격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초기적 준비 등을 갖추는 것에 있다.

때때로 이러한 재해·사고와 이벤트 개최는 다양한 기관과 조직 등이 관계되기 때문에 임시적인 유지관리에서는 재해·사고 등의 발생시과 이벤트 개최 시 관계하는 여러 기관·조직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연대의 체계를 갖추고, 문화재 보호의 업무는 문화재 담당 부서의 전문 직원 등이 실시한다.

임시적인 점검에서는 평소에 경비 등의 체계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을 충분한 확인 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순찰을 실시한다. 임시적인 조치는 특히 재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 출입금지·통행금지의 조치와 흙 포대·널판 등에 의한 토사붕괴 방지 등 안전을 확보하고 2차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적·응급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다) 점검과 기록

유적지의 유지 관리는 유지관리 목표 및 유지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유지관리 계획을 세우

고, 사전에 점검표 및 조사표 등의 양식을 정해 이것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점검의 결과로 훼손 등의 이상이 발견된 부분은 발견 일시, 의견 등과 함께 사진·도면으로 그 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

보는 시설의 점검

- ① 관리상 필요한 표식, 안내판, 경계표 또는 인재책 그 외의 보존시설
- ② 활용을 위해 정비한 유구
- ③ 관람객이 쾌적·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정리된 원내 도로, 포장, 안전 울타리, 조명시설, 조경식재 등의 시설 등의 보존·관리 시설

라) 업무위탁에 의한 유지관리

유적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에서 유적의 보호에 필요한 관리업무의 적절한 조합을 전제로 인원, 경비, 효율 및 전문성 등의 관점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문업자에게 지속적인 관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상황에 관해서 위탁업체에만 맡기지만 말고 유지관리 업무로서 취급하여 해당 유적의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상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검토를 해 나간다.

① 일반적인 업무의 위탁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지속 관리의 중, 전문적인 지식 및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에 관해서 지역 주민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유적을 알리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 때 문화재 담당부서는 관리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유적이 가진 가치와 보존에 관한 인식을 충분히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이 위탁 관리업무에는 일상적인 관리업무와 정기적인 유지관리업무로 나눌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용역, 고용, 전문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알맞은 위탁 방식을 검토한다.

일상적인 관리 업무

- 청소·제초와 순찰을 포함하는 지속 관리 및 안내·해설 등의 공개·활용에 관계되는 업무이며, 전시관 등 상주 가능한 시설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시설의 관리와 병행하여 직영으로 비상근 직원을 고용하거나 용역·위탁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가 있다.

정기적인 관리 업무

- 유적지 내 잔디 등의 제초와 수목 양생 등 연간을 통해 정기적으로 실시해 가는 업무이며 일상적인 위탁업무와 병행하여 위탁 등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정 기간만의 작업을 행하는 업무를 위해 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② 전문적인 업무의 위탁

전문성을 가진 유지관리업무 중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 해당전문 분야의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업자에게 위탁한다.

설비·기기의 정기적인 점검·관리

- 유적에 설치된 방재설비 외에도 보호각 등의 공조설비, 관측기기 등에 관해서는 유구 보존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해당설비·기기의 관련 업체에 위탁하여 유지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한다.
이 외에도 수도, 전기 등의 설비·기기에 관해서 법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정기적으로 전문 업자에게 점검 및 관리를 해나간다.

지속적인 보존처리

- 유구 등의 보존을 위해 보존처리를 한 부분과 유적의 표현을 위해 목재를 이용한 것은 재처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갈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정비 계획 및 설계에 기초하여 목표가 되는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해당 보존처리 전문가 등에게 위탁,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그 결과를 포함하여 재처리·보수 등을 실시한다.

방제 처리

- 유적의 구성요소 중 식물의 병충해 방제와 목조 건축물의 총해 방제는 일정 기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의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한다. 정비 사업 완료 후에도 관리의 일환으로서 정기적으로 실시해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 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그 외

- 그 외 수목관리 등은 조경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대규모 이벤트 개최는 기획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공개·활용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위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관리업무에 관해서는 위탁을 검토하고 유적지의 직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③ 그 외 관리 업무

유적의 관리에 있어서 유지관리업무 외에도 공개·이용 등에 관한 업무, 재해·사고 등의 대책 등, 다양한 업무가 있다. 이러한 업무는 유적의 종류·규모와 관리·공개 방침·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문화재보호법, 건축법 등과 관련하여 협의나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벤트의 개최는 경찰서·소방서 등과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에 관한 업무가 있다.

또한 유적지의 유지 관리 중 생길 수 있는 훼손에 대한 경미한 수리 및 현상 변경에 관한 업무가 있다.

4) 유의점

유적지에 있어서 사고의 발생은 인명에 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긴급 및 응급 대응의 체계를 평소에 충분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적에 있어서 유구 등의 보호 및 경관을 고려하여 재해에 대해서 옹벽 및 안전 울타리 등의 시설설치에 따라 대응을 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인적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 방지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성의 확보는 관리자가 전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특히 안전 휨스 등의 안전 확보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하여는 관리를 충분히 하고, 위험한 장소로의 출입 등에 관해서는 주의표 등에 의해 경고하고, 휨스 등을 설치하여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강구한다.

7. 맺음말

이상과 같이 사적의 지정에 따른 보존 관리와 유지관리의 체계·기법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위의 내용은 사적의 지정 이후 사적의 정비에 따른 보존 관리와 유지 관리의 체계·기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사적의 보존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관리와 유지 관리의 체계·기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아니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또한 본고의 앞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것과 같이, 향후 사회적 요구에 의한 유적 정비에 따른 보존과 활용의 문제는 많은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한다.

① 유적 정비에 대한 철학의 정립

우리나라에는 많은 유적들이 발견이나 건설공사에 의해, 그 실체가 밝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 자원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정비 공사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이 남겨놓은 유적은 우리를 되돌아보고 현재 우리들의 위치를 확인하며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것으로, 그것은 결코 관광지의 도구가 아니며,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할 문화유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② 유적 정비 매뉴얼 연구

유적의 정비는 보존을 근간으로 하며, 활용의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유적 정비에는 보존을 위한, 활용을 위한 다양한 기법과 기술이 있으며 위에서 지적한 정비에 따른 철학의 정립과 철저한 보존을 근간으로 한, 정비의 체계·기법을 정립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기존 유적 정비의 성과와 이에 대한 평가, 유적 정비 기법의 연구, 각 유적별 특성, 해외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한 유적 정비 매뉴얼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유적 정비 매뉴얼을 통한 유적정비의 체계·기법 정립은, 정비유적지에 있어서 더욱 철저한 보존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에 의해 활용을 더욱 촉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③ 유적 정비 보고서 발간의 법제화

우리나라에서는 유적 정비보고서가 실험적으로 한두 사례 보고되고 있다. 유적 정비 보고서는 발굴조사에 의해 밝혀진 유적의 가치를 정비를 통해 보존되고 활용되는 모든 과정을 담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적 정비 보고서의 부재는, 유적이 가진 가치가 어떻게 보존·활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보존처리·수리가 어떠한 기법으로 행해졌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유적 정비 기법의 축적과 발전(보존 기법을 포함하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향후 대두될 유적의 활용에 있어서, 활용=파괴라는 논리에 대해 반박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적 정비 보고서의 간행은 앞으로의 보존과 활용의 문제를 해결해 줄 열쇠가 될 수 있다.

④ 유적 정비 전문가 양성과 교육

유적 정비는 다양한 분야의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유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발굴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계획에 따른 정비·보

수·시공이 각기 다른 전문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호 의견교환과 자료의 공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적의 진정한 가치가 보존되고 활용되는 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또한 이를 총괄하고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자가 유적 정비 공사 현장을 지도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유적 정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이러한 지식을 전해 줄만한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 매장문화재 이해 및 발굴조사 실무

- I. 매장문화재란? / 159
- II. 매장문화재 조사 / 159
- III.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발굴조사의 행정 절차 / 169
- IV. 발굴비용 / 177
- V. 발굴문화재의 신고 및 국가귀속 절차 / 178

문화재청 학예연구관 이 규 훈

I. 매장문화재란?

매장문화재는 지하나 수면 아래 묻혀 있는 문화재이다. 크게 유구와 유물로 나뉘는데, 유구는 집터·무덤 등과 같은 구조물이며, 유물은 돌도끼, 도자기와 같은 물건들이다.

매장문화재는 법에 의해 보호되며,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규정된 절차에 의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보존여부가 결정된다.

II. 매장문화재 조사

매장문화재 조사는 매장문화재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로 나뉘는데, 지표조사는 원형의 훼손 없이 유적의 분포상황을 조사하는 것이며, 발굴조사는 땅이나 물을 헤치고 유적을 드러내는 일이다.

매장문화재는 원형을 유지해야 할 보호의 대상이나, 연구·정비·개발사업 등의 원인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이 개발사업이며, 아래는 개발사업자가 수행하는 매장문화재관련 행정절차이다.

구분	절차	설명
지표조사	시행	•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 따라 지표조사 실시여부를 판단
	조사실시	• 조사기관에서 지표조사 실시
	결과협의	• 조사 결과는 지자체를 통해 문화재청에 제출(보존대책 통보) * 보존대책 : 사업시행, 현상보존, 입회조사, 발굴(시굴)조사 등
	보존조치이행	• 지자체를 통해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받음
발굴조사	허가신청	• 조사기관의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자체를 통해 문화재청에 신청
	허가	• 지자체를 통해 문화재청에서 허가 통보 받고 조사기관에 통보
	조사실시	* 조사기관은 문화재청에 착수신고, 지도위원회개최보고 등 실시
	완료보고	• 조사기관의 약보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자체를 통해 문화재청에 보고
	완료조치	• 지자체를 통해 발굴완료에 대한 조치 통보 받음 * 조치 : 기록보존(사업시행), 이전복원, 원형보존(현상보존) 등

- 위 각 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자문(지도)위원회,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자문(지도)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주관으로,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에서 개최함

1. 발굴은 왜 하는가?

발굴은 잃었던 역사를 되찾는 일이며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보고 배우기 위한 것이

다. 우리나라 역사를 알기 위해 우리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같은 옛 책을 읽어야 한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가 쓰여 있다. 그러나 역사책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당시 왕들의 행적이나 궁궐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특별히 기록으로 남길 만한 중요한 일들만 쓰여 있어 아주 적은 사실들만 알 수 있을 뿐, 일반 백성들이 살아온 이야기들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고구려 역사를 자세히 알기 위해 고구려 무덤벽화를 발굴하여 그림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통해 고구려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고 집은 어떻게 만들었으며, 얼굴 생김새는 누구를 닮았는지에 대해 자세한 모습을 알게 된다.

풍납토성을 발굴하여 백제 사람들의 살림터와 그들이 만들어 썼던 그릇, 공공건물의 크기 등을 알 수 있다. 경주에서는 신라 사람들이 돌을 깔아 길을 내고, 우마차가 달렸던 흔적들이 발굴을 통해 나오고 있으며 돌무지 무덤 안에서는 갑옷, 무기를 비롯해 천마그림과 같은 예술작품들, 금관, 금귀걸이, 유리구슬, 목걸이 같은 것들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유적을 발굴해 보면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모습들이 생생히 남아 있어 역사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발굴은 잃었던 역사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2. 어디를 발굴할 것인가? - 매장문화재를 찾는 방법

매장문화재 및 유적과 유물들은 땅속에 들어 있는 것들이지만 땅속에 들어 있는 유물들이 자연의 힘이나 사람들에 의한 훼손의 결과 지표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물의 흔적을 가지고 그곳에 유적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큰 비에 의해 산사태가 나거나 홍수로 유실된 강가의 쌓임 층에서 유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밟았을 하거나 크고 작은 공사로 땅속에 있던 유물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드러난 유물·유적들을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그 분포상을 확인하는 것을 지표조사라고 한다. 지표상에 드러난 유물·유적은 조사지역 안에 어떤 성격의 유적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지표조사는 고고학 전문가들이 하게 되며 매장문화재의 분포범위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매장문화재 뿐만 아니라 의식주·풍속 등에 관한 민속자료와 전설·민담·민요·방언·가족제도 등 유·무형의 자료들, 그리고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겨 둔다.

지표조사는 조사지역 안에 있는 유물·유적을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지역 안에 있는 유형문화재들은 지표조사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지만 땅속에 들어 있는 매장문화재는 지표조사에서 쉽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표에 드러난 유물·유적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땅속에 들어 있는 구조물을 확인하기 위해 최신 과학기자재인 자력계나 전자탐침봉을 이용하여 땅을 파지 않고도 유적을 찾는 방법도 있으며, 항공사진 촬영으로 땅속에 들어 있던 옛 도시 유적을 찾아내기도 한다.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사업면적의 정의

구 분	적 용 범 위
가. 일 반 사 항	1) 지표(수중)의 원형변경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지 전체면적 2) 사업부지내에 형질변경된 지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의 처리요령은 아래와 같음 - 형질변경된 지역은 기형질변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되, 입증방법은 제4조의2 규정을 준용 - 잔여면적이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 잔여면적이 시행령 제43조3에 규정된 면적 이하인 경우 시행규칙 제59조의2에 의한 규정을 적용 3) 연차시행, 분할시행, 단계별 시행 등 사업시행 방법에 관계없이 연속된 일련의 동일 사업일 경우 전체사업 면적 4)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표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취장, 사토장, 가설도로 등은 사업면적에 포함
나. 지하굴착이 추가 되는 사업	1) 수로터널, 채광, 준설, 골재채취 등 지하굴착이 사업의 주가 될 경우 평면상에 표시된 사업대상의 면적(사업 인·허가시 첨부된 사업계획 평면상의 전체면적) 2) 하(농)수관로 매설, 소규모영농기반개선을 위한 경지정리 사업 등은 사업계획의 전체 면적을 사업면적으로 하되, 실제 형질되는 지역에 대해 지표조사를 실시
다.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 저수지, 댐 등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 수몰면적은 계획 홍수위의 만수면적으로 하여 사업면적에 포함하고, 신설 또는 개수되는 수로 등 수리구조물도 사업면적에 포함
마. 계획변경 등에 따른 부지의 증감을 수반하는 사업	○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 대상 부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지표조사를 실시 - 다만, 변경된 사업예정부지가 당초 지표조사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바.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	○ 전기설비와 부대시설이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해당 설비의 정상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공간의 지상면적도 사업면적에 포함

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구분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내용
가. 육 상 지표조사	1) 사전조사 (문헌조사 등)	(1) 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의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향토자료 등의 존재 유무 파악 -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원부, 문화재관리대장, 기 조사자료 등의 확인 및 활용 (2) 역사기록(지리지, 읍지, 고지형도 등) 및 향토사 연구자료 등에 관한 조사
	2) 현장조사	○ 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 및 조망권내의 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탐침조사 또는 낙엽, 눈 등의 제거는 가능하나,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는 조사(발굴 트렌치 등)는 불가 (1) 조사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유적의 입지가능성, 지형변경 유무, 원지형 복원 여부 등 (2) 주변유적 현황 등 고고학적 환경에 관한 사항 (3) 유적, 유구의 분포 유무, 공반유물의 분포범위(지도에 기입) 및 특징에 관한 사항 (4) 유적, 유구, 공반유물로 판단되는 성격 및 생성시기(편년)에 관한 사항 (5) 조사지역의 좌표 값(경위도-GPS 활용) (6) 측량이 필요한 지상노출 유적 또는 유구에 관한 사항 (7) 자연단애면 등에서 확인 가능한 토층(유구층, 토양쇄기층, 토탄층 유무 등)에 관한 사항 (8) 수습유물의 종류(토기, 자기, 와전, 금속, 석기 등)와 그 성격에 관한 사항 (9) 마을의 공간구성, 고건축, 생활, 민속 등에 관한 사항 (9) 자연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유구 및 분석 가능한 시료에 관한 사항 (10) 지질, 동굴, 노거수 등 자연문화재에 관한 사항 등
	3) 탐문 및 설문조사	○ 민속, 지명, 풍습, 관습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현황에 밝은 마을 원로 또는 관계인 등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구 분	조사방법 및 절차		조 사 내 용
나. 수 중 지표조사	1) 사전조사 (문헌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문화재 분포도와 비교하여 유적(물)의 부존 가능성 예측 ○ 각종 문헌, 전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조사대상 수역과 주변지역의 수장 문화재의 분포 여부를 확인 ○ 수중문화재 발견신고지역 여부 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2) 현 장 조 사	① 위치측정 및 조사선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전 계획된 조사수역내 항적과 조사정점 수면위치를 고정밀의 DGPS로 확인함 ○ 조사선은 계획된 조사측선을 컴퓨터 모니터 상에 투영하여 이를 따라 운행함과 동시에 실제 항적과 정점의 위치좌표를 초 단위로 수신하여 전용 컴퓨터에 입력함 ○ 조사선은 조사장비에 대한 소음효과를 최소화하여 양질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시속 2~3노트(4~5km/시)로 운행함
		② 수중지형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수역내 계획된 항적을 따라 위치 측정과 동시에 연속수심 측량으로 수중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형의 형성기작을 파악함 ○ 음파탐사장비의 수중 음속보정을 위한 Bar Check 또는 음속측정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여 보정함 ○ 최종 지형(수심)도는 조사수역에 최대 근접한 지점의 기준항 조석자료를 참조하여 일반 해도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함. 다만, 사업시행자 제공의 수심도가 조사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중지형조사는 이로 대체할 수 있음
③ 수중저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kHz 이상을 기본주파수로 하는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Side-Scan Sonar)를 사용함 ○ 측선간격은 25m~50m 사이를 유지하며 수심에 따라 범위를 조절할 수 있음 		

구분	조사방법 및 절차		조 사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는 수중저면으로부터 최적높이를 유지하고 조사선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미(또는 선수)에서 일정간격을 두고 예인케이블로 예인하여 수치 및 화상 자료를 저장매체에 입력·저장하여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조사수역의 전 수중저면을 주사할 수 있도록 수심에 따라 예인수심과 주사 범위를 조절하고 항적을 교차하여 중첩된 수중저면 음향영상도면을 획득하도록 함 ○ 현장에서 영상자료를 분석한 후 이상 물체 분포지역에 대해서는 수치자료를 재처리하여 정밀분석 함
		④ 지층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층조사는 주 주파수대가 3.5kHz 이상인 천부용 고해상도의 탄성과 지층탐사기 (Sub-Bottom Profiler)를 사용함 ○ 조사간격은 20m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조사 된 문헌이나 전래설화에 근거하여 수중유물의 매몰가능성이 높고 조사수역의 퇴적율이 빠른 경우에는 매몰가능 유적의 특성에 따라 탐사간격을 변경할 수 있음 ○ 지층조사 시에는 수치자료와 화상자료를 동시에 획득하여 화상자료는 현장 조사 시에, 수치자료는 전산처리를 통해 정밀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지층조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설계를 위해 최근 획득한 자료가 이용 가능할 경우 이를 활용하고 지표조사 목적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⑤ 수중지자기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기 조사(Sub-Bottom Magnetic Profiling)는 그 간격을 50m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 조사된 문헌이나, 전래설화에 근거하여 금속성 유물의 매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탐사간격을 변경할 수 있음

구분	조사방법 및 절차		조 사 내 용
		⑥ 퇴적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기 조사는 수치자료의 전산처리를 통해 정밀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만, 사전조사를 통해 철을 함유하는 금속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의 매몰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점을 정하여 선상에서 채니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정점의 위치는 DGPS를 사용하여 확인함 ○ 퇴적물 일반 분석방법에 따라 다음 항목을 분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적물 성분의 조성비(자갈:모래:실트:점토) - 조성비에 따른 퇴적물 상, 평균입도 및 입도특성 등
	2 단계 조사	잠수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사(측심, 지층탐사, 수중저면음향영상) 자료를 대조 분석하여 유물과 유사한 물체 또는 이상물체가 존재할 경우, 잠수조사자를 투입하여 유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잠수조사자는 안전과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2인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조사를 수행함(안전을 위해 대기 1개조를 편성함) ○ 잠수조사 시에는 유사 또는 이상물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TV가 부착된 수중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자료를 획득하여 수중유물의 부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과 부존현황을 기술함 ○ 잠수조사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 이상의 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함 ○ 잠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TV가 장착된 예인용 카메라를 사용하여 필히 사진자료를 획득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AUV(Automous Under Vehicle),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또는 잠수정을 이용하여 간접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구분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내용
	3)정밀조사	<p>○ 정밀수중조사는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의 존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문화재의 분포범위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인 발굴조사의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조사</p> <p>① 수중저면 음향영상조사 및 퇴적지층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와 유사(이상)물체가 분포하는 수역 내에서 조사측선 간격을 10m로 설정하여 자료의 중첩율 (100%이상)을 높여 문화재와 유사(이상)물체의 정확한 위치와 영상정보를 획득함 <p>② 수리물리적 환경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과 인양을 위해 수류의 세기, 방향, 수온 탁도, 염분을 최소한 3개의 수층에서 조사하고, 조석의 변화를 기재함 <p>③ 퇴적물 특성조사</p> <p><표층 퇴적물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분포지역의 표층의 퇴적현상을 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정점 수를 정하여 채니기를 이용하여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여 퇴적물의 특성(입도, 구성성분)을 분석함 <p><주상(Core) 퇴적물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지역의 퇴적물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가능하면 문화재 부존 부근의 정점을 선택하여 선상에서 Corer를 이용하여 주상퇴적물 시료를 채취하고 정점의 위치는 DGPS를 사용하여 확인함 - 주상퇴적물 시료는 퇴적물의 일반분석방법에 따라 다음 항목을 분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적물 특성(표층퇴적물과 동일) · 퇴적물의 전단응력(剪斷應力, Shear Strength) · 함수율과 전밀도 · 퇴적물 : 방사성동위원소 210Pb와 C14, 핵실험시기 지시자 137Cs중 퇴적물 특성과 문화재의 추정연대에 따라 선택하여 분석함. 퇴적물조사는 수중유물의 매몰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사함

구분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내용		
		항 목	관련사항	비 고
		퇴적물 특성	조사지역의 전반적인 퇴적물의 정량적인 함량분석	유물분포지역의 퇴적물 유형분석 및 입도별 함량비 산출
		퇴적물의 전단응력	퇴적층의 굳기에 대한 정보	매장유물의 보존가능성 평가 및 추정 (특히 고선박의 보존가능성)
		함수율, 전밀도, 공극율	목선의 부존가능성에 대한 기본정보	매몰되어 있는 선체의 부식정도 및 보존 가능성 추정 (발굴 및 인양에 대한 기본자료제시)
		퇴적을	유물 매몰깊이 추정	유물매몰 깊이 계산 → 주변해역 매장유물 부존가능성 제시

3. 발굴은 누가, 어떻게 하는가?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을 좀 더 분명히 밝혀 보기 위해 발굴을 하게 된다. 발굴이란 땅속에 들어 있는 매장문화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지표조사에서 유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발굴을 통해 유적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발굴은 어디까지나 매장문화재를 보호하는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토목 공사를 하듯이 효율적으로 시간과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최대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 가능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다.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유적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발굴 기간, 발굴 경비, 발굴조사단 구성, 발굴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발굴을 수행하는 조사단은 유적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고고학 전문가도 유적의 시대와 성격에 따라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려 조사단을 구성하게 된다.

발굴 경비는 유적의 규모와 발굴 기간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그밖에도 유적의 성격이나 발굴 방법이 다르면 발굴 경비도 다르게 마련이다. 지표조사나 시굴 조사에서 나타난 유적의 규모와 성격이 실제 발굴과정에서 더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발굴 진행 과정에서 발굴 기간이나 경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발굴 결과에 따라 중요한 유적이 이전·복원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예상외의 경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1) 발굴방법

발굴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발굴은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유적의 성격에 따라 발굴 방법이 다르고 동원되는 인력이 다르다.

가장 효과적으로 유물·유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오고 있다. 발굴 방법 가운데 아래의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긴 구덩이를 만들어 발굴하는 것을 트렌치 조사라 한다. 유적을 가로지르는 긴 구덩이를 만들어 조사하는 것으로 유적이 넓게 분포하는 곳에 유리하다. 또 하나는 바둑판식으로 발굴 구덩이를 만들어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적이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는 곳에 알맞다. 옛무덤을 발굴할 때는 사분법을 많이 쓰는데 유적의 지층을 확인하면서 발굴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발굴기록

발굴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한다. 그 날 그 날 발굴한 내용, 출토 유물, 현장기록 내용으로부터 그날의 날씨, 몇 월 며칠에 누가 다녀갔고 몇 사람이 일을 했는지 등의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일기처럼 만들어 둔다. 그것이 발굴의 산 역사이고, 때문에 중요하다.

발굴에서 나온 유적과 유물은 하나하나 재서 그린다. 그것을 실측도면이라고 한다. 실측도면은 발굴 뒤에 남는 가장 귀중한 자료가 된다. 유물이 나온 자리, 유적의 구조는 곧 유물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유물이 드러나는 과정과 놓인 상태 등은 유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발굴의 전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해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중요 유적이 나왔을 때 현장 보존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구 전체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으나 유구를 옮길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복제하여 옮기는 방법을 쓴다. 그것을 유구전사라고 한다. 유구 전사로 다른 곳에 옮기는 것 등을 이전복원이라고 한다.

3) 유적, 유물연구

발굴 현장에서 모든 작업을 할 수는 없다. 유물들이 온전한 형태로 나오지 않고 깨지거나 부서진 상태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연대 측정, 물리적 분석 등 과학기자재를 써서 분석해야 할 것들도 많다. 따라서 발굴이 끝나면 실험실로 옮겨 분석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때론 현장 발굴이 한달 걸리면 실험실에서 6개월 정도의 분석기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4) 결과보고

현장발굴과 실험실 분석이 끝나면 조사·정리한 내용을 묶어 보고서로 제출하면 발굴이 모두 마무리된다. 보고서 작성은 대규모 발굴의 경우 발굴이 끝나고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

Ⅲ.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발굴조사의 행정 절차

1. 발굴허가의 대상

문화재보호법 제55조의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¹⁹⁾되는 토지 및 해저로서 단서 조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허가대상이다.

-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건설공사시행 중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발굴허가 신청 절차

1) 조사기관 선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사업시행자”)

- 법 제55조 제1항 단서규정 각 호의 목적으로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²⁰⁾는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법 제55조제3항, 시행규칙 제37조, 별표9의2]를 충족한 발굴기관을 섭외하여 선정

2) 조사계획서 작성 제출(조사기관→사업시행자)

-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제출
- 사업부지내 유물산포지가 광범위하거나, 유적 존재가 불확실한 지역의 경우 : 1차적으로 확인조사(*기존 시굴) 실시
- 유적존재가 확실하여 발굴대상면적을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경우 : 처음부터 정식 발굴조사 실시

19)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란 객관적인 근거(문헌 등)와 조사, 또는 그에 따른 주변정황에 의하여 유적의 소재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함.

20) 당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개인을 말하며, 시행자로부터 용역을 받은 시공사 등이 발굴허가 신청을 대행할 경우에도 신청자는 시행자가 됨

3) 발굴허가 신청(사업시행자→해당 지자체)

-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 서식] 작성(사업시행자)
- 발굴조사 계획서(조사기관 작성), 토지(임야) 조서(지자체 확인) 등 서류구비

4) 구비서류 검토 및 제출(해당 지자체→문화재청)

- 구비서류[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36조의2]
 -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별지 제47호의2 서식]
 - 발굴조사 계획서²¹⁾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담당공무원이 발굴예정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확인한 토지조서(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토지(임야)대장을 첨부)
 -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
 - 해당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토지(임야)조서로 갈음할 수 있음
 - 필요시 대상지의 토지수용(동의)을 부족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자 대책 첨부
 -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범위 및 위치, 조사갱의 배치 등이 표시된 도면(지형도)] / 조사대상 지역 전경사진 포함
- 필요시 해당 지자체 장(시·군·구청장)의 발굴필요성, 유적보존 의견 등 의견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5) 허가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문화재청장은 첨부서류 구비 및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21) 발굴조사단은 법 제44조제3항, 시행규칙 제 37조, 별표9의2 규정에 의거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성

발굴허가(심의)의 주요 검토기준

- 발굴대상 유적의 중요성 및 현상보존의 필요성
- 동일 사업목적으로 인한 발굴은 단일 조사계획에 의하여 검토(동일 목적 사업지역의 분리 발굴 금지)
 - 발굴결과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는 확인유적의 중요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 부득이한 경우 분리 조치
- 발굴기관과 사업시행자간의 이해관계 여부(구체발굴 시)
 -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의 부설 조사기관이 당해 시도 및 산하 시군구가 계획·발주한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은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조사기관 참여가 불가피할 경우, 다른 조사기관과 연합하여 발굴 수행
- 발굴조사 수행상의 적정성 여부
 - 조사계획의 적정성
 - 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부합여부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제9의2관련)
 - 조사기관 및 대표자, 단장, 책임조사원 등의 보고서 미발간 현황
 - 조사기관의 발굴허가 조건 및 본 지침 위반여부
 - 문화재위원의 직접 발굴조사 참여 여부(학술 발굴은 예외)
- 소규모민원성 발굴(시굴 10,000㎡, 발굴 2,000㎡) 실적
- 대학 발굴 참여 범위
 - 1대학 1기관이 발굴조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운영이 본교와 분교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1기관 허용
 - 다만, 수중 발굴 및 자연사 발굴은 조사기관의 특성상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 인정 가능
- 공·사립박물관(전시관 등), 특수기관은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는 발굴에 한정
- 시굴조사 후 발굴로 전환되는 경우 동일 기관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인력, 조사계획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기관 변경 가능

- 발굴허가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요청 사항
 - 지표조사 결과, 중요 유구 및 유물확인지역에 대한 발굴
 - 사적지, 고도지역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유적의 발굴

- 구제발굴 중 시대·종류별 복합유적이 분포하거나, 유적보존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조사기간 200일 이상의 발굴(변경허가의 경우도 동일)

6) 발굴허가 통보(문화재청→해당 지자체→사업 시행자)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에 의하여 해당 지자체에 허가 통보
- 허가서를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 문화재청장은 허가할 때 발굴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법 제55조 제5항]

3. 발굴조사에 따른 행정 절차

1) 발굴조사 착수

- 발굴허가서를 접수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기관은 착수와 동시에 착수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 및 문화재청에 동시 제출
(조사기관→해당 지자체, 문화재청)
 - 2개 기관 이상 연합발굴조사의 경우 개별적으로 보고
- 발굴허가 후 1년 이내에 착수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화재청장의 재허가를 받아야 함
- 시행령 제31조의2규정에 의한 소규모발굴 또는 실조사일수 20일 미만의 발굴조사는 완료신고서(착수일 기재)로 갈음할 수 있음. 단, 변경허가(기간연장 등)의 경우 신청서에 당초 착수일 기재
- 조사기관은 발굴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장, 책임조사원 등 조사단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해당 지자체 및 문화재청에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

2) 지도위원회의 개최

- 발굴조사기관은 조사의 원활한 수행 및 조사방향,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발굴지역 및 유적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 개최시기

- 시굴²²⁾ 완료단계에서 발굴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할 때
- 발굴과정상 중요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어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이 있을 때
- 유구 및 유물의 학술적 검토 및 조사 진행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때
- 발굴완료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
- 기타 조사구역이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부지의 경우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고자 할 때

○ 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지도위원회는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해당 유적 전문가 중 유적의 성격, 보존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자로 구성
 - 문화재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문화재보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해당 유적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현직 교원
 -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이상의 연구직 공무원
 - 전·현직 국·공립박물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 유적의 성격 및 발굴유적의 성격에 걸 맞는 적정인사
 - 지도위원회는 발굴상황(유적규모 및 성격)을 고려, 2~5인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과다 구성 자제)
 - 지도위원회 구성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발굴조사기관에 지도위원 1인 추천할 수 있음
 - 지도위원 의견은 의견서로 작성하되, 검토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반드시 개별 의견서 작성
 - 지도위원회가 특정 기관, 학맥, 동일 이해관계집단 관계자 등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
 - 발굴조사기관 관계자간 지도위원회 구성 및 상호 참여 억제
 - 유구 처리 등 현안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지자체 공무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개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 논의
- 지도위원회의 검토사항
- 발굴 유구 및 유물의 학술적 평가
 - 발굴·확인된 유적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의견

22) 유적의 존재 유무, 분포 범위 확인 조사

- 유적·유구의 보호를 위한 원상복구, 복토방법 등에 대한 의견
- 발굴유물의 국가귀속 대상 및 미대상 분류에 대한 의견
- 다음의 경우 관계전문가 1인 검토 가능
 - 조사결과 유구·유물이 확인되지 않거나 경미한 유구가 확인된 경우
 - 소규모 발굴(2,000㎡이하 발굴) 등
- 회의개최 및 회의결과 보고
 - 회의개최 시 언론 및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한 대국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개최일 3일전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
 - 제출자료 : 회의개최 요약본, 회의자료, 연락처, 관련사진, 현장약도 및 교통편 등
 - 조사기관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 지도위원 의견 등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문화재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보고
 - 제출방법 : 문서 또는 담당자 e-mail, FAX
- 지도위원회 개최시점에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학계 및 관련자 등이 함께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적극 개최, 매장문화재에 대한 대국민인식 제고

3) 발굴조사 변경허가

- 변경 신청 사유
 - 발굴허가시 유물산포지가 광범위하거나 유적의 부존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에서 시굴 조사를 실시한 후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시굴에서 발굴로 전환)
 - 동일 발굴허가 면적 내에서 유구 중첩, 유물다량 출토 등으로 인해 부득이 발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 동일 사업구간 내에서 조사지역의 추가로 인해 조사면적과 발굴기간이 동시에 늘어나는 경우 등
- 변경 신청 절차
 - 사업시행자는 시굴에서 발굴로 전환되는 유적 등의 경우 조사완료 시점(지도위원회 개최 직후, 조사 완료이전)에 변경허가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 제출서류
 - 변경허가 기간·면적·사유 등 기재
 - 발굴조사계획서(추가조사계획, 소요예산내역서 등 포함)
 -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범위 및 위치, 사진, 조사갱의 배치 등이 표시된 도

면(지형도)

- 발굴결과가 포함된 조사기관의견서, 지도위원회 개최자료 의견서 등
- 발굴 조사가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장신청 시점을 적절히 조절
- 변경허가 통보
 - 문화재청장은 첨부서류 구비 및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장(시군구 및 시도)에게 허가 통보
 - 허가서를 접수한 시·군·구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4) 발굴조사 완료 보고

- 사업시행자는 발굴을 완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굴완료신고서 등 아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발굴조사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를 통해 문화재청에 제출
 - 단, 첨부물의 신속한 송부를 위하여 발굴조사기관은 제출서류 중 약보고서, 출토유물 현황, 발굴기관 의견서 등 첨부서류를 해당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 문화재청에 직접 송부할 수 있으나, 완료에 따른 행정조치의 근거는 아님
- 제출서류
 -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 약보고서
 - 발굴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 발굴된 유적 전체 현황, 주요 유적의 평·단면도, 유구 배치도 등 관련 도면 및 사진
 - 출토유물 현황(목록 총괄표, 세부목록, 사진)
 - 발굴결과 및 사업시행여부가 포함된 유적보존에 대한 발굴기관의 의견서
 - 유적보존 의견서 보존대상 유적의 규모(면적, 수량, 소요비용 등 기재), 도면 제시
 -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도위원회, 해당 지자체 의견서 첨부
 - 보존대상 유적에 대한 지자체의 향후 관리계획 포함
- 조사구역이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부지 중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전체 발굴조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일부 조사완료구역에 대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 대상 지역에 대한 조사완료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함
 - 문서 제목은 '00유적 내 00구역 부분완료신고' 또는 '부분공사시행 협조요청'등 사용
 - 요청사항(대상구역, 면적, 사유 등) 기재

- 발굴결과 및 사업시행여부가 포함된 발굴조사기관 의견서(필요시 지도위원회 의견 첨부)
- 사업시행자 의견서

4.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

- 발굴을 완료한 때에 문화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음[법 제55조제6항]
- 유적의 보존·관리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굴조사기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음
- 발굴완료 보고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첨부서류 구비 및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굴완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해당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에 통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검토가 필요한 유적
 - 해당유적을 보존할만한 역사적·학술적 중요성이 관련전문가 등에 의해 인정된 유적
 - 국내 발굴사상 처음 확인되었거나 최고, 최대의 유적 또는 학술적인 중요성이 매우 높은 유물이 출토된 유적
 - 동일유구 군집의 규모가 크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유적
 - 발굴과정에서 유적성격 등 그 중요성이 밝혀져 더 이상 발굴을 진행할 사유가 없는 유적
 - 조사기관(지도위원), 해당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보존의견을 개진한 주요유적
 - 조사기관(지도위원), 해당 지자체, 사업시행자 의견 등이 상충되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주요유적
-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의 동일내용 재심의 제한
 - 위원회 1차 상정되어 부결 혹은 보류된 안건은 별도 의견(대안) 제시 등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재심의
- 해당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재 보존조치사항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행하고 관련 증빙서류(도면 및 사진 첨부) 등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조치결과를 보고
 - 유적보존, 이전복원, 전시관 건립
 - 기타 당해 지역의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통보한 사항
- 사업시행자로부터 문화재 보존조치 완료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보존조치 이행완료 여부 확인(필요한 경우 사진 첨부) 후 시·도와 문화재청에 이를 제출

IV. 발굴비용

1. 발굴비용의 부담주체

-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법 제55조 제7항]
 - 문화재정책의 기본원칙은 원형보존에 있는 만큼 개발로 매장문화재를 파괴하거나 보존 및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경우, 최소한의 기록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을 채택
- 단, 법 제55조 제7항 단서규정 및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한 발굴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범위 내에서 발굴비 부담

2. 발굴비용의 산정

- 발굴비용은 구체적으로 유적의 규모, 발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의 계약에 의함
- 단, 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및 매년 공고되는 조사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르도록 함
 -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및 조사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문화재청에서 매년(인건비의 경우에 한함) 관보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 지원

1) 소규모 발굴비용의 지원

- ① 지원 대상[시행령 제31조의2]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 「주택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
 -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연면적

- (지하층의 면적을 제외)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
- 법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²³⁾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 2,644제곱미터 이하)
-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V. 발굴문화재의 신고 및 국가귀속 절차

1. 발굴문화재 국가귀속 절차

1) 발굴조사 완료 및 유물현황 제출 (발굴조사기관)

- 발굴완료시 20일 이내에 발굴매장문화재 공고를 위한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 출토유물현황을 발굴조사 완료신고서에 기록 후 약보고서에 첨부
 - 이 때 유물목록 및 사진은 출토유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를 위한 유물목록 및 사진이므로,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의한 출토유물대장을 말하는 것은 아님

2) 공고단계(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에서는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및 약보고서 접수 즉시 7일간 게시판, 인터넷 등에 유물의 출토사실을 공고
 - 공고문 표준문안
 - 시도(시군구)에서는 해당 공고사실을 출토유물 공고 관리기록부에 작성·관리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 서식](국가귀속대상은 아님)
- 시도(시군구)에서는 7일간 공고 후 9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공고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 소유자(유·무) 확인서

23)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이룸

- 소유권 주장자가 없을 경우 대상유물, 공고기간, 공고방법, 소유권 주장자 없음을 명시하여 보고
 - 공고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을 경우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함(문화재청)
 - 소유권 주장자가 없을 경우 대상유물, 공고기간, 공고방법, 소유권 주장자 없음을 명시하여 보고
- 시도지사는 발굴문화재 공고업무를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필요시 시군구로 위임

3)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의 분류 및 신고 (조사기관)

- 조사단에서는 『국가귀속대상문화재 분류평가회의』 개최(필수절차)
 - 분류평가회의는 출토유물의 국가귀속을 위한 가치평가 절차이므로 출토유물 수량이 적거나 전체를 국가귀속 하는 등의 사유로 생략 불가
- 분류평가회의 구성
 - 유물 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되 다음과 같이 “동산문화재 감정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함

국가귀속대상문화재분류평가회의 평가위원 자격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5급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그 해당 문화재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또는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자

구 분	분류기준 및 제출사항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기준(시행규칙 제38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 업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귀속으로 결정한 심의서 사본을 임시보관증, 유물 목록 및 대장과 함께 제출
학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귀속대상문화재 분류의 범위에는 미치지 못하나 학술적으로 연구필요가 있는 자료 - 학술자료로 분류 후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국가귀속신고가 가능한 자료 ○ 제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기관, 활용방법 등을 심의한 결과를 사본으로 제출 (원본은 조사단에서 보관)
매물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발간 등 학술목적에 활용 가능성이 없을 것 - 매물시 유물의 성격규명 및 가치평가에 지장이 없을 것 ○ 제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물장소 및 위치, 매물방법 등을 심의한 결과를 사본으로 제출(원본은 조사단에서 보관) - 매물장소는 가능한 유물이 발굴된 당해 유적지로 함. (※ 당해 유적 매물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인근 적합지로 하되 향후 보존방법 및 사유서 첨부) - 매물시에 유적지명, 발굴기관, 발굴사유 및 매장일자 등을 기록한 표지석과 함께 매장하고 시·군·구의 확인을 받을 것

- 출토유물의 분류기준 및 제출사항
- 국가귀속대상문화재의 신고
 -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음 서류를 전산화일로 변환 후 CD-ROM 각 4부로 제작하여 시·군·구로 제출

국가귀속대상문화재 신고시 제출서류

- 유물(임시) 보관증
- 유물 목록 및 대장
- 국가귀속대상문화재분류평가회의 심의서 사본(학술자료·매물자료 등 관련 사항 표기)
- ※ 전산화일 제출 형태
 - 유물 임시보관증, 대장, 목록 : excel 또는 한글 file
 - 사진 : JPG 형태의 file, 각 사진 당 1MB 내외로 할

○ 보고서에 수록하여 신고하는 경우

- 출토유물 및 유구의 과다 또는 유물 및 유구의 가치규명 등으로 인하여 “공고일로부터 6월 이내”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시행규칙 제38조의2)
- 보고서에 수록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이 인정하는 경우 동 발굴조사 보고서는 제출기한인 2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타 발굴조사 보고서와 달리 기한연장 불가
- 보고서에 수록된 유물은 전체를 국가귀속하며 보고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유물은 학술자료로만 활용 가능하고 매물은 불가함
-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은 유물의 학술자료 활용을 위한 활용기관, 활용방법 등을 심의한 결과를 사본으로 제출

○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가귀속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국가귀속 신고일정을 명기한 사유서를 시·군·구청장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후 별도 승인을 득할 것
- 1차 6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 가능하나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기간 초과 불가
- 기간 연장된 경우“보고서에 수록하여 신고”불가

○ 시·군·구에서는 제출받은 CD-ROM 4부 중 1부는 자체 보관하고 2부는 문화재청으로, 1부는 시·도로 제출함

4) 국가귀속 요건심사 후 귀속조치 요청(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국가귀속대상문화재 신고요건을 심사하여 요건이 완비된 경우 7일 이내 국가귀속을 요청함

구 분	구 비 서 류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유·무 확인서 ○ 국가귀속대상문화재 분류평가회의 심의서 ○ 임시보관증 ○ 유물 목록 및 대장
학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유·무 확인서 ○ 활용기관, 활용방법 등을 결정한 심의서 사본
매몰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유·무 확인서 ○ 매몰장소 및 위치, 매몰방법 등을 결정한 심의서 사본 ○ 매몰 후 매몰확인서

- 보고서에 수록하여 국가귀속 하는 경우

보고서로 신고하는 경우 확인사항

- 문화재청장이 보고서로 수록하여 신고토록 결정한 공문
- 보고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유물을 학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활용기관, 활용 방법을 결정한 심의서 사본(※ 이 경우 매몰은 불가함)

5) 국가귀속 및 보관·관리 조치(문화재청)

- 문화재청장은 발굴문화재를 국가귀속하고 보관·관리관청에 보관·관리 조치
- 발굴문화재의 임시보관
 - 발굴조사기관은 국가귀속 된 발굴문화재를 보관·관리기관이 인수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
 - 발굴문화재의 보관기관은 국가귀속시까지 해당문화재가 도난·망실되지 않도록 필요 시 도난경비시스템의 설치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금속·철제 또는 목재 등 쉽게 형상이 변할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보존처리 및 보관에 유의
 - 문화재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수장시설 및 보존처리기자재의 단계적인 확충
 -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가 아닌 학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도 보관관리에 철저
- 발굴문화재의 대여금지

- 임시 보관된 문화재는 보존처리, 보고서 작성, 국가귀속 절차 이행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타 기관에 대여 금지
- 다만, 발굴문화재에 대한 신고 및 공고가 이행완료 되었고, 그 결과 소유권주장자가 없는 유물에 한하여 임시보관기관동의서, 미귀속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6) 보관조치(보관·관리관청)

- 보관·관리관청은 국가귀속 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고, 아래 각 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9조]
 -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기관, 국립민속박물관
 - 국·공·사립대학교의 부속박물관
 - 지방자치단체 관할 박물관 및 전시관
- 위탁보관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문화재청 예규 제39호]

구 분	항 목		고 려 사 항
문화재 보존시설의 적부성	시 설	전시시설	○ 전시실 면적, 규모, 전시유물 수량 등
		유물수장고	○ 수장전용공간 여부 ○ 금속·지류 등 별도 수장 여부
		보존처리	○ 보존처리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여부
	인 력	전시인력	○ 전시 및 사회교육 담당 인력 확보 여부
		유물관리 전담직원	○ 유물관리 전담직원 확보 여부 ○ 보존처리 요원 확보 여부
		방호인력	○ 자체 방호 또는 외부 용역 의뢰 여부 ○ 방호 인력, 주·야간 및 경비 방법 등
	보안관련 시설 및 장치		○ CCTV, 방범창 시설여부, 비상연락체계 확립
향온향습장치		○ 전시실 및 수장고 내 향온향습장치 설치여부 ○ 금속유물에 대한 별도 보관장치	
문화재의 활용도	연간 예산현황	○ 관리 및 전시예산 현황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 포함)	
	사회교육 실적 등	○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실적 ○ 특별전 개최 계획 및 실적 여부 등	

- 보관·관리관청은 귀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문화재를 인수하고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증을 문화재청장에게 송부[시행규칙 별지 제48조의2서식]

7) 출토유물 관리현황 제출

- 보관·관리관청은 매연도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현황을 작성하고 다음 연도 1월까지 제출
- 문화재청장은 보관·관리현황 제출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관·관리관청의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발굴 문화재의 분실·훼손시 처리

1) 적용 범위

- 발굴현장 보관 중 분실
 - 발굴허가를 받아 발굴 시행 중 발굴 현장 및 유물에 대한 보안관리 불철저 및 부주의로 인하여 유물이 분실된 경우
- 발굴 후 임시보관 중 분실
 - 발굴유물이 국가귀속 되어 최종 보관기관에 인계되기 전까지 유물 보관관리 불철저로 분실된 경우
- 기타 발굴업무의 제반 진행과정에서 유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출토유물을 국가귀속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경우

2) 적용 대상유물

- 시행규칙 제38조의2 및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에 의한 국가귀속 대상유물을 기준으로 하며, 형태상 완형, 또는 부분(파편)이라도 학술적 가치가 있어 국가귀속 대상인 유물

3) 제재 조치

- 발굴유물을 도난·분실·훼손·망실하거나 동 사항 미신고시에는 발굴허가를 제한(최고 6개월)하며, 분실이 최종 확인된 후에는 분실유물에 대한 변상 처리
-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중요유물 도난·망실·훼손 등이 고의, 또는 기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발굴법인의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 검토

- 발굴유물을 미신고 또는 은닉시에는 법 제103조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발굴기관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발굴허가를 제한(최고 6개월) 또는 발굴법인의 경우에는 허가 취소
- 분실 후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시·도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신고하여 유물 회수에 적극 대처한 경우, 또는 평소 안전관리지침 철저히 준수 등의 경우에는 필요시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 내용을 신축적으로 적용함
-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를 분실한 기관에서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문화재청(또는 보관·관리관청)에 보고
 - 국가귀속 이전 : 문화재청에 보고
 - 국가귀속 이후 : 보관·관리관청에 보고
- 분실 문화재의 처리
 - 최종 확인된 분실유물에 대한 평가 (문화재청/보관·관리관청)
 - 평가금액에 따라 변상금 부과 조치 (문화재청/보관·관리관청)
 - 해당 조사기관 발굴허가제한 등 제재조치 (문화재청)

3. 과거 미귀속 매장문화재의 처리

- 출토유물로서 미신고 또는 누락으로 국가귀속 되지 않은 문화재는 분류·정리 작업을 실시하여 조속히 국가귀속 조치
- 발굴조사기관에서는 이 지침 시행일 현재 출토유물로서 미신고 또는 공고누락으로 국가귀속 되지 않은 문화재를 국가귀속 절차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신고할 것
- 시도에서는 국가귀속 대상문화재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공고(7일간)하고 공고기간(90일)이 경과한 후에는 지체 없이 공고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조치

※ 인용자료

- 문화재청, 2007, 『문화재관계법령집』 .
- 문화재청, 2007,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 .
- 문화재청, 2007, 『매장문화재 업무편람』 .

■ 전통건축 이론

1. 한국전통건축의 자연·인문적 환경 / 189
2. 한국건축문화의 시대구분 / 192
3. 지배사상 / 194
4. 건축내용에 따른 분류 / 199
5. 건축양식 / 215

경일대학교수 장 석 하

1. 한국전통건축의 자연·인문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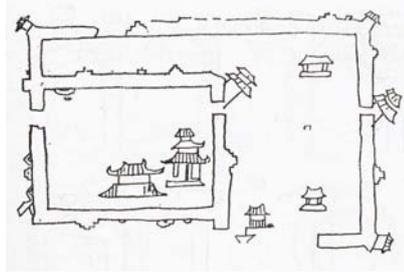
한국민족의 기원에 관하여서는 몇 가지 학설이 제기되었으나 그 가운데 퉁구스족을 근간으로 몽고족이 혼입된 종족으로 보는 설이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반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이 B.C. 3000년경이라고 보지만 문화의 정착시기는 아마 정착생활이 이루어진 시기인 농경문화가 발생하고 난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정착생활이 먼저 이루어진 중국으로부터 B.C. 3~4세기경 강한 영향을 받은 한반도 북부지역에서부터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에 건축문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정착생활이 시작되면서 생활요소들이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특히 건축문화의 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사회계층간이 사회적·문화적 질서에 의해 각각의 특성을 지니면서 나름대로의 발전과 형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즉 상부사회계층에 의한 성, 궁궐, 사찰, 분묘, 종교건축물, 관아건축물 등 공공성을 지닌 고급건축물들이 발생하는 반면 민가 등 사회 하부계층들에 의한 건축물들도 나타나게 되며, 시대에 따른 정치, 문화의 변화, 기술의 발달에 의한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건축문화는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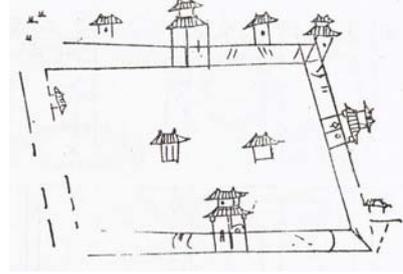


<그림-1> 움집 및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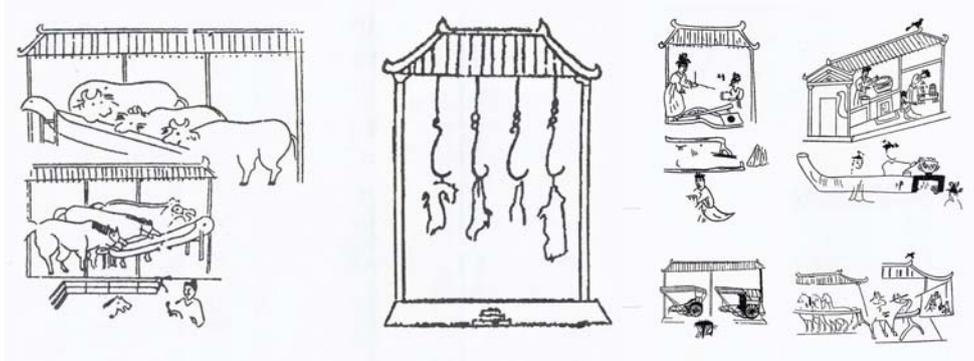
한반도의 건축문화의 발생시기인 B.C. 2세기경부터 기원 전·후 중국은 이미 한문화(漢文化)건축은 이미 완성 정착되었으며 한반도는 고구려(高句麗),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의 삼한(三韓)과 예(濊), 옥저(沃沮), 읍루(挾婁)·부여 등 소국가로서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의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 시기였다. 따라서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발전을 거듭한 한반도의 건축은 어느 범위 내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 생성되고 발전되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건축의 완전한 모방이 아니라 토속적인 문화와 결합되면서 한반도에 맞는 고유성과 지역적 특성이 가미된 독자적 건축으로 발전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전래된 흔적을 보여주는 예로서 발굴된 고분 및 벽화 등 여러 유적지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림-2> 요동성총 성곽도



<그림-3> 안악 제3호분 건축도



<그림-4> 안악 3호분 벽화

벽화에 그려진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형식은 목구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부구조를 받기 위한 공포의 형식이 잘 표현되어 있어 당시의 건축기술의 편린을 볼 수 있다. 특히 중국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였던 고구려 고분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감신총(龕神塚), 용강대묘(龍岡大墓), 쌍영총(雙楹塚), 안악(安岳)1,2,3호분 등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공포 구성과 구조까지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공포는 동양건축에서만 적용된 기법으로 지붕하중을 기둥에 전달하는 구조로서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의장성과 더불어 목조건축양식과 편년을 살피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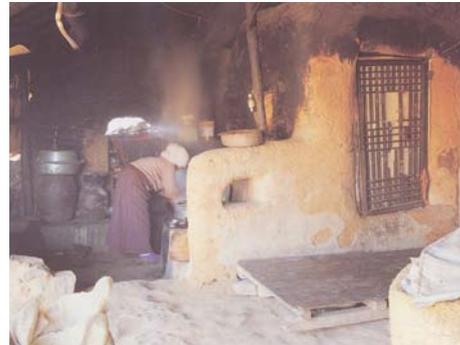
<그림-5> 가형토기

(1) 한반도의 자연과 건축

한반도의 기후는 대륙성과 해양성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기후대로서 4계절이 뚜렷하고 연교차(年較差)가 큰 편이다. 따라서 의식주의 관리에도 가변적이고 적응력이 강한 형태와 방법이 요구되었으며, 자연의 주기적인 변화를 생활과 피부로 느끼며 공존해야 했을 것이다.

한민족은 주어진 자연환경에 대해 추종해야 했고, 그러한 농경사회의 필연성으로 인해 자연력을 두려워했으므로 누구나 감히 자연을 지배하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자연을 찬미하고 사랑하면서 자연에 동화하려는 의식이 건축문화의 형성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자연조건 속에서 형성된 한반도의 건축은 목조건축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돌과 흙을 보조건축재료로 사용하였는데 건축에 사용되는 목재로는 소나무, 참나무, 전나무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 특히 소나무는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한반도는 국토의 75% 이상이 산악지대에 속하며 강우량은 연평균 1,100~1,500mm, 기온의 연교차가 심한 관계로 인하여 건축용 목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건축용재를 가장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보조재로 가장 많이 사용된 석재 가운데 화강암은 성, 담, 고분, 기단, 탑과 등 조적식 구조에 많이 채택되었다.



<그림- 6> 전통가옥

(2) 한반도의 인문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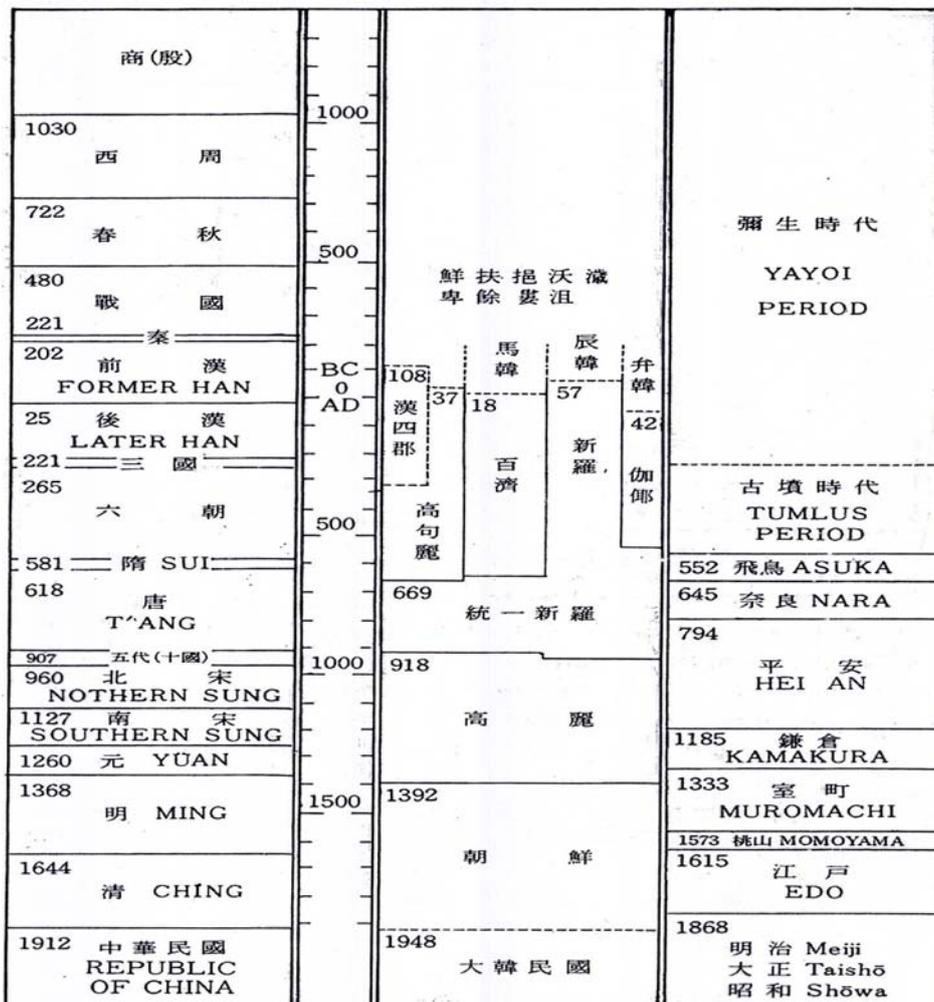
한반도 건축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불교의 유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세기 후반경 한반도에 전래된 불교는 한반도 건축문화에 많은 변화와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삼국 가운데 불교가 가장 먼저 전래된 고구려는 왕권의 확립 과정에서 불교는 매우 귀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고구려보다는 다소 늦게 불교를 받아들인 백제와 신라도 고구려와 유사한 과정을 밟게 된다. 삼국은 수도를 중심으로 많은 사찰을 건립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업들은 왕권 강화와 더불어 건축기술 발달에 큰 몫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의 목조건축물들은 재료적, 물리적 한계로 말미암아 현재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당시의 건축물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기단석이나 초석들에서 당시의 건축물들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들면서 종교의존적(宗教依存的) 경향이 심화되면서 불교의 일방적 교세확장(敎勢擴張)과 풍수사상(風水思想)의 생활화가 실제로 건축의 조영(造營)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건축은 불교문화에 의해 최전성기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통치이념으로 유교의 사상을 받아들여 과거제도가 확립되고 지방교육기관인 사학(私學)이 융성하기도 하였다. 조선에 들어서면서 유학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본이념으로 표방하면서 억불정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인문환경의 변화가 건축에서도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념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건축들이 탄생하게 된다.

2. 한국건축문화의 시대구분

건축문화의 시대구분에 있어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른 시대구분 방법의 타당성을 앞서워 원시시대, 고대, 중세, 근세로 시대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건축문화의 형성과 변천을 통찰할 때 정치, 사회적 측면이 그 중심이라 한다면 왕조(王朝)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時代区分	編年要素	年代	影響国
1. 先史時代建築	原始建築	紀元前	自然
2. 三国時代建築	建築文化導入, 韓国建築形成	紀元後~ 7世紀中期	漢, 隋, 唐
3. 統一新羅時代建築	韓半島建築文化統一, 佛教建築成長	7世紀中期~ 10世紀	唐
4. 高麗時代建築	佛教建築盛況, 韓国建築文化極致	10世紀初~ 14世紀	宋, 元
5. 朝鮮時代建築 (前期)	儒教建築思想形成 動的建築文化	14世紀末~ 16世紀	明
6. 朝鮮時代建築 (後期)	建築技術의 衰退期, 細部裝飾發達	16世紀末~ 20世紀	清
7. 近代建築	鉄, 유리, 콘크리트	20世紀初~	西洋



<표-1> 한국건축시대구분

3. 지배사상(支配思想)

자연현상을 도외시하거나 대항함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불가항력이다. 즉 자연력이란 인간의 힘에 비해 너무나도 크며 인간생활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현상인 것이다. 건축이 자체만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결과적으로 건축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이상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며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건축에 내재되어 그 이상을 실현시켜 주는 건축사상일 것이다.

1) 풍수사상(風水思想)과 도참사상(圖讖思想)

풍수사상과 도참사상은 삼국시대 말기 중국에서 전래되어 고려 및 조선시대에 극히 번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신리말의 승려인 도선(道詵)은 송도를 도읍지로 선택한 것과 많은 사찰들의 입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양택론(陽宅論)은 궁전뿐만 아니라 양반가에서도 택지선정의 기준이 되었고 가옥의 평면과 형태에서도 큰 영향을 주었다.

풍수는 인류의 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 발전되어 온 땅에 대한 태도의 체계화로 볼 때 환경론, 즉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 위한 방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가사상(道家思想)은 노장사상(老莊思想)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자연의 실상을 깨달은 참지혜를 통하여 무위의 삶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을 표현으로 사찰건축에 자연스레 산신각(山神閣), 칠성각(七星閣) 등이 도입되고 조선 후기 사찰에서 신선(神仙)과 관련되어 지는 용두(龍頭)와 봉두(鳳頭) 등이 조각되기하며 건물의 명칭에도 나타난다. 또한 정원이 조경에도 이러한 사상의 표현으로 창덕궁 후원의 부용지(芙蓉池), 안압지 등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음양오행사상은 건축에서도 적용되어 산은 양(陽)이고 평지는 음(陰)으로 해석되어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음의 건축이 좋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색채에서도 이러한 기본원리가 작용하여 오방색(五方色)이 탄생하고 단청(丹青)의 기본색으로 이용되었다.

(1) 풍수지리설의 유행

10세기를 전후하여 건축이 지방으로 널리 확산되고 특히 불교사찰이 도회지를 벗어나 지방 산간에 조성되면서 한반도 산천이 갖는 지리적인 이점을 집을 짓고 생활하는데 살리고자 하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것은 점차 이론화되고 체계화되어 갔으며 결국에는 풍수지리설이라는 사상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

풍수설은 음양과 오행이 서로 작용하여 땅에 좋은 기(氣)를 탄생시킨다고 보고, 좋은 기가 많이 모이는 곳을 명당으로 파악하여 명당에 집이나 마을, 무덤을 조성할 것을 주장한다. 그

출발은 기원전 200년경 중국 동진에서라고 하며 세월이 흐르면서 산의 형세나 토질, 물의 흐름, 그리고 방위를 요체로 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만들어졌다. 풍수설에서는 산과 물의 관계를 중시한다. 산을 정적인 것으로, 물을 동적인 것으로 보며 산이 잘 포위하고 있어 기운을 흩어버리지 않고 물이 기운을 적절히 이동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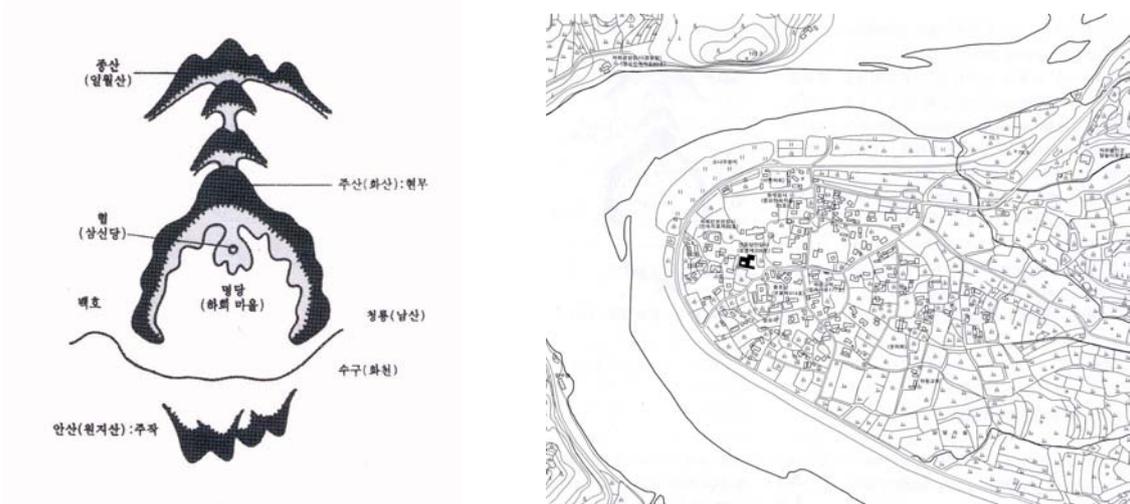
풍수의 개념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조금씩 퍼져갔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하나의 이론 체계를 갖추고 사람들의 삶과 건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0세기경에 와서이다. 당시 풍수설은 선승들 사이에 폭넓게 수용되었다. 전남 영암, 곡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승려 도선(道詵)은 이 시기 풍수지리설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대표적 인물로 손꼽힌다.

도선이 특히 강조한 것은 비보사탑설(裨補寺塔說)이었다. 지세가 약하고 쓸모없는 땅에 절이나 탑을 세워 땅을 사람들에게 이로운 곳으로 바꿔준다는 비보설은 지방 각지에 새로 절이나 탑을 세우는 이론적 방편이 돼 주었다. 특히 한반도의 형세를 배와 저울에 비유하여 배가 균형을 잡아야 안전하고 저울이 수평을 이루어야 하듯이 한반도도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전라도 지역을 배의 키로 보아 이곳에 절과 탑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변두리에 치우쳐 있는 경주 대신 개성이나 평양 등 반도 중심부가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말했다고 전한다. 이런 주장에는 이미 절이 들어차 있는 경상도 일대와 전주에서 아직 사찰 건립이 미약한 전라도 일대의 사찰 건립을 부추기는 의도가 담겨있다. 도선과 같은 지방의 선승에게 경주 주변의 왕실 사찰이나 화엄 사찰에 대항할 수 있는 지방의 사찰 건립은 중요한 과제였다고 생각된다. 비보사탑설은 경주를 벗어난 지방 각지의 사찰 건립을 뒷받침해 주는 사상적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짐작된다. 또 기울어가는 신라 왕실에 대신해서 한반도 중심부에서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어야 할 것을 암시하는 정치적 의도도 엿보인다.

도선 이후로 풍수설은 점차 기복적인 도참사상과 결합되어 도읍이나 집 짓는 터, 무덤 쓰는 자리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고려 왕실이 여기에 크게 심취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후삼국이 정립하고 있을 때 고려 태조는 도선의 주장을 크게 신봉했다. 태조는 그 자신이 도성 내에 사찰을 조성하면서 도선의 주장에 입각한 기복적인 생각을 따랐고 또 후대 왕들에게 남기는 열 가지 교훈에서 풍수설에 얽힌 여러 가지 주문을 남겼다.

이론적으로 풍수에서 중시하는 것은 간룡, 장풍, 득수, 정혈, 좌향, 형국 같은 것들이라고 한다. 산을 용에 견주어 산맥의 흐름이나 형세를 보는 것이 간룡이며, 산이 둘러싸이고 주변에 물이 흐르는 형세를 보아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 장풍과 득수가 결정된다. 소위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 전주작(前朱雀), 후현무(後玄武)라하여 사방에 산이 둘러싸는 형세를 이상으로 치고 그 안에 생기가 집중되는 자리를 혈(穴)이라고 한다. 혈의 위치에서 본 방위가 좌향을 결정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산세를 인물이나 짐승의 형상에 견주

어 닳이 알을 품고 있다는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이니 연꽃이 물위에 떠 있다는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이니 하는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 형국론(形局論)이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점차 체계화하면서 풍수설은 사람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림-7> 하회마을



<그림-8> 양동마을

形跡名	郡邑名	風水圖	風水解説	形跡名	郡邑名	風水圖	風水解説
梅花落地形	水原 原州 大田 禮山		<ul style="list-style-type: none"> 梅花는 고결한 꽃이며, 그 꽃이 떨어지면 향기가 사방에 퍼진다. 자손의 별목이 큰 명이다. 	平壤 淸州 羅州 安東 茂州 公州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돛대, 닻을 모두 구비하면 대길. 행주형은 인물을 만재해서 바야흐로 출발하려 하는 배를 멈추어 두는 의미로서 이 형의 보지에는 사람 및 재화가 풍성의 모임. 행주형의 땅은 우물을 파면 배필바닥이 깨져 침수하므로 이를 禁忌視함. 행주형의 神補, 顯勝의 예로서는 平壤의 쇠뿔(鐵甌), 淸州 龍頸寺址의 猿轡亭(꽃대), 羅州邑 동문밖의 石橋, 公州邑內的 舟尾山, 鐵止山 등의 地名을 들 수 있음. 	
玉女擲琴形	慶州 高城 咸津 西州 長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녀는 遊藝에 숙달한 여자, 뛰어난 악기, 용류 불미의 옥녀가 악기를 타면 누가 혼란하지 않으나, 누가 울추고 노래하지 않는다. 이 지형에서는 대대로 인제, 또는 과거급제, 부자, 옥녀를 낳다. 	泰安 江華 江陵 羅州 靑松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제는 天鵬인데, 이 천계가 한밤중에 먼저 새벽을 알린 후에 地上의 닭이 운다. 닭은 한번 알을 품으면 이십여마리의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때문에 역시 大吉. 이 지형의 소용은 무리를 이끄는 위대한 호걸이 나오고 대대로 많은 자손을 번식함. 	
玉女散髮形	元山 禮泉 長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형은 案山에 달빛형(月鏡形), 오른쪽에 거울형, 왼쪽에 분갑기를 향하여형임을 맺는다. 선발은 화상하기 위한 자세이므로 곧 단정된 모습어 될 것을 예기한다. 이 지형의 소용은 사람에게 선양받을 정도로 올라가며, 佳人, 佳人이 출생한다. 	尙州 永同 靈光 金堤 鎭川 遂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는 성격이 온순하며 경직하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자주 누워 먹는다. 臥牛形은 案山에 牧草形을 맺는다. 열려있어 누워서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世世 大人이 출생하고 자손이 누워서 먹을 수 있는 복을 누린다. 	
金龜夜尻形	金海 首州 羅山 丹苞		<ul style="list-style-type: none"> 金龜는 天龜이다. 천귀는 氣를 잘 합해서 사물을 만든다. 이 천귀가 전룡상 후에 빠지면 토호승, 즉 五行의 상생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토는 五行의 氣를 받아 땅속으로부터 五行의 氣를 합해서 사물을 잘 만든다. 宅地로서 대길 	永川 咸安 金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황은 최대의 靈鳥이다. 이 지형에서는 聖人과 君子가 나온다. 飛鳳形의 顯勝의 例로서는 永川(남쪽산에 봉이 좋아하는 대나무를 심어 竹防山이라 이름짓고 또 봉은 자지소리를 들으면 이를 잡으려고 날아가지 않는다하여 남쪽산을 까치산(鸛山)이라 이름지음) 咸安(백운동 숲과 대나무 숲을 만들어 학이 못날아가게 함) 金溝(봉을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남쪽 골짜기에 關同寺라는 절을 세움) 	
將軍大砲形	丹陽 寶城 龜城		<ul style="list-style-type: none"> 富貴하게 되고 大小甲科들이 나온다. 				

<표-9> 전통마을 형국도

고려의 도읍인 개경, 태조 때 개경 시내에 지어진 10개의 사찰, 또 개경 북쪽 오관산에 세운 대흥사, 논산의 개태사와 같은 지방의 사찰들이 이런 풍수설을 바탕으로 두고 위치가 선정되었다고 전한다. 본래 풍수설은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자연이 갖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파악해서 자연 현상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평범한 논리 체계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풍수설은 군사적인 전술에서부터 농사짓는 일이나 마을 터를 잡고 집 짓는 일 등 일상사에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풍수설이 신라말 고려초에 유행하게 되면서 당시의 시대적 특수성에 따라 비보설(裨補說)과 도참설(圖讖說)로 자리 잡게 되었다.

풍수의 개념이 비보설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자연의 형상에 적응해서 집을 지으려는 자세가 두드러졌다. 비보설에 의하면 높은 산을 양(陽)으로 보아 이런 곳에는 집을 높게 지어 양과 양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크게 꺼리고, 산이 있는 곳에는 집을 낮게 지어 양과 음(陰)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시했다. 이것은 한반도아 같이 산이 많은 곳에서 건물을 자연 속에 높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도참설은 특히 지배층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고려 왕실은 도참설에 이끌려서 수많은 사찰과 탑을 세우고 또 특정한 도시를 선호하고 거기에 많은 궁전을 세웠다. 풍수지리설은 고려시대 전 기간을 거치면서 지배계층 사이에 널리 신봉되었다. 10세기를 지나 고려 왕실이 전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나가는 과정에서 풍수 도참사상에 입각한 건축 활동은 하나의 큰 줄기를 이루면서 전개되어 나갔다. 이제 한반도의 건축은 고대건축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풍수지리설은 그 바탕을 이룬 생각 중 하나가 되었다.

2) 도가사상(道家思想)과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

도가사상은 철학사상으로 엄밀히 도교와 구별된다. 도교가 고대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억리, 음양, 오행, 의술, 점성, 불교, 유교사상까지 혼합되어 심신수련을 통해 불로장생과 현세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라면, 도가사상은 노장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자연의 실상을 깨달은 무위의 삶을 추구하는 사상으로 엄연한 구별을 할 수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방지(方池)와 삼신선산(三神仙山)인 방장(方丈), 봉래(蓬萊), 영주(瀛州)를 상징하는 섬은 도가사상의 표현이며 방과 원은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음양오행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석굴암의 평면과 불국사의 구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도가사상의 미적의식은 환경에 따라 변화시켜 구성되었음도 창덕궁 낙선재 뒤뜰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즉 연못을 만들 수 없는 경우 석단(石壇)을 쌓아 만든 화계(花階) 앞에 석련지(石蓮池)를 놓고 화계 위에는 괴석(塊石)을 석함에 담아 삼신선산의 영주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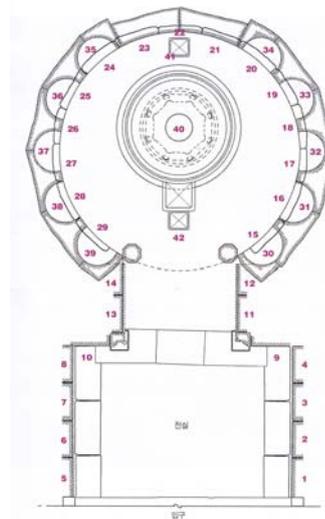
<그림-10> 창덕궁 청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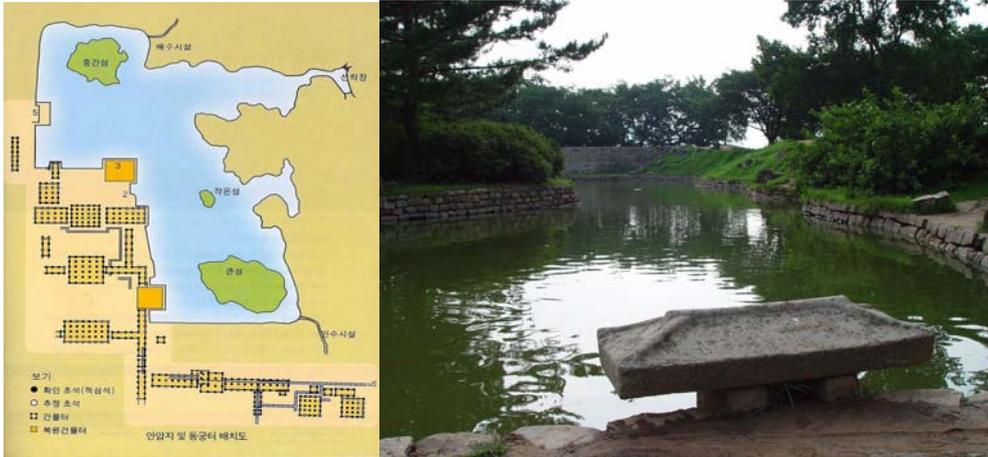
<그림-11> 용문사 윤장대



<그림-12> 낙선재 후원



<그림-13> 석굴암 평면도



<그림-14 > 안압지



<그림-15> 경주 불국사



<그림-16> 창덕궁 부용지

4. 건축내용에 따른 분류

1) 사찰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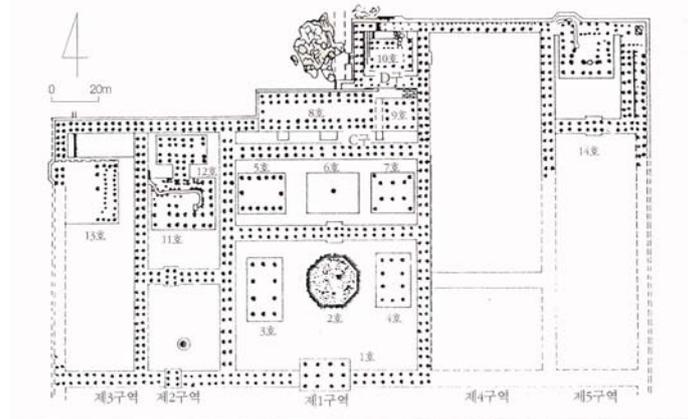
한반도 건축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불교의 유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세기 후반경 한반도에 전래된 불교는 한반도 건축문화에 많은 변화와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세 나라 모두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왕실과 귀족 계층이었다.

삼국 가운데 불교가 가장 먼저 전래된 고구려는 왕권의 확립과정에서 불교는 매우 귀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고구려보다는 다소 늦게 불교를 받아들인 백제와 신라도 고구려와

유사한 과정을 밝게 된다. 삼국은 수도를 중심으로 많은 사찰을 건립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업들은 왕권 강화와 더불어 건축기술 발달에 큰 몫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의 목조건축물들은 재료적, 물리적 한계로 말미암아 현재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당시의 건축물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기단석이나 초석들에서 당시의 건축물들을 상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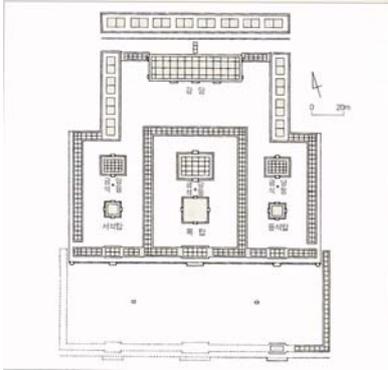
(1) 삼국시대

발굴조사에 의해 확인된 고구려 사원은 평양부근에 집중되어 있는데 원오리사지, 상오리사지, 정릉사지와 청암리사지(淸岩里寺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운데 8각 건물지를 중심으로 금당(金堂)이 자리하면서 주변으로 회랑이 둘러싸는 삼금당식(三金堂式) 배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예는 이웃한 일본의 아스카사지에서서도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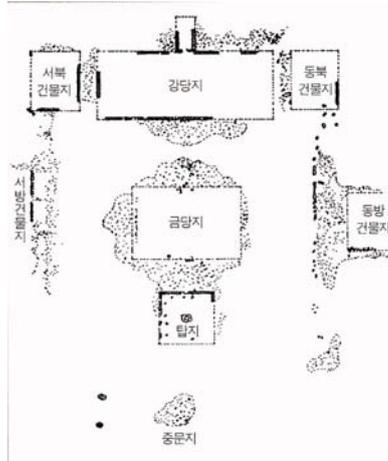


<그림-17> 정릉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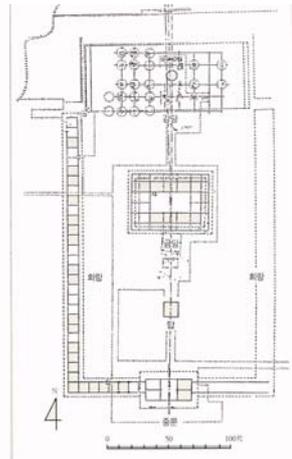
그리고 백제는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발굴된 군수리사지, 동남리사지, 금강사지 및 정림사지는 남북직선축에 따라 문, 탑, 금당, 강당이 축선에 따라 자리하고 주변에 회랑이 둘러싸는 흔히 일탑식(一塔式) 가람배치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장 규모가 장대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미륵사지인 경우 금당을 셋을 둔 삼원식(三院式) 배치를 지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라의 경우도 거대가람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일탑식 가람배치인 황룡사(黃龍寺)의 창건을 이루게 된다. 그 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사찰의 배치가 변화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불국사(불국사), 감은사(感恩寺), 사천왕사(四天王寺) 등은 이탑식가람(二塔式伽藍)으로의 변화를 보이면서 탑 중심에서 당(堂) 중심으로의 숭배대상의 변화가 나타난다. 삼국시대에 건립된 현존하는 목조건축물은 없으나 익산미륵사지석탑(益山彌勒寺址石塔)이나 정림사지(定林寺址) 석탑을 통해 당시 목조건축물의 수법 일부를 살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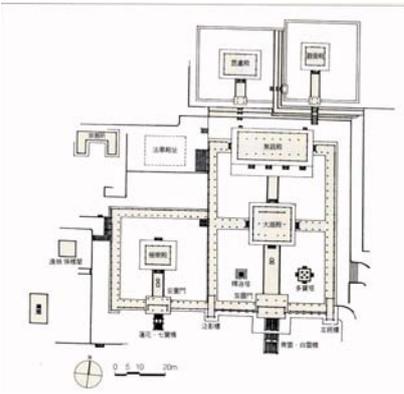
<그림-18> 미륵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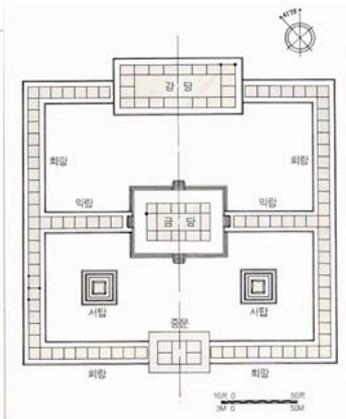
<그림-19> 군수리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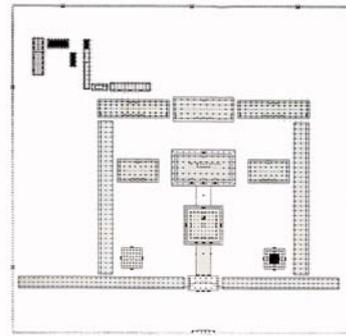
<그림-20> 정림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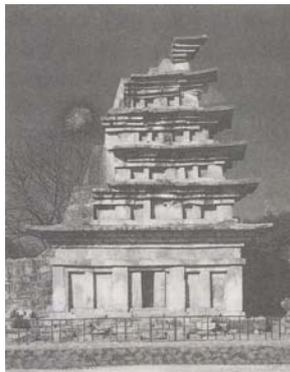
<그림-21> 불국사



<그림-22> 감은사지



<그림-23> 황룡사지



<그림-24> 익산미륵사지석탑



<그림-25> 정림사지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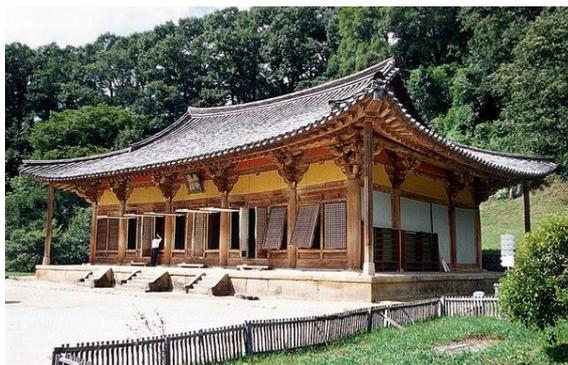
(2)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통일신라시대에 사용되었던 이탑식가람배치(興王寺)와 삼국시대에 사용되었던 일탑식가람배치(佛日寺)가 혼용되면서 중심영역 좌우로 동,서원(院)이 첨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성 연복사(演福寺)인 경우 동전서탑식배치(東殿西塔式配置)와 남원 만복사의 서전동탑식배치(西前東塔式配置) 등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토속신앙적 색채 후한 칠성각(七星閣), 응진전(應眞殿), 영산전(靈山殿), 산신각(山神閣) 등의 건축물들이 첨가되고 금당이 대웅전(大雄殿), 능인보전(能仁寶殿), 나한보전(羅漢寶殿)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리고 평지가람(平地伽藍)에서 밀교적(密敎的) 성격이 강한 산지(山地)로 위치를 옮겨감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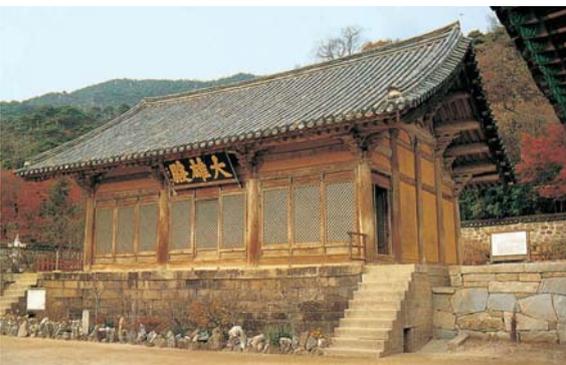
고려 중후기 건축물로서 안동(安東) 봉정사(鳳停寺) 극락전(極樂殿),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無量壽殿), 예산(禮山) 수덕사(修德寺) 대웅전(大雄殿), 황주(黃州) 성불사(成佛寺) 응진전(應眞殿) 등 약 10여동이 현존하고 있다.



<그림-26> 봉정사 극락전 공포



<그림-27> 부석사 무량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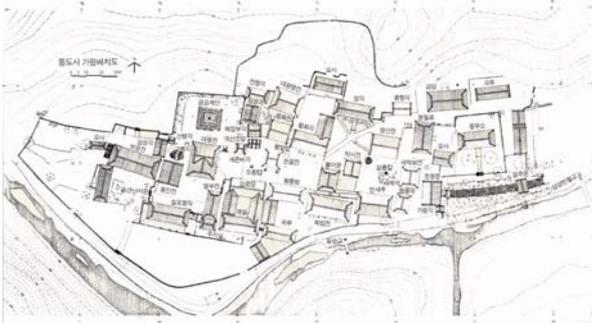
<그림-28> 수덕사 대웅전



<그림-29> 황룡사 복원 모형도

(3)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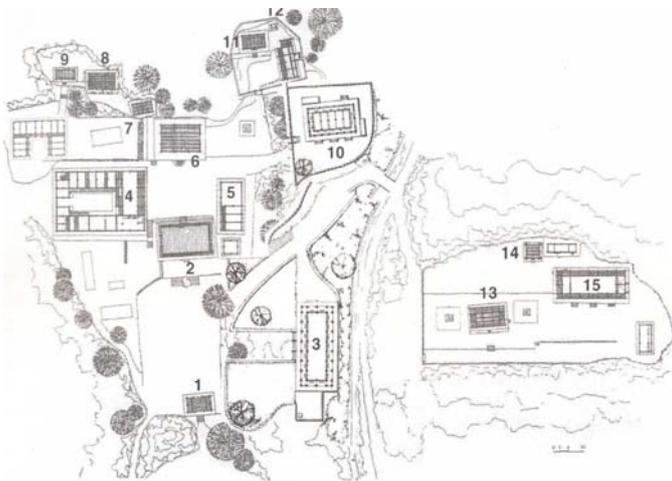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억불책(抑佛策)으로 인하여 고려시대에 비하면 점차 세력이 약화되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도심지에 사찰은 대부분 폐멸되거나 심산유곡에 위치한 사찰들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교의 뿌리 깊은 잠재세력은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면서 불교건물의 중수와 보완활동을 계속되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커 이전의 모습을 복구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가람의 구성은 고려시대의 가람형식을 계승하면서 지형에 따른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산지가람(山地伽藍)이 조성되었고 주전 전방 좌우에 승료(僧寮)를 두고 중정(中庭)을 건너 전면에 루(樓)나 문(門)이 건립되는 산지중정식가람형식(山地中庭式伽藍形式)이 정착된다. 대표적 사찰로 청평사(淸平寺), 봉은사(奉恩寺) 등이 있으며 현존하는 사찰들이 임란을 전, 후하여 증창되거나 재 조성된 것이라 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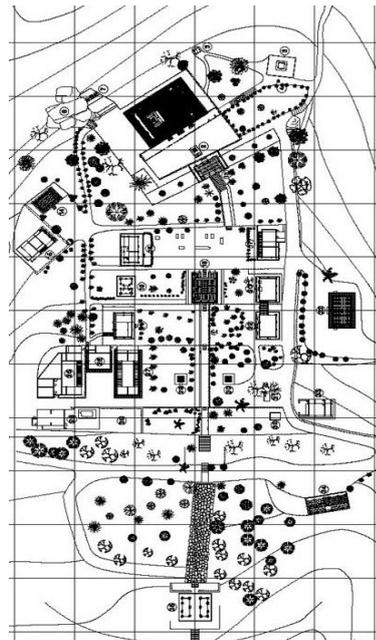
<그림-30> 통도사 배치도



<그림-31> 봉정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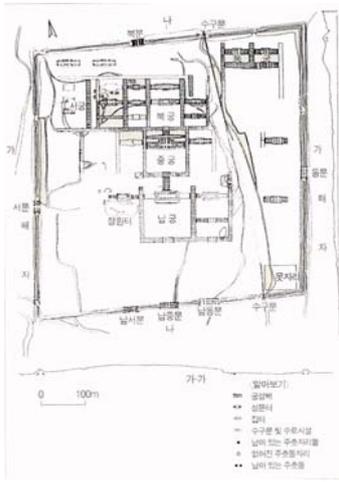
<그림-32> 동화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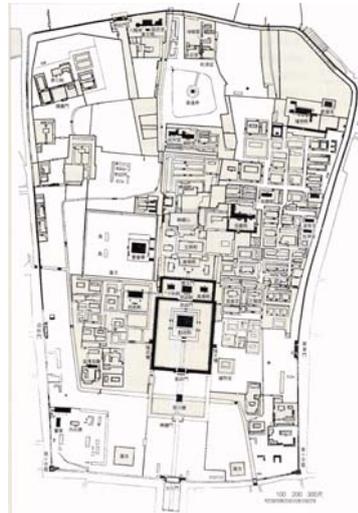
<그림-33> 부석사 배치도

2) 궁전, 관아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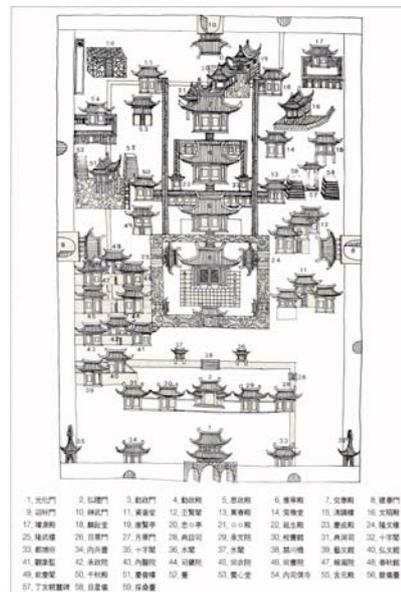
불전에 대신해서 건축의 위용을 가장 크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궁궐이었다. 조선왕조의 궁궐은 유교의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지나치게 사치하지 않지만 백성에게 위엄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궐건축의 기본 목표였다. 궁궐은 국가적인 가례(嘉禮)가 치러지는 행사장인 만큼 그 예의범절이 건축공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이었다. 그러면서도 왕실의 일상생활을 수용하는 그릇이 되어야 했다. 의례와 생활, 이 두 가지 측면이 궁궐의 조형을 좌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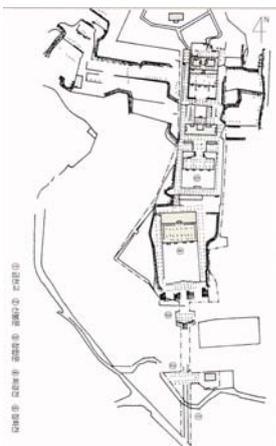
<그림-34> 고구려 안악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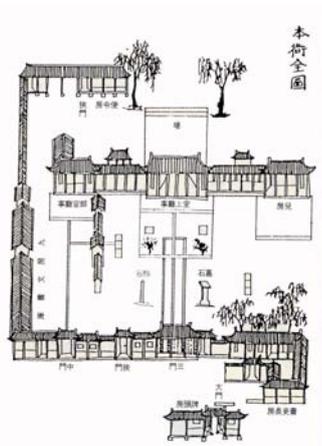
<그림-35> 경복궁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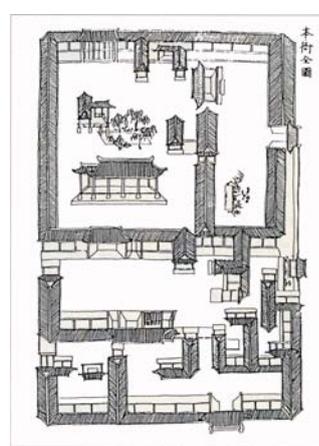
<그림-36> 경복궁도



<그림-37> 개성 만월대



<그림-38> 호조본아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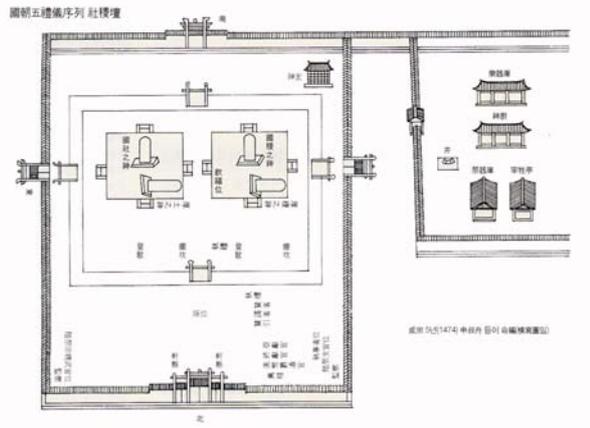
<그림-39> 형조본아전도

한양 천도 후에 조선왕조의 정궁으로 경복궁(景福宮)이 세워졌다. 나라의 공식적인 궁인 정궁(正宮)에 이어 따로 도성 내에 이궁(離宮)으로 창덕궁(昌德宮)이 세워지고 한참 뒤에 창덕궁 곁에 창경궁(昌慶宮)이 별궁(別宮)으로 세워졌다. 이 세 궁은 조선전기 2백 년 동안 왕조의 중요한 궁궐로 사용되었다. 경복궁은 예제에 충실한 상징적인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런 강한 상징성은 평상시의 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다. 이궁인 창덕궁은 자연미를 살리고 토착적 건축구성이 가미된 궁으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자연과 조화된 건축공간의 아기자기한 구성은 창덕궁에서 훨씬 잘 짜여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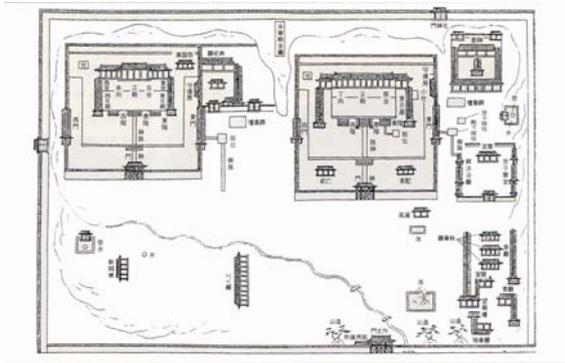
3) 유교건축

집권 지배층이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으면서 도성(都城)은 물론 지방 각 도시의 중심부에는 예제(禮制)와 관련한 시설들이 속속 건립되었다. 그 중에도 길례(吉禮), 즉 각종 신령에게 제사지내는 시설이 도성은 물론 전국 각 도시에 세워졌다. 이들 제사시설에는 유교가 갖는 합리성이나 질서를 존중하는 정신이 반영되었다. 조선왕조 지배계층은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다. 어느 하나의 주장에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인간생활 전반에 일정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유교의 합리정신과 질서관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엄격한 질서와 합리성을 내세우는 단정하고 검소한 조형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조선왕조의 제사시설은 건국 후 30, 40년 사이에 그 형식이 갖추어졌다. 이들 제사시설의 형식은 고려시대의 것을 뼈대로 해서 여기에 고대 경전에 입각한 새로운 해석을 가미한 것이었다. 고려시대의 제사시설은 기본적으로 당나라에서 정해진 제도를 바탕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고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었는데 조선초기에 이를 다시 수정한 형태를 취하였다. 유교시설 중에 건축적으로 중요한 것은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그리고 문묘(文廟)이다. 종묘는 역대 임금의 신위(神位)를 모신 사당이며 사직단은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지내는 곳이다. 왕조시대에 있어서 종묘와 사직은 국가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문묘는 유교를 창시한 공자를 신격화한 사당이다.



<그림-40> 사직단



<그림-41> 종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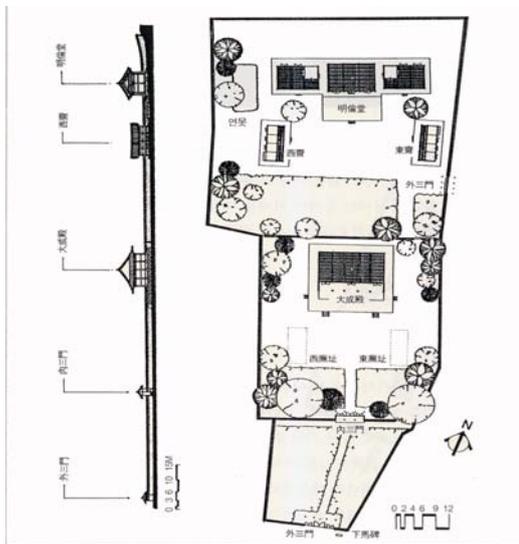
전국에 지어지는 문묘 중에 으뜸은 도성의 문묘이다. 도성의 문묘는 교육기관을 함께 갖추고 있어 성균관이라고 불렸다. 현재의 건물은 17세기 이후에 다시 지은 것이지만 기본배치는 조선 초기에서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네모반듯한 울타리로 둘러싸인 대성전 일곽이 앞에 있고 그 바로 뒤에 직선축상에 명륜당 일곽이 놓여 있다. 주변에는 서적을 보관하는 건물이나 문묘의 제사를 집행하기 위한 여러 부속 건물들이 마련되어 하나의 큰 건물군을 이루지만 중심부에서는 직선축을 살리고 좌우 대칭 구성을 하여 엄격한 질서를 잡은 모습이다.

지방 도시에서 문묘는 제사와 아울러 유교의 교육기능을 겸하면서 향교(鄕校)로 세워졌다. 지방에서도 향교의 건물구성은 서울의 문묘를 그대로 본받아 그 축소 복사판으로 건립되었다. 제사를 지내는 건물로 대성전(大成殿)과 동·서무(廡)가 하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서고 교육을 위한 명륜당(明倫堂)과 동·서재(齋)가 따로 별도의 울타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 외곽에는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사나 제사를 준비하는 전사청(典祀廳) 등이 마련되는 것이다. 지방마다의 특색을 가미한 부분이라면 대성전과 명륜당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경우를 볼 수 있고 간혹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누각을 정문 상부에 또는 별도의 자리에 마련하는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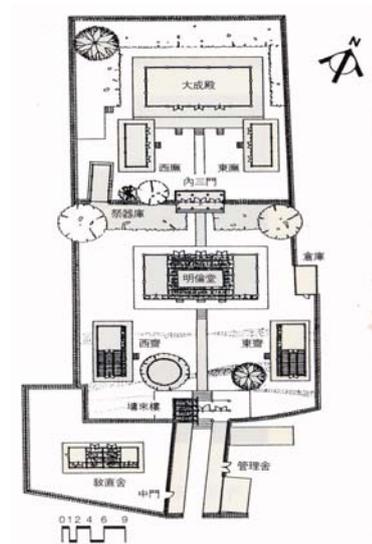
향교 역시 엄격한 대칭과 질서를 조형의 근본으로 하였다.

조선초기의 완벽한 향교 모습을 전하는 예는 없다. 후대에 개수되고 재건된 상태를 두고 짐작할 따름이다. 대체로 배치 방식을 보면 제사지내는 대성전 일곽이 앞에 놓이고 명륜당을 둘러싼 공간이 뒤에 놓이는 소위 전묘후학(前廟後學) 형식 또는 그 반대인 전학후묘(轉學後廟), 즉 명륜당이 앞에 놓이고 대성전이 뒤에 놓이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간혹 이들이 좌우로 나란히 놓이는 경우도 있다. 대개 향교가 일찍 건립된 것으로 믿어지는 개성이나 경주, 전주 등 큰 도시에서 전묘후학 형식이 많이 보인다. 처음에는 이런 전묘후학 형식이 먼저 자리 잡다가 나중에 가면서 그 반대로 제사공간을 뒤에 두고 교육시설을 앞에 두는 전학후묘 형식으로 변해간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특히 작은 고을에서 향교를 경사진 지형에 세우게 되면서 명륜당보다는 제사지내는 대성전을 뒤편의 경사진 높은 곳에 모시는 경향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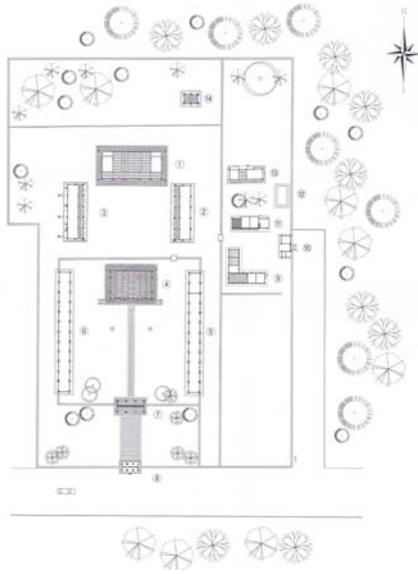
향교가 관학이라면 서원은 지방에 근거를 둔 사림세력이 선배 학자를 추모하고 후진들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건립한 일종의 사설 학문 기관이다. 그러나 서원의 역할은 단순한 학문 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림이 향촌 사회에서 지배세력으로 자리 잡는 근거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림-42> 나주향교



<그림-43> 영천향교



<그림-44> 경주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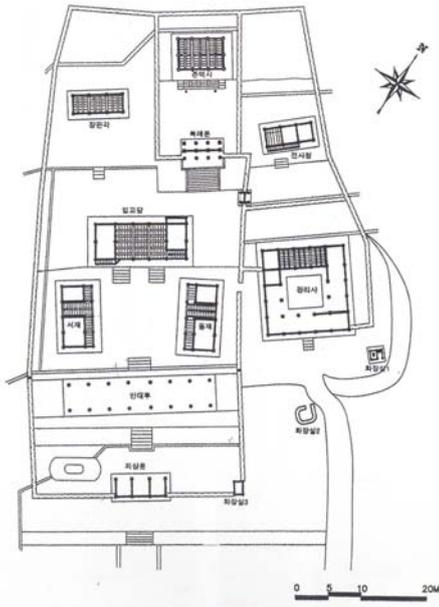
<그림-45> 상주향교

서원의 출발은 1543년(중종 38)에 풍기 군수 주세붕(周世鵬)이 고려 말 학자 안향(安珦)의 위패를 모시고 유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경상도 순흥(順興)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창건한 데서 비롯된다. 이후에 서원은 지방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나라에서 서원의 존재를 인정해 주고 재정적인 혜택을 주는 사액 제도가 생기면서 서원은 사람세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다.

서원의 중요한 기능은 뛰어난 선현에 대한 제사와 함께 인근 유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교육 기능이었다. 학생들은 일정한 기간 서원에 머물면서 경전을 공부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다. 나라에서는 학생들의 정원을 큰 서원은 30명, 작은 서원은 20명 정도로 제한하고자 했으나 실제로 유명한 서원에는 7,80명 넘는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원은 선비의 학덕을 추모하고 후학들의 학문 거점이 되는 동시에 인근의 선비들이 한곳에 모여 세상사를 논의하는 교류의 장소이기도 하였다. 경전을 보존하고 때로는 문집을 간행하기도 하고, 선현이 쓰던 각종 집기물을 소중히 보관하는 역할도 맡았다. 아울러 학맥을 같이 하는 선비들에게는 여행 중 들러서 숙식을 해결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상면해서 유대를 돈독히 하는 장소로도 쓰였다. 서원은 제사와 강학을 기본 기능으로 하면서 한편으로 서적과 유물의 보관과 같은 역할 외에 사교의 장소를 마련하는 종합적인 문화 공간이었다. 아울러 향촌에 사회 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질서를 잡아 가는 구심점이 되기도 하였다.

17세기 말에 서원은 영남은 물론 거의 전국에 걸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 서원은 숙종 제위 중에만도 166개가 지어지고 그 중 105개소가 사액 서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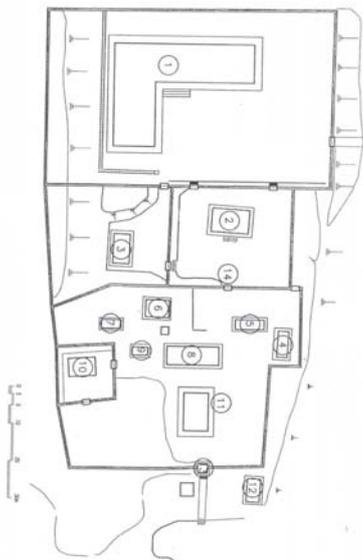
고 한다. 그러나 서원의 급격한 증가는 서원 본래의 기능을 변질시키는 점도 있었다. 초기의 서원은 선현에 제사지내는 의식보다는 학자들이 모여 학문을 토론하고 독서하는 교육기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숙종대 이후의 서원은 교육 기능보다는 선현에 대한 제향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명칭도 서원이라 하지 않고 무슨 무슨 사(祠)라고 해서 단순히 사우로써의 역할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서원은 선비들간의 진지한 학문 교류보다는 특정한 학파에 속한 선현을 추모하고 그와 학맥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결집하는 세력 거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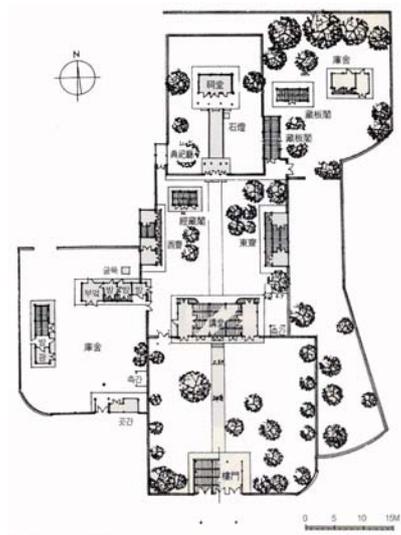
<그림-46> 병산서원



<그림-47> 도산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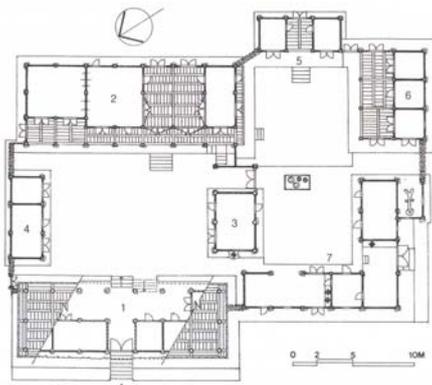


<그림-48> 소수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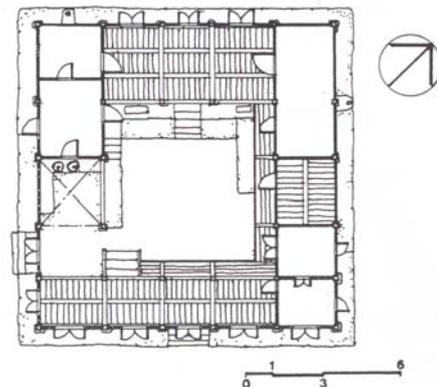


<그림-49> 필암서원

화한 것이다. 아울러 사액에 대한 요구도 많아져서 지나친 사액 서원의 증가가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다. 그 결과 18세기 중기 이후로는 나라에서도 서원을 함부로 짓는 것을 억제하는 조처를 취하게 되었고 서원의 창설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 외의 유교건축물로서 문중의 회합이나 향사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재사건축들도 지역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림-50> 능동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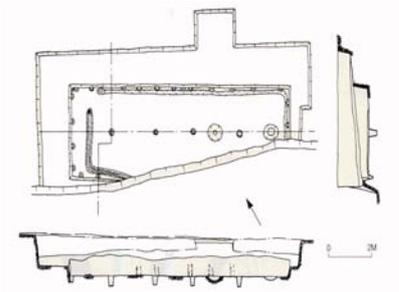


<그림-51> 의성김씨서지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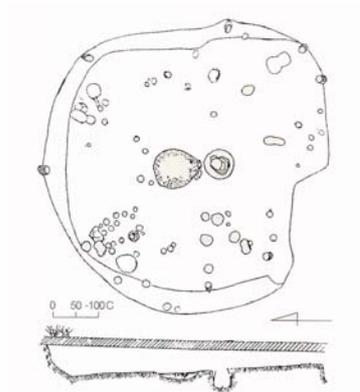
4) 주거건축

(1) 원시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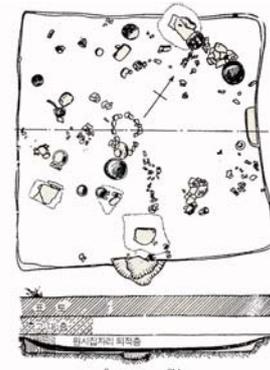
한반도에는 구석기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해 왔던 것으로 발굴을 통해 알려져 왔으나 당시의 주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주거라기보다는 은신처(隱身處)로서의 의미가 더욱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평양의 상원 검은모루동굴(60~40만년전)과 충청북도 점말동굴 등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신석기시대의 주거의 흔적은 전국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서울의 암사동, 평남 궁산리, 부산 동산동 등에서 움집형태의 주거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 후 기원전 1000~기원 후 300년경 청동기, 철기시대에 들어 본격적인 농경시대로 접어들면서 정착생활이 시작되고 이를 위한 주거로 군집생활이 시작되면서 목구조발달과 공간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주거의 규모와 형식이 변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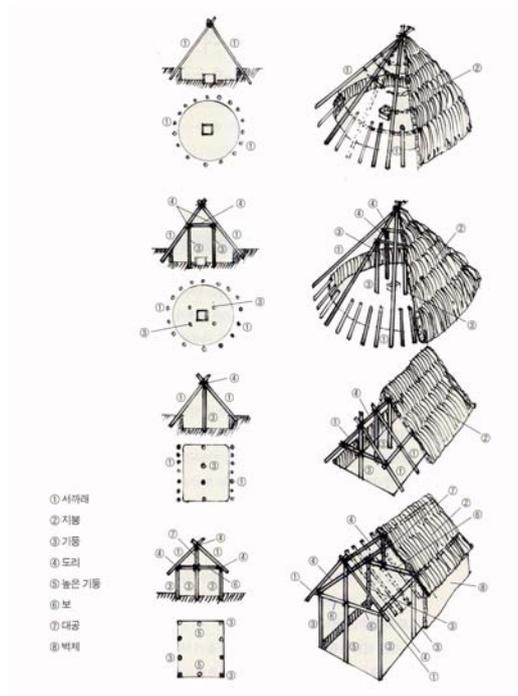
<그림-52> 파주 교하리주거지



<그림-53> 궁산유적



<그림-54> 집탐리 주거지



<그림-55> 움집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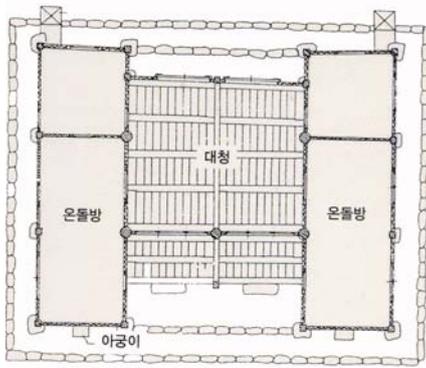
(2) 삼국시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고구려는 중국문화와 교류를 하면서 중국의 전통주거형태인 삼합원, 사합원 등과 유사한 용도에 따라 채와 채가 분리된 주거형태를 지닌 것으로 안악 3호분의 벽화를 통해서 그 흔적을 살필 수 있다. <구당서 고려조>에 의하면 고구려인들은 산과 골짜기에 의지하여 집을 지었고 일반 주택은 초가였으나 왕궁, 관아, 사찰 등은 기와지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갱(長坑)을 만들고 겨울을 따뜻하게 지냈다는 기록으로 보아 온돌구조가 가옥내에 설치되었으며 벽화를 통해 입식생활을 영위하였음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백제의 주거에 대해서는 건축자료가 미약하여 주거의 형태를 알 수 없으나 당시의 문화교류의 상황으로 볼 때 고구려와 유사한 주거였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신라의 주거는 삼국사기 옥사조의 기록에 의하면 가사규제가 정립되어 신분에 따라 가옥의 규모를 제한했으며 그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삼국유사의 금입택(金入宅)이나 사절유택 등의 기록과 출토된 가형토기 등으로 볼 때 특히 통일신라시대에는 상당한 수준의 건축술과 장식이 첨가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3) 고려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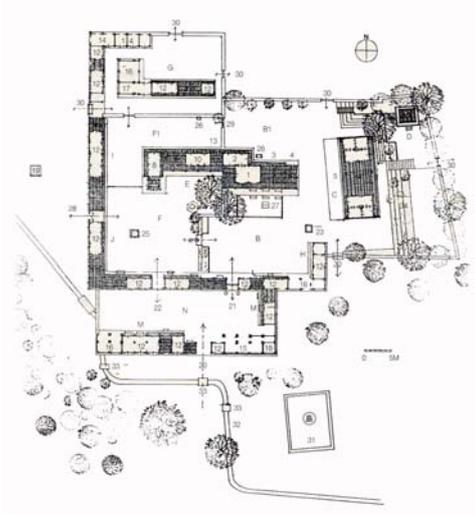
고려시대는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주거를 계승하면서 서서히 변화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당시의 주거건축으로 맹씨행단(孟氏杏壇) 밖에는 없어 문헌자료를 통하여 당시의 주거형태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려도경 민거조>를 살펴보면 왕성은 크고 화려하였지만 백성들의 집은 마치 개미굴이나 벌집모양으로 보였으며 땅을 파 아궁이를 만들어 흙침상을 만든다는 기록으로 보아 고구려의 생활구조와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말 정몽주가 향교를 신설하고 주자가례에 따라 사서로 하여금 가묘를 세우게 하였다는 기록에서 고려말 가옥에 사당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첨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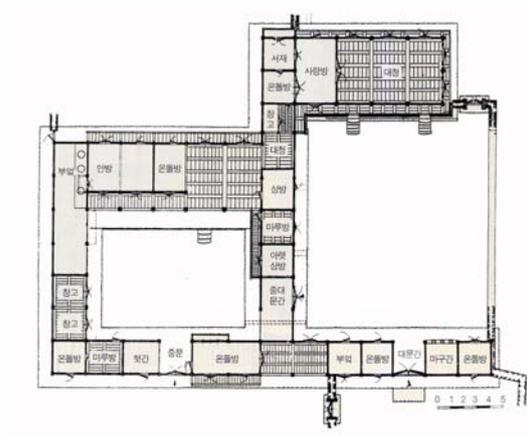
<그림-56> 맹씨행단

(4)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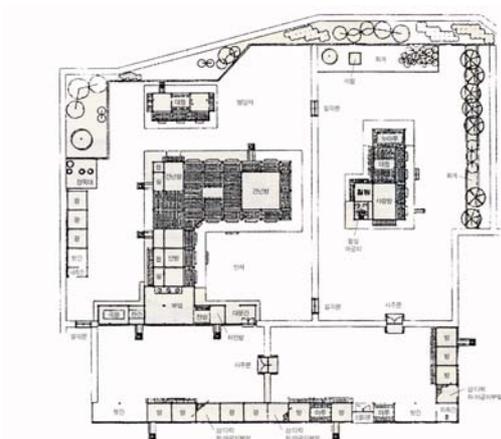
조선시대 주거건축은 전대의 건축을 바탕으로 인문사회적 환경 및 자연환경에 순응하면서 이루어진 주거건축의 결정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주거건축은 가사제한, 유교적 관념성, 풍수 및 음양오행설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건립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사회적 신분계층의 분화는 신분에 맞는 주거건축을 생산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자연환경에 순응하면서 자연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주거건축을 구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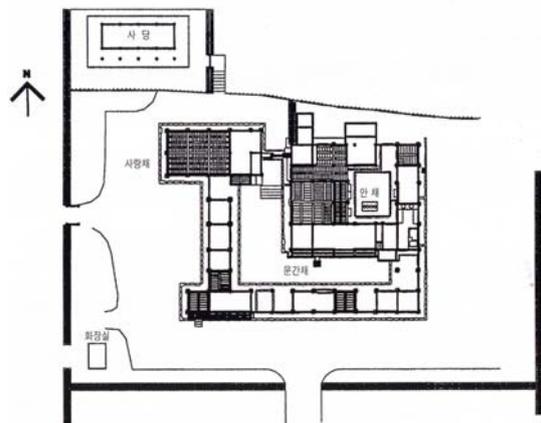
<그림-57> 연경당



<그림-58> 안동 양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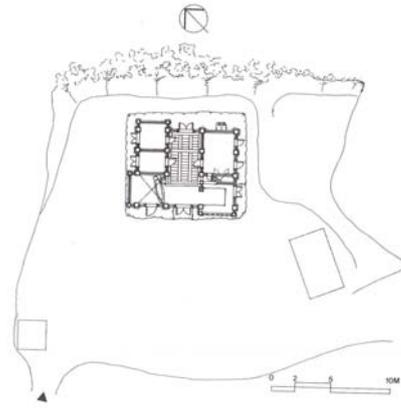
<그림-59> 관훈동 부마도우이 박영효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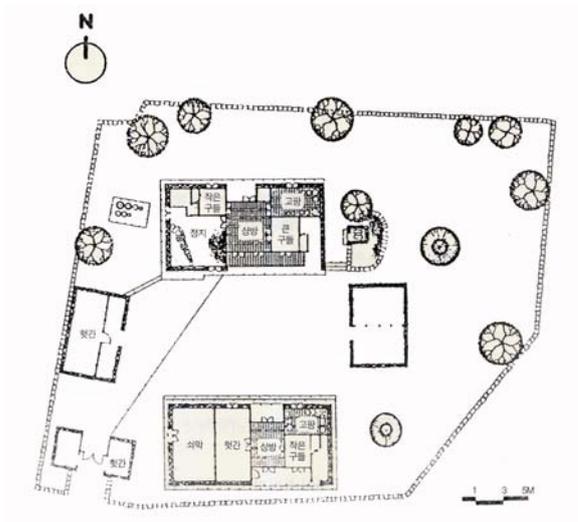
<그림-60> 안동의성김씨종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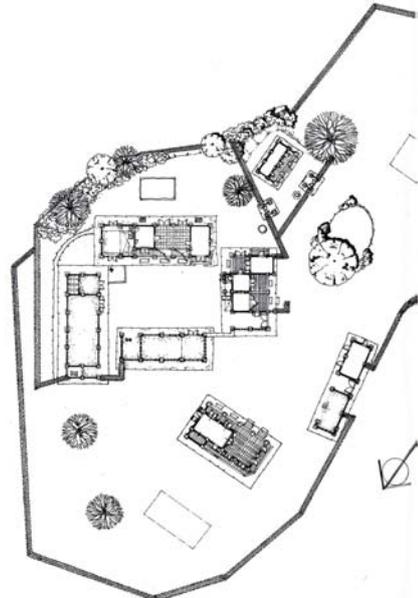
<그림-61> 분천리 도토마리집



<그림-62>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그림-63> 성읍 조일훈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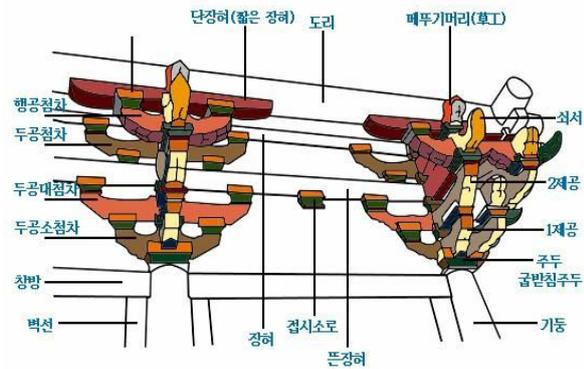
<그림-64> 임당고택

5. 건축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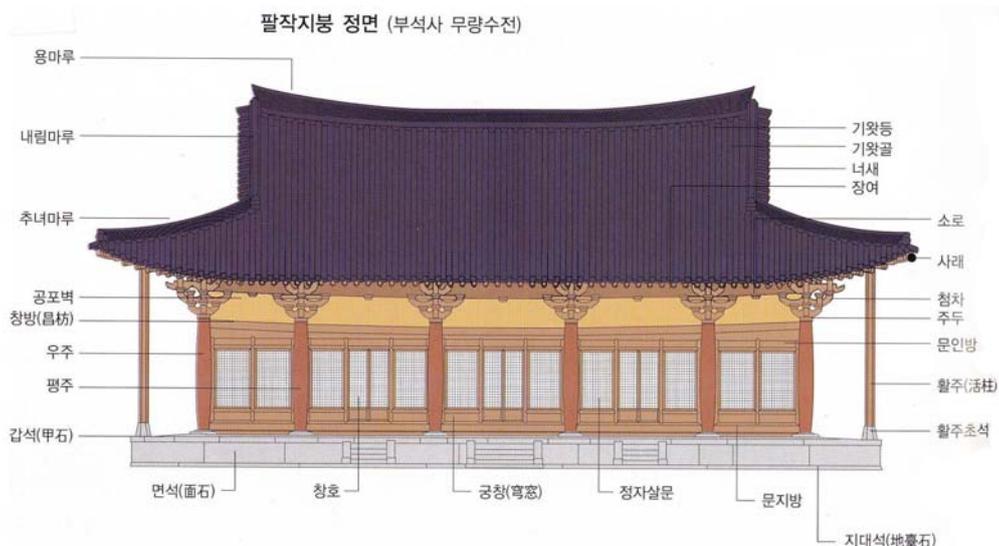
한국건축양식분류방법의 하나로 공포가 놓이는 위치와 결합 되는 방법에 따라 주심포, 다포 그리고 익공과 하양으로 그 형식과 계열을 분류하고 있다.

(1) 주심포형식

주심포형식(柱心包形式)이란 기둥 위에만 포가 놓인 공포형식을 말하며 주로 삼국시대에서 조선 초기 이전까지 많이 사용되어온 오랜 형식이다. 주심포계 건축물에 사용된 지붕의 형태는 맞배형이 많고, 천장은 특별히 만들지 않아 서까래가 노출되어 보이는 연등천장 건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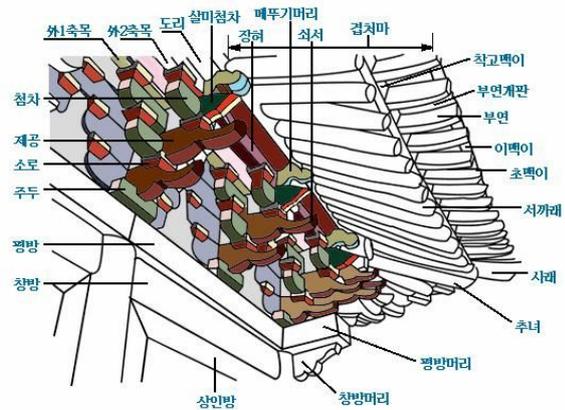


<그림-65> 주심포 구성



(2) 다포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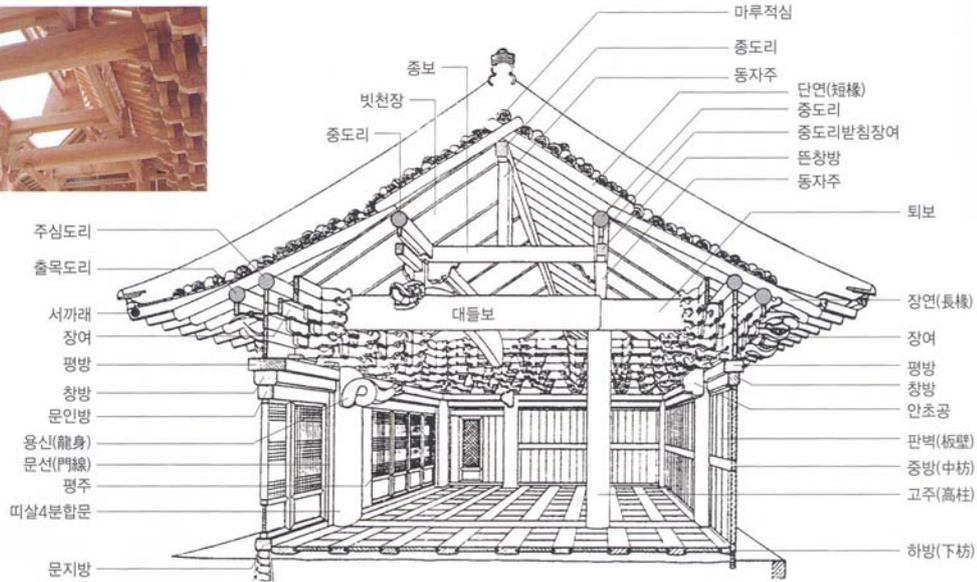
다포형식(多包形式)은 주심포계 건축물 보다 처마를 더 길게 내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서 구축된 양식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둥사이, 즉 주칸에도 공포가 설치되게 되며 이러한 공포의 설치는 기둥으로 온전한 하중전달을 위하여 창방 위에 평방이 더 설치되고 출목수가 증가하며 내부에 반자가 설치되어 주심포양식과는 뚜렷한 구분이 된다. 그리고 다포형식은 공포가 처마 밑을 가득 장식하는 웅장함과 포를 여러 겹 중첩시킴에 따른 구조적 강함과 더불어 처마의 상승감을 주어 외관의 화려함과 당당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외관에서 나타나는 형식에 의해 불교건축의 주전이나 궁전, 성문 등에 많이 채택된 양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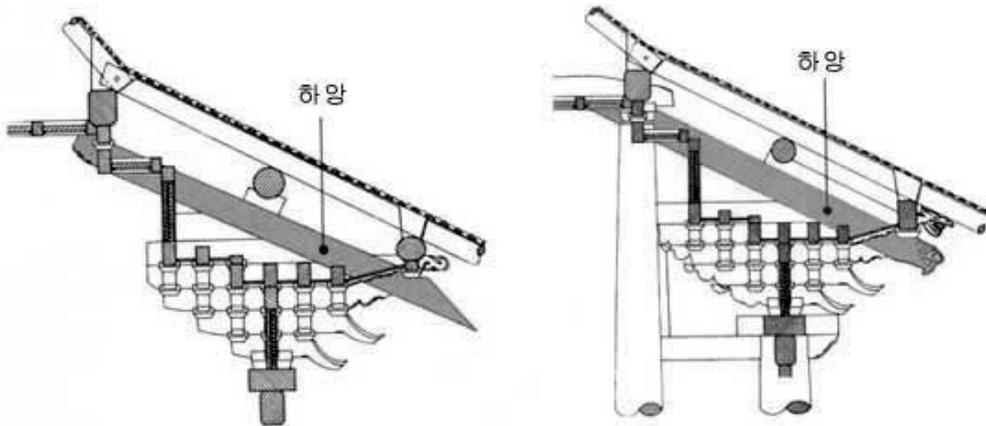
<그림-66> 다포 구성

다포형식 중에서 특수한 예가 완주 화암사 극락전의 '하양식(下昂式)'이다. 하양식이란 하양이라고 부르는 도리 바로 밑에 있는 살미부재가 서까래와 같은 경사를 가지고 처마도리와 중도리를 지렛대 형식으로 받고 있는 공포형식을 말한다. 하양형식의 공포로 한국에서의 유일한 실례는 완주 화암사 극락전이 있다.

다포계 건물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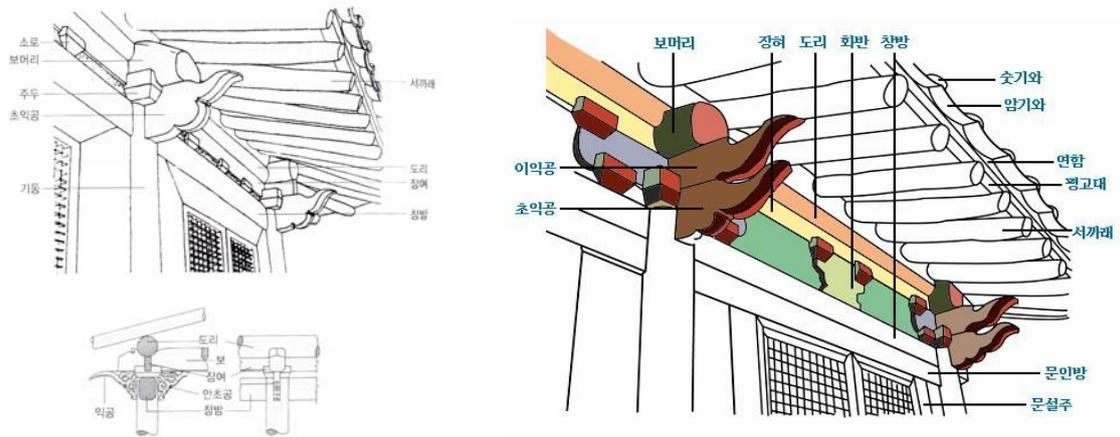
<그림-67> 다포계건물 부재명칭



<그림-68> 화암사 극락전 하양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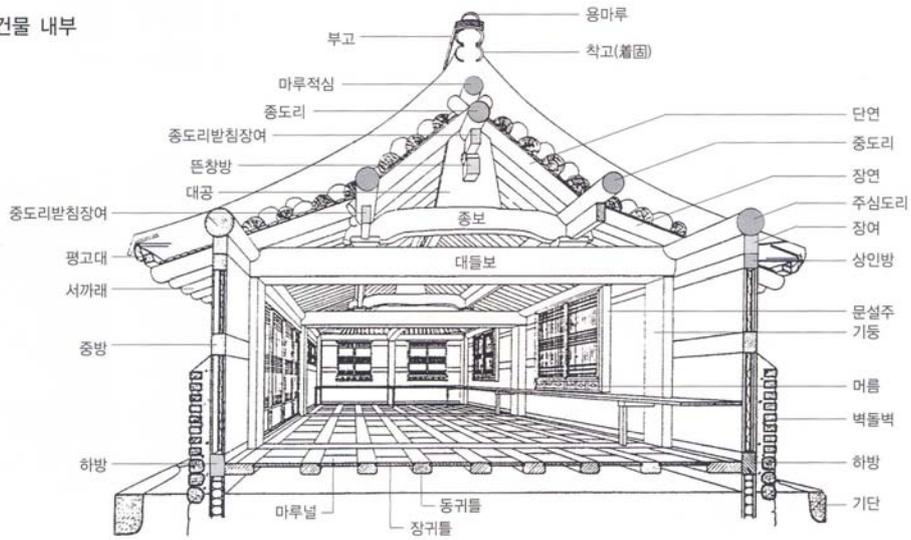
(3) 익공형식(翼工形式)

조선후기에 다포양식과 함께 많이 사용했던 양식으로 주심포식이 간소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양식이다. 익공식은 기둥 위에 공포를 결조시키지 않고 기둥머리 앞 뒤 방향으로 첨차형부재를 꽂아 안팎에서 보를 받치도록 한 결구방법인데 주심포식의 헛첨차 또는 헛첨차와 그 위에 설치되는 살미첨차를 판재로 만들어 약소화 시킨 구조라 할 수 있다. 익공에는 한 겹으로 익공을 만든 초익공과 두겹판재를 겹쳐 보를 지지케 한 이익공양식이 있다.



<그림-69> 익공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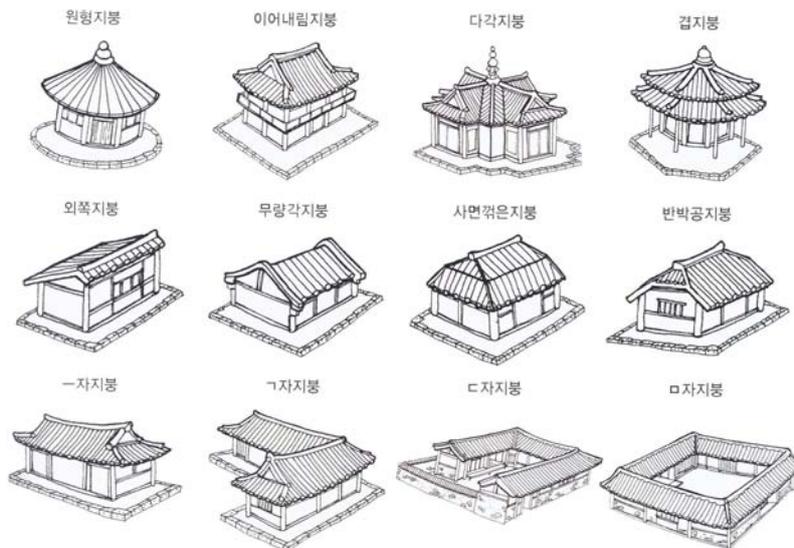
익공계 건물 내부



<그림-70> 익공계건물 부재명칭



<그림-71> 가구유형



<그림-72> 지붕유형

■ 참고문헌

- 한국건축사, 주남철, 고려대학교출판부,
- 한국건축의 역사, 김동욱, 기문당
- 한국전통건축과 동양사상, 임석재, 북하우스
- 한국건축사, 윤장섭, 동명사
- 한국풍수사상사, 이몽일, 명보문화사

한국의 불교미술

- I. 불교조각의 기초용어 / 223
- II. 불교조각 / 224
- III. 불교회화 / 232
- IV. 불교공예 / 235

덕성여대교수 최 성 은

I. 불교조각의 기초용어

- * 재료 : 금불상, 은불상, 금동불상, 철불상, 목불상, 석불상, 소조불상, 도자불상 등.
- * 크기 : 장육상(丈六像, 1장6척), 반장육상(半丈六像, 8척, 좌상은 4-5척), 등신상(等身像), 1결수 반불상(一握手半佛像, 약 12cm), 대불(大佛, 장육불의 2배 혹은 10배, 그 반인 8丈)
- * 불상명칭 : 석가불상(釋迦佛像), 비로자나불상(毘盧舍那佛像), 아미타불상(阿彌陀佛像), 약사불상(藥師佛像), 미륵불상(彌勒佛像), 사방불(四方佛), 천불(千佛)
- * 보살상명칭 : 문수보살상(文殊菩薩像), 보현보살상(普賢菩薩像), 관음보살상(觀音菩薩像), 대세지보살상(大勢至菩薩像), 미륵보살상(彌勒菩薩像), 지장보살상(地藏菩薩像) 등.
- * 기타 신상(神像)
 - ① 인왕상
 - ② 제석천(帝釋天, Indra), 범천상(梵天像, Brahman)
 - ③ 사천왕상 : 지국천(持國天, 東), 증장천(增長天, 南), 광목천(廣目天, 西), 다문천(多聞天, 北)
 - ④ 팔부중(八部衆) : 건달마(乾闥婆), 가루라(迦樓羅), 천(天), 야차(夜叉), 아수라(阿修羅), 긴나라(緊那羅), 마후라(摩睺羅), 용(龍)

* 불상관계 용어

32吉相 80種好

광배(光背, cakra) : 두광(頭光), 신광(身光), 거신광(舉身光)

대좌(臺座, asana) : 방형좌, 원형좌, 연화좌, 의좌(倚坐), 동물좌, 생명좌(生靈座) 등등...

인계(印契 : 手印과 契印, mudra): 印相. 선정인(禪定印), 시무외인(施無畏印), 여원인(與願印), 전법륜인(轉法輪印),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아미타구품인(阿彌陀九品印), 지권인(智拳印), 천지인(天地印)

불의(佛衣) : 가사(袈裟, kasaya), 대의(大衣, samghati), 7조의(上衣, uttara-samgha), 5조의(安陀會, antarvasa), 상내의(승각기, samkaksika), 군(裙 또는 裳, nivasana)

착의형식 : 통견(通肩), 우견편단(右肩偏袒)

보살옷 : 천의(天衣)

불교조각

I. 삼국시대의 불교조각

* 고구려 불교조각

불교가 고구려에 공식적으로 전해진 것은 소수림왕 2년(372)이지만 이미 그 이전에 요동지방을 통해서 중국 화북지방의 불교가 고구려에 알려졌을 것으로 추정됨. 소수림왕 4년(374)에 승려 아도(阿道)가 오고 그 이듬해 초문사(肖[省]門寺)와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세워 순도와 아도를 각각 머물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상은 물론 이후 6세기 전반까지 거의 150여년간 고구려 불상으로 지금까지 전하는 작품은 한 구도 없다. 국내에 현존하는 불상 가운데 가장 제작시기가 이르다고 생각되는 서울의 자양동(뚝섬) 출토 금동불좌상은 제작국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대체로 중국의 오호십육시대에서 북위 초에 이르는 4세기경의 불상으로 생각된다.

현존하는 고구려의 기년명 불상으로 가장 이른 예는 539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가 7년기미명(延嘉七年己未銘) 금동불입상이다. 이 상은 평양의 동사(東寺)에서 주조되어 널리 유포되었던 천불 가운데 하나로서 양식적으로는 북위 말 양식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얼굴이 가름하고 좌우로 뻗치는 대의(大衣)의 한 자락이 왼손 손목 위에 올려져있으며, 시무외·여원인의 통인(通印)을 결한 왼손의 손가락 두 개를 안으로 접은 표현 등은 북위와 남조의 조각에서 5세기말~6세기 초부터 나타나는 표현으로서 대중교섭이 활발했던 고구려의 불교조각에 반영된 중국 남북조 불상양식을 찾아볼 수 있다.

천불상의 예로는 연가불 외에도 평양 원오리(元五里)사지출토 소조[泥製] 불보살상들이 전하며 원오리출토 불좌상은 연잎이 통통한 단판연화좌의 표현이 연가불의 대좌 연판과 흡사하고 지역적으로도 같은 평양일대의 불상이라는 점에서 일치하는데, 원오리불상의 육계가 동위 천평연간(534~537)의 불상들에서처럼 동그랗게 구형(球形)으로 표현되어 조성 시기는 연가불보다 조금 늦은 6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고구려는 동위와의 관계가 무척 긴밀했는데, 한편, 출토지는 알 수 없으나 고구려 작으로 추정되는 간송미술관의 계미명 금동삼존불상(563)은 중국에서 북위 말에서 동위, 남조에서 많이 조성되었던 일광삼존불(一光三尊佛) 형식을 보여준다. 본존상은 기본적으로 연가불과 같은 형식이지만 원오리 이제불좌상에서와 같이 소발의 육계가 동그랗고, 좌우의 협시보살입상은 삼화보관을 쓰고 목에는 침판형 목걸이를 걸었으며 천의가 X자형으로 교차된 북위 6세기의 전형적인 보살상 형식을 나타낸다. 같은 형식의 황해도 곡산에서 출토한 신묘명 금동삼존불상(571)은 계미명 삼존상보다 조각이 환조적이며 대의 자락도 좌우로 뻗치지 않고 가지런히

내려오며 광배에는 3구의 화불(化佛)이 새겨져 있어 발전된 면을 보이는데 중국 북제(北齊)의 불상양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고구려는 양원왕 6년(550)과 7년(551), 11년(555)에 북제에 조공하였고, 평원왕 18년(576) 무렵에는 대승상 왕고덕(王高德)이 승려 의연(義淵)을 북제의 수도 업(鄴)에 보내 당시 도통(都統)이었던 법상(法上, 495~580)으로부터 불법을 배워오게 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불교 조각 면에서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존하는 불상조각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불교신앙을 살펴보면, 원오리사지 이제불보살상과 연가불의 명문을 통해서도 과거, 현재, 미래의 천불들에 대한 사상은 엿볼 수 있는데, 이는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의 대승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양원왕 7년(551)작으로 추정되는 평양 평천리의 절터에서 발견된 영강(永康) 7년명 광배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미륵삼회에 참석하여 깨달음을 얻기 바라는 발원문이 새겨져 있다. 경4년 신묘명 삼존상은 비구, 선지식, 천노 등이 자신들의 스승과 부모를 위해 무량수상을 조성하면서 다음 생에 함께 태어나 선지식과 미륵을 만나 불법을 듣고자 하는 내용의 발원이 담겨있다.

* 백제 불교조각

고구려가 중국 화북지방의 불교를 받아들인 것에 반해서 백제는 침류왕 원년(384) 중국 남조의 동진(東晉)으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다. 동진을 거쳐 들어온 마라난타(摩羅難陀)를 백제에서 융숭하게 환영하였고 이듬해에는 백제의 수도 한산에 절이 세워지고 10명의 승려가 배출되었으나 이 시기 절에 봉안된 불상의 모습은 알 수 없다. 5세기의 조상으로 현재 전하는 것은 없다.

6세기에 들어오면 백제 불교계는 활발한 대외관계를 통해 신선한 자극을 받게 된다. 성왕 4년(526)에는 겸익(謙益)이 인도에 유학하고 인도승 배달다삼장(培達多三藏)과 함께 돌아올 때 중인도 상가나대율사(常伽那大律寺)에서 범본(梵本) 아비담장(阿毘曇藏)과 5부율(五部律)을 가져와 번역을 했든지, 양(梁)의 천감연간(502-519)에 백제 승려 발정(發正)이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귀국한 것 등은 백제 불교의 국제성을 알려준다. 특히 성왕 19년(541)에 양에 조공하면서 모시박사, 열반경 등의 불경과 장인(匠人), 화사(畫史) 등을 요청하여 구해온 것은 양의 불교미술이 직접 수입된 것을 알려준다.

부여 정림사지에서 발견된 납석제 삼존불입상은 손상이 심하여 본존상의 허리 아래 부분과 왼쪽 협시보살상의 어깨 아래 부분만 남아있으나 본존상의 대의의 폭이 좁은 U자형 옷주름과 좌우의 지그재그식 옷자락, 옷단부분의 요형의 주름 등에서 보이는 표현상의 특징은 양(梁)의 불상양식과 상통하는 면이 많은데, 대략 6세기 후반에 조성된 상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읍 보화리 석불입상들의 우견편단식 대의착의법은 남방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어 기록에

서처럼 중국의 양이나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의 영향이 백제 조각계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6세기 후반에는 불신이 장대한 북제양식의 영향으로 태안마애삼존불이나 서산마애삼존불상과 같은 백제조각을 대표할 만한 불상들이 만들어지는데 『법화경』의 수기(授記)사상을 근거로 조성되었다고 생각되는 이 마애불들은 태안마애불처럼 보살입상이 본존이 되어 여래상을 좌우에 배치하거나 서산마애불과 같이 반가사유상과 보살입상을 협시보살로 하여 좌우대칭을 이루지 않는 창의적인 삼존불 형식에서 백제조각의 독창성을 보여준다.

7세기에 들어서면 양감이 좋고 육중한(massive) 수대 조각의 영향과 함께 가늘고 긴 남조적 조형감을 보여주는 상들이 조성되어 부여 규암면출토의 금동보살입상은 영락이 X자로 교차된 가느다란 신체에 보관에는 화불(化佛)이 표현되어 관음보살의 도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상과 함께 출토된 관음보살입상은 허리를 한쪽으로 기울여 동적(動的)인 자세를 취한 상으로 수말당초의 양식이 보인다.

* 신라 불교조각

삼국 가운데 가장 늦은 법흥왕 14년(527)에 불교가 공인된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불교미술의 시작이 늦었으므로 현존하는 불상들도 황룡사지출토 금불입상과 숙주사지 출토 금동보살입상, 거창출토 금동보살입상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7세기에 들어와서 조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신라의 불교는 초기에 선진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아래 전개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신라 불교계에 끼친 고구려 불교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알려주는 조각으로 영주 순흥면의 숙주사지(宿水寺址)에서 출토한 금동보살입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상은 고구려에서 전래되었다고 알려진 일본 대마도 船形山神社의 금동보살입상과 전체적인 조형감은 물론 보관, 영락, 천의 등 모든 면에서 유사하며 이것은 고구려와 밀접하게 교류했던 북위후기에서 동위까지의 보살상 양식을 따르고 있는 점에서 신라조각에 미친 고구려 불교미술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는 547년에 유학승 각덕(覺德)이 귀국하면서 양(梁)에서 하사한 불사리를 가지고 들어왔고,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된 550년대부터 신라의 대중교섭이 본격화되어, 진흥왕 25년(564) 북제에 사신을 보내 조공한 것을 시작으로 그 이듬해부터 거의 매 해 남조의 진(陳)과 교류하였다. 진흥왕 26년(565) 진의 사신 유사(劉思)와 승려 명관(明觀)이 경론을 가지고 왔다는지, 37년(576)에는 안홍(安弘)법사가 중국에서 귀국할 때 서역삼장 3인과 중국승려 2인과 함께 와서 황룡사에서 역경사업을 벌였던 사실에서 중국 뿐 아니라 서역으로부터까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진흥왕 27년(566)에는 황룡사(皇龍寺)가 완공되었고 35년(574)에는 황룡사 장육상이 주조되는 등 국가적인 차원의 불사가 이루어 졌다. 오늘날 현존하는 황룡사지출토 금동불입상은 손상이 심하지만 당시의 신라조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이 불상은 연가불이나 계미명삼존불과 같은 삼국시대 불입상의 전형적인 형식을 보이면서도 내의 고름(紉)이 표현되어 있어 문화적으로 앞서있던 고구려나 백제의 영향 뿐 아니라 중국 남북조 조각의 영향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조각이 본격적인 수준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원광(圓光)스님이 중국에서 귀국하는 600년경 이후로 생각된다. 경주 배동 석조삼존불입상을 비롯하여 분황사 모전석탑의 인왕상들(634년경), 경주 남산 삼화령 미륵삼존상(644년경) 등은 7세기 전반 신라 석조각의 수준을 알려준다. 특히, 이 상들에서는 중국 북주(北周)조각에서 유행하여 수대(隋代)로 이어져 내려온 단구(短軀)의 아동형 신체비례와 동안(童顏)의 불안이 나타난다.

이처럼 국제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게 되면서 조각기법적인 면에서의 변화도 뚜렷해진다. 7세기 전반의 단석산 마애불상군이나 통일기의 경주 남산 탑곡(塔谷) 마애불상군과 같은 기존의 저부조 마애불들이 경주 남산 불곡의 마애불좌상과 같은 고부조의 마애불로 바뀌고 있다. 한편, 수와 초당 조각에서 나타나는 거대하고 장중한 조형감의 표현은 통일기의 선도산 마애삼존불에서 통일직후 팔공산 군위석굴 삼존불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신라에서는 미륵신앙이 성행하여 화랑을 용화향도(龍華香徒), 즉, 미륵의 향도라고 불렀다. 따라서 현존하는 신라조각 가운데는 미륵보살로 표현된 반가사유상이 다수 전한다.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은 이 상과 거의 흡사한 일본 광룡사(廣隆寺) 목조반가사유상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7세기 초의 신라작품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처럼 상체가 나신이며 크라운형의 보관을 쓴 모습의 반가사유상은 황룡사지출토의 금동보살두와 단석산 마애불상군의 반가사유상에서도 보이는데, 이와 같은 반가사유상의 형식은 통일 이후까지 이어져 봉화 물야면출토 석조반가사유상에서도 발견된다.

II. 통일신라시대의 조각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불교조각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의 수도권지역으로 집중되었고, 고구려와 백제의 조각장들은 그 활동무대를 신라로 옮기게 되어 신라조각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통일 이전부터 당과의 왕래가 빈번하여 중국 초당의 사실적인 불상양식이 들어오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여러 요인이 신라조각의 수준을 격상시키는데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43년 당에서 귀국한 자장(慈藏)은 대장경과 당번화개 등과 함께 불상을 가지고 돌아왔고, 649년에는 당의 복제와 관제

를 채용하는 등, 국가사절과 승려들의 왕래를 통해 신라가 적극적으로 당 문화를 수용하였던 상황에서 당 양식이 반영된 불상들이 활발히 조성되었다고 생각된다.

1. 중대 신라의 불교조각

중대 신라기는 한국조각사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불상들이 다수 조성되었던 시기이다. 이 기간 중 통일기인 7세기 중·후반의 조각으로 추정되는 석불의 예로는 영주 가흥리 마애불상, 봉화반가상, 경주 선도산마애삼존불상, 팔공산 군위석굴 삼존불상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금동불로는 선산출토 삼존불입상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상이라고 하겠다.

7세기 후반부터 제작되는 불교조각에서는 당 조각의 양식적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유학승들이 귀국하여 활동하고 의상(義湘)이 당에서 귀국한 670년경을 기점으로 불교계와 조각계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 예로서 679년경의 사천왕사 녹유신장상은 당시 소조상의 높은 수준을 알려주는 예이며, 682년경의 감은사(感恩寺) 사리기 사천왕상, 7세기말의 안압지(雁鴨池)출토 금동관불삼존상 등은 동일한 양식범주에 들어가는 상으로서 초당양식이 반영된 단계를 보여준다.

중대 신라 8세기는 성덕왕에서 경덕왕대까지로 한국조각사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만한 조각들이 여러 구 제작되었다. 현존하는 상으로는 경주 황복사지(皇福寺址) 석탑출토의 순금제 불좌상(706)을 선두로 감산사(甘山寺) 석조미륵보살과 아미타불입상(719~720), 석굴암(石窟庵) 불상군, 경주 굴불사지(掘佛寺址) 사면석불, 경주 남사 칠불암(七佛庵) 불상군 등은 사실적이고 긴장감이 넘치며 균형 있는 비례와 조화가 이루어진 우수한 조각수준을 보여준다.

중대 신라 불교조각에서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는 점은 새로운 도상의 유입과 수용이다. 수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전법륜인(轉法輪印) 불좌상의 수용을 지적할 수 있다. 전법륜인은 석존이 성도한 이후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를 위해 첫 설법한 것을 상징하지만 뒤에는 설법인(說法印)으로 보편화되었던 수인이다. 안압지에서 출토한 금동관불 전법륜인 불좌상은 7세기말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항마촉지인 불좌상이 있다. 7세기 후반에 인도의 불상과 도상이 전래되어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불좌상’이 중국에서 유행하게 되었고, 더불어 신라에서도 이 수인의 불상이 크게 유행하였다. 항마촉지인이 표현된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석굴암 본존상을 꼽을 수 있다.

8세기에 들어와서 나타난 새로운 도상으로는 약합을 든 약기인(藥器印)의 약사불상의 도상이 알려졌다. 약그릇이나 보주를 왼손으로 잡거나 올려놓은 약기인은 굴불사지 사면석불의 동면 약사불좌상을 비롯하여 경주 남산 삼릉계와 용장계의 석조약사불좌상, 금동의 약사불입

상등 많은 작례가 있다.

2. 하대신라의 불교조각

갈항사지(葛項寺址) 석불좌상은 758년에 세워진 갈항사지(葛項寺址) 석탑과 함께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성 발원자가 원성왕(元聖王)의 외척인 언적법사(言寂法師)와 그 자매들이므로 당시 중앙 조각계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이 상은 온화하고 인간적인 얼굴과 현실화되고 세속화된 면이 나타나기 시작한 신체에서 석굴암이나 칠불암 본존상에서 보이는 중대 신라 조각의 장중함이 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766년에 조성되었다고 생각되는 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서도 뚜렷하다. 불안(佛顔)에 보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표정과 함께 불신이 평판적으로 변했고 상 측면의 두께가 얇아진 점이 눈에 띈다. 이처럼 조각에서 나타나는 세속화, 현실화 현상은 하대신라 조각의 한 특징으로 점차 여성적이고 온화한 얼굴과 아담한 불신, 화려한 광배와 여러 가지 부조로 장식된 팔각연화대좌를 가진 석불좌상들이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경상도 지역에서 다수 조성되었다. 예천 청룡사(靑龍寺) 석불좌상과 고운사(孤雲寺), 불곡사(佛谷寺), 간월사지(澗月寺址) 석불좌상 등 많은 불상들이 이런 유형을 보여준다.

도상 면에서는 8세기 후반에 소개된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싼’ 지권인(智拳印)의 비로자나불상이 크게 유행하게 된다. 이 도상은 『금강정경』과 『섭진보경』에 언급되어 있어 중국에서는 이 경전들이 번역된 8세기 중엽에 알려지게 되었을 것이고 신라에도 곧 소개되어 766년경에 제작된 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같은 이른 작례가 전하고 있으며 9세기가 되면 크게 유행하게 되어 현재까지 보림사(寶林寺), 동화사(桐華寺), 축서사(鷲棲寺), 도피안사(到彼岸寺) 등의 비로자나불좌상이 수십 구 전하고 있다. 그리고 미륵신앙에 근거하여 거불들이 조성되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기라고 생각된다. 경주 남산 약수계의 두부를 잃은 거대한 마애불입상이나 해인사 마애불입상 등은 미륵불의 크기가 석가모니의 10배라고 설한 『관불삼매해경』의 영향으로 조형화된 미륵불입상이라고 추정된다.

신라하대 조각에서 보이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방에서 철불들이 조성되는 점이다. 지방 호족의 대두, 선종산문의 개창과 더불어 이전에는 경주 중심이었던 불교조각의 조성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실상사와 보림사, 은적사, 도피안사, 한천사 등의 통일신라말 사찰에서 철불들이 전해오고 있다. 선종구산파의 하나인 가지산파(迦智山派)의 장흥 보림사에서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이 조성되고 철원 도피안사에서는 천오백인의 거사들이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을 조성하게 된다. 철은 지금까지 널리 쓰이던 금동보다 값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지 나말려초 후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초까지 유행하게 된다.

III. 후삼국·고려시대의 불교조각

1. 고려전기의 불교조각

고려전기의 조각은 다양한 경향을 띠며 전개되었는데 몇 가지 경향을 간추려 보면, 먼저 신라하대에 이어 철불 조성의 유행을 꼽을 수 있다. 개성 전 적조사지(傳寂照寺址)출토 철불좌상을 비롯하여 하남시 하사창동에서 출토한 광주철불좌상, 보원사지출토 철불좌상(949년경), 원주출토 철불좌상들은 10세기에 철불 조성이 크게 성행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지방에 따라 지역성이 강한 조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 중에서도 강원도 명주(溟州)일대의 한송사(寒松寺), 월정사(月精寺), 신복사(神福寺) 석조보살상과, 충청지방의 관촉사(灌燭寺), 대조사(大鳥寺) 석조상 등은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다음으로 거불(巨佛)조각이 유행하여 괴산 미륵대원 석불, 서울 구기동 승가사(僧伽寺)의 마애불, 대홍사북미륵암 마애불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 또한 조각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고려 개포동 마애관음보살좌상과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등의 기년명의 마애불등을 통해서는 일부 조각의 토속화 현상을 감지할 수 있다.

2. 고려후기의 불교조각

고려시대 후기의 전반에 해당되는 백 여년의 기간 동안 조성되었을 기년명의 조각은 거의 전하지 않아 이 시기의 조각을 편년적으로 살펴보기는 어렵다. 현존하는 기년명 불상들을 중심으로 고려후기의 조각경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통일신라양식을 계승하고 송, 요의 양식으로부터 영향 받은 고려전기의 양식 전통이 주류를 이루었던 듯하다. 12세기 조각으로 생각되는 상은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이 드물게 보이는 예 가운데 하나이고, 12세기말에서 13세기 초에 개심사 목조아미타불좌상(1280년 중수)을 꼽을 수 있다. 13세기말의 조상양식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현재 개운사(開運寺) 목조아미타불좌상(1274)과 이 불상과 유사한 경기도 화성 봉림사(鳳林寺) 목조아미타불좌상,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불좌상,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등이 있다.

14세기의 불상들 가운데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예로는 서산 부석사(浮石寺) 금동관음보살좌상(1330), 국립중앙박물관 지순명 금동관음·대세지보살입상(1333), 장곡사(長谷寺) 금동약사불좌상(1346), 문수사(文殊寺) 금동아미타불좌상(1346)과 같은 불상을 꼽을 수 있다. 조상발원문에 나타나는 발원자들은 당시 사회의 유력한 인사(人士)나 승려 외에도 일반 백성들이 많은데 이처럼 신분이나 빈부, 남녀에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의 발원자들이 조성에 참여했던 점에서 당시 사회에서 불교가 널리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IV. 조선시대의 조각

조선이 건국되고 유교적 국가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억불정책의 일환으로 불교정비작업이 추진되는 가운데에도 전 시대부터 내려온 불교신앙과 불사설행은 계속 되어 기우불사(祈雨佛事)나 수륙재(水陸齋) 등이 종종 베풀어지고 사원의 창건과 중창 및 사경(寫經)과 造佛 등이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특히 왕실귀족과 비빈들의 발원에 의한 조상불사를 통해 우수하고 화려한 불상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시대의 조각은 임진왜란(1592년)과 병자호란(1636년)을 기점으로 하여 전반기(1392-1640)와 후반기(1640-1900)로 나뉘어 질 수 있다.

1. 조선전기 불교조각

조선초기의 조각 가운데 조상기와 개금기를 통하여 확실한 조성 시기나 조성 하한연대를 알 수 있는 현존 예로, 조선극초인 1395년에 조성된 장육사건칠보살좌상은 이목구비가 선명한 이국적인 얼굴에 신체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영락으로 치장되었는데, 이러한 고려 말 보살상의 조각적 특징은 15세기의 파계사(把溪寺)목조관음보살좌상(1447)을 비롯한 은해사 운부암(銀海寺 雲浮庵) 금동관음보살좌상, 대승사(大乘寺)금동관음보살좌상 등과 같은 조선 초기 보살상들로 이어진다. 조선초기의 여래상으로는 흑석사(黑石寺)목조아미타불좌상(1458) 원각사십층석탑에 부조된 13불회의 여러 여래상(1467), 무위사(無爲寺) 금동아미타삼존불(1476년경)의 본존상, 수종사(水鍾寺)석탑출토 금동불좌상(1411~1493) 및 천주사(天柱寺)목불좌상(1482), 수종사불감 선각삼존불좌상(1493) 등을 꼽을 수 있다.

조선초기의 조각의 특징으로는 고려후기 조각양식이 계승되어 나타나는 점과 명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서 명대의 조각양식이 수용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불상의 허리가 길어지거나 얼굴이 가름하고 여성적으로 변화하며 광배가 키모양으로 표현되는 점, 불상의 내의가 수평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조선 초기의 몇몇 금동불·보살상에서 명대 유행하던 라마불교 조각양식이 나타나고 있어 외래양식의 유입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예를 들어 금강산에서 발견된 경태 4년(1453)명 금동아미타삼존불상은 대좌형태를 비롯해서 본존상의 높은 육계, 관음보살상의 보관, 영락장식 등에서 그와 같은 특징이 보이고 있다.

2. 조선후기의 불교조각

조선후기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불교가 민중들의 구원의 종교로 다시 고개를 들게 되는 시기이다. 전란 중에 보여준 승군(僧軍)의 혁혁한 활약에 힘입어 불교는 다시 왕실과 백성들의 관심을 얻게 되었으며 전란으로 피해를 입은 사찰들이 대대적으로

복구되고 중창되게 된다.

조선후기의 불상들은 머리가 신체에 비해 크고, 불상의 몸이 마치 벽돌(block)을 쌓아놓은 듯이 경직되고 괴체적으로 표현되며 가사의 옷주름은 도식화되었다. 이러한 양식은 17세기 후반의 조각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17세기에 들어와서 4m가 넘는 대형의 불상이 유행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대형상들은 17세기 전반의 전주 송광사 목조삼세불상(1641)이나 부여 무량사(無量寺) 극락전 소조아미타불좌상(1633) 등에서처럼 자연상태로 말린 연질(軟質) 소조상도 있고 17세기후반의 선운사(禪雲寺) 영산전 목조삼존불상처럼 목조인 경우도 있는데, 방형(方形)의 얼굴에 평판적인 몸체와 다리는 직육면체를 세 개 쌓아 올린 듯하지만, 소박하고 인간적인 표정의 불안과 웅대한 규모에서 당시 불교의 민중불교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 소형 불감으로는 역시 지방의 조각가라고 생각되는 현원(賢元)이 제작한 목조아미타삼존불감(1637년), 동국대학교박물관과 영현(英賢)이 제작한 목조아미타삼존불감(1644년, 동국대학교박물관)이 작은 상이지만 호남지역의 조각전통을 잘 보여주고 있다.

17세기말부터 18세기 초 무렵에는 호남지방의 조각승 색난(色難)과 그의 제자들이 전남 강진, 화순, 고흥, 해남, 영광, 구례, 순천 등지에서 활발히 활약하여 강진 정수사(淨水寺) 나한전 목조석가불좌상(現 玉蓮寺봉안, 1684년)과 심육나한상을 비롯한 많은 불상들을 조성하였는데, 당시 여러 사찰의 불상이 승장(僧匠)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불상의 개금이나 개채 등도 그들이 담당하였다고 한다.

조선후기의 조각은 1800년을 기점으로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든다. 이 시기의 조각은 오늘날 까지 전국 사찰에 봉안되어 예배되고 있는 불상들이다. 양식적으로는 앞의 시기의 조각전통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더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에 조성된 불상들은 앞으로 복장조사를 통해 조성시기, 발원자, 조각가가 밝혀진 예가 많아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불교회화

불화(佛畵)란 경전에서 설해진 내용을 압축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불화는 제작되는 재료에 따라서 벽화와 탕화 그리고 불경의 표지나 삽화의 형식으로 그려지는 경화(經畵)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예는 탕화로 사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탕화 가운데는 야외의 법회를 마련하기 위해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되는 괘불(掛佛)도 있으나 불상이 모셔지는 전각의 내부에 걸어지는 후불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용어 :

벽화 : 토벽화, 석벽화, 판벽화

재료 : 토본, 목본, 絹本, 麻本, 苧本

• 석가불화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를 주존으로 하여 그린 그림. 사원의 주불적인 대웅전이나 나한전, 응진전 등에 모셔진다. 석가모니 불화의 주류는 법화경의 변상을 압축하여 묘사한 영산회상도이다. 불화의 배치는 중앙 수미단 위에 석가여래가 앉아있고 그 좌우에 보살들과 제자들, 그리고 모든 분신불이 배치되며 이들 앞에는 사천왕, 뒤로는 호법신중들이 둘러싸고 있다. 이 외에 팔상도는 석가여래의 전기에 나타나는 여덟 가지의 극적인 장면을 그린 것으로 팔상전에 봉안한다.

• 아미타불화

아미타불이 서방극락정토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 무량수전 또는 극락전의 후불화로서 안치된다. 아미타후불화에는 아미타독존도, 아미타삼존도, 아미타오존도, 아미타구존도(관음, 대세지, 문수, 보현, 미륵, 지장, 제장애, 금강장보살) 등이 있고, 여러 보살과 나한, 사천왕 등이 묘사된 아미타극락회상도, 아미타래영도, 관경변상도 등이 있다. 아미타삼존도는 중앙에 배치하고 좌우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나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협시로서 묘사되어 있다.

• 비로자나불화

불교의 진리를 부처님으로 신격화한 법신(法身, 眞身)인 비로자나불(Vairocana)을 그린 그림. 대적광전이나 비로전, 화엄전, 문수전 등에 안치된다. 불화의 배치는 중앙에는 지권인을 결합 비로자나불이 크게 그려지고 문수 · 보현보살이 좌우 협시불로 등장하며 그 주위로 보살상과 성문중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외곽에 각종 호법신중들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 미륵불화

미륵은 석가모니불이 열반한 뒤 56억 7천만년 뒤에 인간세계에 나타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미래의 부처이다. 미륵상생경과 미륵하생경을 근거로 하며 고려시대 14세기 미륵하생경변상도가 전하고 있다.

- 약사불화

동방유리광세계를 주재하며 온갖 병고와 재난에서 중생들을 구제하고 수명을 연장해 주는 약사불을 그린 그림. 약사여래가 독존으로 그려지거나 좌우에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협시하는 삼존불로 그려지기도 하며 주위에 12 신장들을 거느린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 지장보살도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해 주는 지장보살을 주존으로 그린 그림. 불화의 구도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무독귀왕과 도명존자, 그리고 지옥의 시왕 및 기타 권속들인 6대보살이 첨가되어 그려진다. 지장보살은 왼손으로 석장을 짚고 오른손으로 보주를 잡은 모습이 일반적이거나 도명존자가 석장을 대신 들고 있는 경우도 있다.(∵ 三藏菩薩圖: 地藏, 天藏, 持地)

- 나한도

응진전 또는 나한전에 석가불과 함께 16나한상을 그려 봉안하는데 좌우에 8구씩 배치된다.

- 신중도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들을 하나의 화면에 그린 그림. 제석천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와 위태천을 중심으로 한 구도 등 다양한 배치가 있다.

- 감로왕도

지옥에 떨어진 부모와 친지들을 위해 성반(盛飯)을 올림으로서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에 왕생하게 한다는 발상에서 매년 음력 7월 15일 우란분재(盂蘭盆齋) 때 사용했던 그림.

- 칠성도

민간적인 복두칠성 신앙이 불교에 습합되어 여래의 모습으로 표현된 그림. 화면의 중앙에 칠성의 주존으로서 금륜을 손에 든 치성광여래가 자리하고 그 좌우에는 보관에 붉은 해와 흰 달이 표현된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협시한다. 칠성각 혹은 삼성각에 봉안된다.

- 산신도

민간의 호랑이 신앙이 불교에 습합되어 나타난 것으로서 산신각에 호랑이의 변화신인 산신과 호랑이를 깊은 산속을 배경으로 표현한 그림.

불교공예

- 정병(淨瓶)

깨끗한 물을 담는 수병으로 본래는 승려의 일용품이던 것이 차츰 부처님 앞에 정수를 받치는 공양구로서 그 용도의 폭이 넓어졌다. 이것은 부처님 앞에 바치는 공양구로서 관세음보살의 지물 혹은 대세지보살의 보관 표식이기도 하며 불교의식 때 정병 안의 감로수를 뿌림으로써 모든 마귀와 번뇌를 제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 범종(梵鐘)

범종은 구리로 제작되기 때문에 동종(銅鐘)이라고도 한다. 범종은 불교의식이나 음악을 연주할 때 사용되었는데, 시간을 알리거나 공양과 예배시간을 알리는 중요한 기구였다.

<우리나라 범종의 특징>

①종의 상부에 용뉴(龍鈕)와 음통(音筒)이 있고, ②유곽(乳廓)이 배치되며, ③유곽 안에 유두가 9개로서 총 36개의 유곽이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다. ④종신에 공양 또는 악기를 연주하는 비천상이 배치되고, ⑤당좌(撞座)가 대칭적으로 배치된다.

<범종 양식의 변화>

고려시대에는 통일신라시대의 범종 양식을 계승하지만 입상화문 장식이 새로이 첨가되고 용의 입 안에 있던 여의주가 발 위나 음통 위에 장식되며 종신에 비천상 대신 보살상 및 삼존상이 배치되는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고려 말기에는 중국 원나라 영향으로 중국 종 양식을 모방한 작품이 제작되어 조선 초까지 지속된다.

- 금고(金鼓)

금구(金口, 禁口) · 반자(飯子)라고 하며 쇠북이라고도 한다. 금속으로 만든 악기의 일종으로 여러 사람을 소집할 때 울리는 의식법구로 쓰였다.

-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

부처의 유골인 사리를 모시기 위해 장엄한 각종 봉안물을 말한다. 대개 외함과 내함, 사리병(사리호)로 이루어져 있다.

- 금강령(金剛鈴)

금강령은 요령이라고도 부른다. 손잡이 윗부분이 금강저의 저(杵, 창)형태와 같은데, 원래는 제석의 전광(電光, 번개)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이 창의 숫자에 따라 삼고령, 오고령 등으로 불린다.

- 금강저(金剛杵)

부처님을 수호하는 금강역사가 들고 있던 무기의 일종으로 모든 마군(魔軍)을 물리치는 법구. 밀교의식에 사용되며 산스크리트어로는 vajra라고 한다.

문화재관리론

-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제안 -

1. 「문화재」(文化財) 개념의 이해 / 239
2. 문화재 보존의 당위성과 관리이념에 관한 문서들 / 243
3. 문화재보존과 관광에서의 고려되어야 할 원칙 / 248
4. 지정문화재 공유화 정책의 필요성 / 250
5. 지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문화재들 / 256
6. 문화발전계획 기본적 지향 / 258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정 기 영

1. 「문화재」(文化財) 개념의 이해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쓰고 있는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는 1961년 정부직제 개정으로 「문화재관리국」이라는 새로운 중앙관서가 당시 문교부의 외국(外局)으로 설립되고 이어서 다음해인 1962년에 문화 및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 사용되어져 온 실정법상의 새로운 용어였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일본정부가 1950년 과거법령인 「일본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을 전문 개정하면서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를 보호대상으로 추가하고 이들 보호대상을 길게 나열한 보존령으로 하지 않고 독일어의 「Kultürgüter」를 문화재로 번역하여 「문화재보호법」이라는 법제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서 문화재라는 용어가 탄생하였고 우리가 1960년대 초에 관련기관과 관련법을 제정할 때 일본 문화재보호법을 참고하게 되면서 문화재란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도 쓰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라는 용어는 현행법상의 보호대상을 포괄하는 명칭으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된다. 첫째는 「문화」라는 개념에는 「순수자연」을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인데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으로 지정된 것 중에서 인공이 가해지지 아니한 순수자연, 이를테면 야생조수류, 지질광물류, 한라산, 설악산과 같은 것도 있는데 이들도 함께 「문화재」라는 용어로 불리는 것은 타당한가라는 것이고, 둘째 독일어의 Kultürgüter나 영어의 cultural property는 대체로 국제협약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부동산이 아닌 동산문화재를 지칭하는 용어이고 유적이거나 역사적 건조물 같은 부동산문화재는 기념물(monument)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오늘에 남겨진 모든 문화적 소산들을 일괄하여 「문화재」라고 지칭하는 것도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사실 일본정부가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할 때도 문화 및 자연유산들을 문화재란 한 마디의 용어로 지칭하는데 대하여 문제의 제기가 있었지만 완벽한 대체용어를 찾을 수 없어 실정법상의 용어로 다소의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던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 국토이용개발사업의 촉진으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연 및 문화환경이 극심하게 훼손되게 되자 1859년 국민신탁운동이 전개되고 이 운동이 추구하는 보호대상은 역사적 명소(places of historic Interest)와 자연미(Natural Beauty)였음을 상기할 때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보호운동은 그 효시 때부터 함께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文化財」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나라마다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다른데, 중국은 「文物(文物)」, 타이완에서는 「문화자산(文化資產)」, 북한은 「문화유물(文化遺物)」로 쓰고 있다. 미국은 「국가자원(國家資源, National Resources)」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UNESCO의 협약헌장·선언 등의 문서에서는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으로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자연유산(Natural Heritage),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등의 용어를 쓰고 있고, 동산유산은 Cultural Property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일본 법계를 따르다 보니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일괄하여 「문화재」라는 다소 불합리한 실정법상의 정의로 개념화한 데서 생긴 정부 부처 간의 논쟁으로 명승이나 천연기념물은 문화가 아니므로 이는 문화재청 소관업무에서 환경처 업무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다툼도 있었고, 명승이나 천연기념물의 내용이나 그 관리 연혁을 잘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환경처의 주장에 동조하기도 하는 오해도 있었다.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호하여야 할 다양한 대상들을 어떻게 개념화하여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자연유산의 소관청을 분리하자는 주장은 그 이치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 일어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역사적 명소들과 자연미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개되었고, 1972년 체결·발효된 세계유산보호사업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보호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문화적 유산과 자연적 유산을 문화재보호법이라는 법제 하에서 문화재청이 관리 보호하는 현행 관리보호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고>

가.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서의 「문화재」 정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
 -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나.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에 있어서의 문화재(Cultural Property) 정의

이 협약에서 「문화재」라 함은,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서 각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재산으로 다음 범주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 진귀한 수집품과 동물군, 식물군, 광물군, 해부체의 표본 및 고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물체
- 과학, 기술 및 군사의 역사와 사회사를 포함하여 역사와 관련되고 민족적 지도자, 사상가, 과학자 및 예술가의 생애와 관련되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과 관계되는 재산
- (정규적 또는 비밀리의)고고학적 발굴, 또는 고고학적 발견의 산물
- 해체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기념물 또는 고고학적 유적의 일부
- 비문, 화폐, 판각된 인장 같은 것으로 100년 이상의 골동품
- 인종학적으로 중요한 물건
- 미술적으로 중요한 재산으로 다음과 같은 것
 - 어떤 보조물의 사용 또한 어떤 재료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손으로 제작된 회화, 유화 및 도화(손으로 장식한 공업용 의장과 공산품은 제외)
 - 재료 여하를 불문한 조상 및 조각물의 원작
 - 목판화, 동판화, 석판화의 원작
 - 재료 여하를 불문한 미술적인 조립품 및 몽타주 원작
- 단일 또는 집합체를 불문하고(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및 문학적 등으로) 특별히 중요한 진귀한 고판본, 필사본과 고서적, 고문서 및 고출판물
- 단일 또는 집합체를 불문하고 우표, 수입인지, 또는 유사 인지물
- 녹음, 사진, 영화로 된 기록물을 포함한 고문서
- 100년 이상 된 가구와 오래된 악기

다.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서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정의

이 협약에서 문화유산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기념물: 건축물. 기념적 의의를 갖고 있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

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중 역사, 예술 및 학문적으로 현저한 세계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 건조물군: 독립된 또는 연속된 구조물들, 그의 건축성, 균질성, 또는 풍경 안의 위치로부터 역사상, 미술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 유적지: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이 협약에서 자연유산이란 다음을 말한다.

-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 지질학적 또는 지문학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특정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나아가서 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 지역이나 자연 유적지

라.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의 무형문화유산 정의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집단 및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식하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술 및 이와 관련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공간을 말한다.

세대를 통해 내려오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의 환경에 대한 대응과 자연·역사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끊임없이 재창조되며 이에 따라 이들에게 일체성 및 계속성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무형문화유산」은 특히 다음 분야에서 표현된다.

- 무형문화유산의 전달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전통 및 표현
- 공연예술
- 사회적 관습·의식 및 축제
-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 전통적 공예기술

2. 문화재 보존의 당위성과 관리이념에 관한 문서들

문화재관리 담당자들은 문화 및 자연유산인 문화재를 왜 보호하여야 하는 것인지와 어떤 원칙 하에서 관리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화재 보호의 당위성과 관리에 있어서의 이념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니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 1970년 제16차 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제안을 상정하여 국제협약으로 채택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 과학적, 문화적, 교육적 목적을 위한 문화재의 국가 간 교류가 인류문명에 관한 지식을 증진하고 모든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하게 하며 국가 간의 상호존중과 이해를 고취시킨다.
- 문화재는 문명과 국민문화의 기본요소의 하나를 이루며 그 참된 가치는 그 기원, 역사 및 전통적 배경에 관한 가능한 모든 정보와 관련하여서만 평가될 수 있다.
-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도난, 도굴 및 불법적인 반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 부과된 책임이다.
- 이러한 위협을 회피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고유문화유산과 다른 모든 국가의 문화유산을 존중할 도덕적 의무감에 대하여 보다 민감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양도가 국가 간의 이해에 장애가 되며 관계국가에 이러한 목적으로 국제협약을 권고함으로써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사명의 일부분이다.
- 문화유산의 보호는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 간에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조직화함으로써만이 효과적일 수 있다.

㉡. 1972년 제1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서문에는 이 협약 채택을 위하여 유의·고려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문화 및 자연유산은 원래 지닌 쇠퇴를 악화시키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도 점점 더 파괴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 유의한다.
- 어떠한 문화 및 자연유산의 손괴·멸실은 세계 모든 국민의 유산을 빈곤화시킨다.

- 이들 유산의 국내적 보호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함께 보호대상 유산이 위치한 국가의 경제적·과학적·기술적 능력이 불충분할 경우, 유산보호가 불완전하게 된다.
- 유네스코의 헌장이 세계유산의 보존 및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국민에 대하여 필요한 국제협약을 권고함으로써 지식의 향상, 증진 및 보급의 기본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기한다.
- 문화 및 자연유산에 관한 기존의 국제협약과 함께 국제적 권고 및 결의가 귀중하고 대체할 수 없는 유산, 그것이 어떤 국민에게 속하든 간에 이를 보호하는 것이 세계 모든 국민을 위해서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고, 따라서 전 인류를 위한 세계유산의 일부로써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이러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 및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협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해당국이 취하는 조치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유효한 보조적 수단인 공동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유산보호에 참가하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에 주어진 의무로 인식한다.
- 이를 위해 항구적 기초 위에 현대의 과학적 방법에 따라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 및 자연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제를 확립하는 새로운 조치를 협약 형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문화재청·유네스코·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동으로 간행하여 2003년 2월 유네스코 정부 간 제2차 회의 때 참가 회원국에 배포된 「인간문화재보호제도 지침서」(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Living Human Treasures)에서는 무형문화재보존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 무형문화재는 전통문화의 표현들과 민속으로 개념 지워지며 문화공동체가 전통에 기반을 두고 집단적으로 창작한 유산을 뜻한다.
- 이러한 무형유산들은 구전(口傳)과 예시(행위전승)로 전해져 오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집단적 재구성을 통하여 변형되어 왔다.
- 무형문화재는 인류가 배운 과정 및 그것을 더 풍부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지식, 기술, 창의력, 창조제품, 자원, 장소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컨텍스트를 말한다.
- 이러한 과정은 문화적 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현대사회에 전통의 지속성을 느끼게 해주고 전 세대와의 연대감을 형성시켜 준다. 또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의성을 보호해 주기도 한다.

- 언어, 구전문화 및 다른 문화적 표현들을 통해 전해지는 철학, 가치, 윤리적 법칙 및 사고방식들은 사회내의 삶의 기반을 이룬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현대화와 기술의 발전은 문화의 세계화를 동반케 되면서 개개 사회의 전통문화와 민속을 재활성화 하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는데 필수적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 전통문화와 민속, 특히 공연예술과 전통공예는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 기억은 창조의 원동력이 되며 전통문화와 민속의 보존과 보급은 현대적 창조의 영감이 된다. 전통문화와 민속은 인간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는 세대 간의 전승이나 기록보존을 통하여 유지된다.
-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전통음악, 전통무용, 축제, 전통공예 제작기술, 구전문화, 방언 같은 여러 표현 형태들은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 이런 현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역 무형문화재가 급속히 국제문화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 무형문화재는 그것의 비물리적인 성격 때문에 본질적으로 취약하기 마련이고, 때문에 무형문화재의 보존, 보급, 장려 및 활성화는 전통문화 정체성의 근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 무형문화재 보존의 효과적인 방법은 그 보유자를 확인하고 공적으로 그들의 기·예능을 인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자신의 기·예능을 미래세대에 전승케 하는 것이다.

라.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려·인식하면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하였다.

- 기존의 인권관련 국제문서, 특히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참조
- 1989년 전통문화 및 민속보호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 2001년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선언, 2002년 이스탄불 선언에서 강조된 문화적 다양성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고려
- 무형문화유산과 유형의 문화 및 자연유산 간의 깊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고려
- 세계화 및 사회변화의 과정이 공동체간 새로운 대화를 위한 조건을 조성함과 함께 불관용의 현상과 특히 이러한 유산의 보호를 위한 자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무형문화유산의 쇠퇴·소멸 및 파괴하는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
-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편적 의지와 공통의 관심사를 인식

- 공동체, 특히 토착 공동체·집단 및 때로는 개인이 무형문화유산의 창출·보호·유지 및 재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문화적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제고에 기여함을 인정
-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규범적 문서의 성립에 유네스코의 활동이 광범한 영향을 미쳤음과 나아가 현재까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다자간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에 주목
- 문화 및 자연유산에 관한 기존의 국제협정, 권고 및 결의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새로운 규정으로 효과적으로 제고되고 보충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
- 무형문화유산 및 그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특히 젊은 세대에게 고취할 필요성을 고려
- 국제사회가 이 협약의 당사국과 함께 협력 및 상호 원조의 정신으로 이러한 유산의 보호에 기여해야함을 고려
- 사람 사이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 인간 사이의 교류의 이해를 보장하는 요서로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

마. 우리나라 문화유산헌장

1976년 「문화유산의 해」에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당위성을 천명하는 헌장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문화유산현장

문화 유산은 우리 저래의 삶의 예지와 습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무형의 문화재는 모두 민족 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 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 사랑의 근본이 되며 저래 사랑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온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 유산 현장을 제정한다.

1. 문화 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1. 문화 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 문화 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1. 문화 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학교·사회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
1.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계승발전 시켜야 한다.

1997 년 12 월 8 일

3. 문화재보존과 관광에서의 고려되어야 할 원칙

관광산업은 이제 국가발전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 전략산업으로 인식되어 그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강구·추진되고 있고 문화 및 자연유산 관광산업의 원천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이다.

문화재청이 2002년에 입안한 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3대 영역사업(원형보호, 체계적 관리, 효율적 활용) 중 효율적 활용사업의 핵심추진 방향도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이다. 문화 및 자연유산과 잘 연계시킨 관광정책이 실시된다면 관광은 그야말로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 발전을 지탱하는 촉매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재와 연계된 지역관광 개발계획이 입안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70년대의 경주관광 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도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중원문화권, 다도해문화권, 강화문화권, 안동·영주유교문화권 등 문화재 집중 소재지역의 유적정비 사업들이 동지역의 관광자원화를 염두에 두고 꾸준히 정비되고 있다.

1972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이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문화 및 자연유산은 그 지역 관광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고 많은 국가들은 그들의 문화 및 자연유산들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림으로써 국가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자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서둘러 세계유산 목록에 그들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등재시키는데 애써왔다. 지금도 세계유산협약의 기본정신을 언급할 때 관광의 측면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 등재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해오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도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격상되고 아울러 관광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러나 세계유산목록은 관광과 미묘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한편으로는 보존하여야 할 가치가 확인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광적 활용도가 제고되어 유산보존상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시킨다는 점이다.

세계유산협약은 기본적으로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파악하고 이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여 이를 잘 보존되게 함으로써 다음 세대에 영속적으로 물려주게 한다는 기본정신을 담고 있다.

따라서 세계유산위원회는 회원국이 납부하는 유산기금을 재원으로 유산협약의 기본정신에 따라 보존상의 문제가 야기된 세계유산에 대하여 그 소유국이 대체능력이 없을 경우, 그 유산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소요 재정과 전문기술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위기에 처한 유산이 생긴다면 전문기술지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세계 10 위권의 경제 강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그간 세계유산의 등록사업 추진과 함께 등록된 유산의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위기에 처한 유산을 가려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위기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유산 소유국에 요구해 왔고 대처능력이 없는 국가들의 위기에 처한 많은 유산에 대하여는 세계유산 위원회가 개입 지원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지원 사례를 든다면, 자연유산의 경우 「에콰도르」에 있는 「갈라파고 섬」 보호사업과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세계적 야생지인 「췌겐게티」 국립공원 보호사업을 들 수 있다. 특히 「갈라파고 섬」은 1978년 세계 최초로 자연유산으로 등록된 곳으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탄생시킨 요람의 섬이다. 그러나 그 후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특히 우연히 관광객과 함께 유입된 외지 식물들로 인해 섬 본연의 생태계의 파괴가 촉진되었다. 유네스코는 이 「갈라파고 섬」의 보존사업을 통해 무엇보다도 관광에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화유산의 예로는 수 십 년 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보존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제사회의 특별지원을 받아 유네스코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다. 전쟁의 종식과 함께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경제부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광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을 최근에 깨닫기 시작한 캄보디아 정부와 유네스코는 유적 자체의 훼손뿐만 아니라 유적지 주위의 산림지역이 서서히 침식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앙코르와트」의 경우를 통해 유네스코는 관광은 지역사회의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과 원만한 조화를 이루어진 통제력이 가동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네스코는 1995년 5월 「베트남」의 「후에」에서 문화관광 장기전략 수립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베트남」의 역사도시 「후에」에서 이 회의가 개최된 것은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급증하는 관광객 때문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 회의에서 지적된 것으로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없는 능력의 상태에서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해 무작정 관광객을 수용하는 것은 관광자원의 원천인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쇠도하는 관광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위락시설을 조성하는 것보다 적정규모의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권고안을 「베트남」 정부에 제출하였다. 아울러 전통문화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그 진흥을 위한 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관광과 유산 보호 사이에서 생기는 괴리는 비단 후진국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호주의 「그리트베리어」 산호초의 경우도 수많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몸살을

않아 최근에 호주 정부는 이 지역을 유산보호 통제지역으로 선포하고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사전 허가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 되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은 비록 많은 외지 관광객의 방문으로 관광수입이 급증하는 이점을 안고 있지만,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현상에 비추어 이 지역의 자연자원 보존에 결코 낙관적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추측케 한다. 또 일부 세계유산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출입하는 인원을 엄격히 통제하는 제도를 취하기도 하는데, 미국의 메시베르드 국립공원, 캐나다의 오히라 레이크 국립공원, 짐바브웨의 마나플 공원이 그 대표적 예이다. 캐나다 오히라 레이크에 들어가려면 6개월 전에 티켓을 구입하여야 하고 1일 출입자는 80명으로 한정하는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외화 가득할 높은, 그리고 다양한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매력적인 산업임에 틀림이 없고 문화적 정체성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널리 선양할 수 있는 이점도 수반한다. 그러나 만약 적절한 통제력을 상실한, 그리고 경제적 측면의 이익 추구에만 급급한 관광정책으로 그 관광자원의 원천적 자원이 훼손되어 진다면, 이는 당대주의의 참으로 어리석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관광은 지역발전에 매우 유용한 전략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관광자원의 원천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전략」을 수립하도록 힘쓰는 일밖에 없는 것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체제의 개편이 필수적이고 아울러 우리들의 사고, 행동양식, 의식 등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문화재를 보존한다는 것은 인공적인 가감 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완벽하게 보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화재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것, 즉 선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인 이윤 추구의 각종 개발은 어떤 경우에는 유산의 보호·보존에 위해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동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의 확인으로 개발의 가치와 유산보존의 가치가 부딪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개발을 통한 보존, 그리고 보존을 통한 개발의 조화점을 신중히, 그리고 지혜롭게 모색하는 접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4. 지정문화재 공유화 정책의 필요성

- 보호물·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와 관련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함에 있어서 당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동법 제 9조 제1항)하고 동시에 보호구역의 정의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구역의 지정절차와 지정기준 및 보호물·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들도 문화재보호법 제 9조 관련 대통령령과 동령관련 문화관광부령에 규정하고 있다.

가. 보호구역의 정의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동법 제 2조 제 3항)

나. 보호물의 정의

지상의 건축물 보호를 위한 철책·석책·위장, 동종·석비·불상 등의 보호를 위한 종각·비각·불각,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기타 시설물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다.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하고 이 규정과 관련한 문화관광부령(동법시행규칙 제 4조 제1항)에서는 기준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보호물·보호구역 지정기준

구 분	지 정 기 준
1. 국보·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구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조 및 석조건축물은 각 추녀 끝이나 또는 건물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20미터부터 100미터(사찰건조물의 경우에는 2000미터) 이내의 구역 2. 석탑·전탑 등은 지대석에서 10미터부터 25미터 이내의 구역 3. 석비·부도·석종·석불(건물 내에 안치된 것은 제외한다)등을 대석의 최돌출점에서 10미터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 4. 첨성대는 하부기단에서 50미터부터 100미터 이내의 구역 5. 석빙고는 벽면 상부지면에서 20미터부터 100미터 이내의 구역 6. 석굴은 하부기단에서 100미터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 7. 마애불은 불상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0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8. 당간지주·석등·노주·석조 등은 각 물체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미터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 9. 석교는 교대 및 교각에서 10미터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10. 그 밖의 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는 각각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사적의 보호구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곽 등은 성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및 내향 각각 20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2. 성·산성·성내전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20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3. 제방은 성곽에 준한다. 4. 왕릉·고분묘 등은 봉토 하단에서 10미터부터 1천 미터 이내의 구역 5. 사지·사우지·전묘지·고궁 등은 담장 또는 경계선에서 5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6. 목조건축물·석조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은 국보·보물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7. 그 밖의 사적의 보호구역은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의2. 명승의 보호구역	경승지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지정광물·천연보호구역·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식물은 임목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구역
4. 보호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상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철책·석책·위장 그 밖에 해당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2. 동종·석비·불상 등은 종각·비각·불각 3. 그 밖의 문화재는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5.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물이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기타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외향 5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2. 보호물이 석책·철책·위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기석에서 2미터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지만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청장은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동법 9조 제 2항)

○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절차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절차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했으며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는 문화관광부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5항)하고 있다.

첫째, 문화재위원회 해당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의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조사요청

두 번째, 조사요청 받은 자는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세 번째, 문화재청장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

네 번째, 문화재청장은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 결정

라. 보호물·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 적정성 검토의 의의

문화재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동법 제9조 제2항) 이것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이 곧 개인의 재산권을 공법적으로 제한하는 공용제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일단 지정이 되었거나 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기초하여 일정한 기간에 한 차례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범위를 조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이다. 2008년 개정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개정 전에는 문화관광부령인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여 규율하는 것을 대통령령인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9조제4항)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의 위임규정을 상위법규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여겨진다.

○ 적정성 검토시 고려사항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

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도록 규정(동법 제9조 제3항)하였다.

- 해당문화재의 보존가치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 적정성 여부 검토 시기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시기는 종전에는 문화관광부령인 동법시행규칙에 지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하도록 하되 규정된 기간 내에 검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게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하위법령이 아닌 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3항에 바로 적정성여부의 검토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하여야 하도록 했고 특별한 사정으로 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인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검토시기와 검토시 고려사항을 하위법령인 문화관광부령인 시행규칙에서 규율하던 것을 법률인 문화재보호법과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규율하게 개정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민재산권보호차원의 배려에 의한 개정으로 여겨진다.

마. 문화재지정과 사유재산권 제한의 문제

문화재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적총계는 1,167,917,363.309㎡이고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적총계는 79,490,349.662㎡로서 실로 방대한 면적에 달한다.

국보·보물 등 건조물의 경우 그 지정면적이나 보호구역면적은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니나 사찰 전체를 지정할 경우, 그리고 성곽·산성·왕릉능역과 같은 사적지, 경주 남산과 같은 유적지 집중지역, 한라산·설악산과 같은 천연보호구역, 명승이나 사적 및 명승지 등과 같은 것은 광활한 면적이 지정되어 있고 지정구역이 넓은 만큼 사유재산권 행사에 가해지는 제한도 많아지게 마련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나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로 정하는 범위내의 것에 한정하고(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조건 아래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 할 수 있도록(동조 제3항)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입법권에 의해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을 정당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 제한의 정당성 사유로서 공공의 필요, 법률의 형식,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재보호법은 이러한 헌법의 명시규정에 적합하게 제정·시행되어온 법률로서 문화 및 자연유산 중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보존가치가 확인된 것을 동 법률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 등으로 지정하고 동시에 그 보호상 필요한 일정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문화재보존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차원에서 사유재산권 행사의 일부 제한을 수반하는 관리행위를 행하여 왔다.

그런데 우려되는 사항은 2000년도 문화재보호법 개정 때부터 입법화된 「보호물·보호구역지정의 적정성검토」 결과에 대한 후속대책방안 문제이다. 더욱이 금년 3월 개정법에서는 종전의 하위법률에 규율했던 규정들을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의 배려를 강화하는 의지를 담은 의원입법의 개정이 있었다. 문화재청에서는 앞으로 적정성여부를 당해문화재의 보존가치, 보호물·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보호물·보호구역지정이 재산권행사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게 될 터인데 재산권행사에 미친 영향의 검토 결과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있어야 하겠다는 점에서 문화재 지정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공유화 정책의 수립·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본 문화재보호법이나 문화재정책을 들여다보면 공유화정책이 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문화재정책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현행법에서는 지정동산문화재에 대하여 국가나 지자체 또는 박물관에게 우선 매입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구체적인 공유화 정책의 입법 예이다. 문화재는 사유물로 비장되는 것보다 공공복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취지이다.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있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폐지되고 말았는데 매우 아쉬운 사례다. 그런데 보호구역 지정의 경우 지정으로 인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법제화 하였으니 사유재산권 행사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 결과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사유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경우에는 그 지정구역을 축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이다.

당해 문화재 보존상 축소조정이나 해제를 할 수 없을 경우라면 이는 공유화 정책으로 문제를 끌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지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문화재들

문화재보존관리에 있어 법적 보호대상은 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간 꾸준한 조사연구와 지정조치의 결과 2008년 3월 현재 국보 309건, 보물 1530건, 사적 476건, 사적 및 명승 10건, 명승 36건, 천연기념물 385건, 중요민속자료 253건, 중요무형문화재 113건 등 총 3112건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상의 보호대상 문화재로 관리하게 되었고 한편 시·도에서는 유형문화재 2351건, 무형문화재 353건, 기념물 1503건, 민속자료 314건 등 총 4521건에 달하는 시도지정문화재와 2124건의 문화재자료가 지정되어 역시 법적 보호 하에 관리하게 된 것은 일제시대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해 지정 관리되었던 남한 소재 문화재가 불과 503건에 불과했던 점에 비견할 때 총 9757건에 달하는 국가 및 지자체지정 문화재가 나온 것은 국가 및 지자체 문화재 담당기관과 문화재위원회 그리고 관련 학계의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실증하는 증거인 문화유산과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유산들에 대한 연구·조사의 진척과 문화재 발굴에 따라 보존가치가 확인되는 문화 및 자연유산들의 항구적인 보존을 위한 제도적 법적 보존조치인 지정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고 그렇게 지정된 문화재들에 대한 관리능력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실정법에는 그 지정요건과 지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대상이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파악 노력이 요구된다. 이미 지정된 것과 지정기준을 대비해보면 어떤 분야는 지정 예가 많은데 기준에 명시된 어떤 분야는 그 지정 예가 적거나 전혀 없는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정기준에 명시된 것은 어디까지나 ...등과 같은 예시적 나열이므로 그와 같은 맥락의 지정대상은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지정기준에서 우선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은 기준에는 있으나 지정 예가 적거나 없는 분야에 대한 관련 연구업적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면 ① 보물지정기준에서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그간 수많은 고분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분묘의 예는 없는지 공주 송산리 6호분의 전축유구는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전적·서적·고문서류는 일제시 수탈의 대상이 되어서 그 지정 예가 불과 8점 밖에 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그간 많은 지정 노력의 결실이 있었다고 평가되지만 서지학적 가치 판단 외에 문헌자료로서의 가치판단으로 접근한다면 관계 각 분야에서 보는 사료적 가치가 큰 대상들이 파악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③ 회화·조각 분야는 그 진위판단의 어려움으로 지정 심의가 너무 신중해서 지정이 어려웠던 분야이다. 황자총통예와 같이 모조제작된 것을 교묘히 기만하여 문화재위원회로 하여금 국보로 지정 의결하게 했던 예는 다시는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정되어야 마땅한 가치있는 대상도 지정을 기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한 특단의 진지한 감정 평가 시스템의 가동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④ 무형문화재분야에서 예능종목의 발굴과 전승은 전통공연예술의 시장성과 더불어 큰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사료되지만 의식·놀이분야와 공예분야의 발굴과 그 전승체제의 확립에는 아직도 많은 한계가 있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젊은 공예가나 독지가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재생되고 있는 무형문화재 영역의 성과를 격려하며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⑤ 사적지정기준에서 그 지정예가 적거나 없는 분야는 교통토목에 관한 유적과 교육학에 관한 유적, 중요한 전설지 등의 학술상 가치 있는 대상들이다. 이 분야의 연구축적들을 찾아 지정대상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전설지 등의 지정에 너무 인색했던 점에 대해서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당연히 지정되었어야 할 대상이 기지정된 구역 안에 있다는 사실과 보존상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으로 지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상은 없는지 이를테면 공주 무령왕릉, 경주 금관총·금령총·서봉총·황남대총·천마총 등 도굴되지 않았던 왕릉과 고분은 조사가 실시되어 큰 발굴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출토유물 중 다수가 국보·보물 등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특히 무령왕릉은 삼국시대 백제왕릉으로는 처음으로 그 주인공이 확인된 획기적인 예이다. 그리고 경주의 발굴된 고분들도 이미 유물출토의 특징적인 면과 연관하여 명명된 고유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물론 이들은 사적으로 기지정된 고분군 지역 내에 존재하므로 보존상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지정되어 있는 사적지 내의 중요건조물들은 별도로 국보·보물로 지정한 예를 조선조 각 궁궐이나 종묘에서 볼 수 있고 명승이나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존재하는 특정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예가 많은 것을 볼 때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어떤 문화재를 다시 지정하는 것은 보존관리상의 취지에서라기보다 그 문화재의 보존가치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 언급한 무령왕릉을 비롯한 발굴 고분들은 특히 보존가치가 확인된 유적임으로 별도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금관총, 금령총, 서봉총은 일제 때 봉토를 걷어낸 지금의 상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발굴 후 복원한 천마총이나 황남대총처럼 그 봉토를 복원해서 관리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6. 문화발전계획 기본적 지향

여기서 논하는 주제의 글은 문화입국론에서 김문환 교수가 발표한 것으로 유네스코와 유엔이 각국에 권고한 세계문화발전계획에 관한 것이다. 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에 이념적 기초로 참고가 되었으며 하며 소개하는 것이다.

1989년은 유엔과 유네스코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권고하여 추진하도록 한 「문화발전 10년 계획」이 시작했던 해인데 「발전의 문화적 차원」이라는 주제는 「문화발전 10년 계획」이 지향하는 4대 목표의 하나로 내세운 것이다. 나라마다 추구하는 국가와 사회 발전 계획은 필수적인 중요 정책과제이지만 과거 수 십 년간 성장의 이름으로 이해되고 경제적 측면들만 축소 강조된 그런 발전 개념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 전 통사회의 해체, 자연 및 문화적 환경의 손실 등 수 많은 폐해가 수반되었다. 지구 온난화 등 환경오염과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사태로 진전되어 왔다. 국민을 부양하고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발전계획의 수립·추진은 불가피한 국가정책과제로 인식한다. 그러나 발전이란 그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닌 열망과 조화를 이룬 가운데 보다 나은 생활에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지닌 창조적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게 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를 지닐 수 없는 것이다. 경제가 심각한 중요성을 지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목적을 지녀야 하며 문화를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는 결집력을 갖게 된다는 것 역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것이 발전에다 그 사회가 지닌 잠재력을 통합시킨 의미를 부여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화 즉 개개인의 존재가 발전문제들에 대한 어떤 접근에서도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의미심장한 일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하위에서도 그러하거나와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더욱이 발전전략을 작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문화를 고려하는 일이 소홀히 되어 왔다. 이러한 경제적 차원의 발전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추진되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직시하고 유엔과 유네스코에 의해 「문화발전 10년 계획」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채택되고 각국 정부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도록 권고하게 된 것이다. 그 핵심은 발전과정은 반드시 인간적 존엄성을 신장시키고 개별국가의 문화적 주체성을 고려해야함과 동시에 각국 정부는 인간적 내지 사회적 발전의 진흥을 위한 적합한 국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참여가 과정의 모든 단계들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들과 문화적 유산의 전승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문화발전 10년 계획」은 다음과 같은 4대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1) 문화적 주체성의 확인

한 사회의 문화적 주체성은 물질적 그리고 비물질적인 문화유산을 통한 역사적 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 이 목표를 지원하는 행동은 따라서 문화유산 보존·복원 또는 그 계승을 위해 설계된 조치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전쟁과 자연적 재해가 야기하는 위협들에 대처하는 일, 예술작품들과 고고학적 대상들의 불법적인 거래를 종식시키는 일, 세계 각국 국민들의 문화유산을 인류공동의 보존 재산으로 만드는 일, 여론으로 하여금 유산의 중요성과 의의를 의식하게 만드는 일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 주체성은 또한 한 사회가 그 스스로 창조하는 지속적인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그것은 내적다양성에 의해 지탱되어지는 한편, 바람직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응용함으로써 외적 투입들을 수용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화적 주체성의 증진은 민족문화에 대한 인식과 존경,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들에 미치는 기술-산업적 발전의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교육, 통신, 과학 또는 기술의 분야에서 외적 투입들을 자발적으로 동화하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조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들에도 연결될 것이다. 또한 문화교류와 상호적인 문화감상을 격려하는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문화들 간의 상호소통을 위한 통로들이 더욱 활발하게 연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발전의 문화적 차원

발전의 문화적 차원이 지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세계 공동체에서 증진되는 것이 현대의 중요한 특색으로 꼽히고 있다. 문화, 경제 그리고 발전의 특정한 기본분야들 간의 내적 관계를 해명하고 통합적인 발전에 기본분야들 간의 내적 관계를 해명하고 통합적인 발전에 관심을 두면서 이 분야들 안에서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는 일이 절실히 요구된다.

예컨대 교육적 접근들과 내용을 고려하면서 특수한 문화적 맥락들에다 교육과 상호소통체제를 적용하는 방법들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법하다. 아울러 과학적 및 기술적 혁신들을 보급하기 위한 확장사업 전통적인 유형의 지식과 노우-하우의 활용, 통합적인 발전 활동들을 지지하는 문화적 활동 형식들의 식별도 그러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그리고 예시 가능한 세계문제들의 사회적 및 문화적 측면들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 질 수 있다. 발전 계획들, 문화적 및 인간적 요소들,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의 서로 다른 형식들이 갖는 문화적 영향, 그리고 문화적 투자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는 프로젝트들과 프로그램들을 위한 방법론들을 세련시키는 연구에도 초점이 맞추어 질 수 있다.

3) 문화생활에의 광범한 참여

가능한 한 더욱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 생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발전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나 하나의 전제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문화는 의심할 여지없이 그 안에서 참여적인 정책이 최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다. 문화생활에의 참여는 집단적 인식과 국민적 통합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동력화의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발전과정에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공헌하게 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가치들의 완전한 표현, 창조적 능력들의 개화, 그리고 가장 의미심장한 개인적 및 집단적 열망들의 실현을 보장하게 된다. 그것이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국은 문화재에의 접근으로 이어지는 민주화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로 하여금 그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의 특수한 동기들에 따라 공동체의 문화적 생활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과하는 순수한 문화민주주의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조건들을 창출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집단들에 의한 개인적 및 집단적 문화적 권리의 실행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공동체 발전을 위한 예술가의 참여와 공헌에도 당국은 적절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평생교육의 보편화와 교육의 민주화, 예술 교육의 강화, 모국어 교육의 확장, 창조성을 북돋우는 방법들의 광범한 적용, 불관용, 인종주의, 성차별 등을 없애는 교육적 활동들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나아가 상호소통의 민주화, 표현 수단에서의 자유롭고 효과적인 접근도 이 범위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전달내용들의 일방통행에 머무는 중앙 집중적 관료적 구조들에 직면해서 커뮤니케이션망의 다양화와 대화 내지 수평적 소통의 강화를 위한 대책들의 강구와 상통한다.

아울러 사회적 소통과 개인들 간의 상호소통의 전통적 형식들을 회복시키고 과정들을 민주화하기 위한 기술적 혁신들의 활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강구되어야 한다.

4) 국제적인 문화협력에의 증진

인류가 이룩한 교육, 과학, 문화의 결실들을 함께 나누며 모두가 좀 더 나은 삶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요망되는 시점에서 국제적인 문화 협력의 증진은 매우 중요한 문화정책 과제이다. 아울러 인류가 직면한 여러 위기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책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마련되어 질 수 있겠는가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과 유네스코가 제시 권고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의 4대 목표 주제들은 현대 세

계에서 문화와 관계라는 근본적인 문화들의 확인과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문화발전 주요 목표들과 기본 원리들로부터 추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9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시 법제화된 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도 문화발전계획이 지향하는 기본 원리에 기반하고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계획의 입안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무형문화재 제도의 이해

- I. 무형문화재 보호체계의 구축 / 265
- II. 무형문화재 전승현황 / 267
- III. 문화재보호법 / 269
- IV. 무형문화재 지정(인정)·해제 / 272
- V.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 274
- VI.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 275
- VII. 그간의 성과와 전망 / 277

I. 무형문화재 보호체계의 구축

1. 무형문화재 용어의 개념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문화재보호법)
-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실행,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유물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한다.(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2006.4.30)

2. 무형문화재보호의 주역(문화재위원)

- 음악, 무용
 - 박헌봉(1907-1977) : 대한국악원 창설, 국악예술학교 초대 교장
 - 이주환(1909-1972) : 국악원 초대원장, 가곡보유자, 이왕직 아악부 아악생
 - 김천홍(1909-2007) : 이왕직아악부 아악생, 종묘제례악 및 처용무 보유자
 - 성경린(1911-2008) : 이왕직 아악부 아악생, 종묘제례악 보유자
 - 장사훈(1916-1991) : 이왕직 아악부 아악생, 거문고 대가, 서울대 교수
- 연극, 놀이, 의식 :
 - 임석재(1903-1998) : 민속학자, 경성제국대학, 최남선 손진태와 조선민속학회 조직, 한국문화연구의 실천적 개척자
 - 최상수(1918-1995) : 민속학, 일본 수학, 한국민속학회 창설
 - 이두현(1924-) : 서울대 사대 교수, 한국가면극연구회 이사장
 - 장주근(1925-) : 민속학자, 서울대 사대 및 일본 사회학 박사. 신화·무속전공
 - 임동권(1926-) : 민속학자, 국학대 국문학, 민속학회장
- 공예기술
 - 석주선(1911-1996) : 복식, 일본 수학, 단국대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장
 - 예용해(1929-1995) : 언론인, 한국일보 논설위원, 공예기술, 인간문화재 저술

3. 발굴이벤트와 보호기준

○ 발굴 이벤트

- 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전통민속예술을 발굴·전승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문화예술제이다. 1958년 정부수립 10주년 기념 축하행사를 겸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며, 1959,1960년 두해를 거른 뒤에 1961년부터 공보부 주최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1999년부터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주최하며 대회 이름도 한국민속예술축제로 바뀌었다. 이 대회를 통해 국가지정 35종, 시도지종 56종목이 발굴지정 되었다.

나. 전승공예대전

전통공예분야의 장인을 발굴하고, 그 장인들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전승하기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이다. 1973년 인간문화재 공예작품전시회라는 이름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32번째 대회가 열렸다.

○ 보호 기준

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놀이 이, 무예, 음식제조,
-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 보호 선정 기준 :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전승적 가치

- 무형문화재 보호의 논리 : 단절우려가 있는 종목을 국가에서 보호하여 미래 전승력을 확보한다. 과연 객관성이 있는 논리 인가?
- 학술적 가치는 1999년 법개정을 통해 보완되었다. 그리고 종목을 전승시키고 있는 전승자의 기량 및 현황을 기준으로 전승적 가치도 추가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공예기술 분야는 경국대전 경공조에 수록되어 있는 종목을 기준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종목은 조선시대의 시대적 상황과는 달리 대부분 현재 실생활과 연관이 없는 장식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승활성화가 가능할까?
- 전승자의 1차 고객이 소비자 일까? 문화재청일까?

II. 무형문화재 전승 현황

1. 중요무형문화재 현황

구 분	분 야	예 능 종 목					기능종목		계
		음 악	무 용	연 극	놀이와 의 식	무 예	공예 기술	음식	
	지 정 종 목	17	7	14	24	1	48	2	113 [124]
	보 유 단 체	13	4	13	26			1	57
전 승 자	보 유 자	42	12(1)	33	41	1	61	4	194 (1)
	전수교육조교	92	23(1)	64	71	2	53	1	306 (1)
	이 수 자	1,514	530	404	515	35	392	17	3,407
	전 수 장 학 생	14		2			65		81
	계	1,662	565(2)	503	627	38	571	22	3,988 (2)
	명 예 보 유 자	2		3	7		2	1	15

2.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현황

(2007. 12. 31 현재)

분야 시도	음 악			무 용			연극			놀이와의식			공예기술			음 식			무 예			계		
	지 정	보 유 자	조 교	지 정	보 유 자	조 교	지 정	보 유 자	조 교	지 정	보 유 자	조 교	지 정	보 유 자	조 교	지 정	보 유 자	조 교	지 정	보 유 자	조 교	지 정	보 유 자	조 교
서울	5	5	3	-	-	-	-	-	-	9	7	5	20	21	4	3	4	1	-	-	-	37	37	13
부산	3	7	12	3	3	8	-	-	-	5	18	32	2	2	-	-	-	-	-	-	-	13	30	52
대구	7	6	7	2	1	4	-	-	-	-	-	-	5	5	5	1	0	1	-	-	-	15	12	17
인천	7	11	17	1	2	-	-	-	-	3	3	2	5	4	1	-	-	-	-	-	-	16	20	20
광주	10	11	-	-	-	-	-	-	-	-	-	-	4	4	-	1	2	-	-	-	-	15	17	-
대전	3	4	-	1	1	-	-	-	-	4	3	2	5	5	2	2	2	-	-	-	-	15	15	4
울산	-	-	-	-	-	-	-	-	-	1	-	-	2	1	1	-	-	-	-	-	-	3	1	1
경기	7	8	4	2	2	2	-	-	-	5	5	5	22	27	12	4	4	3	-	-	-	40	46	26
강원	6	14	9	-	-	-	-	-	-	5	5	5	7	6	1	-	-	-	1	-	-	19	25	15
충북	5	6	7	-	-	-	-	-	-	1	-	-	8	10	-	3	3	-	-	-	-	17	19	7
충남	6	6	7	1	1	1	-	-	-	13	15	14	9	8	5	5	5	3	-	-	-	34	35	30
전북	8	26	-	1	1	-	-	-	-	7	6	-	14	22	-	2	4	-	-	-	-	32	59	-
전남	18	25	10	-	-	-	-	-	-	5	5	5	7	6	2	2	2	-	-	-	-	32	38	17
경북	11	5	24	-	-	-	-	-	-	2	2	5	11	17	16	4	3	9	-	-	-	28	27	54
경남	7	10	4	3	10	3	1	1	2	11	16	16	7	5	1	-	-	-	-	-	-	29	42	26
제주	6	5	2	-	-	-	-	-	-	5	3	1	4	4	6	2	2	-	-	-	-	17	14	9
계	109	149	106	14	21	18				76	88	92	132	147	56	29	31	17	1	0	0	362	437	291

3. 조직현황

가. 국가조직

한국의 무형문화재 보호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이다.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에 제정된 후 30여년이 지난 1990년 11월에 정부조직으로 인가 받았다. 현재 무형문화재과는 문화재청의 정책사안으로 분류되어 정책국에 소속되어 있으며 조직구성과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13명)
 - 예산/행정지원
 - 공예
 - 예능

- 업무내용
 - 중요무형문화재의 조사·지정 및 해제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보호 및 지원
 - 중요무형문화재 보존 및 활용
 - 중요민속자료 보존 및 관리
 - 시·도지정문화재 중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 보존관리 지원
 - 문화재위원회 예능/공예 분과위원회의 운영

나. 지방자치 단체 및 법인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무형문화재 업무는 문화재를 총괄하는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직명칭은 지방자치 단체별로 약간 다르다. 또한 민간차원의 무형문화재 보호와 진흥을 위하여 법인단체를 승인하여 관리하고 있다.

- 지방자치 단체
 - 16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과/문화예술과/관광문화재과 등

- 법인
 - 한국문화재보호재단(www.fpcp.or.kr)
 - (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 (재)한국전통무형문화진흥재단

- (사)한국공예예술가협회
- (재)대한민국명장회 등

Ⅲ. 문화재보호법

1. 주요연혁

- 1962. 1. 10 : 문화재보호법 제정, 공포
중요무형문화재 년1회 공개(의무조항)<1999,삭제>,<2008,신설>
분과위원회 설치
지정상의 자료제출(시도→문교부장관)
- 1964.12. 7 :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등 3종목 지정
- 1970. 8.10 : 보유자 인정제도(복수 인정제 포함)
지방문화재의 지정
문화재위원회 의결→심의
- 1982.12.31 : 보유단체 개념 도입
보유자의 전수교육실시/전수교육경비지급
문화재위원회 설치
전수교육보조자 : 보유자후보, 전수교육조교, 악사(1983)
전수교육보조자 : 위 3개분류 통합(1994)
전수교육조교로 명칭변경(2001)
전수장학생
- 1990.11. 1 : 무형문화재과 신설
- 1994.10. 7 : 보유자의 전수교육 권한강화(이수증 교부권 위임)
**이수자 자격 : 3년 이상 전수교육 받은자(1999)
- 2001. 3. 28 : 명예보유자 인정 제도 신설
- 2005. 1. 27 : 이북 5도 시도지정문화재로 권고

2. 문화재 보호법 개요

가. 문화재의 정의(법 2조)

-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도구·가옥등으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나.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법 3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다. 문화재위원회의 설치(법 4조)

-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보고사항
- ※ 무형문화재 분과 문화재위원회(2007.9월 현재)
- 무형문화재 예능분과 문화재위원회 : 위원 11명/전문위원 16명
 - 무형문화재 공예분과 문화재위원회 : 위원 10명/전문위원 16명
- ** 위촉기간 : 2년

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법 6조)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지정기준(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1조) 별표·별지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마.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법 13조)

-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종목 지정 해제)
-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전통문화의 공연,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바. 기록 및 작성(법 33조)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 무형문화재 기록보존업무 수행

사. 중요무형문화재 보호·육성(법 36조)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교육으로 설립된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법 36조의 2)

-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기예능 공개하여야 한다

자. 보조금(법 39조)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차. 정기조사(법 45조)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실태조사 정기적으로 실시(5년간)
- 조사의 결과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그 해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시도지정 문화재의 지정(법 71조)

-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타. 경비부담(법 73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IV. 무형문화재 지정(인정) · 해제

무형문화재는 종목의 지정과 전승자의 인정으로 나누어진다. 일단 종목의 지정가치가 검토된 후 그 분야의 전승자를 대상으로 기량평가를 실시하여 보유자를 인정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의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기준, 해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기준(시행규칙 별표 1)

종 별	지 정 기 준
중 요 무 형 문화재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극 : 인형극 · 가면극 2. 음악 : 제례악 · 연례악 · 대취타 · 가곡 · 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 · 산조 · 농악 · 잡가 · 민요 · 무악 · 범패 3. 무용 : 의식무 · 정재무 · 탈춤 · 민속무 4. 공예기술 : 도자공예 · 피모공예 · 금속공예 · 골각공예 · 나전칠공예 · 제지공예 · 목공예 · 건축공예 · 지물공예 · 직물공예 · 염색공예 · 옥석공예 · 수 · 매듭공예 · 복식공예 · 악기공예 · 초고공예 · 죽공예 · 무구공예 5. 기타 의식 · 놀이 · 무예 · 음식제조 등 6.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 · 수리 등의 기술

2.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인정 기준(시행규칙 제2조)

종 별	인 정 기 준
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 ·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보유 단체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한다.
명예 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자

3. 중요무형문화재 해제 기준(법 13조)

구 분	해 제 기 준
종 목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보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종목 지정 해제) ○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전통문화의 공연,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 절차

1.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신청
 - 시도지사
2. 조사계획 수립 및 현장조사
 - 해당분과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3인 이상의 조사
 -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문헌조사 및 기량조사
3. 문화재위원회 검토
 - 지정타당성 유무 검토
4. 종목의 전승자 심층조사
 -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관계전문가 등 3인이상 구성
 - 전승자 기량 심층 조사
5. 조사보고서 작성
6. 문화재위원회 검토
 -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검토
6. 관보 공고
 -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서 지정(인정) 예고 및 의견수렴
 - ※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조의 2 ④항)
7. 문화재위원회 최종심의
8. 최종 고시 :관보고시, 보유자 인정서 교부

V.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1. 지정 및 관리 주체별 분류

무형문화재의 관리주체에 따라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한 조례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국가 : 중요무형문화재(112개 종목)
- 지방자치단체 : 시도지정무형문화재(354개 종목)

2. 전승종목별 분류

무형문화재는 크게 예능종목과 기능종목으로 분류하고, 세부분류기준으로 음악 무용 등 7개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구 분 \ 분 야	예 능 종 목					기능종목		계
	음 악	무 용	연 극	놀이와 의 식	무 예	공예 기술	음식	
지 정 종 목	17	7	14	24	1	47	2	112 [123]
보 유 단 체	13	4	13	26			1	57

3. 전승자 분류

무형문화재의 전승자는 6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요 관리 및 지원대상은 보유자·보유단체와 전수교육조교이다.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보유단체 :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한다.
- 전수교육조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선발된 자
- 이수자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3년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발된 자

- 전수장학생 :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부터 추천받아 선발된 자
- 명예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자

4. 전수교육

문화재보호법은 보유자 중심의 전수교육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 보유자 중심 전수교육시스템

보유자에게 전수교육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해당 종목에 입문하는 전수자를 심사하여 이수자를 양산할 수 있는 권한과 전수교육조교 및 전수장학생 추천권이 있다. 그리하여 보유자를 중심으로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전수자’의 전승시스템이 성립된다 보유자의 전수교육방식은 전수교육 매뉴얼 보다는 도제식 교육방식으로 전수되며, 전수교육시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수교육관에서 이루어진다.

VI.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보급 그리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다양한 전승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 월별전승지원금

월전승지원금은 보유자(단체), 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을 위한 기본적 경비이다. 전수장학금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종목의 이수자 중에서 전수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고 있다.

- 보유자 : 100만원
- 보유단체 : 150만원
- 전수교육조교 : 50만원
- 전수장학생 : 15만원

** 시도 지자체 월전승지원금 현황

2007년기준 (단위: 천원)

시도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9개시도	500-900	300-550	200-400	100-150

2. 특별지원금

특별지원금은 소유부동산과 월소득이 문화재청이 매년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보유자와 전승취약종목의 이수자, 전승교육권한이 해제된 명예보유자에게 지급된다.

- 생계곤란 보유자 : 300만원-500만원
- 전승취약종목 이수자 : 200만원-400만원
- 명예보유자 : 월 100만원

3. 장례금, 입원보조금

장례금과 입원보조금은 보유자와 조교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 장례보조금
 - 보유자 : 100만원/조교 : 50만원
- 입원위로금
 - 보유자 : 50만원/조교 : 25만원

4. 행사지원금

무형문화재의 국내외 보급과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보유자(단체)의 공개행사 및 각종 기획 행사를 문화재청이 후원하고 있다. 그 중에서 문화재청이 중점지원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은 보유 기예능의 전과정을 실연해야 하는 공개행사이다.

- 공개행사
 - 개인종목 : 600만원-700만원
 - 단체종목 : 900만원-1500만원
- 기획행사/해외 공연·전시
 - 기획행사 : 400만원-500만원
 - 해외 공연전시 : 200만원-700만원
 -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전시: 200만원-250만원

5. 전수교육관 건립

보유자(보유단체)의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위한 전수교육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04개 전수교육관이 운용되고 있다.

6. 전승교재 및 장비지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위한 악보, 대본집, 시청각자료, 반주음반 등 판매의 목적이 아닌 교재 및 장비·원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 대상은 전승취약 단체종목이다.

VII. 그간의 성과와 전망

1. 그간의 성과

가. 무형문화유산 인프라 구축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시행으로 전승자가 지속적으로 양산되어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수는 36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전승자수를 더 하면 4000여명에 이른다. 이러한 전승자 수의 증가에 힘입어 연간 무형문화재의 공연 및 전시 등이 420여회에 이른다. 또한 다양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전국에 104개소의 전수교육관이 건립되어 있다.

나. 관광자원화

무형문화재 제도를 통해 축적된 무형문화재 인프라는 다양한 가치창출을 통해 국가의 지식자산으로 환류되고, 민족문화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무형문화재는 문화관광산업에서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첫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민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축제, 전통문화재현, 전통문화상품개발, 문화원형 콘텐츠 구축 등 다양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무형문화재의 전승기반에 기초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 우리문화의 내재적 역량 강화

무형문화재는 문화의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민족문화로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협약의 핵심사항인 ‘문화다양성의 존중’

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의 보편화와 획일화에 대한 경고로서 민족문화의 보호를 위한 노력과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1962년부터 지속적인 무형문화재 보호정책을 통해 건실한 전승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세계화의 물결에서도 우리문화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지킬 수 있는 전승력을 지니게 되었다.

무형문화재는 해외에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외 거주 동포에게 무형문화재 보급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아·태 지역에 무형문화재의 공연과 전시를 통해 한류확산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 제기된 문제점

가. 중점보호

무형문화재 보호정책의 대상은 무형문화재 중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으로 한정해 지정·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제도의 특징을 ‘중점보호’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무형문화재 중에서 1등만을 선별해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점보호제도는 지정종목을 보존하고 전승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결과적으로 문화의 서열화, 양극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양산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부에서는 보유자 복수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시도 무형문화재의 지정을 장려하는 등 정책지원 대상을 확대시키고 있으나 양극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비지정 무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의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런 문제제기는 유네스코 무형문화보호협약에도 언급되어 있다. 이 협약은 한국의 무형문화재 개념과 함께 구전전통, 사회적 관습,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점진적인 정책개선이 요구된다.

나. 도제식 전수교육

보유자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의무가 있다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보유자는 종목에 입문하는 사람의 기예능을 평가하여 이수증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실력이 우수한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유자의 전승 권한을 최대한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전수교육시스템은 우리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핵심인 전승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도제식 전승체계에 기초하여, 전승활동이 독점되고 결국 전승자간의 원형논란과 내부갈등이 유발되는 등 전승질서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정종목의 교육기관 지정 등 고려해야 한다.

다. 원형논란

무형문화재 종목에서 원형논란이 주로 제기되고 있는 종목은 놀이와 의식, 음악과 무용분야이다. 놀이와 의식분야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원형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주류이다. 음악과 무용분야는 특히 궁중정재분야에서는 일제시대와 근대기의 복원과 재현에 따른 원형훼손 등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원형논란에 대한 비판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비판속에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문제제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원형이 훼손되었다고 비판하는 측이나, 그 반대측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학문적 합의 내지는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3. 향후 전망

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 발효(2006.4.30)

○ 국내 문화재보호법과 간략 비교

	현행 문화재보호법	무형유산보호협약	특이점
정의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법2조)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실행, 표출, 표현, 지식, 기술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유물 및 문화공간을 모두 포함	문화공간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기준 :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고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과 놀이, 무예, 음식제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적 실행, 의식, 축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전통적 공예 기술 	민속문화재를 포함하는 범위확대
보호의 기본원칙	원형유지(법2조의 2)	원형유지 개념에서 탈피 - 지자체, 지역, 공동체, 개인 등의 참여 및 교육중시	참여와 교육중시
관리/보호/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작성/보존(법19조) 보호 육성 - 보유자 중심 전수교육체계 	확인, 기록, 연구, 보존, 보호, 증진, 선양,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	포괄적인 보호조치

나. 국내 무형문화재제도 운영의 시사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발효에 따라 협약당사국인 우리도 이 협약에 준한 무형문화재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실천사항에 대한 협약국간의 의사소통은 물론, 국제적인 무형유산보호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우리의 문화재보호법과 비교표 대로 무형유산의 개념과 보호의 방법 등 차이가 있다. 우리가 지금껏 추진해온 무형문화재 제도를 중심으로, 협약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우리가 추가하거나 보완할 사항을 파악하여 기존의 무형문화재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몇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무형유산개념 확대에 따른 비지정 무형문화재 보호
- 유무형문화유산의 통합개념으로 문화공간 보호
- 지역과 공동체가 참여하는 전승교육 프로그램 개발
- 비정부기구(NGO) 활동 강화

다. 무형문화재제도의 보완

- 전승지원방식 개선
전승지원금이 생계보조비가 아닌 전승활동 지원금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승지원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 투명성 제고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에 관한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 전승교육 방식 개선
현행 보유자 중심의 도제식 전승교육방식에서 탈피,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지정 이후 관리 강화(정기적 모니터링)
종목의 발굴 및 지정 중심에서 지정 종목의 보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모니터링의 결과는 무형문화재 보호 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기준 개선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기준을 검토하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